



FTA TRADE REPORT

FTA 무역 리포트 2014 July

# FTA TRADE REPORT

FTA 무역 리포트 2014 July



- 01 FTA 포커스
- 02 FTA 최근동향
- 03 한-EU FTA 3주년 이행 성과 분석
- 04 산업별 FTA 이행 현황과 전망
- 05 FTA 체제와 산업정책
- 06 수출입 기업의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 07 「거래당사자」와 FTA 활용 사례
- 08 FTA 지원 사업의 성과와 향후 방향
- 09 FTA 시대 유망 자격증,  
국가공인자격 「원산지관리사」를 알아본다!
- 10 FTA PASS 활용 메뉴얼
- 11 FTA 교역지도
- 12 부록\_통계

## CONTENTS

01. FTA 포커스 .....	004
02. FTA 최근동향 .....	009
03. 한-EU FTA 3주년 이행 성과 분석 .....	027
04. 산업별 FTA 이행 현황과 전망 .....	079
05. FTA 체제와 산업정책 .....	129
06. 수출입 기업의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	134
07. 「거래당사자」와 FTA 활용 사례 .....	144
08. FTA 지원 사업의 성과와 향후 방향 .....	150
09. FTA 시대 유망 자격증, 국가공인자격 「원산지관리사」를 알아본다! .....	168
10. FTA PASS 활용 메뉴얼 .....	177
11. FTA 교역지도 .....	183
12. 부록_ 통계 .....	192

## 「FTA 무역리포트」 발전을 위한 격려사



관세청장 김낙희

세계 각 국은 경제위기 이후 저성장 흐름을 탈피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구조개혁과 성장동력 발굴에 나서고 있으며, 국제통상을 둘러싼 주도권 확보 다툼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세계경제 속에서 우리나라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세계변화의 흐름에 맞추어 우리의 경제체질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변화에 적응하고 우리기업들의 경제영토를 넓히기 위하여 10년전 한-칠레 FTA를 체결한 이래 2014년 현재까지 미국, EU 등 거대 경제권을 포함, 47개국과 FTA를 체결하여 전체 교역량의 36%를 FTA 국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중 FTA, TPP, RCEP 등 새로운 FTA가 계속 추진되고 있어 이제 FTA 활용은 '선택'이 아닌 우리기업과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FTA를 우리 기업이 보다 쉽게 활용하여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FTA 교역량 추이 및 수출입활용률, 주요 산업 및 협정별 FTA 교역 현황 등에 관한 자료들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2013년부터 기업들이 꼭 필요한 자료만을 엄선하여 「FTA 무역리포트」를 발간해 왔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FTA 무역리포트」 발간을 통하여 FTA 효과 등에 대한 실증적 데이터를 우리 기업들이 잘 이용하여 FTA 수출활용률이 제고되고, 취약산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하는데 적극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4년 7월  
관세청장 김낙희



# 01 FTA 포커스

## 새로운 한·중 세관협력으로, 수출기업 혜택 확대 - 「한·중 세관당국간 전략적 협력 약정」 체결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기획관 이명구

### 1. 의의

관세청은 올해 7월 3일 서울에서 한·중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한민국 관세청과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간 전략적 협력에 관한 약정 (Arrangement on Strategic Cooperation)」(이하 “전략적 협력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함으로써 관세청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쾌거를 이루었다.

중국시장에 진출해 파트너와 소통할 때는 ‘관계(관시) 대화’를 잘 해야 된다고 한다. 관세청이 이번 약정체결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도 관계대화의 중요성을 고려했다.

이번 약정은 지난해 6월 북경에서 양국 정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 제시한 청사진을 바탕으로, 국제무역에 있어서

세관당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국 간 무역의 원활한 촉진과 무역안전 강화에 도움을 주는데 의미가 있다.

약정서에는 한중 성실무역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상호인정약정 이행협력을 포함해 원산지, 무역통계, 불법·부정무역 단속 및 인적자원 개발 등 5대 중점분야에 대한 포괄적 협력내용이 담겼는데, 이는 양국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한중 공동성명 부속서에 포함되어 양국 정상회담의 중요한 성과로 평가되었다.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교역은 1992년 수교당시 63억 달러에서 지난해 2,288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한중 양국 간 경제협력은 지난 20여 년간

꾸준히 확대돼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 되었고, 한국은 중국의 3대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했다.

최근 동아시아 지역을 둘러싸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한·중·일 FTA, 한·중 FTA 등 지역

경제통합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올해 연말 내 협상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한·중 FTA가 체결되는 경우 대폭적인 교역확대가 예상되는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 하에서 이번 약정 체결의 의의는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 2. 전략적 협력 약정의 주요내용

전략적 협력 약정은 한·중 FTA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자유무역 확산 등 양국을 둘러싼 새로운 무역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중 양국간 수출입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촉진, 무역안전 및 건전한 경제발전을 위한 세관당국간 협력 강화 약정을 의미한다.

전략적 협력 약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① AEO MRA 이행협력 ② 특혜원산지 자료교환 ③ 무역통계 교환 ④ 불법·부정무역 단속 ⑤ 인적자원 개발 등 5대 중점분야에 대한 협력강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AEO MRA 이행협력 관련, 이번 약정을 통해 양국 세관당국은 한·중 AEO MR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고, AEO MRA 제도 발전 및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둘째, 특혜원산지 자료교환관련, 한·중 FTA 체결에 대비하여 양국 세관당국 간 원산지분야 협력체제

조기구축과 동시에 한·중 FTA 발효 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정보교환과 수입물품에 대한 특혜 관세 적용실적 교환협력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정보교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양국 세관당국은 전자적 자료교환 시스템 개발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셋째, 무역통계 교환관련, 무역통계는 중요한 경제 지표이자 국가통계로서 무역통계가 국가 간 큰 편차를 보일 경우, 통계의 신뢰성 저하뿐만 아니라 국가 간 통상마찰의 소지도 있는 바, 이번 약정을 통해 한·중 세관당국 간 무역통계 제도와 작성 기법 교류, 무역통계의 정기적 교환, 무역수지 비교분석 및 무역통계에 대한 객관적 조정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넷째, 불법·부정무역 단속협력 관련, 양국 간의 교역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무역원활화 정책에 편승한 불법·부정무역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국 세관당국은

1) 對중국 불법·부정무역 단속실적 : '11년(2,031건, 1.7조원) ⇒ '12년(2,481건, 2.1조원) ⇒ '13년(2,533건, 3.9조원)

밀수, 위조상표, 저가신고 농수산물 등 불법·부정 무역 단속경험을 공유하고 정보교환, 공조수사 실시 등 단속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다섯째, 인적자원 개발협력관련, 양국 간 세관 기법에 대한 경험과 사례·공유 및 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제고를 통해 양국 세관직원의 역량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하여 양국의 인적자원개발 담당 부서 간 협력강화, 교육 훈련 기관 간 상호 전문가 파견등 인적교류 실시, 세미나 및 공동연구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3. 기대효과

관세청은 이번 중국 해관총서와의 전략적 협력 약정 체결을 통해,

첫째, 양국 세관당국간에 기체결한 AEO MRA의 내실 있는 이행과 함께 AEO 수출업체들은 중국 현지의 신속통관 등 더욱 많은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한·중 FTA가 체결되어 양국 세관당국간에 원산지 정보가 교환되는 중소 영세기업을 포함한 수출업체들은 원산지 서류심사가 간소화되는 등

신속통관의 혜택<sup>2)</sup>과 동시에 원산지증명서 위조 등 원산지 사기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셋째, 불법·부정무역 단속협력에 따라, 양국의 건전한 무역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온 밀수, 저가 농수산물, 위조 상품 등 불법·부정무역 사범에 대해서는 한·중 양국 간 정보교환, 공조수사 등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 제고 및 양국 간 건전한 무역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넷째, 무역통계 교환협력에 따라, 무역통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통계기법, 제도, 자료 정보교환과 무역통계 차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포괄적 협력체제 구축으로 통상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고 무역 왜곡현상도 최소화될 전망이다.<sup>3)</sup>

다섯째, 양국 세관당국 간 인적교류 및 역량개발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며, 이러한 인적자원

개발협력을 통하여 양국 세관직원의 역량과 기법을 강화하고, 우리 세관행정 제도를 중국 측에 접목해 우리에게 유리한 對중국 통관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중 양국간 교역증진과 기업의 시장 확대를 도모 하는 측면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은 관세장벽의

### 4. 향후계획

관세청은 앞으로 보다 많은 수출기업들이 동 전략적 협력 약정 내용을 충분히 활용하는 등 약정 체결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한·중 관세청장 회의,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중점 협력사업의 이행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는 등 우리 기업의 대중국 무역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약정체결에 앞서 한중 관세청은 지난 7월 2일 제17차 한중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여 약정체결의

철폐수단으로, AEO 상호인정 약정은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유용한 툴이 된다.

지난해 체결한 한·중 AEO 이행협력을 두 달간 시범운영한 결과 우리나라 AEO 업체 수출물품의 중국세관 내 통관소요시간이 MRA 체결 전 10시간 17분에서 체결 후 3시간 54분으로 62%나 대폭 단축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한·중 AEO MRA가 전면 시행된 올해 4월 1일부터 모든 AEO 업체 수출화물이 중국에서 신속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그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 이행사항을 협의하고 교역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 문제를 해결하는데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관세청은 한중 세관당국이 체결한 이번 약정을 내실 있게 이행하기 위해 AEO MRA 이행협력을 위한 국장급회의를 정례화하고, 중소 수출기업이 손쉽게 AEO 공인을 획득할 수 있도록 공인기준을 국제기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2) 중국은 특혜대상 수입물품에 대해 100% 서류심사를 하고 있으며, 한·중 FTA 하에서는 동 약정체결로 원산지 서류심사 소요시간 대폭단축 가능  
3) '12년 한·중 무역수지 공표치 275.8억불 차이 (韓:535.3억불 흑자/中:811.1억불 적자)

/ <표 1> 전략적 협력약정 이행계획 /

구분	내용	비고
AEO MRA 이행	• 국장급 이행점검회의 개최 이행모니터링 강화	'15년 상반기
원산지 협력	• 원산지 실무위원회 구성 • 국제원산지 컨퍼런스 개최 • 원산지 자료 전자적 교환시스템 개발	'14.10월 '14.9.18(서울) '15년 末
무역통계 교환	• 무역통계 자료 정기적 교환 • 무역통계 분석 및 조정 • 무역통계조정회의 개최(국장급으로 격상)	'14.8월(매분기) '14.8월(매분기) '15.4월(연 1회)
불법·부정무역 단속	• 조사부서간 수사공조 및 정보교환 • 한-중 조사실무자 회의 개최	연중 '15년
인적자원개발	• 양측 교육훈련 기관간 실무접촉 • 한-중 통관설명회 개최	'14.8월 '14.9월

또한, 약정이행과 동시 한·중 FTA 체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원산지 실무위원회 구성, 2014 제4회 국제원산지 컨퍼런스 개최(9.18), 원산지 자료 전자적 교환시스템 개발협의 등을 적극 추진 예정이다.

중국 사기에 선즉제인(先則制人), 즉 “남보다 먼저 도모하면 능히 남을 앞지를 수 있다”는 고사성어가 있다. 이번에 체결된 약정을 호기로 삼아 우리 기업이 중국 수출에 날개를 달 수 있기 바라며, 이를 위해 관세청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 02 FTA 최근동향

## I. 관세청 주요 이슈

### 제27대 김낙희 관세청장 취임

세계개편을 주도해 온 김낙희 기획재정부 세계실장이 7월 25일 “제27대 관세청장”에 임명됐다. 김낙희 신임 관세청장은 기재부 조세기획관, 조세정책관, 조세심판원장, 기재부 세계실장 등 세계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며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국제 조세 관련 협상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7월 28일 제27대 관세청장 취임식에서 김낙희 신임 관세청장은 정부 정책 기조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관세청을 역할을 주문하면서, 특히 △경제 활성화 지원 △엄정한 세수관리 △국민건강 보호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중요하게 꼽았다.

김 청장은 또 “경제 혁신과 규제 개혁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며 “그간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과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우리 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7월 29일 취임 후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관세청 조직은 작지만, 단합도나 충성도는 높다”며 “특히 세계은행에서 매년 세계통관분야 순위를 매기는데 5년 연속 1등을 했을 정도로 관세 행정에 있어서 우리 관세청은 세계 최고”라고 평가했다.



사진 출처: 관세청



사진 출처: 관세청



아울러 “경제 국경의 파수꾼으로써 국익을 위해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조직을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 제17차 한-중 관세청장회의 개최

관세청은 7월 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중국 해관총서장과 한-중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양국 세관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중 관세청장 회의는 양국 세관 당국의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정례적인 고위급 회의로, 특히 이번 회의는 인적자원 개발 분야 협력 사업 등 현안 과제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국 해관총서 측의 개최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이 날 회의는 한국 관세청과 중국 해관총서 간 전략적 협력에 관한 약정 체결 및 이에 따른 구체적 이행사항에 관한 논의가 주요 내용으로, △ 한-중 원산지 자료교환 협력 △ 통계자료 교환 MOU 이행 협력 방안 △ 조사단속 분야 협력 △ 대구-남경 세관 자매결연 체결 △ 한-중 통관행정 설명회 협력 △ 주한 중국 관세관 파견 논의 등이었다.

### 관세청, 수출입기업과

#### 「자유무역협정(FTA) 간담회」 개최

관세청은 7월 23일 서울세관에서 수출입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현장에서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35개 FTA 활용 대표 기업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외국 경제단체인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처음으로 참석하여 FTA에 큰 관심을 표명했다.

관세청은 FTA 활용현황,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현황, 관세청의 규제개혁 추진 내용 등을 설명하고, 업계의 건의사항 중 현장에서 해결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FTA가 우리 경제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세청이 앞장서겠다”면서, 기업들이 관세청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FTA 활용과 수출물품에 대한 외국의 검증 요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유일의 검증기관인 관세청의 전문지식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면서 관세청을 기업의 FTA 상담사(컨설턴트)로 활용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 관세청, FTA원산지검증 지원을 위한

#### 산업별 협회와 간담회 개최

관세청은 지난 6월 30일 수출기업의 FTA 원산지 검증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섬유산업연합회, 자동차 산업협회, 철강협회, 기계산업협회, 플라스틱공업 연합 등 10개 산업별 협회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 간담회는 최근 FTA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이 전기·전자제품, 기계, 섬유, 자동차, 자동차 부품,

철강, 플라스틱 등 우리나라 7대 수출 주력산업에 집중됨에 따라, 이들 주력 수출 산업별 협회와 원산지관리의 중요성과 원산지검증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협회 및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관세청이 준비하고 있는 ‘원산지검증 요구자료 가이드라인’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듣고, 우리 기업이 더욱 쉽고 효율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하고 검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YES FTA 센터」 등을 통해 FTA를 활용하는 우리 기업이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증 요청이 많은 산업을 선별해 집중적인 설명회 등을 열고 우리 기업의 FTA활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YES FTA 센터」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원스톱 해결하기 위해 전국 주요 세관에 설치된 전담 조직으로, 기업별 FTA활용 진단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원산지 확인서 사전심사, 해외통관애로 해소, 원산지 사후검증 지원 등 FTA준비부터 활용, 문제 해결단계까지 집중 지원하고 있다.



사진 출처: 대전투데이

### 관세청, 농수산물 지원 위해

#### 「YES FTA 컨설팅관」 설치

관세청은 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aT)가 국내 농수산물 식품의 수출지원을 위해 해외 바이어들을 초청한 상담회에서, 수출기업들의 FTA 활용을 돕기 위해 현장상담을 펼쳤다.

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해외 구매자 및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2014년 buy Korean Food’ 행사를 개최했는데, 관세청은 행사 기간 중 ‘YES FTA 컨설팅관’을 설치해 전문상담관 7명을 배치, 구매자들과 수출업체 등을 상대로 수출대상국의 관세율, FTA 활용에 따른 관세혜택 등을 설명했다.

특히,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FTA 활용방법, 품목분류, 원산지 증명서작성, 원산지관리시스템 FTA-PASS를 사용한 원산지관리 방법 등을 1:1로 상담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관에서는 관세청이 지원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며, “FTA를 통해 해외로 수출하고자 하는 우리 농수산물 수출업체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밝혔다.



## 2014년 하반기 관세행정, 이렇게 달라진다.

관세청은 6월 30일 '2014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 7월 1일부터 즉시 시행되는 16개 개선사항을 포함해 7월 중 총 36개 제도가 개선되어 시행되고, 연말까지 37개 과제가 시행되어 총 73개의 제도개선이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내용 중, 국민 개개인과 수출입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내용 일부는 다음과 같다.

### 1. 해외직구, 해외이사자, 해외여행자 편의성 향상

해외직구 개인신고 수출입신고제도를 통해 물품 반품시 관세환급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가 최소화 될 것으로 보이며, 전자상거래 간이 수출제도의 경우 수출신고 항목이 57개에서 37개로 줄어드는 등 전자상거래 편의성이 대폭 확대된다.

또한 텔레비전·냉장고·그랜드피아노 등 가정용 물품에 대한 해외 이사물품 인정기준을 완화했으며, 항공기 출항 지연으로 항공사가 여행객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기존에는 간이식(빵·샌드위치)만 제공되었으나, 이제는 밥을 포함한 모든 음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2. 통관·물류제도 개선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이동하는 환적화물에 대한 일관운송절차가 도입되어 기존의 입항지 반출입신고 및 보세운송신고 없이 적하목록에

보세운송인과 목적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단순화 되었다.

또한 복합물류창고(자유무역지역) 내 재포장·가공·조립 작업에 사용되는 국산품이 관세환급대상(과세보류)으로 인정받게 되어, 복합물류창고 작업을 통한 수출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출신고 시 송품장 등 첨부문서를 세관 방문 없이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대상이 기존 '성실무역업체(AEO) 인증업체'에서 '자가통관업체'와 '개인직접신고'의 경우까지 확대된다.

### 3. 자유무역협정(FTA) 및 성실무역업체제도(AEO) 개선

FTA 원산지 검증 시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전수 검증하던 것을 '선(先) 샘플링, 후(後) 전수검증'으로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AEO 인증의 경우, AEO 신청을 위한 '법규준수도 점수'를 70점에서 60점으로 낮추었으며, 현재 성실·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정지원 대상을 '장애인 고용 우수 기업'으로 확대하고, 납기연장·분할납부 혜택도 확대하였다.

### 관세청, 중소기업용 원산지관리시스템 (FTA-PASS)서비스 개시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영세 중소기업들을 위해 원산지 자료를 가공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FTA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에 엑셀 프로그램 자동연계 기능을 추가해 보급한다.

그간 영세 중소기업들은 인력과 자금이 부족하고 전산시스템도 갖추지 못해 자재명세서 등 FTA 특혜에 필요한 원재료 관리 자료들을 FTA-PASS 양식에 맞춰 매번 수작업으로 등록하는 등 번거로우면서도 지속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엑셀 자동연계기능에 의해 엑셀자료가 FTA-PASS에 자동으로 등록됨에 따라 원재료 등록과 판정, 증명서 발급은 물론 지속적인 원산지 관리가 손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6월 23일부터 제공된 이 서비스로 인해 100만달러 이하 금액을 수출하는 약 7만1000여개 영세 중소기업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스템에 따라 원산지관리 기본양식 22종이 엑셀과 연계되고, 업체의 필요에 따라 신규양식도 추가로 등록될 수 있다. 또 누구나 손쉽게 사용하도록 메뉴별 도움말 기능도 제공된다.

시스템은 FTA-PASS 홈페이지(www.ftapass.or.kr)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사용자도 업그레이드판을 설치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개선된 FTA-PASS를 원산지 확인서 세관장확인 업무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소규모의 2~3차 협력업체들이 원산지관리에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FTA-PASS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세관에서는 수작업심사 대신 시스템을 활용해 심사·확인해줌으로써 FTA 원산지 확인서 처리시간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 크로아티아, EU와의 FTA 특혜관세 소급 적용

관세청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 당사국 추가 절차가 완료된 크로아티아로부터 2013년 7월 1일 이후 수입된 물품에 대해 FTA 사후신청에 의한 관세환급 조치를 2014년 5월 26일(월)부터 시행하였다.

이번 조치로 같은 기간(2013. 7. 1.~2014. 5. 25.) 중 크로아티아에서 수입된 미화 1,248만 달러 상당의 물품에 대해 FTA 사후신청 특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관세청, FTA원산지증명서 발급 '쉬워진다'

관세청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전략적 FTA 활용 극대화' 추진과제로 추진중인 원산지증명서 통합 발급 시스템의 1단계 구축사업을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FTA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종전보다 한층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전까지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수출신고서와 원산지증명서의 일부

항목이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신청시마다 각 항목을 따로 입력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1단계 사업의 완료로 수출신고 시민원인이 입력한 항목 중 원산지증명서와 중복되는 운송수단 등 23개 항목이 자동으로 입력되는 '불러오기 기능'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비용 및 통관 소요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한편, 복잡한 원산지규정과 증명서 발급절차로 자유무역협정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더욱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관세청·중기청, 해외 현지에서 FTA활용 지원

관세청은 해외에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우리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촉진하고 현지 통관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손잡고 해외 현장에서의 중소기업 FTA 활용지원을 강화한다.

관세청이 해외 현지 지원에 직접 나서는 이유는 현지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 지사 등을 통해 FTAL나 APTA(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등 일반특혜관세를 통해 관세혜택을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FTA활용을 위한 해당 국가의 세관 절차,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해 관세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기청의 수출인큐베이터에 입주해 현지 진출 활동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FTA 활용 및 통관과 관련한 어려움을 해결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 서울본부세관,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에 나서

서울본부세관은 한국관세사회 및 영등포여성 인력개발센터와 공동으로 삼사십대 경력단절 여성을 FTA 전문 인재로 양성하여 취업을 지원 한다.

지원의 일환으로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지난 5월부터 '관세사무원 이론·실습과정'을 개설 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6월에는 서울세관에서 제1회 관세전문직 구인·구직 연계행사를 개최했다. 세관측은 해당 행사를 통해 경력단절여성 20여명의 취업을 지원하고, 하반기중 특성화고생 8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올해 150명 이상의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 제3국간 FTA활용 환적화물, 인천공항에 유치

인천공항세관은 대한항공과 함께 제3국간 FTA를 활용한 환적화물 신규 유치 방안을 마련해 6월 2일부터 추진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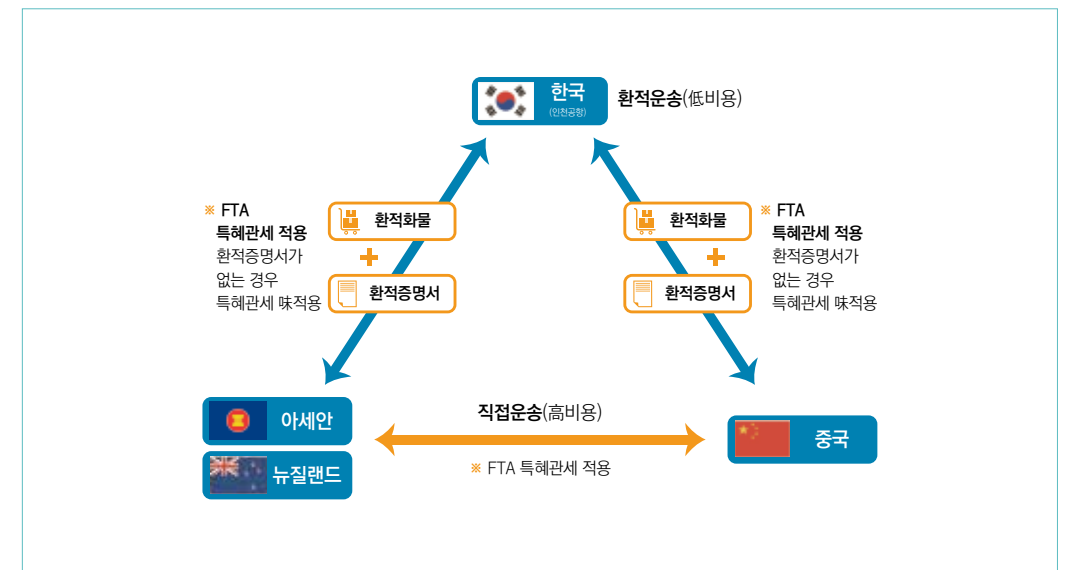
현재 중국과 아세안·뉴질랜드간 거래되는 수출입 화물은 제3국을 거쳐 운송하는 경우 경유국 세관의 환적증명서\* 제출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적증명서란 해당화물이 경유지 보세구역에 일시 장치되어 가공 등 추가적인 작업 없이 원상태로 최종목적지로 반출되었음을 경유지 세관이 확인해주는 증명서를 말한다.

이에 인천공항세관은 환적증명서의 신속한 발급을 지원하고, 대한항공은 해외 화주를 위한 '발급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 연결편을 통해 증명서를 화물과 함께 보냄으로써 화물 도착 즉시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세관과 대한항공은 싱가포르 등 경쟁 공항에서 처리중인 연간 2,800톤 상당의 아세안·뉴질랜드와 중국 간 환적화물을 인천공항으로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인천공항세관은 그동안 평일에만 가능했던 환적증명서 발급을 5월 22일부터 야간 및 주말·공휴일에도 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료 출처: 관세와 무역



**관세청, 「원산지 증빙서류 작성 실무 가이드와  
「이행지침 안내 20선」 발간**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과 품목분류(HS)가 서로 달라 원산지증명서(C/O)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들이 FTA 특혜 적용을

받는데 곤란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약 160개 FTA 민원상담기관을 대상으로 상담기관용 홍보매뉴얼인 「이행지침 안내 20선」을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HS번호는 국제무역을 위한 관세품목분류번호로서 국제적으로 6단위까지는 공통적으로 사용되나, 각 국가간 상업적, 문화적 차이 및 그간 분류관행에 따라 6단위 품목번호가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일례로, 한-아세안(ASEAN) FTA에서 자동차 에어컨용 압축기의 부분품인 Shoe Piston의 품목번호가 우리나라는 8414.90호 압축기부분품으로, 아세안은 8483.30호 베어링하우징의 하나로 분류되는 경우 아세안의 수입신고필증 등을 확인 한 후 수입국의 품목번호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였다.

그간 관세청은 우리나라와 수입국의 HS번호가 다를 경우 수입국에서 발행하는 수입신고필증 등 수입국의 HS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우리나라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관세청 또는 상공

회의소)에 제출하면 원산지증명서에 수입국의 HS번호를 기재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상담기관 간 안내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아 우리나라 HS번호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입국에서 특혜가 배제되거나, 사후 검증 등의 우려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기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담기관용 홍보매뉴얼을 제작하게 된 것이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원산지 증빙서류 작성가이드」를 발간하였다. 이 책자는 기업실무자들이 각종 원산지증빙서류를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요령 및 유의 사항과 함께, 상대국 원산지 검증절차·검증성공사례 등을 수록했다. 뿐만 아니라 원산지증명서 작성에서 검증까지 FTA 활용을 위해 필요한 서식을 총망라 해, 중소기업들의 원산지관련 서류 작성에 대한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원산지증빙서류 작성가이드」는 e-book으로도 제작되어, 관세청 FTA 포털(yesfta.customs.go.kr)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II. 우리나라 FTA 동향**

**한-EU FTA, 7월 1일부터 관세 추가 인하**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 발효 4년차가 시작되는 오는 7월 1일부터 양측의 3년 철폐 품목의 관세가 무세화되고, 5년 철폐 품목 등 중장기 관세인하 품목도 추가적인 관세인하가 이루어진다.

이번 관세 철폐 및 인하조치는 한-EU FTA발효시 관세를 즉시 철폐한 품목 이외의 일부에 대해 추가 개방한 것으로서, 우리나라는 중대형(1,500cc 초과)승용차, 안경, 위스키, 의약품 등 EU산 622개 품목에 대해 7월 1일부터 관세를 철폐했으며, 소형승용차(1,500cc 이하), 베어링, 순모직물, 삼겹살, 고등어 등 1,384개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율이 추가 인하된다. 다만 쌀 관련제품 등 양허 제외 물품과 현행관세 유지물품 등 57개 품목의 관세율은 인하되지 않는다.

EU의 28개 회원국도 오는 7월 1일부터 중대형 승용차, 타이어, 주방용 도자기 제품 등 우리 수출 물품 282개 품목에 대해 추가로 무관세 적용하며, EU가 민감품목으로 분류하여 5년 철폐 품목으로 양허한 소형 승용차, TV, 카스테레오, 화물자동차 등 269개 품목도 한단계 인하된 관세율이 적용된다. 우리나라 및 EU의 FTA특혜 관세율은 관세청 FTA 포털 'YES FTA(yesfta.customs.go.kr)'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다.

2014년 7월 1일부터,  
유럽산 기초화장품은 4% → 2.6%,  
향수와 메이크업 제품은 2% → 0%,  
위스키는 5% → 0%,  
냉동삼겹살과 목살은 각각  
18.1% → 15.9%, 12.5% → 8.31% 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 <표 1> 한국산 물품에 대한 EU관세율(2014. 7. 1~2015. 6. 30) /

품명	일반세율	한-EU FTA세율
승용차(1500cc초과)	10%	0%
타이어	4.5%	0%
볼베어링	8%	0%
승용차(1500cc이하)	10%	3.3%
TV	14%	4.6%
영상재생용기기	13.9%	4.6%
라디오수신기	14%	4.6%

**콜롬비아 하원, 한국과 FTA 비준 심의 보류**

지난 6월 18일 콜롬비아 하원이 한국과의 FTA 심의를 보류함에 따라 금년 내 한-콜롬비아 FTA 발효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콜롬비아 FTA는 2009년 12월 협상 개시 이후 총 7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2013년 2월 정식 서명 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14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콜롬비아와 협의를 통해 될 수 있는 한 이른 시일 안에 한-콜롬비아 FTA가 발효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콜롬비아 하원이 한국과의 FTA 비준 심의를 보류하면서 올해 한-콜롬비아 FTA의 발효는 무산되었다.

콜롬비아의 비준 절차는 상원, 하원, 헌법재판소를 거쳐야 완료되는데, 이번 하원의 비준 심의 보류로

콜롬비아 현지 국회법에 의거해 국회 상원 비준 절차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한-콜롬비아 FTA는 지난해 11월 콜롬비아 상원의 비준을 통과하며 올 하반기 하원 비준과 헌법 재판소의 합헌성 판결을 통해 연내 발효가 예상 되었으며, 올해 발효되면 우리나라가 중남미 국가와 체결하는 3번째 FTA이자 우리나라가 체결한 10번째 FTA가 될 예정이었다.

콜롬비아 국회 다음 회기인 7월 20일부터 비준 절차를 다시 진행하게 된다. 콜롬비아 하원의 한-콜롬비아 FTA 비준 심의 보류의 주요 원인은 FTA 발효 시 자국 산업의 붕괴우려에 따른 것으로 특히 자동차 업계를 비롯한 각종 업계의 반발이 고조화 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기업의 콜롬비아 내 점유는 현대차가 3위, 기아차가 4위를 차지하고 있다.

/ <표 2> 對콜롬비아 품목별 수출 현황(2013) /

(단위: 천불)

순위	품목명	2013	
		금액	증가율
1	기계류	722,257	-23.2
2	화학공업제품	232,266	23.5
3	전자전기제품	151,240	21.0
4	플라스틱고무및 가죽제품	98,595	43.1
5	철강금속제품	94,074	1.2
6	석유류	28,275	-15.5
7	생활용품	7,884	-6.2

**한국관세포럼, FTA 10년, 학술세미나 개최**

한국관세포럼(회장 : 이명구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은 6월 13일, 대전 대덕구 소재 한남대학교 56주년 기념관 1층에서 'FTA 10년, 그 성과와 관세행정 과제'란 주제로 한국관세학회, NSU국제무역 연구소와 공동으로 산·학·관·연이 함께 참여 하는 학술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관세분과”, “법령·제도분과”, “무역분과” 등 3개 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별 5개씩 총 15개의 주제를 발표했는데,

▶ 관세분과에서는 “FTA 원산지검증상 직접운송 원칙 검토(이대복, FTA전략연구소 고문)” 등 5개 주제,

▶ 법령·제도분과에서는 “APEC회원국간 통관 장애에 관한 연구(김영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박사)” 등 5개 주제 그리고

▶ 무역분과에서는 “중소기업 수출경기 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맹철규, 관세청 사무관)” 등 5개 주제가 발표됐다.



사진 출처: 관세청

이날 세미나의 논문별 사회는 서원대 김재식교수 등 7명과 관세청 이명구 국장 및 홍정식 관세사가 각각 맡아 진행했다.

2000년 3월 설립된 '한국관세포럼'은 관세청을 비롯한 정부기관 공무원과 대학, 연구기관, 민간 단체 등 회원 12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포럼에서는 매분기 세미나를 개최하여 지금까지 총 13권의 논문집을 발간한 바 있다.

**한-뉴질랜드 FTA 제7차 공식협상 결과**

한-뉴질랜드 FTA 제7차 공식협상이 지난 6월 8일부터 13일까지 뉴질랜드(오클랜드)에서 개최 되었다.

양측은 남은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협상을 진행하였고, 특히 상품 분야에서는 양측 간 첨예한 이견을 좁히기 위해 수석대표 간 협의도 실시했다. 그 결과, 서비스, 투자, 원산지, 총칙, 협력, 지식재산권 등 분야에서는 양국 간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루었으나, 상품 분야에서는 우리 농수산물의 민감성을 보호하는 수준에 대한 양국 간 의견차가 여전히 커서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정부는 앞으로, 우리 농수산물의 민감성을 감안 하면서 한-뉴질랜드 간 이익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협의를 나갈 것을 밝혔다.

### 제7차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실질 타결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4일 한국과 터키의 자유무역협정의 서비스·투자협정 협상이 실질적인 타결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양국 정부는 올 하반기에 협정문 가서명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 정식 서명 후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작년 5월 발효된 터키와의 상품무역 협정을 포함해 한-터키 FTA는 발효 1년 2개월 만에 모두 타결되었다. 한-터키 FTA는 기본협정과 상품무역협정, 서비스무역 및 투자협정 등으로 구성되었으나, 우선 의견일치를 이룬 기본협정과 상품 분야부터 협정을 타결하고 지난해 5월 1일부터 발효된 바 있다.

주요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양측은 서비스협정과 관련, WTO 서비스협정(GATS)을 바탕으로 서비스

분야 자유화를 위한 규범을 마련하되 금융·통신 등은 별도 부속서 형태로, 전자상거래는 별도 항목으로 규정키로 했다.

또 한-터키 FTA서비스·투자 협정은 서비스시장에서 개방 대상을 열거하는 포지티브방식을 선택 하되 세계무역기구(WTO)도하개발아젠다(DDA)의 양허수준을 넘는 개방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터키 FTA는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로 격상되어 한국과 터키 양국간 경제 협력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터키시장에 대한 투자 또는 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되고 다양화 될 뿐만 아니라, 이곳을 기반으로 유럽 및 인근 아·중동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표 3> 한-터키 연도별 투자현황 /

(단위: 천달러, ()는 신고건수)

구분	터키 對한국투자	한국 對터키투자
2008	1,308(7)	89,797(30)
2009	205(4)	247,104(45)
2010	1,977(10)	66,636(30)
2011	916(7)	135,842(39)
2012	2,131(9)	292,295(44)
2013	2,240(8)	179,084(57)
2014.3	230(1)	27,936(10)
누계	9,007(46)	1,038,694(255)

자료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출입은행

이로써 한국 영화·방송사와 게임업체들은 터키에서 내국인 대우로 콘텐츠를 팔고, 건설사들도 터키에서 내국인 대우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

### 한-캐나다 FTA 가서명

지난 6월 12일 서울에서 양측 수석대표인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와 이안 버니(Ian Burney) 외교통상개발부 통상차관보가 한-캐나다 FTA 협정에 가서명하였다.

이번 한-캐나다 FTA 협상 내용을 보면, 상품,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서비스, 투자, 통신, 금융,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 노동, 환경 등을 망라한다.

상품 분야에서는 양국 모두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높은 수준으로 FTA를 체결했다. 즉 우리나라는 10년 이내에 품목 수 기준으로 97.5%, 수입액 기준으로 98.7%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캐나다는 품목 수 기준 97.5%, 수입액 기준 98.4%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 III. 해외 FTA 관련동향

### 일본-호주 FTA 서명

호주 기업협회회장 제니퍼 웨스타콧은 7월 8일 서명된 일-호주 FTA로 호주 기업들이 일본의 5조 달러에 달하는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호주는 올해 안에 한·중·일 3국과 FTA를 체결한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상반기 한국 및 일본과 잇따라 FTA를 체결한 호주는 이제 중국과의 FTA 체결을 남겨두게 되었다.

### 중국-스위스 FTA 발효

이번 FTA의 가장 큰 수혜부문은 호주의 금융 서비스업으로, 일본은 세계 최대 규모의 금융서비스 시장이다. 이번 FTA로 호주 펀드매니저들은 일본에서 투자 자문, 포트폴리오 관리 서비스, 증권 거래 등이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에너지 수요 증가로 호주의 액화 천연가스 산업도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스위스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7월 1일 정식 발효되었다. 1일 스위스 언론은 중국과의 FTA가 상품과 서비스 교역을 촉진하는것은 물론 지식재산권 보호와 양국 간 일반적 경제교류에도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위스 정부는 또 중국과의 FTA가 양국 간 무역에서 관세 장벽도 없애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 스위스간 FTA는 중국이 유럽 국가와 맺은 첫 번째 FTA이다. 중국과 스위스의 FTA 협정은 지난해 7월 6일 조인된 바 있다.

중국은 지난 2012년 기준으로 스위스의 3번째 교역국으로 스위스의 대 중국 수출 규모는 80억 스위스프랑(약 9조3951억원), 수입은 100억 스위스프랑(약 11조7439억원)이다.



사진 출처: 아주경제

### 러시아 반대에도 우크라이나-EU FTA 체결

우크라이나는 국내 반대세력과 러시아와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6월 27일 EU와 FTA 협상을 체결했다.

이와 더불어 우크라이나를 포함해 조지아, 몰도바도 EU와 조약을 맺고 EU가입을 희망을 표했으나, EU는 세 국가의 EU가입은 아직 불가하다고 표명했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FTA를 체결한데 대해 경고를 발표하고, 우크라이나-EU FTA가 발효하는 즉시 구소련 국가들로 구성된 CIS회원국으로써 누리던 수입세 면제 등을 포함한 자유무역권을 박탈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몰도바 등을 통해 들어오는 유럽 상품들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도 따를 것으로 보인다.

### CIS 회원국이란?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구소련의 후신으로, 1991년 12월 21일 열린 러시아 대통령의 주도로 11개국 정상들이 벨로루시의 수도 민스크에 모여 연합의 설립을 서명함으로써 1922년의 소연방조약을 폐기하고 탄생했다.

참가국은 러시아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투르크멘,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우즈베크, 키르기스, 카자흐, 타지크, 몰도바 등 11개국이다.

러시아는 이들 3개국이 EU와의 협력협정 체결로 친유럽 노선으로 기울자 경제보복을 공언해 왔으며, 러시아 외부차관은 “우크라이나와 몰도바가 확실히 대가를 치를 것”이라 경고해 왔다. 실제 지난 7월 5일 러시아는 위생기준 미달을 사유로 몰도바의 정육제품 수입을 금지했으며, 전날엔 국제 기준 미달을 이유로 역시 우크라이나산 치즈 등 유제품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몰도바의 포도주와 우크라이나의 초콜릿에 대해서도 금수조치를 내린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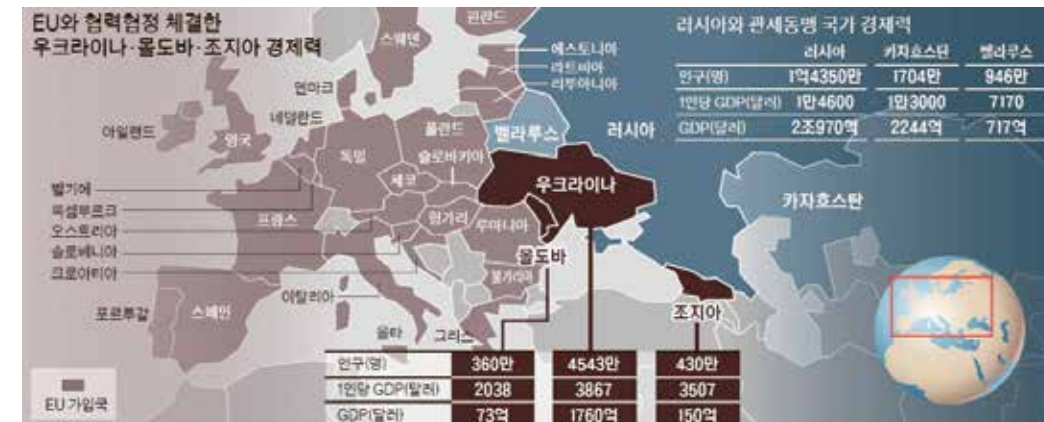


그림 출처: 중앙일보

옛 소련국가들과 EU사이에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러시아는 경제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값싸고 품질 좋은 유럽의 상품들이 낮은 관세로 우크라이나에 들어온 뒤 국경을 거쳐 러시아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고, 또한 경쟁력 높은 EU제품에 국내시장을 빼앗긴 협력협정 체결국의 값싼 상품들이 러시아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EU의회는 우크라이나-EU FTA체결에 앞서 지난 3월 11일 對우크라이나 상품의 수입관세를 2014년 6월부터 11월 1일까지 일시적으로 철폐하겠다고 결정, 공산품의 94.7%와 농축산물의 84%에 대해 수입관세 철폐를 발표한 바 있다.

### EU-미국 FTA(TTIP) 추진 현황

유럽연합(EU)과 미국은 2013년 2월부터 본격적인 자유무역협정 협의에 착수, FTA에 대한 세부 항목 조율을 위해 5월 19일 워싱턴에서 제5차 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오는 2015년 말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다만 금융 부문은 협정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관련 매체는 전했다.

EU와 미국은 과거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된 파생상품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공통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양측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EU측은 금융불안 해소를 위해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측은 금융서비스 후퇴를 우려해 이에 반대하고 있어, 미국은 일단 금융부문을 제외하고 TTIP협상을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가 영상산업 등 문화부문을 FTA 협상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해 이 분야도 일단 협상에서 배제된 상태로 추후 논의할 계획이며, 농산물 및 식품 교역, 정부 조달 등도 협상 진전에 걸림돌이 되는 분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FTA체결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로 스페인이 손꼽히는데, 스페인은 FTA를 통한 일자리 및 소득창출에 있어, 미국, 영국, 독일에 이어 네번째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미국과 EU에 무역의존도가 높은 스위스에는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EU간 TTIP가 체결된 후 다른 국가들을 배제하고 양측 무역만이 증진될 경우 스위스는 일 년에 약 34억 달러 이상의 경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 15년만에 체결된 파나마-멕시코 FTA

2014년 4월 4일, 파나마와 멕시코 양국간 FTA 협약이 최종 확정 서명되었다. 파나마와 멕시코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FTA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이는 양국 간 FTA에 관한 논의가

구체화된 지 15년만의 체결이다.

양국은 이번 FTA체결을 통해 상품과 기술, 금융, 이동통신, 이커머스 등 교역 전반에 걸쳐 장벽을 없애기로 해,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전자무역, 지적재산권, 제도적 문제 및 분쟁해결 등 21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포괄적 FTA이다.

멕시코와 파나마 양국은 이번 체결로 서로 남·북미 국가와의 상품, 서비스 교역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파나마는 멕시코가 칠레, 콜롬비아, 페루와 형성한 경제공동체인 태평양동맹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파나마는 2006년에 칠레와, 2011년에 페루, 2013년에 콜롬비아와 각각 FTA를 체결한 바 있다.

/ <표 4> 양국의 교역현황 /

(단위: 백만달러)

구분	2011	2012	2013
파나마 對멕시코 수출	4.10	4.95	8.43
멕시코 對파나마 수출	437.2	550.7	519.8

자료 출처: World Trade Atlas, Kotra  
 주: 콜론 자유무역지대 제외

### 체결 앞둔 EU-베트남 FTA

베트남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이 올해 10월 타결될 전망이다.

베트남에게 EU는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번째로 큰 무역파트너이고, EU에게 베트남은 10개 아세안 회원국 가운데 다섯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이다.

베트남은 FTA 발효되면 수출 확대 기대감이 높아 협상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베트남의 對EU 수출과 수입액은 각각 243억 달러와 94억 달러로 집계됐으며, 지속적인 무역 수지 흑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베트남에 유치된 EU국의 투자안은 총 1,300개이며, 투자액은 170억 달러에 달해 EU는 베트남의 중요한 투자 유치 대상국으로 해석한다.

### EU-일본 EPA협상, 3개월 만에 재개

일본과 유럽연합(EU)의 경제연계협정(EPA)협상이 3개월 만에 재개되었다. EPA는 관세인하, 비관세 장벽 제거 등과 함께 국가간 협력에 중점을 둔 일본이 타국과 체결하고 있는 일종의 자유무역협정이다.

일본과 EU는 크게 자동차와 농산물 분야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 일본은 이번 협정으로 자동차 관세를 철폐하기 위해 애쓰고 있으며, EU는 철도에 대한 입찰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유럽은 지역 특산품브랜드를 '지리적표시(GI)' 제도로 보호하고 있는데, 일본도 유사제도를 도입하기는 하였으나 상표 등록과 향후 브랜드 가치 평가 등에 있어 이견을 보이고 있다.

EU는 일본과의 FTA회담 결과를 검토, 계속해서 협상을 진행해 나갈 뜻을 밝혔다.

### 필리핀, EFTA와 FTA 협상 개시 선언

필리핀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이 올해 내 FTA 회담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필리핀은 6월 23일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등 EFTA회원국들과 FTA 협상을 개시함을 선언했다.

2013년 기준 필리핀에서 EFTA회원국으로의 수출 규모는 3.15억 달러, EFTA회원국에서 필리핀으로의 수출규모는 3.45억 달러를 기록했다.



## EU-메르코수르 FTA협상 연내 성과 기대 어려워

EU와 메르코수르(Mercosur:남미공동시장)간의 자유무역협상이 올해 안에 진전을 이루기 어려울 전망이다.

\*남미공동시장은 남아메리카의 자유무역과 경제 협력을 위해 설립한 경제공동체로, 정회원국은 현재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총 5개국이며, 준회원국으로는 볼리비아, 에콰도르,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이 있다.

앞서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정체 상태에 빠진 EU-메르코수르 협상이 속도를 내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양측이 단일 협상안을 내놓지 못할 것으로 보여 협상 자체가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EU와 메르코수르는 1995년에 무역협상을 시작했으며 1999년부터 FTA 체결을 전제로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시장개방을 둘러싼 주장이 맞서면서 2004년 10월 이후 협상을 중단했다가 지난해부터 협상을 재개했다.

한편 브라질 재계는 메르코수르 차원의 협상과는 별개로 브라질 단독으로 EU 외에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중국,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FTA 체결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브라질은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집트 등 3개 국가와만 FTA를 체결했으나, 이 가운데 협정이 발효된 것은 이스라엘 뿐이다. 이는 브라질이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메르코수르가 회원국의 개별 자유무역협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 독일, EU-캐나다 무역협정 비준 거부

독일은 캐나다 투자회사들의 법적 보호 반대를 이유로 EU-캐나다 협정의 비준을 거부하고 나섰다. EU-캐나다 협정을 거부한다는 것은 비슷한 내용의 현재 진행 중인 미-EU 협정도 비준이 불가하다고 독일은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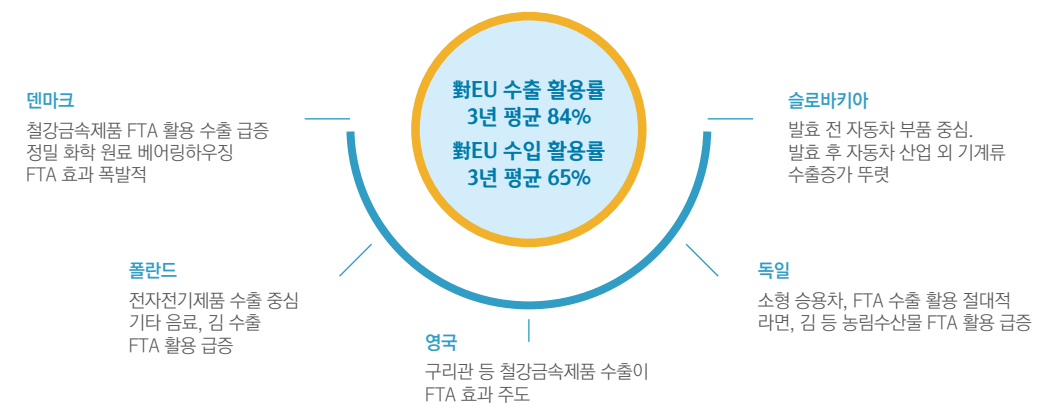
EU-캐나다 협정은 양국의 무역규모를 연간 260억 유로로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미-EU협정이 체결될 경우, 전 세계 경제의 약 50%를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정을 체결하려면 EU 28개국 모두의 서명이 필요한 바 협정의 체결이 당분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 03 한-EU FTA 3주년 이행 성과 분석

글/권민경 주임연구원\_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개발본부

- 분석 배경 : FTA 이행 초기단계를 지나 한-EU FTA 발효 4년차에 접어드는 현재, 지난 3년간의 FTA 활용 성과분석을 토대로 FTA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EU시장의 FTA 활용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우선 FTA 발효 전후로 對EU 일반수출입 교역의 변화와 FTA교역의 흐름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행연차별로 산업과 주요 품목들의 실질적인 FTA 활용현황을 분석하여 FTA 이행 성과 판단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수출상위 5개국을 중심으로 FTA 수출수혜로 기대받은 전략품목들의 FTA 활용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 I. 한-EU FTA 3년 교역현황

### 對EU 총교역 현황

EU는 중국,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국으로 2013년 전체 수출의 약 8.7%를 점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對EU 수출은 2013년 488억 달러로 전년대비 1% 감소, 수입은 562억달러로 전년대비 12%증가, 전체 무역수지는 약 74억달러로 적자상태이다.

/ <표 1> 對EU 수출입 현황(2002~2014) /

(단위: 천달러, %)

년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2002	21,694,037	10.5	17,106,636	14.6	4,587,401
2003	24,887,185	14.7	19,382,593	13.3	5,504,591
2004	37,829,951	52	24,186,962	24.8	13,642,990
2005	43,658,877	15.4	27,295,565	12.9	16,363,312
2006	48,450,006	11.0	30,060,595	10.1	18,389,412
2007	55,982,357	15.5	36,824,055	22.5	19,158,302
2008	58,374,752	4.3	39,980,746	8.6	18,394,006
2009	46,607,967	-20.2	32,231,657	-19.4	14,376,310
2010	53,506,562	14.8	38,720,830	20.1	14,785,732
2011	55,726,616	4.1	47,423,666	22.5	8,302,950
2012	49,370,825	-11.4	50,374,026	6.2	-1,003,201
2013	48,857,103	-1.0	56,229,819	11.6	-7,372,717
2014(01~05월)	23,136,410	14.9	25,810,034	12.5	-2,673,624

자료: 한국무역협회

對EU 산업별 수출입 비중<sup>1)</sup>

수출: 기계류 43% > 전자전기제품 29% > 광산물 7%  
수입: 기계류 38% > 화학공업제품 16% > 전자전기제품 15%

우리나라의 對EU 수출품목을 MTI 1단위 기준에 따라 산업별로 분류하면 FTA 발효 3년차 주요 수출 산업은 기계류(42.9%)와 전자전기제품(29.3%) 두 개 산업이 전체 수출의 72.2%를 차지

하고 있다. FTA 발효 3년차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 산업은 기계류(38%)와 화학공업제품(16%) 및 전자전기 제품(15%)으로 전체 수입의 68%를 차지한다.

/ <표 2> 對EU 산업별 3년 평균 수출입 금액 및 비중(MTI 1) /

(단위: 백만달러, %)

산업	수출		수입	
	3년평균	3년 평균 비중	3년평균	3년 평균 비중
광산물	3,377	7.2	5,575	10.9
기계류	20,086	42.9	19,531	38.3
농림수산물	201	0.4	2,726	5.3
생활용품	386	0.8	1,535	3.0
섬유류	1,373	2.9	991	1.9
잡제품	205	0.4	814	1.6
전자전기제품	13,722	29.3	7,808	15.3
철강금속제품	2,541	5.4	3,072	6.0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1,595	3.4	874	1.7
화학공업제품	3,367	7.2	8,061	15.8
총합계	46,853	100.0	50,987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1. 수출

對EU 산업별 수출 현황

발효 후 3년간  
기계류 수출감소 지속, 화학공업제품 수출증가 추세

對EU 수출 규모는 발효 1년차 약 492억 달러, 2년차 약 482억 달러로 소폭 감소하였다.

류는 지속적으로 수출감소를 보인다. 발효 2년차에는 전년대비 12%, 발효 3년차에는 전년대비 20%로 감소하였다.

한-EU FTA 발효 이후 발효연차별 10대 산업의 수출 현황 분석결과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기계

산업비중 2위를 차지하는 전자전기제품의 경우

1) 우리나라와 EU간의 교역현황 분석 시기는 다음과 같음  
발효전 1년차 : 2010.7~2011.6 (12개월) / 발효후 1년차 : 2011.7~2012.6 (12개월)  
발효후 2년차 : 2012.7~2013.6 (12개월) / 발효후 3년차 : 2013.7~ 2014.4 (10개월)

발효 2년차에는 전년대비 약 8% 증가, 3년차에는 13%감소하였다. 그러나 화학공업제품의 경우 유일하게 발효 이후 꾸준히 수출 규모가 증가

/ <표 3> 對EU 10대 산업 발효 연차별 수출 현황(MTI 1) /

(단위: 백만달러, %)

산업	발효 1년차	발효 2년차	발효 3년차	2년차 증감	3년차 증감
광산물	3,467	3,126	3,540	-11	12
기계류	22,809	20,425	17,026	-12	-20
농림수산물	174	221	208	21	-6
생활용품	346	468	344	26	-36
섬유류	1,405	1,408	1,306	0.2	-8
잡제품	235	193	186	-22	-4
전자전기제품	13,463	14,700	13,003	8.4	-13
철강금속제품	2,556	2,685	2,381	4.8	-13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1,708	1,579	1,498	-8	-6
화학공업제품	3,022	3,419	3,661	12	6.6
총합계	49,186	48,223	43,151	-2	-12

자료: 한국무역협회

**발효 전후 4년지속 수출증가 품목**

발효 전후 4년 지속 수출 순증가 품목 총 26개  
 기계류, 전자전기제품, 농림수산물의 순증가 품목 다양  
 항공기 부품, 니켈제품, 어육 및 어란, 조명기기 수출 급증

FTA발효에 따른 무역창출 효과품목을 분석하기 위해 FTA 발효 전 1년부터 현재까지 4년간 EU로의 수출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한 품목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다.

/ <표 4> 한-EU FTA 발효 후 수출증가 품목현황 /

(단위: 백만달러, %)

	산업	품목	발효전 1년	발효 1년차	발효 2년차	발효 3년차	3년차 전년대비증감률
1	광산물	기타비금속광물	0.5	0.9	3.6	6.6	44.8
2		기타석유화학제품	-	0.4	2.3	4.6	50.5
3		항공기및부품	112.1	193.4	208.6	284.9	26.8
4		주단조품	73.7	100.9	107.2	123.8	13.4
5	기계류	기타산업기계	75.2	88.2	93.2	102.1	8.7
6		의료용기기	76.7	85.6	90.3	92.2	2.1
7		사무기기	0.3	0.5	3.4	5.1	33.6
8		기호식품	19.5	24.0	30.6	34.2	10.3
9		어육및어란	7.1	11.0	28.4	28.8	1.5
10	농림수산물	식물성물질	6.0	6.6	9.1	10.4	12.9
11		해조류	4.0	4.2	7.1	8.7	17.9
12		식물성 재료	4.3	5.1	5.6	6.0	5.6
13		임산부산물	0.5	0.8	0.9	1.1	18.4
14	잡제품	기타인쇄물	2.6	3.6	5.3	22.1	75.9
15		콘택트렌즈	6.8	8.2	10.6	11.8	10.1
16		건전지및축전지	223.3	301.1	445.4	578.1	23
17		조명기기	261.0	383.4	470.4	569.6	17.4
18	전자전기제품	음향기기	95.8	108.0	185.3	194.1	4.5
19		기타중전기기	90.6	106.5	121.0	127.9	5.4
20		제지인쇄기계	5.5	6.6	8.7	9.9	11.6
21		전자관	0.4	1.1	3.6	6.0	40.2
22	철강금속제품	니켈제품	2.3	41.7	68.9	70.5	2.2
23		합성수지	1,042.3	1,259.8	1,632.1	1,707.4	4.4
24	화학공업제품	기타화학공업제품	116.4	158.4	208.5	218.5	4.6
25		기타석유화학제품	130.5	137.3	154.8	194.4	20.4
26		기타정밀화학제품	48.3	101.6	132.1	146.9	10.1

자료: 한국무역협회



4년간 매년 전년대비 수출 증가를 이룬 품목은 총 26개 품목으로 산업별로는 농림수산물, 전자전기 제품, 기계류, 광산물, 잡제품, 화학공업제품, 철강금속제품 순으로 품목수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對EU 수출 비중을 가장 크게 차지하는 기계류의 경우 항공기 및 부품, 주단조품, 기타산업기계, 의료용기기, 사무기기 등이 순증가 품목에 해당하고 특히 항공기 및 부품과 주단조품의 경우 전년대비 3년차 증감률은 각각 27%와 13%에 달한다.

전자전기제품의 경우 건전지 및 축전지, 조명기기, 음향기기, 기타중전기, 제지인쇄기계, 전자관이 수출 순증가 품목으로 특히 건전지 및 축전지와

조명기기, 음향기기는 발효 전후 대비 모두 2배 이상 증가하였고 매년 수출 증가폭도 매우 크게 나타났다.

농림수산물의 경우 발효 전 수출 규모가 미미하였으나 발효 후 꾸준히 수출 증가하는 품목들이 다수분포하고 있어 순증가 수출품목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육 및 어란의 경우 발효 전후 4배 이상 수출 증가하였다.

광산물은 FTA 발효 후 신규수출이 이뤄진 품목이 존재하는데 기타석유화학제품의 경우 발효 전 수출 실적이 없었으나 발효시점부터 매년 수출 규모가 전년대비 2배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발효 전후 4년지속 수출감소 품목**

**발효 전후 4년 지속 수출 순감소 품목 총 18개**  
**기계류, 전자전기제품, 생활용품군의 순감소 품목 다양**  
**선박해양 구조물 및 부품, 광학기기, 평판디스플레이,**  
**합금철선철 및 고철, 안경 등 수출급감 50%이상 수준**

4년간 매년 전년대비 수출감소를 이룬 품목은 총 18개 품목으로 산업별로는 기계류, 전자전기제품, 철강금속제품, 생활용품, 섬유류, 잡제품, 철강 금속제품 순으로 품목이 분포하고 있다.

對EU 수출 비중을 가장 크게 차지하는 기계류에서도 발효 후 수출 순감소품목이 존재하는데 특히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은 수출규모 3위에 해당하는 주력 수출품목에 해당한다.

동 품목은 발효후부터 매년 수출감소하여 3년차의 수출감소 폭은 발효 전과 비교하였을 때 1/3 수준으로 나타났다.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주한 선박들이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인도되기 시작하였는데, 수주가 급감한 당시 계약 가격이 낮게 책정되어 수출 실적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 <표 5> 한-EU FTA 발효후 수출감소 품목현황 /

(단위: 백만달러, %)

	산업	품목	발효전 1년	발효 1년차	발효 2년차	발효 3년차	3년차 전년대비증감률
1		선박해양 구조물 및 부품	13,247.1	7,665.4	6,259.2	3,671.8	-70.5
2	기계류	광학기기	438.1	425.7	383.5	281.9	-36
3		기타기계류	100.6	83.5	60.3	59.8	-0.8
4		이륜차자전거 및 부품	28	16.6	13.1	9.8	-33
5	전자전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4,576.4	3,810.9	3,760.1	2,039.9	-84.3
6	제품	반도체	3,482.3	1,970.9	1,564.3	1,450.7	-7.8
7		사무기기	36.8	21.8	8.5	7.8	-9.1
8	철강금속	합금철선철 및 고철	182.6	123.7	84.1	60.8	-38.3
9	제품	못	1.5	1.3	1.3	1.2	-5.9
10	섬유류	인조섬유장섬유사	210.4	208.3	195.6	185.9	-5.3
11		인조단섬유직물	8.8	6.2	4.4	4.2	-4.9
12		기타가구	51.1	42.1	38.7	31.4	-23.4
13		기타악기	11	10.5	10.5	9.1	-14.7
14	생활용품	필기구	11.2	10.1	10	8.4	-19.3
15		미술용구	9.7	7.8	7.2	6.4	-11.4
16		기타완구	10.2	9.3	8.5	6.3	-35.4
17	잡제품	안경	123.2	110.5	77	58.6	-31.4
18		서적	5	4.8	4	3.2	-23.5

자료: 한국무역협회

전자전기제품의 경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반도체, 사무기기가 수출 순감소 품목으로 특히 평판디스플레이와 반도체의 수출이 급감하였다. 또한 철강금속제품의 합금철선철 및 고철(발효 전: 13,247백만 달러→발효 후: 60백만 달러), 섬유류의 인조섬유 장섬유사(발효 전: 210백만 달러→발효 후: 185백만 달러), 잡제품의 안경(발효 전: 123백만 달러→발효 후: 58백만 달러)이 발효 전 후 대비 수출 감소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 2. 수입

### 對EU 산업별 수입 현황

발효 후 3년간 수입 비중 1위, 기계류 수입 지속적 감소  
반면 농림수산물 및 잡제품의 수입 증가 폭 크게 나타남

/ <표 6> 對EU 10대 산업 발효 연차별 수입현황 /

(단위: 백만달러, %)

산업	발효 1년차	발효 2년차	발효 3년차	2년차 증감	3년차 증감
광산물	3,534	6,943	6,249	49.1	-11.12
기계류	20,243	19,220	19,130	-5.32	-0.47
농림수산물	2,761	2,636	2,781	-4.77	5.22
생활용품	1,496	1,589	1,521	5.89	-4.53
섬유류	1,048	1,009	914	-3.88	-10.35
잡제품	839	706	897	-18.83	21.34
전자전기제품	7,969	8,144	7,309	2.14	-11.42
철강금속제품	3,498	3,053	2,666	-14.59	-14.51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829	932	861	11	-8.2
화학공업제품	8,061	8,296	7,824	2.84	-6.03
총합계	50,280	52,528	50,154	4.28	-4.73

자료: 한국무역협회

對EU 수입 규모는 발효 1년차 약 502억 달러, 2년차 약 525억 달러로 4.2% 소폭 증가하였다.

한-EU FTA 발효 이후 발효 연차별 10대 산업의 수입현황 분석결과 수입 비중이 가장 높은 기계류는 지속적으로 수입 감소를 보였다. 발효 2년차에는 전년대비 5%, 발효 3년차에는 전년대비

0.4%로 감소하였다.

수입비중 2위를 차지하는 전자전기제품의 경우 발효 2년차에는 전년대비 2% 증가, 3년차에는 11%감소하였다. 광산물의 경우 발효 2년차 전년대비 49% 수입증가를 이루었으나 발효 3년차에는 전년대비 11%로 감소하였다.

### 발효 전후 4년지속 수입증가 품목

발효 전후 4년 지속 수입 순증가 품목 총 23개  
농림수산물, 생활용품, 광산물의 순증가 품목 다양  
천연가스, 마그네슘제품, 약기부분품 수입 폭증

FTA발효에 따른 무역창출 효과품목을 분석하기 위해 FTA 발효 전 1년부터 현재까지 4년간 EU로의 수입이 매년 지속적으로 순증가한 품목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다.

4년간 매년 전년대비 수입 증가를 이룬 품목은 총 23개 품목으로 산업별로는 농림수산물, 생활용품, 광산물, 화학공업제품, 철강금속제품 순으로 품목 수가 분포하고 있다.

對EU 수입비중을 가장 크게 차지하는 기계류의 경우 항공기 및 부품과 시계가 순증가 품목에 해당하고 특히 항공기 및 부품의 경우 발효 후 수출입 모두에 걸쳐 순증가 품목에 해당한다.

對EU 수입품목 중 기계류, 광산물, 철강금속제품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수입 순증가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특히 시계의 경우 발효 전 7백만 달러 수입규모에서 지속적으로 수입 증가하여 3년차에는 38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68%로 폭증하였다.

또한 천연가스의 수입 증가 폭도 매우 크게 나타나는 바, 발효 전 27백만 달러에서 이행3년차에는 현재 454백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철강금속제품의 경우 주단조품과 레일 및 철골 구조물, 마그네슘제품의 수입 순증가가 뚜렷한데, 특히 마그네슘제품의 경우 매년 수입증가 규모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 <표 7> 한-EU FTA 발효후 수입증가 품목현황 /

(단위: 천달러, %)

	산업	품목	발효전 1년	발효 1년차	발효 2년차	발효 3년차	3년차 전년대비증감률
1	기계류	항공기및부품	176,882	179,922	483,565	714,194	32.3
2		시계	7,480	11,154	14,005	38,063	63.2
3		복합비료	9,643	11,110	11,478	11,961	4
4	화학공업제품	시멘트	668	1,038	3,091	3,339	7.4
5		기타비료	2,148	2,346	3,107	3,246	4.3
6	전자전기제품	건전지 및 축전지	32,201	35,706	40,459	50,818	20.4
7		천연가스	27,334	99,026	100,437	454,477	77.9
8	광산물	소금	1,212	1,467	1,562	2,081	24.9
9		석회석	183	382	591	618	4.4
10		주단조품	315,763	405,576	561,874	663,110	15.3
11	철강금속제품	레일 및 철구조물	94,030	103,987	141,157	172,498	18.2
12		마그네슘제품	21	84	113	230	50.9
13		목재류	125,567	188,950	211,380	249,083	15.1
14	농림수산물	어육 및 어란	6,750	11,332	26,178	27,230	3.9
15		산동물	8,494	10,895	12,023	12,468	3.6
16		수산부산물	278	369	927	1,002	7.5
17		기타생활용품	53,114	58,232	58,898	176,014	66.5
18	생활용품	악기부분품	9,536	10,838	11,444	20,160	43.2
19		취미오락기구	5,410	5,625	12,077	16,276	25.8
20		승용완구	9,786	9,820	12,282	15,746	22
21	섬유류	의류	355,775	443,806	461,080	482,897	4.5
22	잡제품	귀금속장식품	60,383	86,715	130,713	167,214	21.8
23		기타인쇄물	17,144	18,437	21,882	30,658	28.6

자료: 한국무역협회

발효 전후 4년지속 수입감소 품목

발효 전후 4년 지속 수입 순감소 품목 총 15개  
기계류, 생활용품의 순감소 품목 다양  
석면제품 수입급감 188%, 연체동물 수입급감 8500%

4년간 매년 전년대비 수입감소를 이룬 품목은 총 15개 품목으로 산업별로는 기계류, 생활용품, 철강금속제품 순으로 품목수가 분포한다.

생활용품 중에서는 가구류의 수입 감소세가 뚜렷하고 농수산물 중 연체동물의 수입은 4년간 지속 감소하여 발효 3년차에는 1천달러에 불과하여 사실상 수입이 없는 수준이다. 또한 LPG의 수입도 발효 이후 급감한 특징을 보인다.

/ <표 8> 한-EU FTA 발효 후 수입감소 품목 현황 /

(단위: 천달러, %)

	산업	품목	발효전 1년	발효 1년차	발효 2년차	발효 3년차	3년차 전년대비증감률
1	기계류	기타기계류	1,098,407	932,669	731,927	657,082	-11.4
2		금속공작기계	531,327	526,707	524,403	458,593	-14.4
3		제지인쇄기계	346,116	219,359	190,161	129,443	-46.9
4	화학공업제품	석면제품	152	152	49	17	-188.2
5	광산물	기타광산물	3,266	2	-	-	-
6		LPG	14,316	20	3	-	-
7	철강금속제품	기타철강금속제품	115,149	102,830	100,465	99,909	-0.6
8		선재봉강 및 철근	124,596	109,226	106,811	87,761	-21.7
9	농림수산물	연체동물	395	226	86	1	-8,500
10		기타가구	101,332	79,869	57,504	51,964	-10.7
11	생활용품	침대	5,301	4,994	3,870	3,240	-19.5
12		식탁	4,046	3,991	3,575	3,025	-18.2
13		책상	2,740	1,287	938	775	-21.1
14	섬유류	기타직물	66,833	63,730	60,443	52,341	-15.5
15	잡제품	골동품	90,321	8,186	7,894	2,751	-187

자료: 한국무역협회

## II. 한-EU FTA 3년: FTA 활용 성과분석

### 1. 수출<sup>2)</sup>

#### 對EU 산업별 FTA 수출활용현황

對EU FTA 수출활용률 3년 평균 84%로 높은 수준  
발효 3년차 기계류 수출활용률 90% 넘어서  
농림수산물 수출활용률은 58%로 다소 낮음

對EU 수출 FTA 활용률은 3년 평균 84%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산업에서 FTA 활용은 적극적이거나 농림수산물의 경우 58%로 다소 저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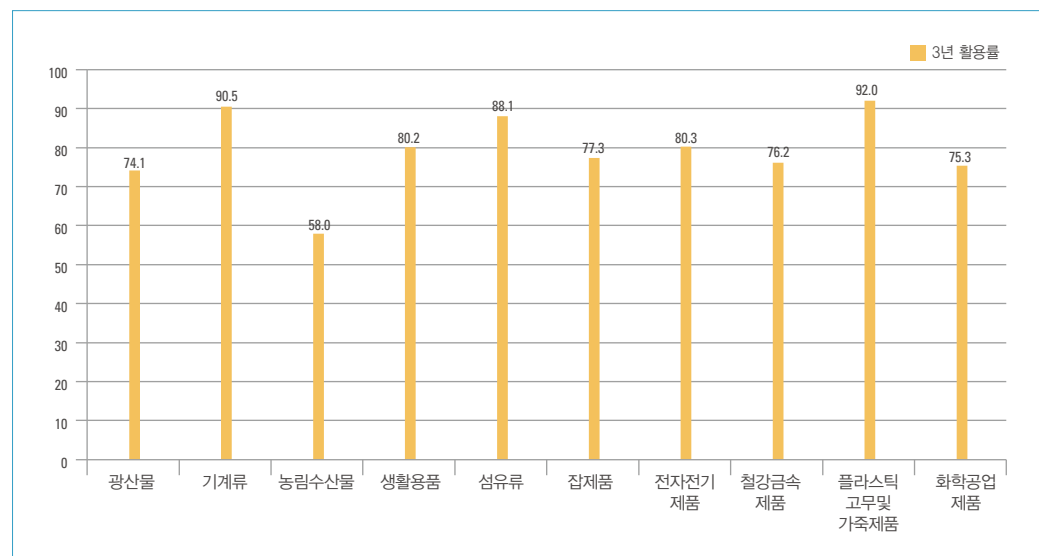
주요 수출산업에 해당하는 기계류, 전자전기제품, 섬유류, 생활용품의 FTA 특혜 활용 수준이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다. 특히 기계류 90%,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92%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반면 농림수산물 58%, 광산물 74%로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다소 낮은 수준이나 FTA 활용이 저조한 아세안, 인도등과 비교할 경우에는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 <그림 1> 산업별 FTA 발효 3년차 수출활용 현황 /

(단위: %)



2) FTA 수출활용 현황 분석 시기는 다음과 같음  
발효전 1년차 : 2010.7~2011.6 (12개월)  
발효후 1년차 : 2011.7~2012.6 (12개월)  
발효후 2년차 : 2012.7~2013.6 (12개월)  
발효후 3년차 : 2013.7~ 2014.4 (10개월)

/ <표 9> 산업별 FTA 수출활용현황 /

(단위: %)

산업	1년 활용률	2년 활용률	활용률차	3년 활용률	활용률차
	A	B	(B-A)	C	(C-B)
농림수산물	45.4	50.6	5.2	58	7.4
광산물	77.8	88.2	10.4	74.1	-14.1
화학공업제품	77.7	77.4	-0.3	75.3	-2.1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85	89.1	4.1	92	2.9
섬유류	78.5	86.2	7.7	88.1	1.9
생활용품	59.1	76.4	17.3	80.2	3.7
철강금속제품	62.8	63.8	1	76.2	12.4
기계류	84.2	90.5	6.2	90.5	0
전자전기제품	70.5	76.1	5.6	80.3	4.2
잡제품	58.6	59.4	0.8	77.3	17.8
총합계	80.6	85.2	4.6	86	0.8

자료: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한-EU FTA 수출활용 대표품목

발효 후 3년간 수출활용률 평균 80%이상이고  
발효 후 3년차 수출실적이 백만 달러 이상인  
대표 품목 총 32개 : 자동차, 자동차부품, 기타정밀화학제품,  
건설광산기계 등 활용률 90%이상

對EU 수출 품목 중에서 한-EU FTA 발효 이후 3년간 매년 FTA 활용수준이 높고 수출 규모도 큰 대표 품목들을 선정하였다.

선정기준은 이행연차별로 FTA 활용이 지속되고 3년 평균 활용률이 80%이상인면서 이행 3년차의

수출규모가 최소 백만 달러 이상인 품목이다.

FTA 활용도 90%가 넘는 최상위 품목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 기타 정밀 화학제품, 건설광산기계로 발효 이후 이행연차별로 활용률이 90%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수출활용률이 99%를 넘어 사실상 EU로 수출되는 모든 자동차는 FTA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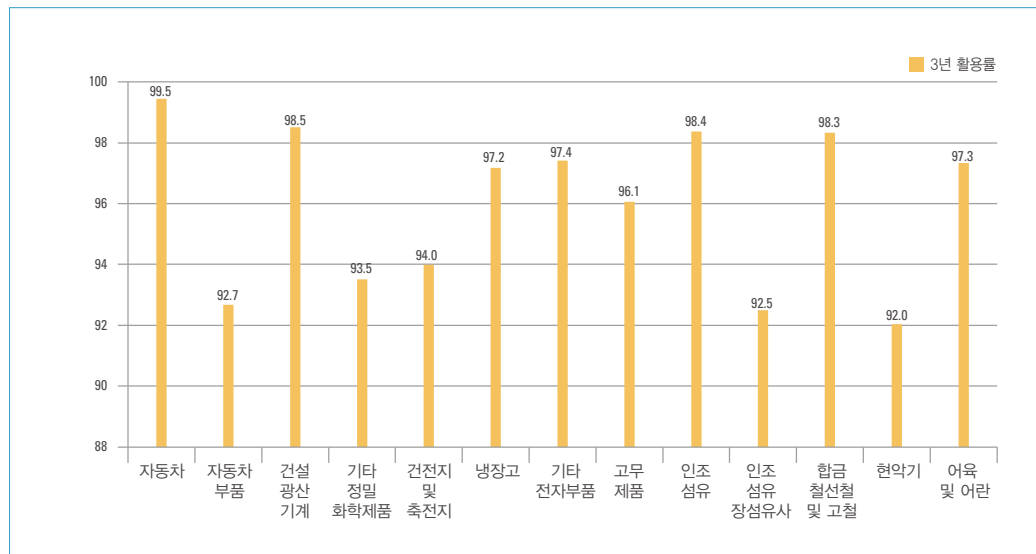
FTA 활용도 80%가 넘는 품목은 합성수지, 금속 공작기계, 기타석유화학제품, 공구, 타일 및 도자기 제품, 연마제품, 표면활성제, 기타요업제품, 석유 화학중간원료 등이 해당한다.

FTA 활용도 70%가 넘는 품목은 기계요소, 정밀 화학원료, 금형, 섬유 및 화학기계, 기타산업기계, 유리제품, 압연기용접기 및 주조설비, 접착제, 이륜차 자전거 및 부품, 목재품, 농기계 등이다.

수출활용률이 높은 품목들은 대부분 기계산업에 속하는 품목과 화학공업산업에 속하는 품목들이 차지하고 있다.

/ <그림 2> 한-EU FTA 수출활용률 3년 평균 90%이상 품목 /

(단위: %)



/ <표 10> 한-EU FTA 수출활용 상위품목 현황 /

(단위: 천달러, %)

품목	3년차 수출금액	1년 활용률	2년 활용률	3년 활용률	3년 평균
자동차	4,840,395	99.4	99.4	99.5	99.5
자동차부품	2,927,381	90.8	93.8	93.4	92.7
금속공작기계	386,585	81.5	88.7	93.0	87.7
공구	181,347	81.8	87.2	88.0	85.7
건설광산기계	51,990	96.8	99.2	99.6	98.5

품목	3년차 수출금액	1년 활용률	2년 활용률	3년 활용률	3년 평균
합성수지	1,719,330	86.1	81.5	78.2	81.9
기타석유화학제품	220,183	86.8	81.3	72.5	80.2
기타정밀화학제품	124,765	91.1	93.5	96.0	93.5
타일 및 도자기제품	20,659	72.3	89.0	87.5	82.9
연마제품	20,613	70.2	91.2	96.3	85.9
기타요업제품	9,962	70.1	93.1	95.3	86.1
석유화학중간원료	2,516	64.0	100.0	76.6	80.2
건전지 및 축전지	292,828	89.4	96.6	96.0	94.0
냉장고	222,545	94.0	98.0	99.5	97.2
가정용회전기기	145,737	76.0	88.3	92.5	85.6
회전기기	123,765	79.0	74.5	89.9	81.2
기타전자부품	26,619	95.2	98.6	98.5	97.4
수동부품	16,386	71.6	87.5	83.0	80.7
고무제품	760,645	92.5	97.4	98.3	96.1
플라스틱 제품	593,987	75.6	80.4	85.1	80.4
인조섬유방직사	2,075	69.8	75.3	97.8	81.0
인조섬유	304,549	97.7	98.1	99.3	98.4
인조섬유장섬유사	127,272	85.2	95.8	96.5	92.5
기타철강금속제품	97,257	84.3	80.9	85.7	83.6
연제품	29,246	89.0	99.6	73.1	87.2
합금철선철 및 고철	29,290	99.1	97.9	98.0	98.3
기타생활용품	27,914	78.8	87.1	84.1	83.3
기타문구	18,677	80.2	77.8	82.5	80.2
신발	13,573	85.2	89.5	87.8	87.5
LPG	10,260	90.0	87.9	83.6	87.2
현악기	1,307	93.0	93.6	89.6	92.0
어육 및 어란	22,896	95.5	98.0	98.6	97.3

자료: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한-EU FTA 수출활용 저조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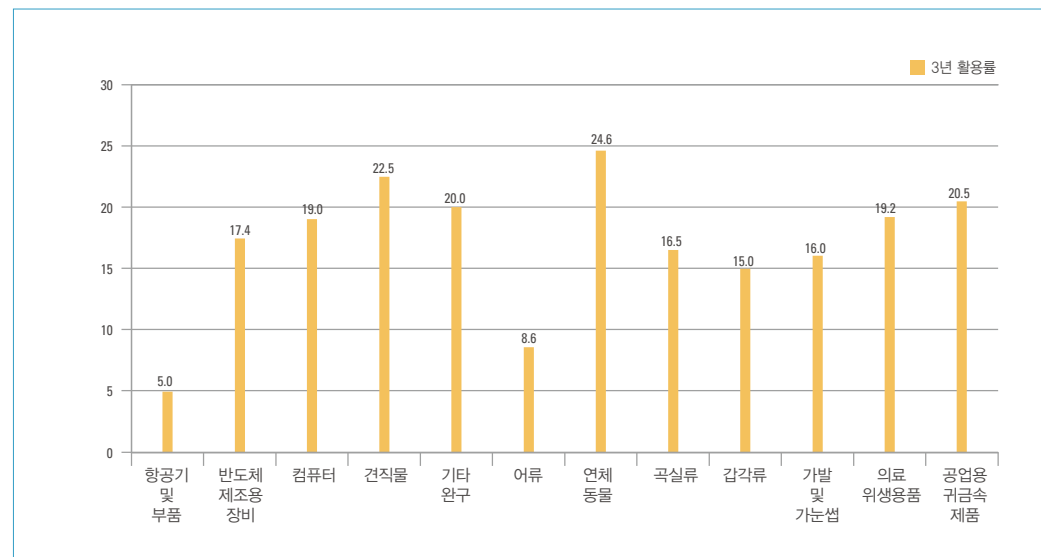
발효 후 3년간 수출활용률 평균 30%이하이고  
발효 후 3년차 수출실적이 백만 달러 이상인  
대표적 FTA활용 저조품목 총 12개

對EU 수출품목 중에서 한-EU FTA 발효이후 3년 간 수출규모는 크지만 매년 FTA 활용수준이 낮은 대표 품목들을 선정하였다. FTA 활용수준이 극히 낮은 품목이 분포한 산업은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어려운 농림수산물과 잡제품, 생활용품, 섬유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선정기준은 이행연차별로 FTA 활용 수준이 3년 평균 활용률이 30%이하이면서 이행 3년차의 수출규모가 최소 백만 달러 이상인 품목이다. FTA 활용도 10%이하 품목은 항공기 및 부품, 어류로 이행연차별로 활용률이 저조하게 나타난다. FTA 활용도 20%이하 품목은 반도체 제조용장비, 기타완구, 곡실류, 갑각류, 가발 및 눈썹, 의료 위생용품 등이다.

〈그림 3〉 한-EU FTA 수출활용률 3년 평균 30%이하 품목 /

(단위: %)



〈표 11〉 한-EU FTA 수출활용 하위품목 현황 /

(단위: 천달러, %)

품목	3년차 수출금액	1년 활용률	2년 활용률	3년 활용률	3년 평균
항공기 및 부품	215,993	5.8	5.4	3.6	5.0
반도체제조용장비	17,492	11.4	14.0	26.9	17.4
컴퓨터	7,212	18.0	3.6	35.5	19.0
건축물	6,429	21.8	22.8	22.8	22.5
기타완구	6,164	18.1	21.0	20.8	20.0
어류	14,571	0.5	6.2	19.0	8.6
연체동물	14,121	18.1	20.9	34.8	24.6
곡실류	2,508	24.1	8.9	16.5	16.5
갑각류	1,426	0.0	0.0	45.0	15.0
가발및가눈썹	4,221	13.0	24.2	10.9	16.0
의료위생용품	2,627	12.9	12.9	31.8	19.2
공업용귀금속제품	2,326	9.8	25.2	26.4	20.5

자료: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수입<sup>3)</sup>

對EU 산업별 FTA 수입활용률

對EU FTA 수입활용률 3년 평균 65% 수준  
농림수산물, 광산물 1차산업 수입활용 80% 넘어서  
잡제품, 생활용품 FTA 특혜활용은 50%대로 다소 낮음

對EU 수입 FTA 활용률은 발효 1년차 60%에서 2년차 68.5%, 3년차 68.7%로 연차별로 점차 상향되고 있다. 수출활용률이 평균 84% 수준으로 다소 높는데 반해 수입 활용은 65%로 낮은 수준이다. 산업별로는 1차 산업에 해당하는 농림수산물, 광산물의 활용수준이 높고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의 활용률도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다. 또한 농림수산물과 광산물은 발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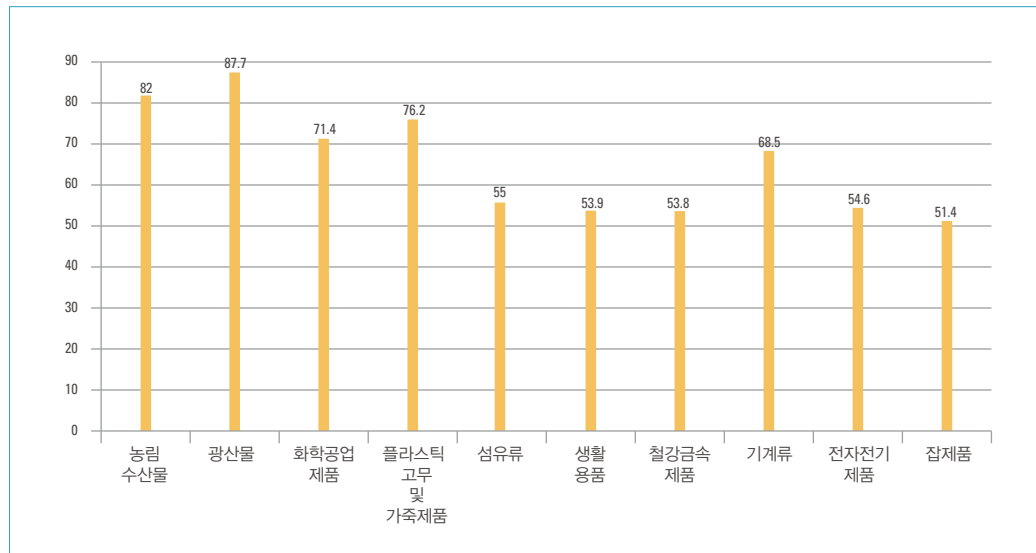
3) FTA 수입활용 현황 분석 시기는 다음과 같음  
발효전 1년차 : 2010.7~2011.6 (12개월)  
발효후 1년차 : 2011.7~2012.6 (12개월)  
발효후 2년차 : 2012.7~2013.6 (12개월)  
발효후 3년차 : 2013.7~2014.5 (11개월)

연차에 따라 지속적으로 활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석유류, 생활용품, 철강금속제품, 잡제품, 전자 전기제품의 경우 50%대의 활용률을 보여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석유류는 발효 2년차에 전년대비 8%, 3년차에 전년대비 0.2%증가, 기계류는 발효 2년차에 전년대비 4.8%증가 및 3년차 전년대비 0.1% 증가, 전자전기제품의 경우 2년차 8%증가, 3년차 0.2% 증가하여 꾸준히 FTA 특혜가 증가하고 있다.

/ <그림 4> 산업별 FTA 발효 후 3년차 수입활용현황 /

(단위: %)



/ <표 12> 산업별 FTA 수입활용현황 /

(단위: %)

산업	1년 활용률	2년 활용률	활용률차	3년 활용률	활용률차
농림수산물	71.8	82.2	10.4	82	-0.1
광산물	64.8	87.4	22.7	87.7	0.3
화학공업제품	64.3	71.5	7.2	71.4	-0.1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70	76.4	6.4	76.2	-0.2
석유류	46.4	54.8	8.4	55	0.2
생활용품	48.5	54.4	5.9	53.9	-0.4
철강금속제품	54.2	54.3	0.1	53.8	-0.5
기계류	63.6	68.4	4.8	68.5	0.1
전자전기제품	46.4	54.3	8	54.6	0.2
잡제품	45.4	51.9	6.5	51.4	-0.5
총합계	60.7	68.5	7.8	68.7	0.2

자료: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한-EU FTA 대표 수입활용 품목

발효 후 3년간 수입활용률 평균 80%이상이고  
 발효 후 3년차 수입실적이 백만 달러 이상인  
 대표품목 총 40개 : 자동차, 재생석유, 의자, 기타비료, 종이제품, 육류 등  
 활용률 90%이상 품목 다수

對EU 수입품목 중에서 한-EU FTA 발효 이후 3년간 매년 FTA 활용수준이 높고 수입규모도 큰 대표품목들을 선정하였다.

수출규모가 최소 백만 달러 이상인 품목이다.

선정기준은 이행연차별로 FTA 활용이 지속되고 3년 평균 활용률이 80%이상이면서 이행 3년차의

FTA 활용도 90%가 넘는 최상위 품목은 총 15개로 자동차, 재생석유, 의자는 99%에 육박하고 이외에 원유, 육류, 모피, 농기계, 시멘트, 타악기 등도 발효이후 매 이행연차별로 활용률이 90% 이상으로 나타난다.



특히 자동차, 재생섬유, 의자의 경우 수입활용률이 99%를 넘어 사실상 EU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 등은 FTA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지인쇄 기계, 유리제품, 합성고무 등 27개 품목이 해당한다.

수입활용률이 높은 품목들은 대부분 기계산업에 속하는 품목과 생활용품에 속하는 품목들이 차지하고 있다.

FTA 활용도 80%가 넘는 품목은 수입액 순으로 금속공작기계, 식품가공포장기계, 염료 및 안료,

〈표 13〉 한-EU FTA 수입활용 상위품목 현황 /

(단위: 천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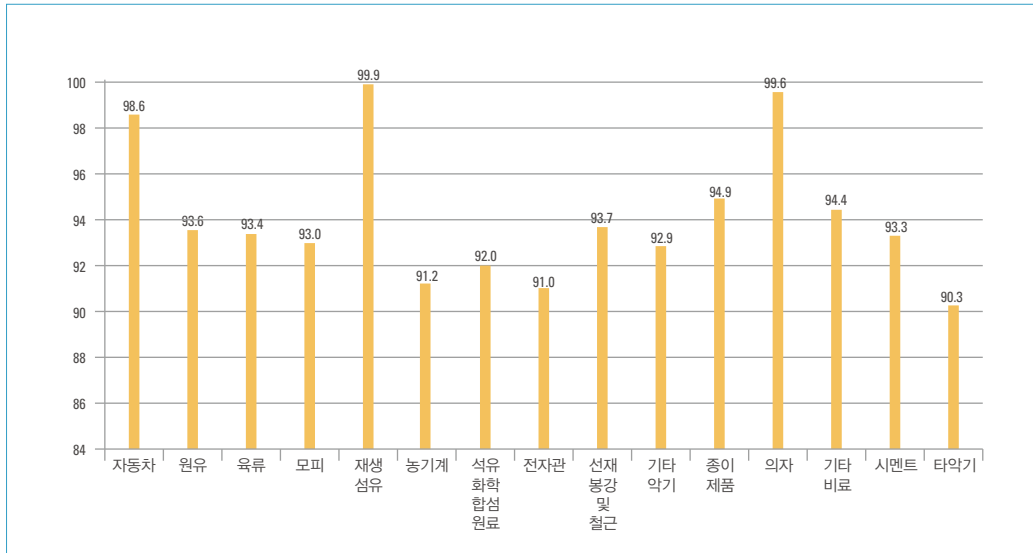
품목	3년차 수입금액	1년 활용률	2년 활용률	3년 활용률	3년평균
자동차	3,652,604	97	99.4	99.4	98.6
금속공작기계	438,801	72.1	85.1	84.1	80.4
육류	372,301	81.8	99.2	99.2	93.4
식품가공포장기계	233,565	81.2	89	90.1	86.7
염료 및 안료	184,929	76.6	87.6	87.6	83.9
제지인쇄기계	173,569	75.8	83.9	83.9	81.2
합성고무	141,713	76.7	96.7	96.3	89.9
니켈제품	104,206	82.6	78.4	79	80
가죽	99,631	77.8	89.7	89.9	85.8
목재광물 및 유리가공기계	75,918	72.8	87	84.8	81.5
강반제품 및 기타철강제품	70,580	85.2	89.1	89.1	87.8
사진영화용재료	65,590	79.1	82.5	82	81.2
모피	64,930	93.1	92.9	93	93
재생섬유	59,666	99.8	100	100	99.9
건설광산기계	53,537	61.2	91.2	90.6	81
농기계	52,186	86.5	93.8	93.4	91.2
석유화학합성원료	47,665	96	90.3	89.7	92

품목	3년차 수입금액	1년 활용률	2년 활용률	3년 활용률	3년 평균
수산가공품	45,593	78.1	93.7	92.9	88.2
인조섬유장섬유사	45,477	84.2	89.9	90.1	88.1
식물성 재료	38,299	79.3	82.7	83.1	81.7
합금철선철 및 고철	33,202	80.4	94.7	94.7	89.9
기타가구	30,752	74.7	84.7	84.3	81.2
전자관	29,907	87.5	92.8	92.8	91
유리공예품	28,365	81.7	86	85.6	84.4
곡실류	20,715	81.3	93.5	93	89.3
의료위생용품	19,904	84.3	92.1	92.4	89.6
관악기	11,406	83.3	90.5	90.1	88
인조섬유	10,766	76.8	86.5	86	83.1
악기부분품	10,673	85.3	89.9	90.9	88.7
선재봉강 및 철근	6,676	82	99.6	99.5	93.7
기타전자부품	6,617	61.4	89.9	90.3	80.5
기타악기	4,665	87	95.5	96.1	92.9
종이제품	4,423	91.6	96.9	96.3	94.9
의자	3,701	99.7	99.5	99.5	99.6
기타비료	3,069	87	97.9	98.4	94.4
시멘트	2,856	87.4	96.4	96.1	93.3
피아노	2,691	86.9	88.1	87.7	87.6
반도체	2,662	98.2	75.3	72.3	81.9
고령토	2,020	73.5	84.2	84.6	80.8
타악기	1,165	89.1	91.6	90.1	90.3

자료: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그림 5> 한-EU FTA 수입활용률 3년 평균 90%이상 품목 /

(단위: %)



한-EU FTA 수입활용 저조품목

발효 후 3년간 수입활용률 평균 30%이하이고  
발효 후 3년차 수입실적이 백만 달러 이상인  
대표적 FTA활용 저조품목 총 11개

對EU 수입품목 중에서 한-EU FTA 발효 이후 3년간 수입규모는 크지만 매년 FTA 활용수준이 낮은 대표품목들을 선정하였다. 선정기준은 이행 연차별로 FTA 활용 수준이 3년 평균 30%이하 이면서 이행 3년차의 수입규모가 최소 백만 달러 이상인 품목이다.

FTA 활용수준이 극히 낮은 품목이 분포한 산업은 다양하게 분포하나 철강금속제품군이 다수 차지

하고 있다. FTA 활용도 10%이하 품목은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기타금속광물, 천연가스, 우주선 및 부품, 형강으로 이행연차별로 활용률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난다. 특히 천연가스와 기타금속광물, 우주선 및 부품의 경우 거의 FTA 특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FTA 활용도 20%이하 품목은 귀금속 장식품, 모류, 연제품이 해당한다.

/ <표 14> 한-EU FTA 수입활용 하위품목 현황 /

(단위: 천달러, %)

품목	3년차 수입금액	1년 활용률	2년 활용률	3년 활용률	3년 평균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961,868	5.4	6	6.2	5.9
기타금속광물	262,073	0.4	1.1	1.1	0.8
귀금속장식품	110,921	11.6	12.9	12.1	12.2
천연가스	100,438	0	0	0	0
모류	22,673	0.2	11	11.5	7.6
어류	18,820	15.8	34.9	34.5	28.4
우주선 및 부품	16,138	0.4	1.1	1.1	0.9
형강	12,818	24.3	3.8	4.1	10.8
주석제품	11,201	29.7	29.1	28.8	29.2
영상기기	10,073	3	6.9	21	10.3
연제품	9,411	22.5	17.5	17.8	19.2

자료: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III. 對EU 주요 수출국의 FTA 활용성과

한-EU FTA 발효 이후 현재까지 FTA 혜택 수출 실적 기준 상위 10개국은 독일, 영국,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체코, 폴란드, 벨기에, 덴마크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對EU 투자규모는 2010년 7.8억 달러 (신고기준)에서 2014년 8.9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특히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를 중심으로 자동차 생산기업들의 직접투자 규모가 큰 것

으로 나타난다. 그 영향으로 對EU FTA 교역에서도 상위 10개국에 동유럽국가 3개국이 포진해 있다.

EU 통계국에 따르면 슬로바키아는 연간 100만대 이상의 자동차 생산능력을 보유하여 EU내에서도 급성장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자동차 중심 수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와의 FTA 교역에 있어서도 슬로바키아는 핵심국가로 급부상 한 것으로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표 15> 對EU 수출 상위 10대국 FTA 활용현황 /

(단위: 백만달러)

국가	FTA 혜택 수출액 <sup>4)</sup>	1년차 활용률	2년차 활용률	3년차 활용률
독일	11,503	76%	88%	87%
영국	6,888	73%	83%	82%
슬로바키아	5,686	89%	90%	94%
이탈리아	4,871	85%	85%	87%
프랑스	4,431	85%	88%	87%
네덜란드	4,181	76%	77%	81%
체코	4,001	92%	96%	95%
폴란드	3,395	75%	83%	85%
벨기에	2,907	84%	86%	82%
덴마크	806	77%	85%	90%

자료: 관세청자료를 바탕으로 저자작성

EU 수출 주요 국가들의 FTA 수출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3년차 최소활용률이 80%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또한 10개국 모두 FTA 발효 1년차 보다 3년차에 FTA 활용이 증가하였다. 특히 FTA 활용 증가 규모가 큰 국가는 독일 11%,

영국 9%, 슬로바키아 6%, 폴란드 11%, 덴마크 13% 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FTA활용 효과가 큰 독일, 영국, 슬로바키아, 폴란드, 덴마크 5개국을 중심으로 산업별 및 품목별 FTA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 1. 독일

소형 승용차, 對독일 FTA 수출 및 활용에 절대적 라면, 김, 캐비어 대용물, 다량어 등 농림수산물 FTA 활용 급증 주단조품 및 정지기기 FTA 신규활용 두각 나타나

### 한국의 對독일 주요 수출품목

우리나라의 對독일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선박 해양 구조물 및 부품,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부품 등으로 나타난다. FTA 발효 전후 전반적으로 상위 품목의 수출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 FTA로 인한 교역확대 효과를 뒷받침 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FTA 발효 전후 2010년과 2011년 수출증가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이후 지속적으로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2012년 독일

자동차 시장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와 기아차는 판매증가를 기록하며 독일 수입차 시장의 1,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다만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반도체, 정밀화학 원료의 경우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출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은 유럽재정위기 이후 수주감소 등의 영향으로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2014년부터 선박 인도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향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표 16> 對독일 주요 수출품목 현황 /

(단위: 천달러)

순위	품목명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01월~05월)
1	자동차	547,301	1,118,417	1,238,051	1,900,458	663,741
2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4,358,532	2,720,063	1,456,636	723,395	424,682
3	반도체	1,406,571	830,246	510,872	555,620	317,290
4	무선통신기기	495,092	491,174	632,257	808,457	277,447
5	자동차부품	445,472	398,607	321,949	393,158	173,419
6	합성수지	129,907	195,512	202,640	215,895	114,724
7	기계요소	119,142	147,518	161,101	178,949	101,142

4) 발효후 현재까지(2011.7~2014.4월)의 FTA 혜택품목의 총 수출액을 의미한다.



순위	품목명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01월~05월)
8	플라스틱 제품	116,343	144,289	155,897	170,330	94,888
9	고무제품	108,859	175,911	166,241	183,673	93,377
10	정밀화학원료	116,191	159,970	113,547	63,568	89,367

자료: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산업별 FTA 수출활용 현황

한-EU FTA 발효 이후 독일로 수출된 한국산 물품의 산업별 FTA 활용현황은 전자전기제품을 제외하고 모두 FTA 활용률이 증가하였다. 산업 비중 1위를 차지하는 기계류의 경우 발효 1년차의 FTA 활용률은 77%에 불과했으나 발효 2년차 이후부터 90%이상의 높은 활용수준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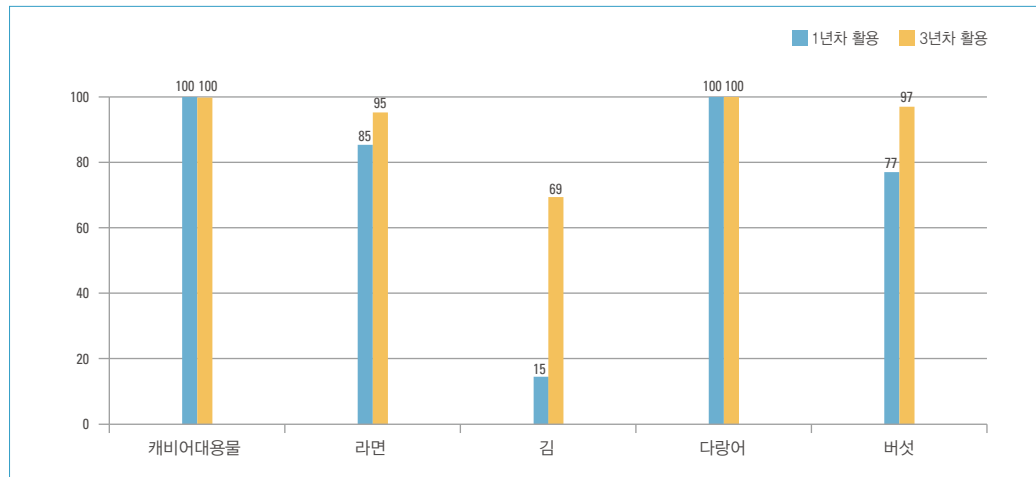
전자제품의 경우 FTA 활용이 2년차 및 3년차 각각 약 1%감소하였는데 무선통신기기와 음향기기의 FTA 활용이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생활용품의 경우도 FTA 이후 지속적으로 특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주요 품목은 가방, 신발, 악기, 완구 등이다.

농림수산물의 경우 발효연차별로 FTA 활용효과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데 발효 1년차에는 34%에 불과하던 활용률이 3년차 현재 70%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對독일 수출 FTA 활용 핵심 농림수산물은 라면, 김, 캐비어 대용물, 다량어, 버섯 등으로 나타났다.

/ <그림 6> 독일 수출 농림수산물 FTA활용 주요품목 /

(단위: %)



/ <표 17> 對독일 산업별 FTA 수출활용 현황 /

(단위: %)

산업	1년 활용	2년 활용	3년 활용	2년 증감	3년 증감
광산물	61.4	82.1	79.7	20.8	-2.4
기계류	77.1	93.5	90.5	16.4	-3.0
농림수산물	34.1	55.7	70.4	21.6	14.7
생활용품	56.9	59.4	70.9	2.6	11.5
섬유류	80.6	90.1	93.1	9.5	3.1
잡제품	44.5	35.4	62.8	-9.1	27.4
전자전기제품	69.4	68.3	67.5	-1.1	-0.8
철강금속제품	65.3	73.9	87.2	8.6	13.3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81.4	89.9	92.1	8.5	2.1
화학공업제품	79.0	79.6	74.0	0.5	-5.5
총합계	76.0	88.0	86.6	12.0	-1.4

자료: 관세청자료를 바탕으로 저자작성

### 품목별 FTA 수출활용 성과

2007년~2010년 對독일 상위 수출품목들을 바탕으로 무관세 품목을 제외하고 관세철폐로 인한 FTA 효과가 기대되는 FTA 활용전략 품목은 아래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0년 기준 독일의 주요 한국산 수입품목은 전자부품, 자동차, 타이어, 자동차 부품 등으로 이들 품목이 관세율 최대 10%까지 철폐되어 FTA 혜택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위와 같은 FTA 활용 전략 품목들이 한-EU FTA 발효 3주년을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과연 그 기대 효과를 충족하고 있는지 세부품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독일로 수출된 품목들 중에서 HS 10단위를 기준으로 현재 FTA 활용 상위 20대 품목을 선별한 결과 전반적으로 독일 수출 FTA 전략품들의 FTA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발효 1년차부터 현재까지 수출실적상위에 속하는 품목들의 연차별 FTA 활용현황에 따르면

제8703.22, 8703.23, 8703.32호에 속하는 자동차의 FTA 활용효과가 100%에 가까워 한-EU FTA 수혜주로서의 기대를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되었는데 독일로 수출하는 자동차들의 연차별 FTA 활용률이 매년 100%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아 FTA 효과를 대표할 수 있는 품목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자동차의 경우 대표적인 FTA 수혜품목으로 예상

/ <표 18> 對독일 수출 FTA 활용 전략 품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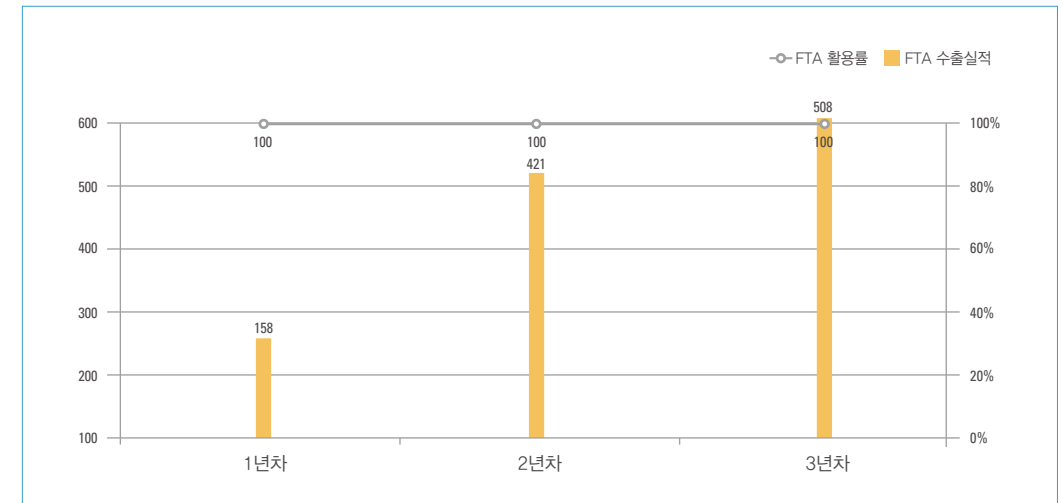
(단위: 억 유로, %)

분류	HS코드	품명	對韓수입 ('10년기준)	관세율(%)	양허기간
전자 부품	85299092	제 8525.80.11호 및 제 8525.80.19호의 텔레비전 카메라용과 제8527호 및 제8528호의 기기용	4.7	5	즉시
자동차	87033219	기타	1.3	10	3년간 철폐
자동차	87032210	신차	0.7	10	5년간 철폐
타이어	40111000	승용자동차용의 것(스테이션왜건과 경주 자동차용의 것을 포함한다)	0.6	4.5	3년간 철폐
전자 부품	85299065	전자조립품	0.5	3	즉시
자동차	87032319	기타	0.5	10	3년간 철폐
합성수지	39033000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공중합체(ABS)	0.4	6.5	3년간 철폐
인조섬유	5503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0.4	4	즉시
자동차	87032110	신차	0.3	10	5년간 철폐
기계요소	84821090	기타(베어링 등)	0.3	8	3년간 철폐

자료: 한-EU FTA 양허안

/ <그림 7> 소형 승용차의 연차별 FTA 효과 /

(단위: %, 백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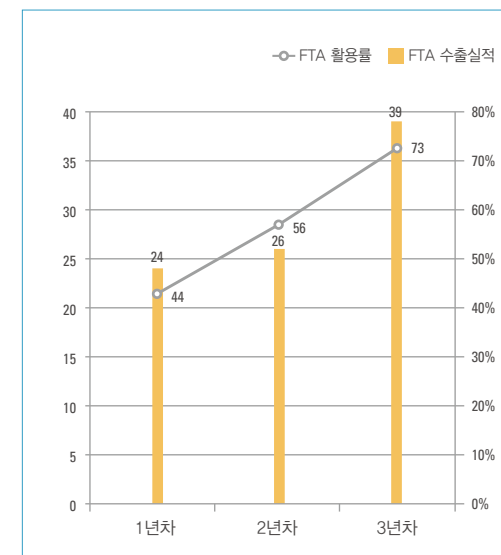


또한 종래 자동차 외에 제4011.10호에 속하는 타이어, 제5503.20호에 속하는 인조섬유, 제3903.30호에 속하는 합성수지, 제8482.10호에 속하는

베어링 등도 수출규모와 관세철폐 등에 따라 수출 확대가 전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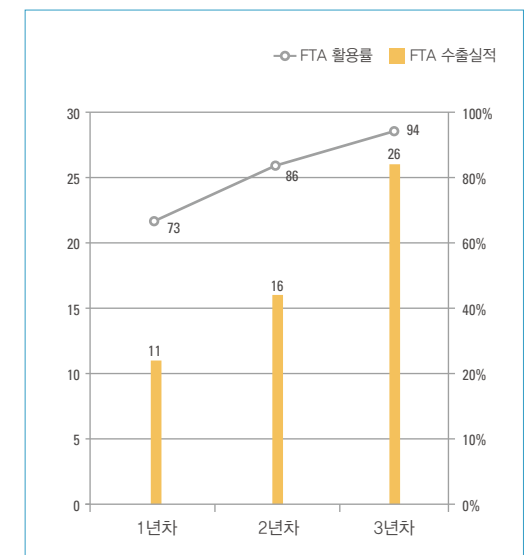
/ <그림 8> 정지기기(8537.10-9000) /

(단위: %, 백만달러)



/ <그림 9> 주단조품(7326.90-9000) /

(단위: %, 백만달러)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 품목들도 연차별로 FTA 혜택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인조섬유의 경우 발효 2, 3년차에 100%, 타이어는 연차별로(발효 1년차에는 89.7%, 발효 2, 3년차에는 각각 99.7%, 100%)의 FTA 활용혜택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제시된 FTA 수출전략품목 외에 3년간의 FTA활용에 두각을 보이는 품목들이 나타났다. 정지기기의 경우 1년차 FTA 수출실적이 24백만 달러에서 매년 증가하여 현재 39백만 달러로 증가하였고 FTA 활용률도 1년차 44%에서 3년차 73%까지 급증하였다.

/ <표 19> HS 10단위 기준 FTA 활용 상위품목 현황 /

(단위: %)

순위	HS 10단위	MTI 3	1년 활용	2년 활용	3년 활용
1	8703.22-7000	자동차	100	100	100
2	8703.32-1010	자동차	100	99.2	100
3	8703.32-9010	자동차	99.3	100	100
4	8703.23-1010	자동차	99.6	99.8	99.8
5	8708.99-9000	자동차부품	81.6	89.8	93.1
6	4011.10-1000	고무제품	89.7	99.7	100
7	8458.11-0000	금속공작기계	81	95.4	97.9
8	3906.90-9000	합성수지	95.3	96.6	78.5
9	8409.99-2000	자동차부품	96.7	63.4	9.3
10	8803.30-1000	항공기 및 부품	42.2	25.9	10.1
11	8482.10-2000	기계요소	94.1	99.7	99.3
12	5503.20-1000	인조섬유	99.6	100	100
13	8537.10-9000	정지기기	44.3	55.6	73.5
14	8703.21-7000	자동차	100	100	100
15	8482.20-0000	기계요소	78.5	99.1	99.5
16	3918.10-1000	플라스틱제품	99.3	99.2	99.4
17	5503.20-9090	인조섬유	99.1	99.7	100
18	8512.20-1000	조명기기	83	69.9	99.9
19	7326.90-9000	주단조품	73	86.4	94
20	2907.23-1000	기타석유화학제품	100	97.2	67.9

자료: 관세청자료를 바탕으로 저자작성

## 2. 영국

발효 후 주요 수출품목의 수출확대 및 수입감소 양분화 특징  
광산물 제외한 모든 산업 연차별 FTA 활용 증가  
구리관 및 구리관 연결구류 등 철강금속제품이 對영국 FTA 효과 주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 FTA 수출 및 활용 상위에 집중포진

### 한국의 對영국 주요 수출품목

효과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對영국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선박,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금은 및 백금, 건설광산기계, 석유화학 합성원료 등으로 나타난다. 한-EU FTA 발효후 영국과의 교역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일부 품목군이 뚜렷한 수출확대

그러나 유럽재정위기 이후 수출부진이 지속중인 선박, 반도체, 금은 및 백금, 석유제품의 수출 감소도 큰 수준을 보이고 있어 주요 수출품목의 수출 확대 및 감소 품목이 양분되는 특징이 있다.

/ <표 20> 對영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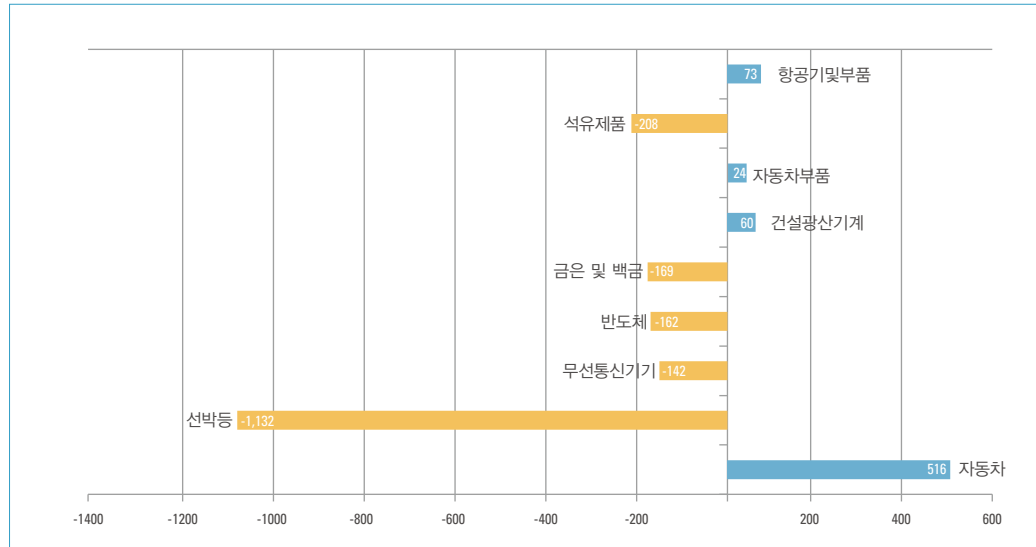
(단위: 천달러)

순위	품목명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01월~05월)
1	자동차	526,803	601,934	972,064	1,043,050	650,602
2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1,568,182	1,194,942	560,582	436,088	320,416
3	무선통신기기	598,716	344,499	475,939	456,946	252,900
4	반도체	512,109	392,994	295,870	349,662	164,008
5	금은 및 백금	256,197	129,432	453,477	86,716	130,094
6	건설광산기계	86,287	155,447	109,594	146,282	93,581
7	자동차부품	117,659	137,848	128,308	141,963	76,812
8	석유제품	418,151	367,814	201,373	210,101	69,084
9	항공기 및 부품	65,228	80,207	99,477	138,001	58,095
10	석유화학합성원료	103	5,699	-	-	51,885

자료: 한국무역협회

/ <그림 10> 對영국 수출품목 '10~13년 교역변화 /

(단위: 백만달러)



산업별 FTA 수출활용 현황

/ <표 21> 對영국 산업별 FTA 수출활용 현황 /

(단위: %)

산업	1년 활용	2년 활용	3년 활용	2년 증감	3년 증감
광산물	84.0	76.1	63.2	-7.9	-12.9
기계류	75.1	88.2	87.9	13.1	-0.3
농림수산물	52.1	69.1	63.2	17.0	-5.9
생활용품	60.8	69.8	76.9	9.0	7.1
섬유류	79.1	85.1	86.8	6.1	1.7
잡제품	61.8	62.1	74.4	0.3	12.3
전자전기제품	72.4	70.2	70.7	-2.2	0.6
철강금속제품	39.2	51.7	65.2	12.5	13.5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83.4	89.6	90.4	6.2	0.8
화학공업제품	59.9	68.9	57.9	9.0	-11.0
총합계	73.0	82.7	82.0	9.7	-0.7

자료: 관세청자료를 바탕으로 저자작성

품목별 FTA 수출활용 성과

한-EU FTA 발효 이후 영국으로 수출된 한국산 물품의 산업별 FTA 활용현황은 광산물을 제외하고 모두 FTA 활용률이 증가하였다. 다만 2년차에는 전년대비 활용률 증가의 폭이 크고 대부분 산업에서 증가하였으나 3년차에는 2년차 대비 활용률 감소 산업이 다소 나타나고 있다.

영국은 독일과 비교하였을 때 3년차 활용률 감소 산업에 일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별로 활용률이 계속하여 상승한 산업이 생활용품, 섬유류, 잡제품, 철강금속제품,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등으로 다수 포진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광산물의 경우 지속하여 FTA 활용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연차별로 영국으로 수출된 광산물의 품목변화가 많고 대리석의 FTA 활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영국으로 수출되는 광산물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탄가스의 경우 3년 모두 FTA 활용률이 90%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철강금속제품은 對영국 수출산업 중에서 FTA 활용 상승세가 가장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 영국으로 수출되는 철강금속제품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구리관과 커플링 및 슬리브와 같은 구리로 만든 관 연결구류로 이들 품목의 수출규모 증가와 FTA 활용률 상승이 철강금속제품의 FTA 효과를 주도하고 있다.

2007년~2010년 對영국 상위 수출품목들을 바탕으로 무관세 품목을 제외하고 관세철폐로 인한 FTA 효과가 기대되는 품목으로 FTA 활용 전략 품목은 아래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0년 기준 영국의 주요 한국산 수입품목은 자동차, 텔레비전 카메라, 타이어, 2차 전지, 직물 등으로 이들 품목이 관세율 최대 10%까지 철폐되어 FTA 혜택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영국으로 수출된 품목들 중에서 HS 10단위를 기준으로 현재 FTA 활용 상위 20대 품목을 선별한 결과 전반적으로 영국 수출 FTA 전략품들의 FTA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對영국 수출상위 20대 품목 중에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이 총 8개 품목으로 집중되어 있고 이들 품목들은 FTA 발효시점부터 현재까지 지속하여 100%에 가까운 높은 활용수준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전략품목으로 선정된 타이어, 2차 전지, 인조섬유의 연차별 FTA 활용효과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전략품목의 FTA 활용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영국의 경우 일부 수출상위품목들이 FTA 활용이 극히 저조한 경우가 포착되는데 항공기 부품과 무선통신기기, 석유화학합성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 <표 22> 對영국 수출 FTA 활용 전략 품목 /

(단위: 억 유로, %)

분류	HS코드	품명	對韓수입 ('10년기준)	관세율(%)	양허기간
자동차	87032319	기타	2.3	10.0	3년간 철폐
타이어	40111000	승용자동차용의 것(스테이션왜건과 경주 자동차용의 것을 포함한다)	1.0	4.5	3년간 철폐
석유제품	27101921	제트 연료유	0.8	4.7	즉시
자동차	87033219	기타	0.7	10.0	3년간 철폐
자동차	87032210	신차	0.4	10.0	5년간 철폐
텔레비전 카메라 (CCTV 등)	85258019	기타	0.4	4.9	즉시
인조섬유	5503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0.2	4.0	즉시
2차전지	85071092	액체전해질과 함께 작동되는 것	0.2	3.7	즉시
타이어	40112010	하중지수 121이하인 것	0.1	4.5	3년간 철폐
직물	60041000	탄성사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이며, 고무사는 함유하지 아니한 것	0.1	8.0	즉시

자료: 한-EU FTA 양허안



/ <표 23> 對영국 HS 10단위 기준 FTA 활용 상위품목 현황 /

(단위: %)

순위	HS 10단위	MTI 3	1년 활용	2년 활용	3년 활용
1	8703.32-1010	자동차	100	100	100
2	8703.22-7000	자동차	100	100	100
3	8703.32-9010	자동차	99.9	100	100
4	8703.23-1010	자동차	100	100	100
5	8803.30-1000	항공기 및 부품	-	0	-
6	8703.21-7000	자동차	100	100	100
7	4011.10-1000	고무제품	89	100	100
8	8507.10-0000	건전지 및 축전지	98.6	99.1	99.5
9	2917.36-1000	석유화학합성원료	100	-	-
10	8526.91-9020	무선통신기기	12.1	-	2.5
11	8703.31-7000	자동차	100	100	100
12	8708.99-9000	자동차부품	82.4	86	89.1
13	8708.70-0000	자동차부품	99.6	99.8	100
14	8418.10-1030	냉장고	100	100	100
15	8458.11-0000	금속공작기계	99.7	99.8	99.8
16	8411.91-1000	항공기및부품	0.1	-	-
17	5503.20-1000	인조섬유	98.2	100	100
18	3824.90-9090	기타화학공업제품	10	35.8	29.7
19	5503.20-9090	인조섬유	95	99.1	99.4
20	3903.30-0000	합성수지	99.6	100	94.9

자료: 관세청자료를 바탕으로 저자작성

### 3. 슬로바키아

**발효 전 자동차부품 중심 수출구조**  
**발효 후 자동차 산업 외 기계류 수출증가 변화 뚜렷**  
**기계류 비중 73%, 전자전기제품 비중 14%로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  
**다양한 종류의 자동차 부품의 FTA 수출규모 및 활용 증가**

#### 한국의 對슬로바키아 주요 수출품목

우리나라의 對슬로바키아 주요 수출품목은 평판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원동기 및 펌프, 영상기기, 조명기기 등 기계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슬로바키아와의 교역은 FTA 발효 전후로 수출 1, 2위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평판디스플레이와 자동차 부품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그 외의 모든 품목은 2배 이상씩 수출규모가 증가한 특징을 보인다.

슬로바키아 수출교역은 특히 제조업 생산에 필수적인 기계류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FTA 발효 전까지는 슬로바키아 자동차 산업의 직접 원재료인 자동차 부품에 편중된 수출구조를 보인 반면, FTA 발효 후 부터는 자동차 산업 외 산업생산에 필수적인 원동기, 금형, 정밀화학제품, 공기조절기 등과 같은 품목의 수출상승이 크게 나타나는 수출구조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 <표 24> 對슬로바키아 주요 수출품목 현황 /

(단위: 천달러)

순위	품목명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01월~05월)
1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975,667	1,370,226	1,878,464	1,116,062	510,606
2	자동차부품	1,215,777	1,041,344	898,843	928,798	441,834
3	원동기 및 펌프	43,582	285,981	390,914	328,822	170,564
4	영상기기	274,776	354,434	158,954	596,920	119,205
5	컴퓨터	101,468	100,784	175,447	222,550	88,342
6	조명기기	69,953	60,557	136,383	181,277	77,664
7	광학기기	83,813	67,404	130,336	111,177	56,640

순위	품목명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01월~05월)
8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64,312	78,271	98,576	110,696	55,846
9	금형	34,925	72,327	48,979	48,814	40,366
10	기타정밀화학제품	6,067	24,022	72,281	96,600	36,688

자료: 한국무역협회

#### 산업별 FTA 수출활용 현황

한-EU FTA 발효이후 슬로바키아로 수출된 한국산 물품의 산업별 FTA 활용현황은 3년차에 소폭 감소한 산업이 존재하지만 발효 1년차와 3년차의 증감을 비교하였을 때 모든 산업의 FTA 활용률이 증가하였다.

슬로바키아 수출의 산업별 비중을 살펴보면 산업 비중 1위를 차지하는 기계류의 비중이 73%, 전자 전기제품이 14%로 절대적이다. 기계류의 경우 발효 연차별로 수출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더불어 FTA 활용수준도 3년 평균 92%에 달하고 있다.

/ <표 25> 對슬로바키아 산업별 FTA 수출활용 현황 /

(단위: %)

산업	1년 활용	2년 활용	3년 활용	2년 증감	3년 증감
광산물	65	85	87	19	2
기계류	90	90	94	0	4
농림수산물	51	35	58	-16	23
생활용품	30	50	49	20	-1
섬유류	75	84	83	9	-1
잡제품	42	47	8	5	-39
전자전기제품	80	89	96	9	6
철강금속제품	81	73	79	-8	6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84	82	94	-2	12
화학공업제품	90	97	99	7	1
합계	89	90	94	1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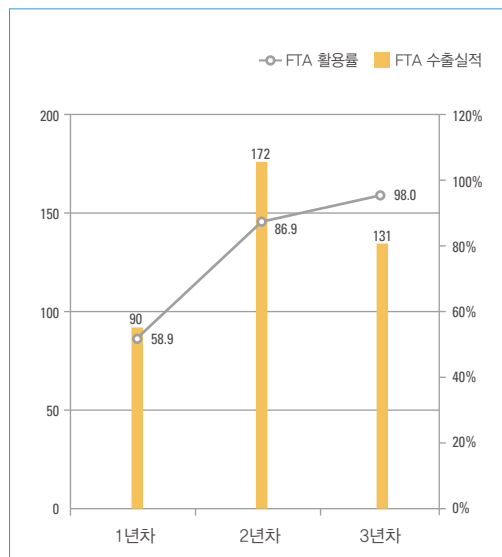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자료를 바탕으로 저자작성

산업비중 2위에 해당하는 전자전기제품은 발효 연차별 FTA 활용수준의 증가폭이 가장 큰 산업으로 나타난다. 전자전기제품의 FTA 활용수준을 견인한 구체적 품목은 조명기기, 기구부품, 유선 통신기기로 연차별로 매년 큰 폭으로 FTA 효과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조명기기의 경우 1년차 수출액이 약 9천만 달러에 불과하였는데 2년차 수출액은 1억 7천만 달러, 3년차 수출액은 1억 3천만 달러로 크게 증가함과 동시에 활용률의 증가폭 또한 매우 가파르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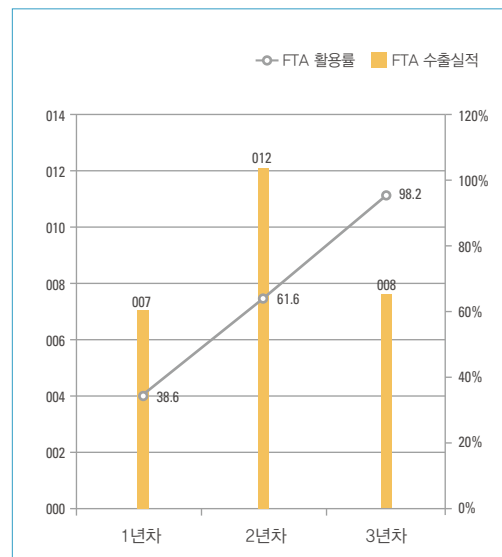
/ <그림 11> 조명기기의 FTA 수출변화 /

(단위: %, 백만달러)



/ <그림 12> 기구부품의 FTA 수출변화 /

(단위: %, 백만달러)



**품목별 FTA 수출활용 성과**

2007년~2010년 對슬로바키아 상위 수출품목들을 바탕으로 무관세 품목을 제외하고 관세철폐로 인한 FTA 효과가 기대되는 품목으로 FTA 활용 전략 품목은 아래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0년 기준 슬로바키아의 주요 한국산 수입품목은 전자부품, 각종 자동차 부품, 광학기기 부품 등으로 이들 품목이 관세율 최대 6.5%까지 철폐되어 FTA 혜택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 <표 26> 對 슬로바키아 수출 FTA 활용 전략 품목 /

(단위: 억 유로, %)

분류	HS코드	품명	對한수입 ('10년기준)	관세율(%)	양허기간
전자 부품	85299092	제8525.80.11호 및 제8525.80.19호의 텔레비전 카메라용과 제8527호 및 제8528호의 기기용	11.1	5.0	즉시
자동차 부품	87084020	기어박스과 그 부분품	1.0	3.0	즉시
자동차 부품	87082910	운전실을 포함한 차체의 그밖의 부분품과 부속품	0.7	3.0	즉시
자동차 부품	87089420	운전대·스티어링칼럼 및 운전박스와 그 부분품	0.5	3.0	즉시
자동차 부품	87083010	브레이크 및 서보브레이크, 그 부분품	0.5	3.0	즉시
광학기기 부품	90019000	기타	0.4	2.9	즉시
합성수지	39033000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공중합체(ABS)	0.3	6.5	3년간 철폐
플라스틱 제품	39269097	기타	0.3	6.5	즉시
자동차 부품	87087010	로드휠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0.3	3.0	즉시
자동차 부품	87085020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과 비구동차축 및 그 부분품	0.3	3.0	즉시

자료: 한-EU FTA 양허안

독일 및 영국은 FTA 수출 전략 품목으로 완성차가 집중된 반면 슬로바키아 수출전략품목의 2/3가 자동차부품에 집중된 특이점이 있다. 이는 슬로바키아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이 현지에서 완성차를 생산하는 점에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FTA 활용 전략품목들이

한-EU FTA 발효 3주년을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과연 그 기대효과를 충족하고 있는지 세부품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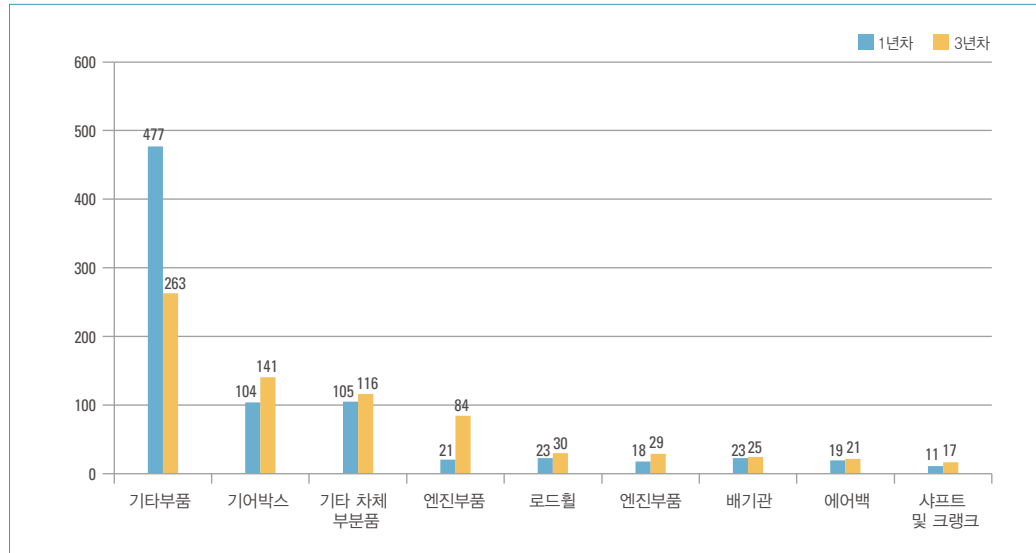
발효 1년차부터 현재까지 수출실적 상위에 속하는 품목들의 연차별 FTA 활용현황에 따르면 수출 상위 20대 품목 중 자동차 부품이 9개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자동차 부품의 종류는 수출 규모순으로 기타부품, 기어박스, 차체부분품, 엔진부품, 로드휠, 배기관, 에어백, 샤프트 및 크랭크이다. FTA 수출 실적은 제8708.99-9000호에 속하는 기타부품은 경우 1년차 477백만 달러에서 현재 263달러로 큰 폭 감소하였으나 그 외의 모든 자동차 부품은 FTA 수출 실적이 증가하였다.

또한 기타부품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 부품의 1년차 부분품의 경우 92.9%에서 99.8%로 상승하였다. 및 3년차 활용률이 100%에 달하고 있고 기타 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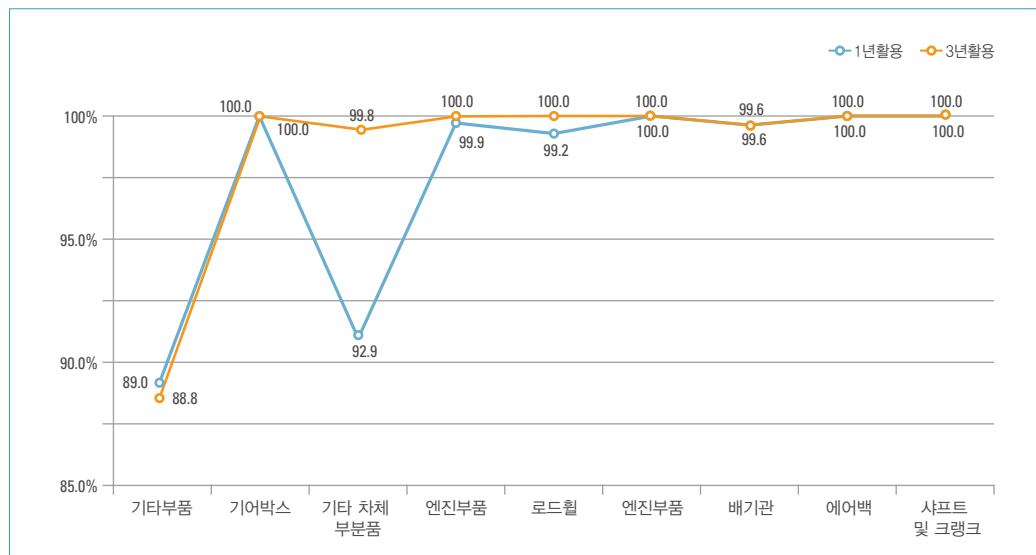
/ <그림 13> 자동차 부품 FTA 수출실적 변화 /

(단위: 백만달러)



/ <그림 14> 자동차 부품 FTA 활용 변화 /

(단위: %)



/ <표 27> HS 10단위 기준 FTA 활용 상위품목 현황 /

(단위: %)

순위	HS 10단위	MTI 3	1년 활용	2년 활용	3년 활용
1	8708.99-9000	자동차부품	89.0	93.2	88.8
2	8708.40-0000	자동차부품	100.0	100.0	100.0
3	8407.34-9000	원동기 및 펌프	97.9	100.0	100.0
4	8708.29-0000	자동차부품	92.9	99.8	99.8
5	9405.99-9000	조명기기	2.2	83.1	97.6
6	8409.99-2000	자동차부품	99.9	100.0	100.0
7	8479.90-1010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99.9	99.2	100.0
8	3815.12-1000	기타정밀화학제품	100.0	100.0	100.0
9	8414.30-1000	원동기 및 펌프	81.7	2.4	82.4
10	8480.71-0000	금형	95.4	99.0	99.8
11	8411.91-9000	원동기 및 펌프	100.0	100.0	100.0
12	8708.70-0000	자동차부품	99.2	100.0	100.0
13	8511.50-9000	자동차부품	100.0	100.0	100.0
14	8708.92-0000	자동차부품	99.6	99.6	99.6
15	8708.95-1000	자동차부품	100.0	100.0	100.0
16	8421.39-2000	기타산업기계	100.0	100.0	100.0
17	8537.10-1000	정지기기	100.0	99.8	100.0
18	8483.10-9010	자동차부품	100.0	100.0	100.0
19	9032.89-9090	계측제어분석기	99.6	99.9	100.0
20	7326.90-9000	주단조품	90.7	87.1	93.6

자료: 관세청자료를 바탕으로 저자작성

#### 4. 폴란드

**對폴란드 수출 전자전기제품 중심,  
연차별 FTA 활용 꾸준히 증가(75%→83%→85%)  
냉장고, 조명기기, 합성수지, 철강판 FTA 전후 교역변화 뚜렷  
농림수산물 중 기타음료 및 김의 FTA 수출 및 활용 급증**

##### 한국의 對폴란드 주요 수출품목

우리나라의 對폴란드 주요 수출품목은 평판디스플레이, 영상기기, 철강판, 광학기기, 합성수지 등으로 나타난다.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의 EU 수출이 급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폴란드로의 수출규모변화는 그리 크지 않다.

폴란드는 유럽최대의 TV 생산국가로 이외에 컴퓨터, 핸드폰, 각종 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 전자제품 내수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또한 슬로바키아와 더불어 폴란드는 199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자동차 및 부품 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출하여 현지에서 생산하여 EU 및 인근국가로 재수출하고 있다.

/ <표 28> 對폴란드 주요 수출품목 현황 /

(단위: 천달러)

순위	품목명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01월~05월)
1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882,899	1,827,296	1,534,597	1,330,619	460,745
2	영상기기	545,550	224,610	245,467	278,644	175,098
3	철강판	88,781	104,432	123,490	117,472	78,273
4	광학기기	244,786	218,929	183,778	147,276	68,028
5	합성수지	34,424	70,041	96,177	138,158	65,006
6	자동차부품	139,146	90,730	96,306	127,962	62,735
7	자동차	70,495	149,603	153,335	129,505	61,504
8	조명기기	51,200	153,104	102,955	85,618	60,179
9	무선통신기기	246,384	191,064	151,972	148,723	53,781
10	냉장고	37,044	43,263	39,093	83,299	38,864

자료: 한국무역협회

이러한 폴란드 시장의 특성에 따라 평판디스플레이는 다른 유럽 국가로의 수출이 급감하였으나 폴란드로의 수출감소 규모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냉장고, 조명기기, 합성수지, 철강판 등은 FTA 발효전후 수출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 FTA로 인한 교역확대 효과를 뒷받침 하고 있다.

##### 산업별 FTA 수출활용 현황

한-EU FTA 발효이후 폴란드로 수출된 한국산 물품의 FTA 활용은 연차별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1년차 75%, 2년차 83%, 3년차 85%로 FTA 활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산업별 FTA 활용현황은 잡제품과 화학공업제품이 3년차에 소폭 감소하였으나 그 외 모든 산업에 걸쳐 FTA 활용이 증가하였다. 산업별 수출비중은 기계류가 4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전자전기 제품 27%, 화학공업제품 13%에 달한다.

산업별로 FTA 3년평균 FTA 활용도가 가장 높은 산업은 섬유류로 93%에 달하고 다음으로 화학공업제품이 88%로 2위에 해당한다. 수출비중이 높은 기계류의 경우 81%, 전자전기제품은 79%로 수출규모대비 FTA 활용도는 다소 낮게 나타난다.

/ <표 29> 對폴란드 산업별 FTA 수출활용 현황 /

(단위: %)

산업	1년 활용	2년 활용	3년 활용	2년 증감	3년 증감
광산물	58	87	91	29	4
기계류	74	84	84	10	0
농림수산물	51	54	86	3	31
생활용품	52	73	73	21	0
섬유류	88	96	97	8	2
잡제품	44	61	47	17	-14
전자전기제품	70	79	87	9	8
철강금속제품	63	70	76	8	5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78	83	88	5	5
화학공업제품	89	89	85	0	-4
총합계	75	83	85	8	2

자료: 관세청자료를 바탕으로 저자작성



또한 전 산업에 걸쳐 매년 FTA 활용률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년차에 일부 활용감소 추세인 산업으로 잡제품과 화학공업제품이 있다. 잡제품의 경우 주요 수출품목인 안경테와 렌즈의 수출 감소 및 FTA 활용감소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농림수산물물은 3년차 활용률 86%로 발효 직후와 비교하였을 때 무려 34%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활용증가의 직접적 원인이 된 품목은 기타음료와 김으로 나타났다. 제2202.90호에 속하는 기타음료의 경우 발효 1년차 FTA 수출실적인 52만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3년차에 2백만 달러로 4배 증가하였고 활용률 또한 6%→42%→91%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품목별 FTA 수출활용 성과**

2007년~2010년 對폴란드 상위 수출품목들을 바탕으로 무관세 품목을 제외하고 관세철폐로 인한 FTA 효과가 기대되는 품목으로 FTA 활용 전략 품목을 선별하였다.

2010년 기준 폴란드의 주요 한국산 수입품목은 다양한 전자부품류, 안전유리, 광학기부품, 자동차, 정류기, 전선 등으로 이들 품목의 관세혜택에 따른 수출증대가 기대되었다. 독일 및 영국이 자동차에 전략품목이 집중되어있는 것에 반해 폴란드는 다양한 전자부품에 집중된 특징이 있다.

/ <표 30> 對폴란드 수출 FTA 활용 전략 품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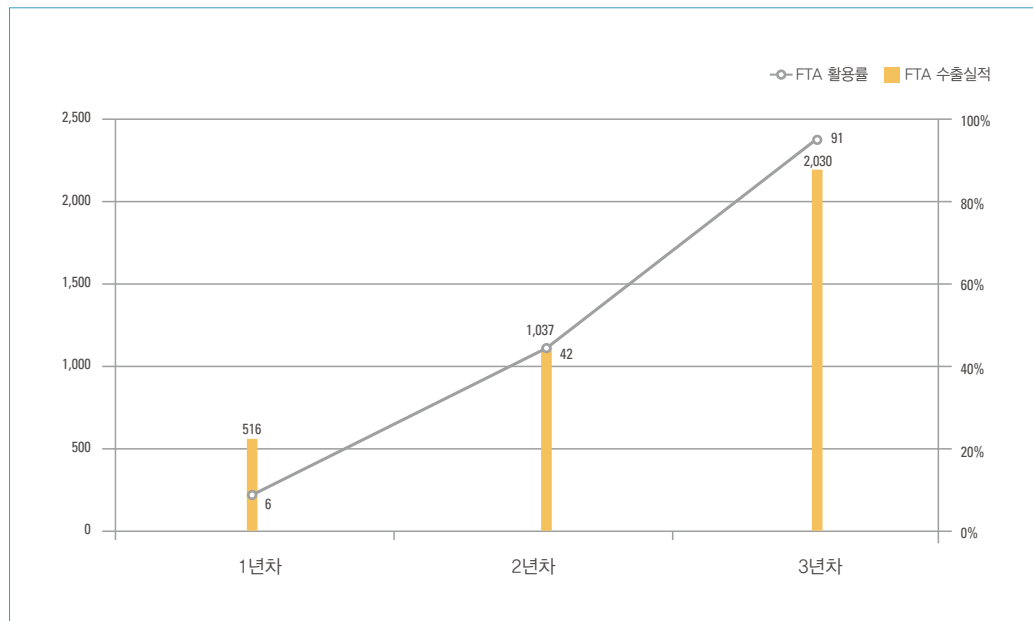
(단위: 억 유로, %)

분류	HS코드	품명	對한수입 ('10년기준)	관세율(%)	양허기간
전자 부품	85299092	제8525.80.11호 및 제8525.80.19호의 텔레비전 카메라용과 제8527호 및 제8528호의 기기용	5.7	5.0	즉시
전자 부품	85299065	전자조립품	0.9	3.0	즉시
전자 부품	85299049	기타재료의 컷(캐비닛과 케이스)	0.6	3.0	즉시
안전유리	70071920	기타	0.5	3.0	즉시
광학기 부품	90012000	편광재료의 판	0.3	2.9	즉시
광학기 부품	90019000	기타	0.3	2.9	즉시
자동차	87033219	기타	0.2	10.0	3년간 철폐
정류기	85044081	정류기	0.2	3.3	즉시
전선	85444290	기타(접속자가 부착된 동축케이블 등)	0.2	3.3	즉시
플라스틱 제품	39269097	기타	0.2	6.5	즉시

자료: 한-EU FTA 양허안

/ <그림 15> 폴란드 수출 기타음료의 FTA 활용증가 /

(단위: %, 천달러)



폴란드로 수출된 품목들 중에서 HS 10단위를 기준으로 현재 FTA 활용 상위 20대 품목을 선별한 결과 자동차부품, 냉장고, 합성수지, 정지기기 등 전반적으로 폴란드 수출 전략품목들의 FTA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품목으로 선정된 안전유리의 경우 종래 수출 실적이 없었으나 2년차부터 수출과 FTA 활용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연간 수출규모가 5만달러 이하로 미미하여 추가적인 수출확대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여타의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폴란드 역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수출규모 및 FTA 활용도가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의 경우 모두 연차별로 100%의 활용도를 보였고 제8708.99호에 속하는 자동차 부품의 경우 1년차

폴란드 수출 전략품목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FTA 활용을 통한 수출확대에 기여한 품목들로 원동기 및 펌프와 금형이 확인된다. 제8414.30호에 속하는 원동기 및 펌프의 경우 발효 이후 급격히 수출과 FTA 활용률이 함께 성장하였다. 더불어 금형은 1년차 FTA 활용이 0.9%로 저조하였으나 2년차 이후 급증하여 81%로 나타났다.

/ <표 31> HS 10단위 기준 FTA 활용 상위품목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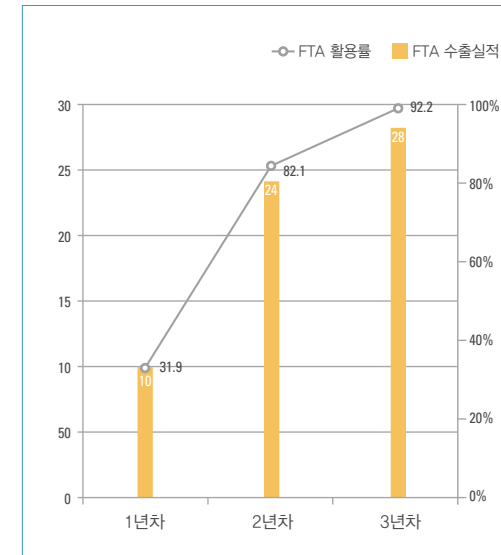
(단위: %)

순위	HS 10단위	MTI 3	1년 활용	2년 활용	3년 활용
1	8418.99-1000	냉장고	82.8	95.3	98.6
2	9001.20-0000	광학기기	86.2	94.0	97.6
3	8708.99-9000	자동차부품	60.3	86.2	90.7
4	9405.40-9000	조명기기	99.8	99.3	98.5
5	8450.90-0000	가정용회전기기	91.9	90.3	96.0
6	8414.30-1000	원동기 및 펌프	31.9	82.1	92.2
7	8708.29-0000	자동차부품	71.1	93.4	93.2
8	8703.23-1010	자동차	100.0	100.0	100.0
9	8703.32-1010	자동차	100.0	100.0	100.0
10	5503.20-9090	인조섬유	95.1	99.8	98.7
11	3902.30-0000	합성수지	95.7	90.0	99.5
12	8703.22-7000	자동차	100.0	100.0	100.0
13	3903.30-0000	합성수지	91.0	99.4	92.6
14	8537.10-9000	정지기기	98.6	92.0	82.9
15	8504.40-9099	정지기기	47.4	55.2	93.0
16	5503.20-1000	인조섬유	99.4	100.0	98.5
17	3906.10-0000	합성수지	97.8	88.3	99.6
18	8480.79-0000	금형	0.9	81.5	73.6
19	3907.40-0000	합성수지	96.4	100.0	83.3
20	8703.32-9010	자동차	100.0	100.0	100.0

자료: 관세청자료를 바탕으로 저자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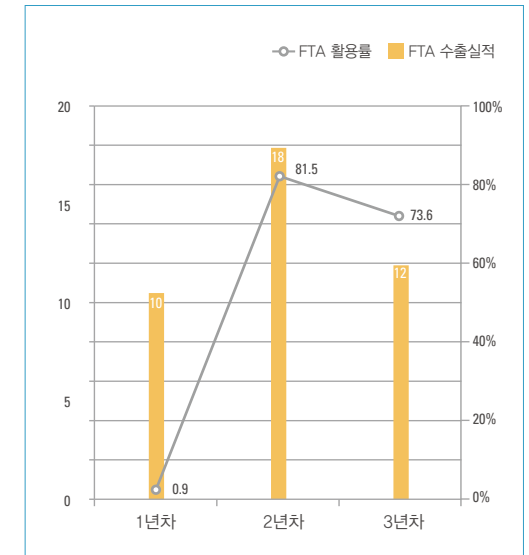
/ <그림 16> 원동기 및 펌프 FTA 교역변화 /

(단위: %, 백만달러)



/ <그림 17> 금형 FTA 교역변화 /

(단위: %, 백만달러)



## 5. 덴마크

덴마크, 유일하게 선박수출 회복세 확인한 특징  
 철강금속제품 FTA 활용 급증(1년차 26%→ 3년차 87%)  
 정밀화학원료 및 베어링 하우징의 FTA 효과 폭발적  
 독일 및 영국은 소형차 중심 FTA 활용 특징이나  
 덴마크는 다양한 배기량의 자동차 FTA 활용

### 한국의 對덴마크 주요 수출품목

우리나라의 對덴마크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선박해양 구조물 및 부품, 주단조품, 기계요소 등으로 나타난다. FTA 발효전후 선박, 자동차, 주단조품, 철강관 및 철강선, 식물성 물질을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선박의 경우 유럽재정위기 영향이 크게 나타난 2011~12년에는 수출규모가 급감하였으나 2013년 이후 회복세가 확연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여타의 유럽 국가들은 선박 수출부진이 2013년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으나 덴마크의 경우

유일하게 FTA 발효전 수출규모를 뛰어넘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14년 이전까지는 10만달러 내외로 수출이 미미하였던 전선의 경우 2014년 5월까지의 수출실적이 6백만 달러로 폭증하는 특이점을 가지고 있다.

〈표 32〉 덴마크 주요 수출품목 현황 /

(단위: 천달러)

순위	품목명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01월~05월)
1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308,116	95,942	32,786	948,900	746,363
2	자동차	92,328	139,850	127,491	122,952	51,494
3	주단조품	19,468	35,632	27,778	30,616	14,529
4	기계요소	27,331	26,376	30,641	26,046	12,189
5	합성수지	8,122	10,801	11,777	10,474	10,781
6	고무제품	13,751	15,317	9,701	8,295	7,704
7	전선	136	452	232	107	6,395
8	자동차부품	13,170	14,217	10,031	15,337	5,917
9	철강관 및 철강선	2,655	5,138	6,599	6,285	4,879
10	식물성물질	2,493	2,683	3,208	5,939	3,504

자료: 한국무역협회

**산업별 FTA 수출활용 현황**

한-EU FTA 발효이후 덴마크로 수출된 한국산 물품의 산업별 FTA 활용현황은 발효 1년차에 대비하여 잡제품을 제외하고 모두 FTA 활용률이 증가하였다.

산업별 수출비중은 기계류가 65%로 절대적이고 이어서 철강금속제품 12%, 화학공업제품 8%, 전자전기제품 6%이다. 산업비중 1위인 기계류의 연차별 FTA 활용수준은 매년 증가하여 3년 평균 90%이상의 높은 활용도를 보인다.

산업비중 2위인 철강금속제품의 경우 FTA 활용 효과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바 1년차에 26%의 낮은 활용수준에서 3년차 현재 87%수준으로 증가하였다.

덴마크의 산업별 FTA 활용현황은 다른 주요 유럽

국가들과 차별성을 띠는 점이 있다. 대부분의 유럽국가로의 FTA 수출활용률은 발효 1년차 보다 인증수출자제도가 안정기에 접어든 2012년 2년차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덴마크는 발효 1년차에 산업전반의 FTA 활용수준이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표 33〉 덴마크 산업별 FTA 수출활용 현황 /

(단위: %)

산업	1년 활용	2년 활용	3년 활용	2년차 증감	3년차 증감
광산물	98.9	-	21.7	-	-
기계류	89.2	92.1	92.4	2.9	0.3
농림수산물	73.6	26.3	28.8	-47.2	2.5
생활용품	69.1	67.6	71.9	-1.5	4.3
섬유류	62.6	65.4	79.8	2.8	14.4
잡제품	96.4	90.0	85.8	-6.4	-4.2
전자전기제품	41.1	38.3	59.9	-2.8	21.6
철강금속제품	25.7	60.8	87.0	35.2	26.2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87.9	87.8	93.3	-0.2	5.6
화학공업제품	89.4	93.6	91.1	4.2	-2.5
총합계	76.6	85.0	89.8	8.4	4.8

자료: 관세청자료를 바탕으로 저자작성

**품목별 FTA 수출활용**

덴마크로 수출된 품목들 중에서 HS 10단위를 기준으로 현재 FTA 활용 상위 20대 품목을 선별한 결과 전반적으로 선박, 자동차, 자동차 부품, 기계요소, 타이어 등을 중심으로 FTA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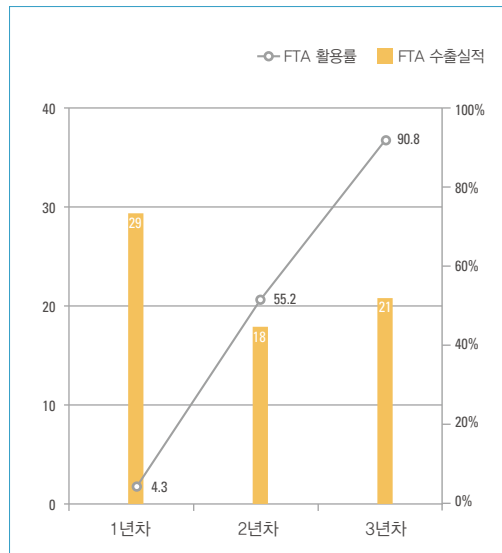
독일 및 영국이 소형차 중심의 FTA 활용도가 높은 것에 비해 덴마크의 경우 제8703.21, 8703.22, 8703.23, 8703.31, 8703.32호 등 다양한 배기량의 자동차에 널리 FTA가 활용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FTA 수출상위 20대 품목 중에서 5개 품목 제외한 모든 품목이 발효 1년차 대비 발효 3년차 FTA 수출실적이 감소하였다. 이처럼 주요품목들에 대한 FTA 수출실적이 감소한 반면 FTA 활용도는 연차별로 급격히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

제7307.91호에 속하는 관 연결구류인 플랜지의 경우 1년차 수출실적이 29백만 달러에서 3년차 21백만 달러로 소폭 감소하였지만 연차별 FTA 활용도는 매년 폭증하고 있다. 또한 제8409.99호에 속하는 대형 선박엔진 부품 역시 연차별로 FTA 수출규모는 감소하고 있으나 FTA 활용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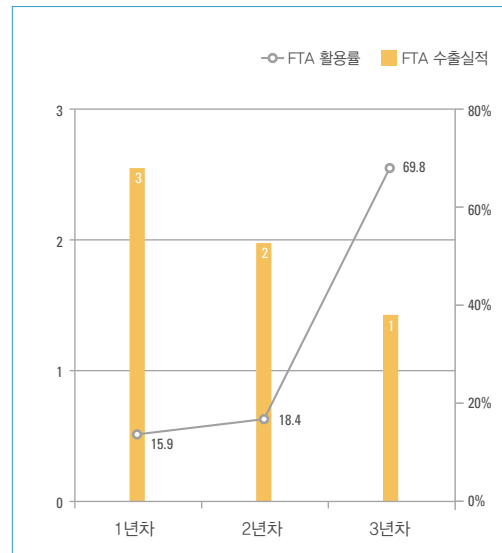
/ <그림 18> 플랜지의 FTA 교역변화 /

(단위: %, 백만달러)



/ <그림 19> 대형 선박엔진 부품의 FTA 교역변화 /

(단위: %, 백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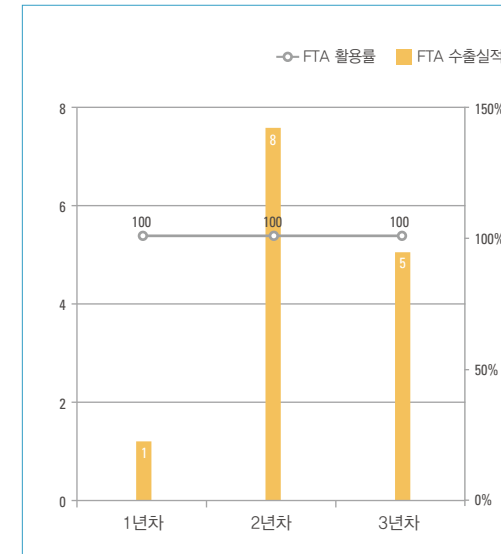


이는 원산지증명능력이 있는 기업들의 경우 동일 품목의 수출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FTA를 통하여 꾸준히 수출규모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반대로 정밀 화학원료인 리신과 그 에스테르(제2922.41호)와 베어링 하우징(제8483.30호)는 FTA를 활용한 수출확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덴마크 FTA 효과에 기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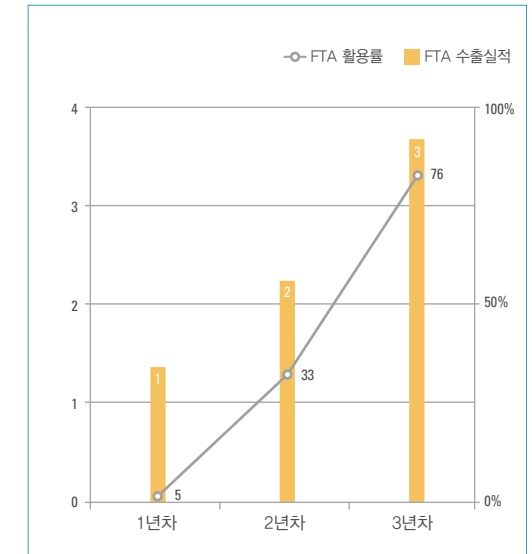
/ <그림 20> 정밀화학원료(리신)의 FTA 교역 변화 /

(단위: %, 백만달러)



/ <그림 21> 베어링 하우징의 FTA 교역 변화 /

(단위: %, 백만달러)



/ &lt;표 34&gt; HS 10단위 기준 FTA 활용 상위품목 현황 /

(단위: %)

순위	HS 10단위	MTI 3	1년 활용	2년 활용	3년 활용
1	8703.22-7000	자동차	100.0	100.0	100.0
2	8703.21-7000	자동차	100.0	100.0	100.0
3	7307.91-0000	주단조품	4.3	55.2	90.8
4	8703.32-1010	자동차	100.0	100.0	100.0
5	8483.10-9090	기계요소	96.9	97.1	99.7
6	8409.99-3030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60.8	69.4	75.4
7	8703.31-7000	자동차	100.0	100.0	100.0
8	7326.90-9000	주단조품	90.5	82.3	92.3
9	2922.41-3000	정밀화학원료	100.0	100.0	100.0
10	3907.10-0000	합성수지	100.0	100.0	99.4
11	8703.23-1010	자동차	100.0	100.0	100.0
12	4011.10-1000	고무제품	82.2	100.0	100.0
13	4011.20-1090	고무제품	100.0	100.0	100.0
14	3903.30-0000	합성수지	97.2	99.9	92.0
15	9003.19-9000	안경	97.4	92.8	97.9
16	8483.30-9000	기계요소	5.4	32.5	76.3
17	8409.99-9090	원동기 및 펌프	17.1	25.6	52.7
18	8528.59-1090	무선통신기기	67.7	88.1	58.8
19	8409.99-3020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15.9	18.4	69.8
20	8517.70-3090	유선통신기기	0.0	0.0	0.0

자료: 관세청자료를 바탕으로 저자작성

## 04 산업별 FTA 이행 현황과 전망: 고가명품 수입동향 분석

글/진병진 선임연구원\_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개발본부

- 분석 배경 : 생활수준 향상과 구매력 증가로 우리나라의 고가명품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다수의 명품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EU 및 미국 등 우리나라의 전통적 고가명품 주요 수입국가(지역)와의 FTA발효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 등으로 이들로부터의 고가명품 수입동향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어 FTA발효 전후 이들 국가(지역)로부터의 고가명품 수입동향의 변화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 분석 범위 : EU 및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고가명품(HS 10단위 기준)
  - 분석대상 : 화장품·핸드백·모피상품·귀금속 및 신변장식용품·레저용품
  - 분석협정 : 한-미 FTA 및 한-EU FTA
  - 분석기간 : 한-미 FTA의 경우 발효 전 2년과 발효 후 2년의 수입동향 분석  
한-EU FTA의 경우 발효 전 3년과 발효 후 3년의 수입동향 분석

### I. 고가명품 수입동향 분석의 목적

#### 분석의 목적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력 향상에 따른 구매력 증가와 가격보다는 제품의 질과 브랜드의 가치를 선호하는 소비자의 구매행태 변화로 고가명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sup>5)</sup>

이에 따라 우리나라 소비자가 선호하는 다수의 명품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전통적 고가명품 수입 시장인 미국과 EU지역으로부터의 당해 상품들에 대한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지역)로부터의 고가명품 수입은 FTA발효에 따른 관세인하혜택 등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미국 및 EU와의 FTA발효 전후 고가명품의 수입비중 및 수입추이 변화를 확인해 봄으로써 FTA가 이들 지역으로부터 고가명품이 수입되는데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5) 우리나라의 고가명품 소비는 전 세계 5위권으로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가명품 보유건수는 평균 9개 정도로 매년 평균 2개 정도의 고가명품을 새로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석대상**

분석대상물품은 우리나라 소비자가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국 및 EU 산을 선호하는 화장품류 등 HS 2단위 기준 6개류에 속하는 5개 상품군으로 한정하였으며, 이들 상품군들에 속한 86개 품목(HS 10단위 기준)의 수입동향을 대상으로 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분석대상 협정은 한-미 FTA 및 한-EU FTA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대상기간은 두 협정의 발효시기와 발효 이후 기간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해당 협정의 발효일자를 기준으로 한-미 FTA의 경우 협정 발효 전 2년과 협정 발효 후 2년을 기준으로 분석하였고 한-EU FTA는 협정 발효 전 3년과 협정 발효 후 3년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의 범위는 크게 2개 영역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HS 10단위를 기준으로 협정 발효 연차와 동일 기간을 대상으로 대세계 수입액 대비 각 협정별 수입비중을 확인해 봄으로써 각 품목의 미국 및 EU지역에 대한 수입편중 정도를 확인해 보았다. 이를 통해 FTA발효가 이들 두 국가(지역)이 우리나라의 고가명품 수입시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위상에 어떤 변화를 발생시켰는지를 살펴 보았다.

둘째, 협정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협정 발효 전후 수입액의 변화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FTA의 발효가 해당 품목의 수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해 보고, 분석대상기간의 협정 발효 전후 동일기간 평균을 대상으로 수입액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관세의 철폐 또는 인하가 수입에 미친 영향을 확인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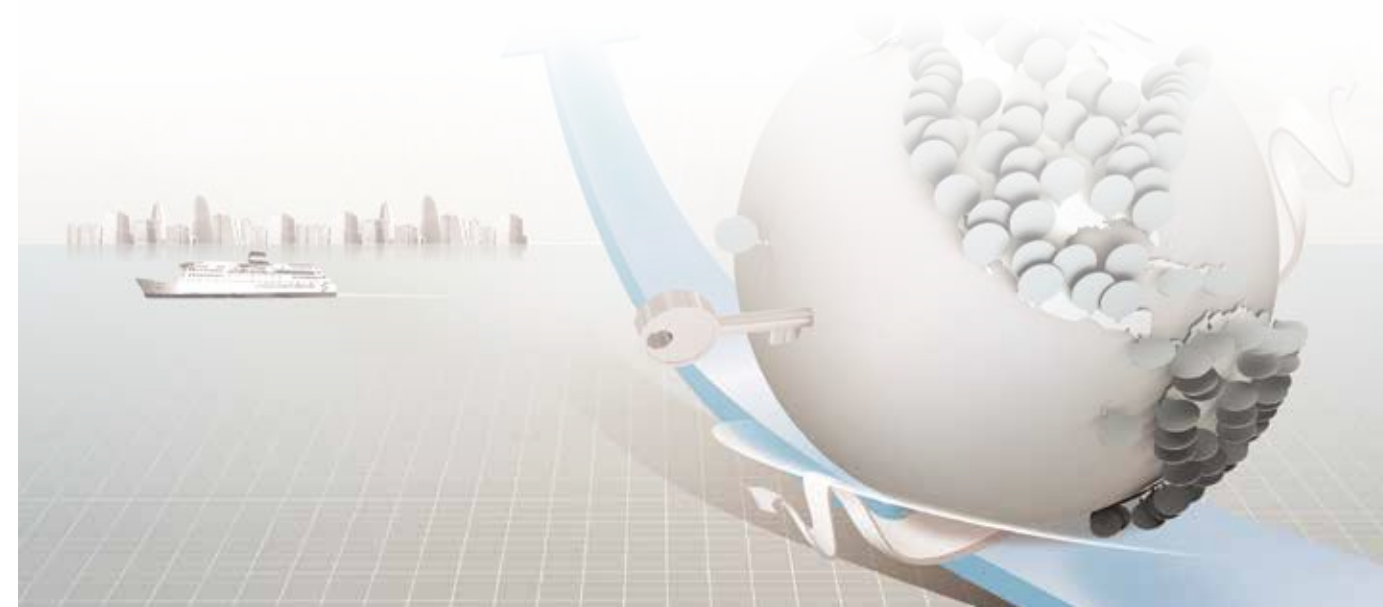
/ <표 2> 분석대상 협정 및 기간 /

연번	협정명	구분	대상기간
1	한-EU FTA	발효 3년전	2008.07.01~2009.06.30
		발효 2년전	2007.07.01~2010.06.30
		발효 1년전	2010.07.01~2011.06.30
		발효 1년차	2011.07.01~2012.06.30
		발효 2년차	2012.07.01~2013.06.30
		발효 3년차	2013.07.01~2014.04.30
2	한-미 FTA	발효 2년전	2010.03.01~2011.02.28
		발효 1년전	2011.03.01~2012.02.28
		발효 1년차	2012.03.15~2013.03.14
		발효 2년차	2013.03.15~2014.02.28

주: 1. 한-EU FTA의 경우 발효 3년차의 통계추출기간은 2014.05.~06.의 2개월을 제외한 10개월로 한정.  
 2. 한-미 FTA의 경우 발효 전후 통계추출기간이 협정발효일을 기준으로 15일의 편차가 있음.

/ <표 1> 분석대상물품 /

연번	상품군	HS(2단위)	분석대상(HS10단위)
1	화장품류	제33류	4개 품목
2	핸드백류	제42류	7개 품목
3	모피류	제43류	46개 품목
4	귀금속류	제71류	23개 품목
5	레저용품(모터사이클, 골프채)	제87류	4개 품목
		제95류	2개 품목



## II. EU 및 미국지역 고가명품 수입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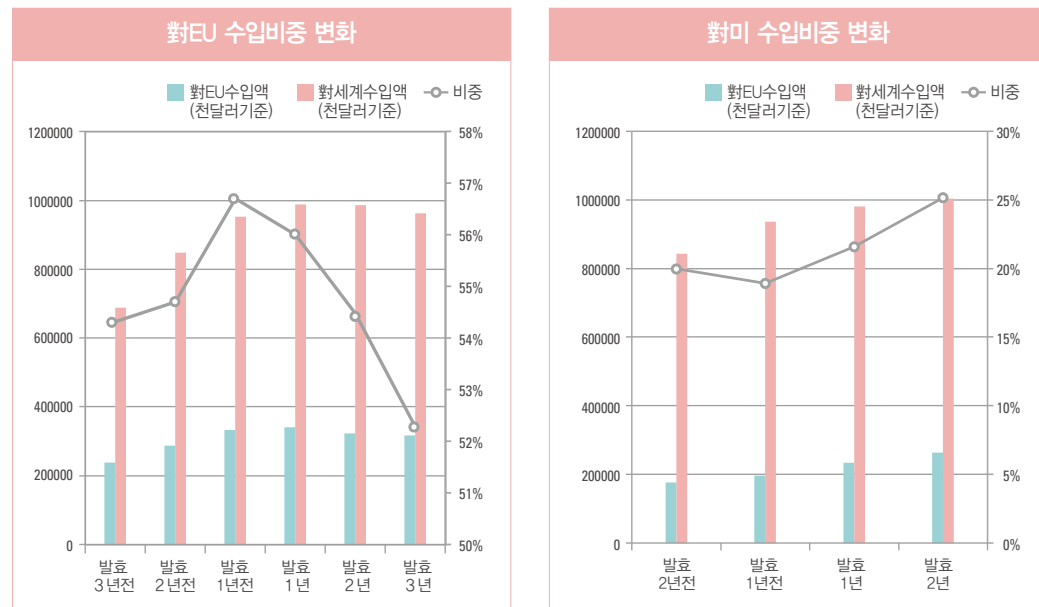
### 1. 화장품류

협정 발효 전후 화장품류의 수입비중은 한-EU FTA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한-미 FTA는 협정 발효 전에 비해 협정 발효 후 4% 높아진 것으로 분석

화장품류의 경우 EU지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은 협정 발효 전후를 비교해볼 때 각각 55.2%와 54.2%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화장품류의 실수요자인 여성들이 선호하는 대표적 브랜드들이 EU지역 국가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EU에 비해서는 낮은 비중을 차지하나 협정 발효 전 19.4%에서 협정 발효 후 23.4%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한-미 FTA발효 이후 대미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1> 화장품류 수입비중 변화 추이 /



품목을 기준으로 볼 때 특히 향수에 대한 EU지역 수입편중도가 협정 발효 전후 각 3년간 모두 80%를 상회하고 있으며, 립스틱 또한 50% 이상 EU 지역에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미국은 화장품류 중 기초화장품의 수입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다른 품목들이 10~20% 정도의 수입비중을 나타낸 반면 기초 화장품류의 경우 협정 발효 전 29.8%에서 협정 발효 후 38.0%로 한-미 FTA발효 이후 미국으로부터 기초화장품의 수입이 집중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표 3> 對세계 화장품류 수입비중 /

(단위: %)

품명 (HS코드)		발효전			기간 평균	발효후			기간 평균
		3년전	2년전	1년전		1년차	2년차	3년차	
향수 (3303.00-1000)	EU	90.1	88.9	86.4	88.5	87.3	82.5	75.3	81.7
	미국	-	12.4	10.5	11.4	13.2	16.4	-	14.8
립스틱 (3304.10-1000)	EU	48.0	50.2	59.0	52.4	53.9	56.3	55.5	55.2
	미국	-	15.1	12.8	13.9	14.8	16.4	-	15.6
기초화장용제품 (3304.99-1000)	EU	40.2	37.8	41.2	39.7	38.5	33.9	35.6	36.0
	미국	-	29.5	30.1	29.8	35.7	40.4	-	38.0
메이크업용제품 (3304.99-2000)	EU	39.0	41.9	40.2	40.4	44.2	45.2	42.8	44.1
	미국	-	22.9	22.2	22.5	22.5	27.4	-	25.0
소계평균	EU	54.3	54.7	56.7	55.2	56.0	54.5	52.3	54.2
	미국	-	20.0	18.9	19.4	21.6	25.1	-	23.4

자료: 관세청 및 한국무역협회

## 2. 핸드백류

핸드백류의 수입비중은 협정 발효 전후 한-EU FTA는 15.5% 높아진 반면, 한-미 FTA는 협정 발효 전에 비해 협정 발효 후 0.5% 낮아진 것으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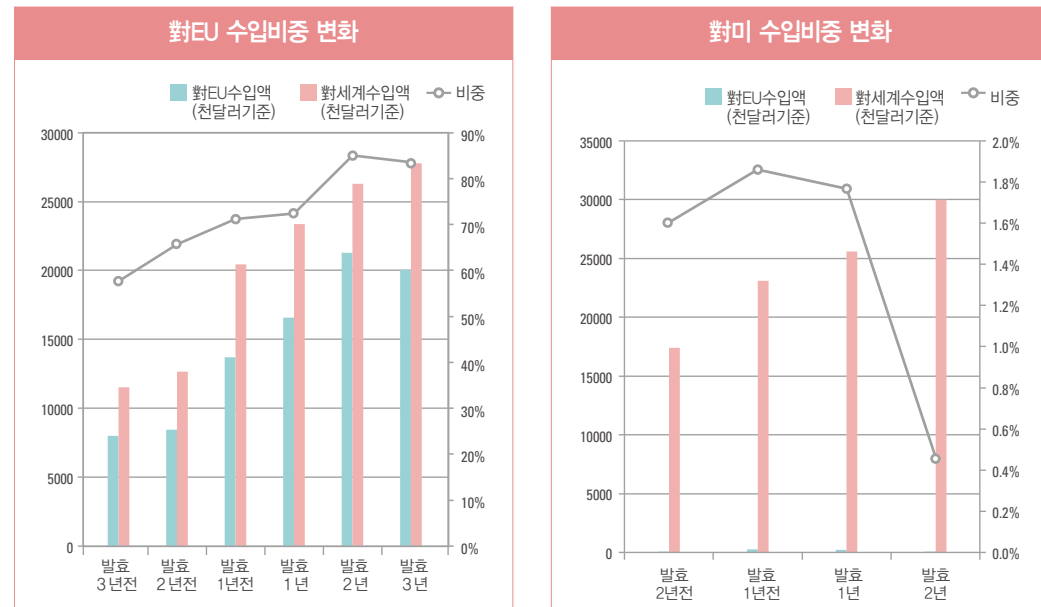
핸드백류의 경우 EU지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은 매우 높은 편인데 협정 발효 전의 경우 64.9%에서 협정 발효 후 80.4%로 한-EU FTA발효 이후 수입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연도별 수입비중의 변화에서도 협정 발효 전 3년간을 기준으로 볼 때 최고 71.2%이던 것이 협정 발효 후에는 최소 72.5%이상이 EU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화장품류

와 같이 실수요자인 여성들이 선호하는 대표적 브랜드들이 EU지역 국가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으로부터의 핸드백류 수입비중은 협정 발효 전후 모두 2%이하의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어 한-미 FTA발효가 미국산 핸드백 수입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는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그림 2> 핸드백류 수입비중 변화 추이 /



품목을 기준으로 볼 때 콤포지션레더제의 핸드백 80%대의 수입비중을 보이던 것이 협정 발효 후 을 제외한 전 품목에서 EU지역으로부터의 수입 90%이상이 EU지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것으 비중이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도마뱀가죽이나 로 조사되었다. 뱀가죽 등으로 만든 제품의 경우 협정 발효 전에는

/ <표 4> 對세계 핸드백류 수입비중 /

(단위: %)

품명 (HS코드)		발효전			기간 평균	발효후			기간 평균
		3년전	2년전	1년전		1년차	2년차	3년차	
뱀가죽 (4202.12-1010)	EU	73.1	84.9	95.9	84.6	95.7	92.4	90.1	92.7
	미국	-	1.7	2.2	1.9	2.5	0.0	-	1.2
도마뱀가죽 (4202.21-1020)	EU	87.2	76.5	91.3	85.0	98.1	100.0	97.7	98.6
	미국	-	0.2	0.0	0.1	0.4	0.0	-	0.2
악어가죽 (4202.21-1030)	EU	88.2	84.4	79.1	83.9	78.3	80.7	70.9	76.6
	미국	-	0.2	0.9	0.5	0.1	0.1	-	0.1
장어류가죽 (4202.21-1040)	EU	100.0	66.7	40.0	68.9	50.0	80.0	100.0	76.7
	미국	-	0.0	0.0	0.0	0.0	0.0	-	0.0
캥거루가죽 (4202.21-1050)	EU	18.7	100.0	100.0	72.9	100.0	83.3	100.0	94.4
	미국	-	0.0	0.0	0.0	0.0	0.0	-	0.0
콤포지션레더 (4202.21-2000)	EU	11.4	16.5	40.0	22.7	24.7	30.1	46.8	33.9
	미국	-	0.5	0.7	0.6	0.9	0.2	-	0.5
레이턴트레더 (4202.21-3000)	EU	25.3	31.5	52.0	36.3	60.5	62.1	79.7	67.4
	미국	-	7.1	9.3	8.2	8.4	2.9	-	5.6
소계평균	EU	57.7	65.8	71.2	64.9	72.5	85.0	83.6	80.4
	미국	-	1.6	1.9	1.7	1.8	0.5	-	1.2

자료: 관세청 및 한국무역협회

### 3. 모피류(생모피·모피·모피의류 등)

생모피의 수입비중은 협정 발효 전후 한-EU FTA는 5.7% 높아졌으며, 한-미 FTA는 협정 발효 전에 비해 협정 발효 후 29.3%나 높아진 것으로 분석

모피는 특성상 가공되지 않은 상태의 '생모피'와 이를 가공하여 모피의류 등을 만들기 직전단계로 가공한 '모피', 그리고 이를 다시 재단 및 봉제공정 등을 거쳐 만든 '모피의류(부분품)'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용된 동물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가공단계를 불문하고 이들 모두가 고가라는 특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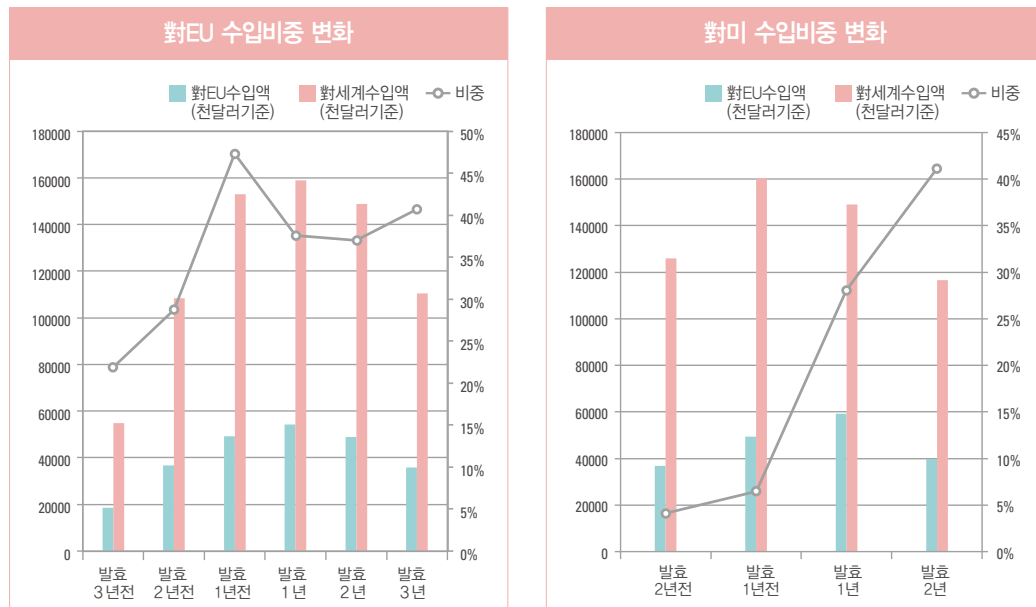
생모피의 경우 EU와 미국지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FTA발효 이후 각각 38.4%와 34.6%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미국의 경우

협정 발효 전 2년과 협정 발효 후 2년을 비교하였을 때 협정 발효 전 5.3%에서 협정 발효 후 34.6%로 수입비중이 급격히 높아졌다.

이는 한-미 FTA의 발효로 인한 특혜관세혜택 등으로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품목별로 보면 EU로부터는 여우와 라쿤의 수입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협정 발효 전후의 수입 비중에서는 큰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 <그림 3> 생모피 수입비중 변화 추이 /



미국의 경우에는 사향뒤쥐와 코요테 및 오파섬의 수입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이들 품목의 경우 협정 발효 전에는 거의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협정 발효 후 급격히 수입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한-미 FTA협정의 발효가 이들 품목의 對미수입을 견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 <표 5> 對세계 생모피 수입비중 /

(단위: %)

품명 (HS코드)		발효전			기간 평균	발효후			기간 평균
		3년전	2년전	1년전		1년차	2년차	3년차	
밍크 (4301.10-0000)	EU	34.7	33.0	30.9	32.9	33.2	30.8	28.2	30.7
	미국	-	30.6	32.4	31.5	41.5	37.3	-	39.4
여우 (4301.60-0000)	EU	0.0	83.5	91.4	58.3	84.6	95.7	95.5	91.9
	미국	-	0.6	0.0	0.3	1.3	0.4	-	0.9
오파섬 (4301.80-2000)	EU	0.0	0.0	0.0	0.0	0.0	0.0	0.0	0.0
	미국	-	0.0	0.0	0.0	0.0	80.0	-	40.0
라쿤 (4301.80-3000)	EU	100.0	86.0	96.5	94.2	100.0	95.4	97.8	97.7
	미국	-	0.2	0.0	0.1	12.4	2.2	-	7.3
코요테 (4301.80-4000)	EU	0.0	0.0	0.0	0.0	0.0	0.0	0.0	0.0
	미국	-	0.0	0.0	0.0	55.6	24.6	-	40.1
사향뒤쥐 (4301.80-6000)	EU	0.0	0.0	0.0	0.0	0.0	0.0	0.0	0.0
	미국	-	1.4	0.0	0.7	55.3	100.0	-	77.7
기타 (4301.80-9000)	EU	18.6	27.5	12.3	19.5	7.6	0.0	4.2	4.0
	미국	-	0.0	0.0	0.0	2.0	52.4	-	27.2
모피조각 (4301.90-0000)	EU	0.0	0.0	100.0	33.3	0.0	0.0	100.0	33.3
	미국	-	0.0	0.0	0.0	0.0	2.0	-	1.0
소계평균	EU	21.9	28.8	47.3	32.7	37.6	37.0	40.7	38.4
	미국	-	4.1	6.5	5.3	28.0	41.1	-	34.6

주: 조사대상 10개 세번 중 협정발효전후 수입비중이 두 협정 모두 0인 물품은 제외.  
자료: 관세청 및 한국무역협회

**모피의 수입비중은 협정 발효 전후 한-EU FTA는 8.4% 높아졌으며, 한-미 FTA는 협정 발효 전에 비해 협정 발효 후 3.2% 높아진 것으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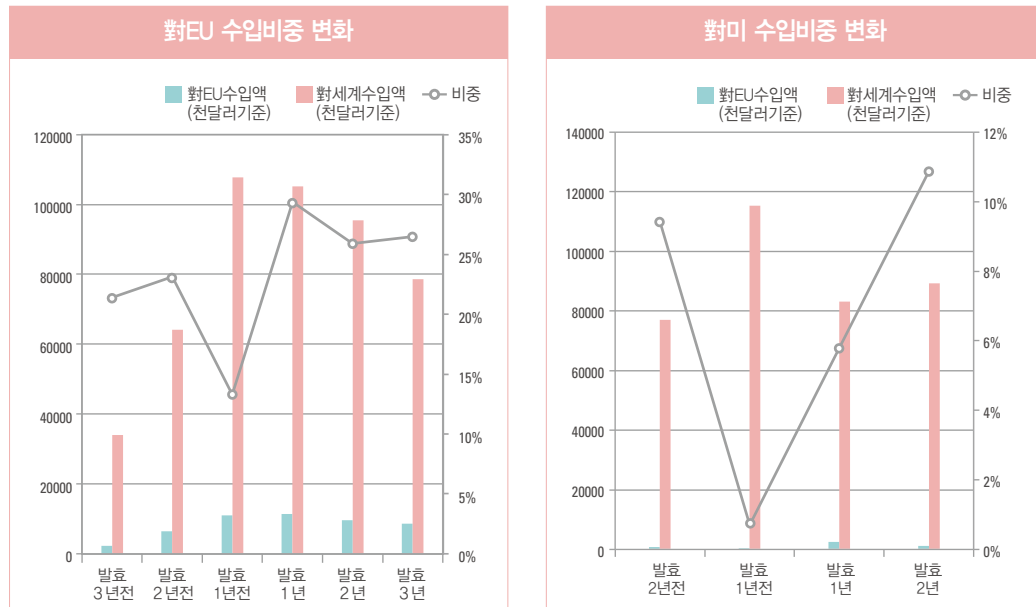
모피는 협정 발효 이후 EU와 미국지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각각 28.5%와 8.3%로 EU지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정 발효 전후 수입비중의 변화는 EU와 미국 모두 협정 발효 전에 비해 협정 발효 후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는데, 증가율에 있어서도 EU는 협정 발효 전 3년간의 평균이 20.1%에서 협정 발효 후 3년간 28.5%로 높아져 5.8%에서 8.3%로 불과

2.5% 높아진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 비중을 나타내었다.

품목별로 보면 EU로부터는 친칠라(전신), 여우(전신)와 코요테(전신)의 수입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협정 발효 전후의 수입비중에서는 여우(전신)의 경우 협정 발효 전 36.5%에서 협정 발효 후 48.3%로 19.8% 높아진 반면 코요테(전신)는 협정 발효 전 1.6%에 불과하던 것이 협정 발효 후 57.9%로 56.3%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림 4> 모피 수입비중 변화 추이 /



전신 상태의 것이 아닌 부분으로 거래되는 모피의 경우에도 여우(부분)와 코요테(부분)는 수입비중이 협정 발효 후 급격히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는데, 여우(부분)의 경우 협정 발효 전후 수입비중이 26.4% 높아졌고, 코요테(부분)는 86.4%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한-EU FTA의 발효가 모피의 대EU 수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오파섬(전신)과 밍크(전신)의 수입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이들 품목의 경우 협정 발효 전에는 거의 수입이 편중되어 있지 않다가 협정이 발효되고 난 이후 급격히 수입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EU와 마찬가지로 한-미 FTA협정의 발효가 이들 품목의 대미수입을 견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표 6> 對세계 모피 수입비중 /

(단위: %)

품명 (HS코드)	발효전	3년전	2년전	1년전	기간 평균	발효후			기간 평균
						1년차	2년차	3년차	
밍크(전신) (4302.11-0000)	EU	14.4	15.6	26.5	18.8	32.3	20.2	28.8	27.1
	미국	-	7.0	0.0	3.5	34.8	9.3	-	22.0
비버(전신) (4302.19-1000)	EU	11.1	42.9	0.0	27.0	0.0	0.0	15.4	5.1
	미국	-	0.0	0.0	0.0	0.0	0.0	-	0.0
사향뒤쥐(전신) (4302.19-2000)	EU	90.9	100.0	14.3	68.4	0.0	0.0	21.7	7.2
	미국	-	0.0	0.0	0.0	0.0	33.3	-	16.7
여우(전신) (4302.19-3000)	EU	31.6	49.8	28.3	36.5	59.0	26.8	59.0	48.3
	미국	-	2.3	0.6	1.5	0.3	8.4	-	4.3
친칠라(전신) (4302.19-5000)	EU	9.2	100.0	93.9	67.7	81.6	100.0	0.0	60.5
	미국	-	0.0	0.0	0.0	0.0	0.0	-	0.0
오파섬(전신) (4302.19-6000)	EU	0.0	0.0	0.0	0.0	0.0	0.0	0.0	0.0
	미국	-	0.0	0.0	0.0	0.0	100.0	-	50.0
라쿤(전신) (4302.19-7000)	EU	4.5	1.6	0.3	2.1	7.6	8.2	8.9	8.2
	미국	-	0.2	0.1	0.2	0.0	0.2	-	0.1



품명 (HS코드)		발효전			기간 평균	발효후			기간 평균
		3년전	2년전	1년전		1년차	2년차	3년차	
코요테(전신) (4302.19-8000)	EU	0.0	0.0	4.9	1.6	94.4	46.6	30.9	57.3
	미국	-	60.0	0.0	30.0	0.1	21.4	-	10.7
밍크(부분) (4302.20-1000)	EU	26.5	10.5	14.5	17.2	7.7	13.6	15.1	12.1
	미국	-	0.0	0.0	0.0	0.0	0.3	-	0.1
토끼(부분) (4302.20-2000)	EU	0.0	0.0	1.3	0.4	7.6	0.0	0.8	2.8
	미국	-	0.0	0.0	0.0	0.0	0.0	-	0.0
비버(부분) (4302.20-3000)	EU	100.0	0.0	0.0	33.3	0.0	0.0	0.0	0.0
	미국	-	0.0	0.0	0.0	0.0	0.0	-	0.0
사향뒤쥐(부분) (4302.20-4000)	EU	0.0	43.9	0.2	14.7	0.0	0.0	0.0	0.0
	미국	-	0.0	0.0	0.0	0.0	0.0	-	0.0
여우(부분) (4302.20-5000)	EU	6.8	19.8	4.6	10.4	20.0	57.8	32.6	36.8
	미국	-	0.0	3.1	1.5	5.0	0.8	-	2.9
친칠라(부분) (4302.20-7000)	EU	0.0	0.0	0.0	0.0	0.0	0.0	100.0	33.3
	미국	-	0.0	0.0	0.0	0.0	0.0	-	0.0
라쿤(부분) (4302.20-9020)	EU	0.0	0.0	1.3	0.4	0.2	7.4	0.0	2.5
	미국	-	0.0	6.0	3.0	0.0	0.0	-	0.0
코요테(부분) (4302.20-9030)	EU	0.0	0.0	0.0	0.0	61.1	98.1	100.0	86.4
	미국	-	100.0	0.0	50.0	29.3	0.0	-	14.6
조각 및 절단품 (4302.30-0000)	EU	4.6	9.6	9.7	8.0	10.2	9.5	10.3	10.0
	미국	-	0.0	0.0	0.0	0.0	0.0	-	0.0
소계평균	EU	22.7	24.0	13.6	20.1	31.0	27.1	27.5	28.5
	미국	-	9.4	0.7	5.1	5.8	10.9	-	8.3

주: 조사대상 18개 세번 중 협정발효전후 수입비중이 두 협정 모두 0인 물품은 제외.  
자료: 관세청 및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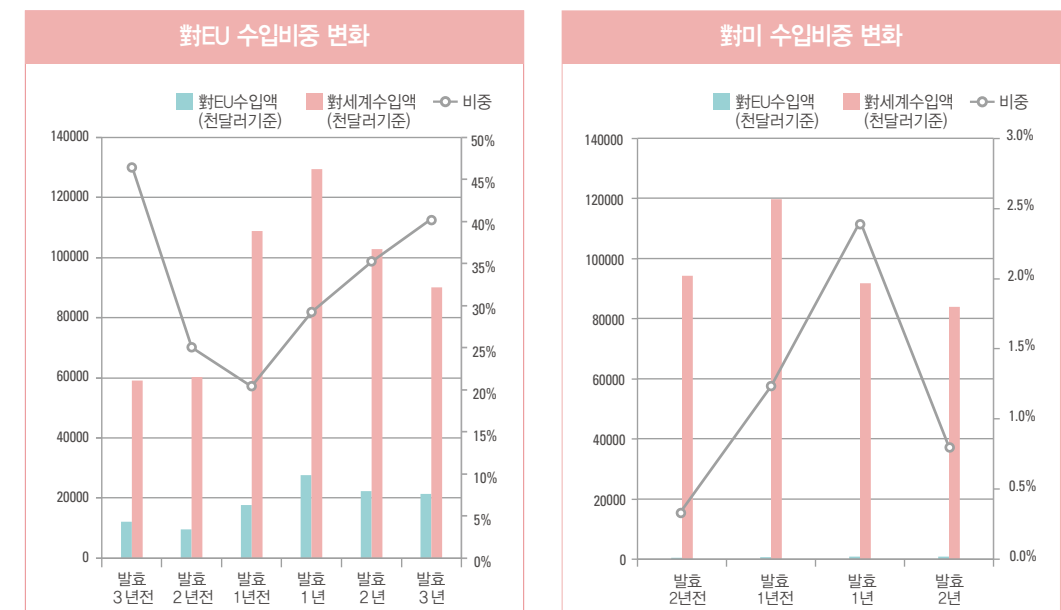
모피의류의 수입비중은 협정 발효 전후 한-EU FTA는 4.2% 높아졌으며, 한-미 FTA는 협정 발효 전에 비해 협정 발효 후 0.8% 높아진 것으로 분석

모피의류의 경우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은 협정 발효 후 1.6%에 불과한 반면 EU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34.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협정 발효 전후를 비교해 보아도 미국은 협정 발효 전 0.8%에서 협정 발효 후 1.6%로 불과 0.8% 높아진 하였으나 매우 낮은 수입비중을 보이고 있는 반면, EU는 협정 발효 전 30.7%이던 것이 협정 발효 후 34.9%로 4.2% 높아져 우리나라 소비자의 EU산 모피 의류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품목별로 구분해 보면 EU로부터는 오파섬(의류), 친칠라(의류)와 어린 양(의류)의 수입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협정 발효 전후의 수입비중에서는 오파섬(의류)의 경우 협정 발효 전 33.3%에서 협정 발효 후 98.6%로 약 3배 가까이 높아진 반면 친칠라(의류)와 어린 양(의류)은 협정 발효 전후 수입비중이 거의 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림 5> 모피의류 수입비중 변화 추이 /



/ <표 7> 對세계 모피의류(부분품 포함) 수입비중 /

(단위: %)

품명 (HS코드)		발효전			기간 평균	발효후			기간 평균
		3년전	2년전	1년전		1년차	2년차	3년차	
밍크(의류) (4303.10-1100)	EU	16.1	14.3	17.4	15.9	24.6	27.2	32.5	28.1
	미국	-	0.4	0.2	0.3	0.4	0.8	-	0.6
토끼(의류) (4303.10-1200)	EU	7.4	5.7	7.2	6.8	5.9	6.2	5.3	5.8
	미국	-	0.0	0.0	0.0	0.0	0.2	-	0.1
어린 양(의류) (4303.10-1300)	EU	57.6	38.6	39.4	45.2	47.5	47.5	53.2	49.4
	미국	-	0.1	3.0	1.5	4.2	3.5	-	3.8
비버(의류) (4303.10-1400)	EU	0.0	0.0	1.6	0.5	29.4	40.9	53.4	41.2
	미국	-	0.0	0.0	0.0	0.0	0.0	-	0.0
사향뒤쥐(의류) (4303.10-1500)	EU	54.3	17.2	46.2	39.2	1.8	10.6	3.0	5.1
	미국	-	0.0	2.5	1.3	11.3	0.0	-	5.7
여우(의류) (4303.10-1600)	EU	59.0	15.3	12.0	28.8	21.7	33.5	37.7	31.0
	미국	-	0.1	1.2	0.7	2.5	0.8	-	1.7
친칠라(의류) (4303.10-1800)	EU	91.4	34.9	53.8	60.0	58.2	58.4	67.4	61.3
	미국	-	0.0	1.2	0.6	16.5	2.1	-	9.3
오파섬(의류) (4303.10-1910)	EU	0.0	100.0	0.0	33.3	95.7	100.0	100.0	98.6
	미국	-	-	0.0	0.0	0.0	0.0	-	0.0
라쿤(의류) (4303.10-1920)	EU	33.8	13.1	5.5	17.5	10.1	16.0	29.4	18.5
	미국	-	1.5	1.0	1.3	1.0	0.0	-	0.5
코요테(의류) (4303.10-1930)	EU	100.0	0.0	0.3	33.4	22.4	11.4	84.4	39.4
	미국	-	0.0	0.0	0.0	0.2	0.7	-	0.5

품명 (HS코드)		발효전			기간 평균	발효후			기간 평균
		3년전	2년전	1년전		1년차	2년차	3년차	
기타(의류) (4303.10-1990)	EU	80.3	83.3	69.7	77.8	73.5	67.0	73.2	71.2
	미국	-	2.9	2.5	2.7	4.1	2.5	-	3.3
밍크(부분품) (4303.10-2100)	EU	5.8	3.7	6.1	5.2	6.5	4.3	3.7	4.8
	미국	-	0.0	0.1	0.0	0.3	0.8	-	0.6
토끼(부분품) (4303.10-2200)	EU	5.8	1.4	1.1	2.8	1.6	7.6	5.7	5.0
	미국	-	0.7	0.0	0.4	0.1	0.0	-	0.1
어린 양(부분품) (4303.10-2300)	EU	70.8	4.7	23.8	33.1	12.5	11.4	15.2	13.0
	미국	-	0.0	8.3	4.2	1.1	0.0	-	0.6
비버(부분품) (4303.10-2400)	EU	33.3	0.0	0.0	11.1	0.0	90.0	85.7	58.6
	미국	-	0.0	-	0.0	0.0	0.0	-	0.0
사향뒤쥐(부분품) (4303.10-2500)	EU	67.3	0.0	0.0	22.4	0.0	0.0	0.0	0.0
	미국	-	0.0	0.0	0.0	0.0	1.7	-	0.8
여우(부분품) (4303.10-2600)	EU	24.5	12.8	18.5	18.6	21.4	26.0	36.4	27.9
	미국	-	0.1	0.9	0.5	1.5	1.3	-	1.4
친칠라(부분품) (4303.10-2800)	EU	86.7	80.8	44.8	70.7	64.2	71.1	39.5	58.3
	미국	-	0.0	0.0	0.0	0.0	0.0	-	0.0
소계평균	EU	46.7	25.1	20.4	30.7	29.2	35.2	40.3	34.9
	미국	-	0.4	1.2	0.8	2.4	0.8	-	1.6

주: 조사대상 18개 세번 중 협정발효전후 수입비중이 두 협정 모두 0인 물품은 제외.  
자료: 관세청 및 한국무역협회

4. 귀금속 및 장식품(귀석·신변장식품 등)

다이아몬드의 수입비중은 협정 발효 전후 한-EU FTA는 12.3% 낮아진 반면, 한-미 FTA는 협정 발효 전에 비해 협정 발효 후 1.7% 높아진 것으로 분석

대표적 귀금속으로 각광받는 다이아몬드의 경우 EU와 미국지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높지 않은 물품이다.

다이아몬드는 거래형태에 따라 원석과 기타로 구분되는데 EU로부터의 수입비중은 원석의 경우 협정 발효 전 29.2%에서 협정 발효 후 9.0%로 하락하였고 기타(가공된 것)의 경우 5.0%에서 0.5%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으로부터 원석의 수입비중은 한-미 FTA발효 1년차에 높게 나타남으로써 협정 발효 전후의 비교에서 수입비중이 7.9% 높아진 것으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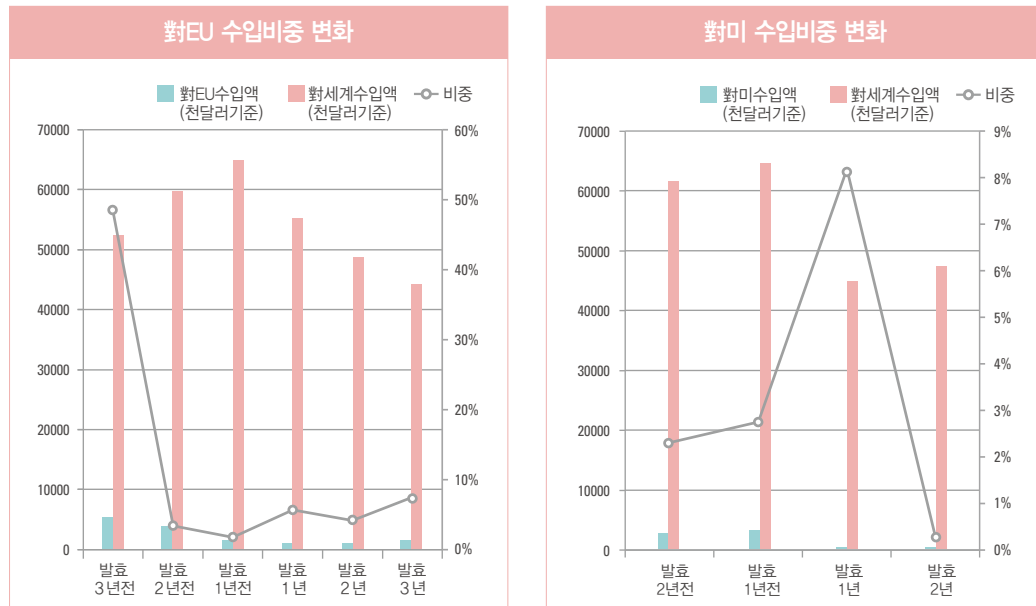
/ <표 8> 전세계 다이아몬드 수입비중 /

(단위: %)

품명 (HS코드)		발효전			기간 평균	발효후			기간 평균
		3년전	2년전	1년전		1년차	2년차	3년차	
원석 (7102.31-0000)	EU	86.7	0.0	0.9	29.2	9.7	6.3	11.0	9.0
	미국	-	0.0	0.0	0.0	15.8	0.0	-	7.9
기타 (7102.39-0000)	EU	11.1	6.8	2.4	6.8	1.7	2.1	3.5	2.4
	미국	-	4.6	5.5	5.0	0.5	0.6	-	0.5
소계평균	EU	48.9	3.4	1.6	18.0	5.7	4.2	7.3	5.7
	미국	-	2.3	2.7	2.5	8.2	0.3	-	4.2

자료: 관세청 및 한국무역협회

/ <그림 6> 다이아몬드 수입비중 변화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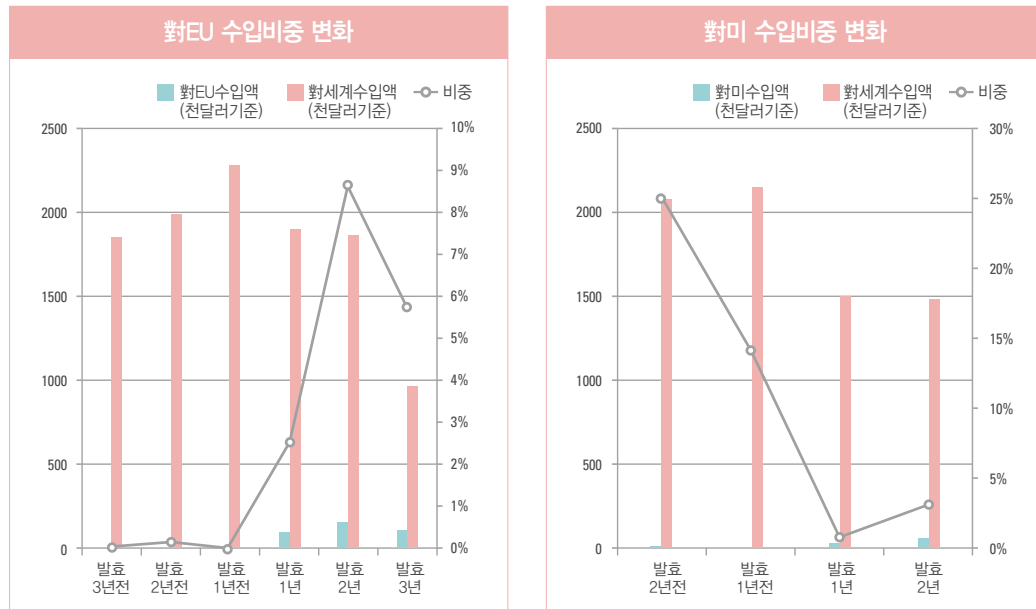


진주장식품의 수입비중은 협정발효 전후 한-EU FTA는 4.1% 높아진 반면, 한-미 FTA는 협정발효 전에 비해 협정발효 후 무려 17.9%나 낮아진 것으로 분석

진주나 진주장식품의 경우에도 EU와 미국지역 0.1%에 불과하였던데 반해 협정 발효 후에는 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 4.2%로 높아진 반면, 미국은 협정 발효 전 19.8% 되었는데, EU로부터의 수입비중은 협정 발효 전 17.9% 낮아졌다.



/ <그림 7> 진주장식품 수입비중 변화 추이 /



귀석과 반귀석의 수입비중은 협정 발효 전후 한-EU FTA와 한-미 FTA 모두 각각 -2.7%와 0.9% 낮아진 것으로 분석

다이아몬드와 진주를 제외한 귀석과 반귀석의 경우에도 EU와 미국지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은 높지 않은 편으로 EU와 미국 모두 수입비중이 협정 발효 전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였다. 전체적으로 귀석과 반귀석의 수입비중이 낮게 나타나는 가운데 옥수(玉髓)의 경우에는 EU 지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극히 높은 것이 특징으로, 협정 발효 전후의 비교에서는 수입비중이 일부 낮아지긴 하였으나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협정 발효 후 56.6%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U의 경우 협정 발효 전 11.3%이던 것이 협정 발효 후 8.6%로 2.7% 낮아졌으며 미국은 협정 발효 전 2.9%에서 협정 발효 후 2.0%로 0.9%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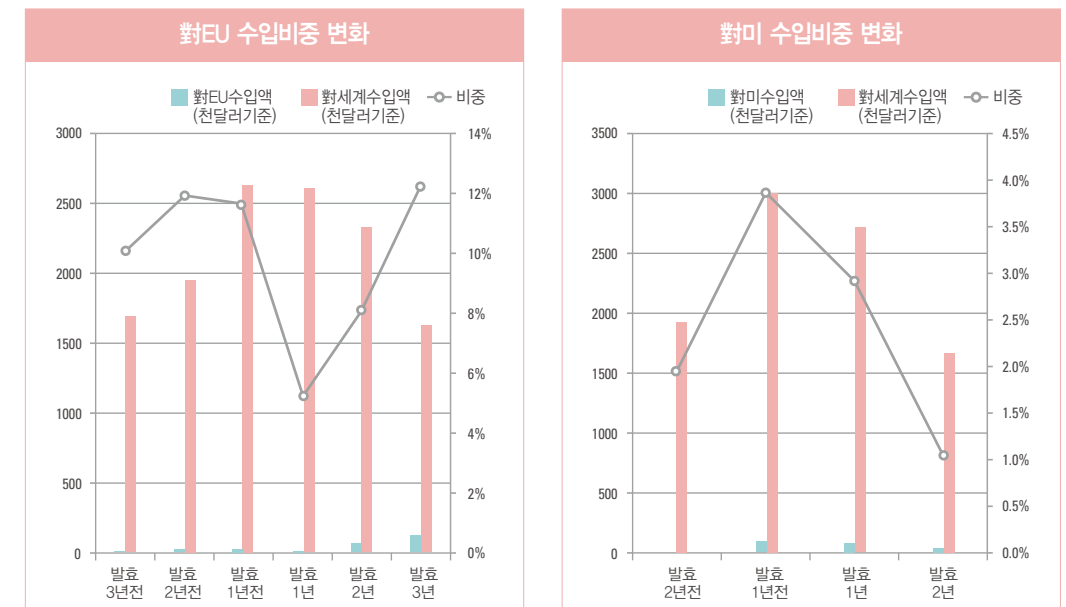
/ <표 9> 對세계 진주장식품 수입비중 /

(단위: %)

품명 (HS코드)	발효전	기간 평균	발효후			기간 평균			
			3년전	2년전	1년전		1년차	2년차	3년차
천연진주 (7116.10-1000)	EU	0.0	0.0	0.0	0.0	0.0	0.0	0.0	0.0
	미국	-	50.0	28.6	39.3	0.0	2.3	-	1.1
양식진주 (7116.10-2000)	EU	0.1	0.3	0.0	0.1	4.8	8.7	11.7	8.4
	미국	-	0.3	0.1	0.2	1.4	3.9	-	1.6
소계평균	EU	0.1	0.1	0.0	0.1	2.4	4.3	5.9	4.2
	미국	-	25.2	14.3	19.8	0.7	3.1	-	1.9

자료: 관세청 및 한국무역협회

/ <그림 8> 귀석과 반귀석 수입비중 변화 추이 /



/ <표 10> 對세계 귀석과 반귀석 수입비중 /

(단위: %)

품명 (HS코드)		발효전			기간 평균	발효후			기간 평균
		3년전	2년전	1년전		1년차	2년차	3년차	
원석 (7103.10-0000)	EU	0.3	0.0	1.0	0.4	0.1	5.4	0.7	2.1
	미국	-	0.0	9.5	4.7	13.1	5.7	-	9.4
사파이어 (7103.91-9010)	EU	0.0	0.0	0.0	0.0	0.0	4.3	25.8	10.0
	미국	-	0.5	0.4	0.4	0.7	2.3	-	1.5
오팔 (7103.99-9010)	EU	0.0	0.0	0.0	0.0	0.0	0.0	0.0	0.0
	미국	-	15.0	20.8	17.9	4.3	0.1	-	2.2
옥수 (7103.99-9030)	EU	80.0	96.2	92.3	89.5	43.8	55.6	70.6	56.6
	미국	-	0.0	0.0	0.0	0.0	0.0	-	0.0
소계평균	EU	10.2	12.0	11.7	11.3	5.5	8.2	12.1	8.6
	미국	-	2.0	3.9	2.9	2.9	1.1	-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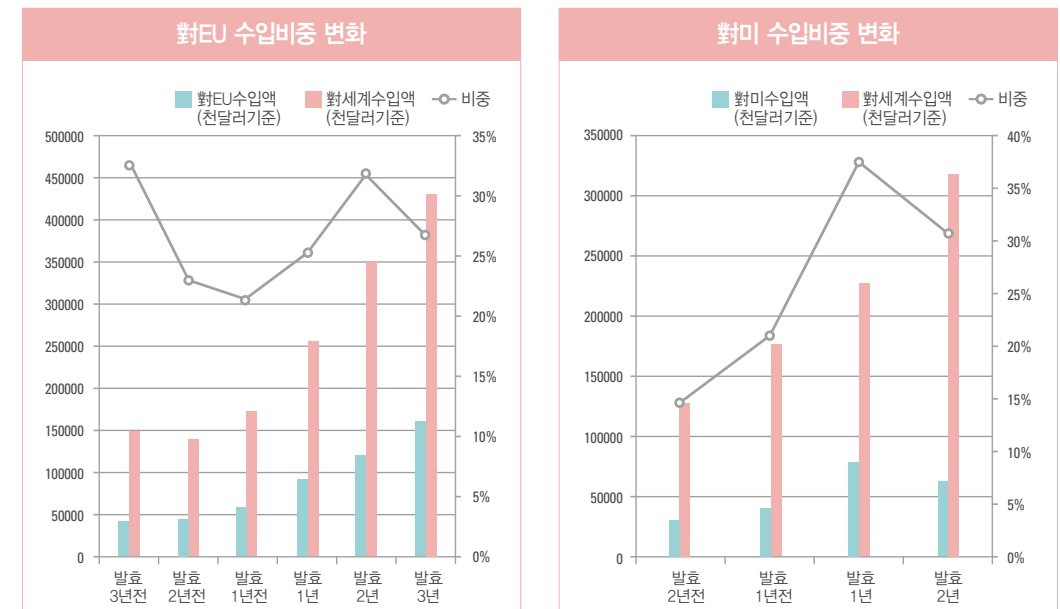
주: 조사대상 8개 세번 중 협정발효전후 수입비중이 두 협정 모두 0인 물품은 제외.  
자료: 관세청 및 한국무역협회

**신변장식용의 수입비중은 협정 발효 전후 한-EU FTA는 2.1% 높아진 반면,  
한-미 FTA는 협정 발효 전에 비해 협정 발효 후 무려 16.3% 높아진 것으로 분석**

다이아몬드나 귀석 및 반귀석 등 장식되지 않은 상태로 거래되는 물품들과 달리 신변장식용품의 경우 EU와 미국 모두 수입비중이 높게 나타났는데, EU의 경우 협정 발효 전 25.7%이던 것이 협정 발효 후 27.8%로 2.1% 높아졌고 미국은 협정 발효 전 17.8%이던 것이 협정 발효 후 34.1%로 16.3%나 높아졌다.

품목별로는 EU의 경우 금으로 만든 신변장식용품의 수입비중이 협정 발효 전 47.9%에서 협정 발효 후 60.1%로 높아졌으며, 미국은 금을 입힌 신변장식용품의 수입비중이 협정 발효 전 20.1%에서 협정 발효 후 67.8%로 급격히 높아졌다.

/ <그림 9> 신변장식용품 수입비중 변화 추이 /



/ <표 11> 對세계 신변장식용품(부분품 포함) 수입비중 /

(단위: %)

품명 (HS코드)		발효전			기간 평균	발효후			기간 평균
		3년전	2년전	1년전		1년차	2년차	3년차	
백금으로 만든 것 (7113.19-1000)	EU	23.6	32.2	33.5	29.8	30.9	21.5	37.6	30.0
	미국	-	59.5	56.0	57.7	89.3	54.9	-	72.1
금으로 만든 것 (7113.19-2000)	EU	42.1	48.9	52.7	47.9	59.9	60.8	59.5	60.1
	미국	-	8.3	9.3	8.8	9.0	5.4	-	7.2
백금을 입힌 것 (7113.20-1000)	EU	1.7	4.1	5.6	3.8	1.1	22.0	8.6	10.6
	미국	-	0.0	0.2	0.1	0.4	0.1	-	0.2
금을 입힌 것 (7113.20-2000)	EU	25.0	5.8	13.4	14.7	31.9	36.6	16.6	28.4
	미국	-	4.3	35.9	20.1	78.8	56.9	-	6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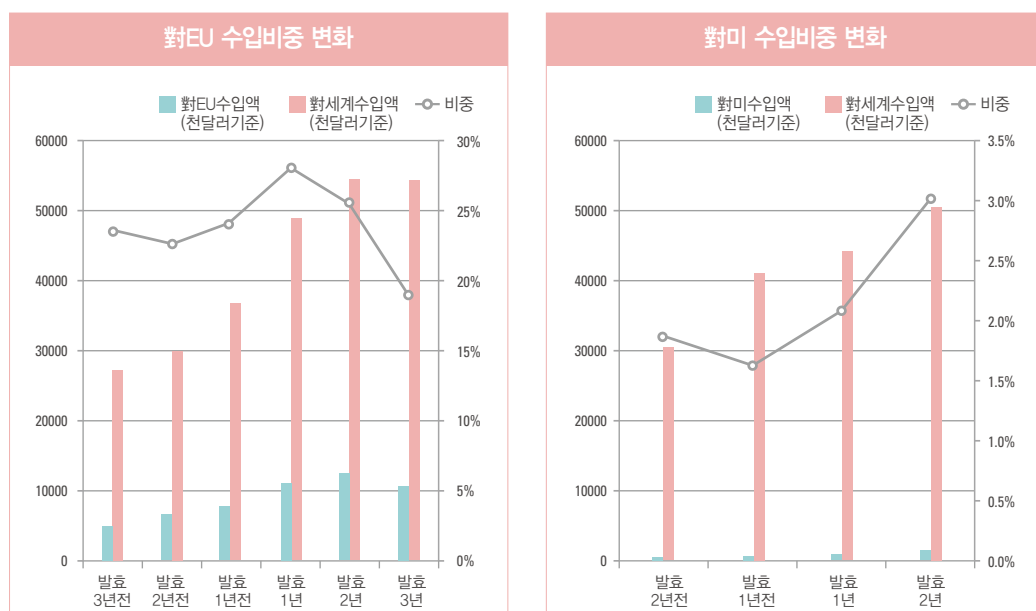


품명 (HS코드)		발효전			기간 평균	발효후			기간 평균
		3년전	2년전	1년전		1년차	2년차	3년차	
은을 입힌 것 (7113.20-3000)	EU	70.9	23.9	2.3	32.4	2.5	17.6	10.5	10.2
	미국	-	1.1	3.7	2.4	10.2	36.5	-	23.3
소계평균	EU	32.7	23.0	21.5	25.7	25.2	31.7	26.6	27.8
	미국	-	14.6	21.0	17.8	37.5	30.7	-	34.1

자료: 관세청 및 한국무역협회

모조신변장식용품의 수입비중은 협정 발효 전후 한-EU FTA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한-미 FTA는 협정 발효 전에 비해 협정 발효 후 0.8% 높아진 것으로 분석

/ <그림 10> 모조신변장식용품 수입비중 변화 추이 /



모조신변장식용품의 경우에는 EU와 미국으로 부터의 수입비중이 확연한 차이를 보였는데, EU 의 경우 협정 발효 전 23.5%이던 것이 협정 발효 후 24.3%로 1.8% 높아졌으며 미국은 협정 발효 전 1.7%이던 것이 협정 발효 후 2.5%로 0.8%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수입비중이 낮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

품목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EU로부터 수입되는 모조신변장식용품중 수입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브로치로 협정 발효 후 41.6%에 달했으며, 장식용 체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약 20%를 상회 하는 수입비중을 보인 반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전 품목에 걸쳐 1~3% 사이의 낮은 수준 의 수입비중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표 12> 對세계 모조신변장식용품 수입비중 /

(단위: %)

품명 (HS코드)		발효전			기간 평균	발효후			기간 평균
		3년전	2년전	1년전		1년차	2년차	3년차	
목걸이 (7117.19-1000)	EU	16.3	28.2	23.5	22.6	24.8	24.6	20.5	23.3
	미국	-	1.9	1.9	1.9	2.0	1.9	-	2.0
팔찌 (7117.19-2000)	EU	30.9	27.6	29.6	29.3	33.1	34.7	29.0	32.2
	미국	-	2.2	2.0	2.1	3.3	5.0	-	4.2
귀걸이 (7117.19-3000)	EU	20.5	25.3	23.2	23.0	25.2	26.1	24.6	25.3
	미국	-	2.0	1.5	1.7	1.6	1.3	-	1.4
브로치 (7117.19-4000)	EU	30.0	34.7	36.1	33.6	53.9	45.8	25.2	41.6
	미국	-	1.5	1.1	1.3	0.9	2.1	-	1.5
반지 (7117.19-5000)	EU	28.7	11.0	17.9	19.2	22.0	17.9	14.4	18.1
	미국	-	1.6	2.0	1.8	4.6	7.4	-	6.0
장식용 체인 (7117.19-6000)	EU	15.6	9.2	14.5	13.1	10.0	4.5	0.9	5.1
	미국	-	2.0	1.3	1.7	0.1	0.4	-	0.3
소계평균	EU	23.7	22.7	24.1	23.5	28.2	25.6	19.1	24.3
	미국	-	1.9	1.6	1.7	2.1	3.0	-	2.5

자료: 관세청 및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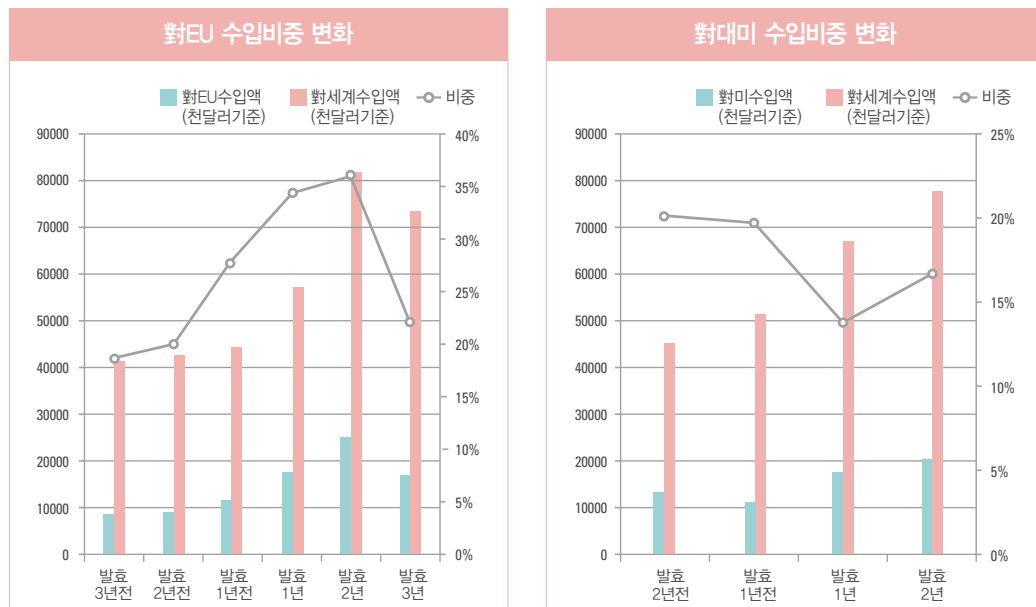
### 5. 레저용품(모터사이클 및 골프클럽)

모터사이클의 수입비중은 협정 발효 전후 한-EU FTA는 8.5% 높아진 반면, 한-미 FTA는 협정 발효 전에 비해 협정 발효 후 4.7% 낮아진 것으로 분석

대표적 고가 레저용품인 모터사이클의 경우 EU와 미국지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는데, EU의 경우 협정 발효 전 22.2%이던 것이 협정 발효 후 30.7%로 8.5% 높아진 반면 미국은 협정 발효 전 19.9%에서 협정 발효 후 15.2%로 4.7%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입비중만을 기준으로 주로 수입되는 품목을 확인해 보면 EU지역으로부터는 엔진용량이 500cc~800cc급의 모터사이클에 대한 수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미국지역으로부터는 800cc이상의 대형 모터사이클의 수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그림 11> 모터사이클 수입비중 변화 추이 /



/ <표 13> 對세계 모터사이클 수입비중 /

(단위: %)

품명 (HS코드)		발효전			기간 평균	발효후			기간 평균
		3년전	2년전	1년전		1년차	2년차	3년차	
모터사이클 (8711.30-1000)	EU	10.6	6.0	17.1	11.2	37.0	46.1	19.4	34.1
	미국	-	1.3	0.6	0.9	0.2	0.1	-	0.2
모터사이클 (8711.40-1000)	EU	36.0	42.1	57.9	45.3	49.2	62.5	37.9	49.9
	미국	-	2.0	0.6	1.3	0.2	0.7	-	0.4
모터사이클 (8711.50-1000)	EU	27.6	28.7	36.3	30.9	43.0	34.8	30.5	36.1
	미국	-	53.6	38.3	46.0	52.8	50.8	-	51.8
모터사이클 (8711.90-1000)	EU	0.3	3.3	1.1	1.6	8.4	0.0	0.0	2.8
	미국	-	23.4	39.4	31.4	1.6	15.4	-	8.5
소계평균	EU	18.6	20.0	28.1	22.2	34.4	35.9	22.0	30.7
	미국	-	20.1	19.7	19.9	13.7	16.8	-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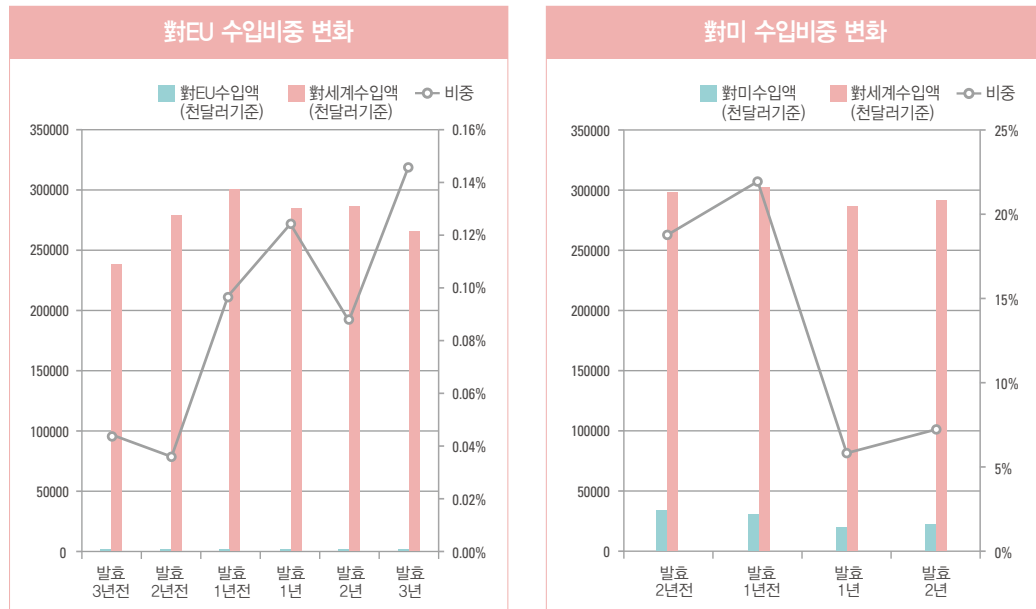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및 한국무역협회

골프클럽의 수입비중은 협정 발효 전후 한-EU FTA는 협정 발효 전과 같이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협정 발효 전 20.4%로 높은 수준의 수입비중을 보이던 한-미 FTA의 경우 협정 발효 후 13.9%나 낮아진 것으로 분석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골프클럽의 경우 FTA의 발효에도 불구하고 미국 및 EU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EU의 경우 협정 발효 전 8.9%이던 것이 협정발효 후 7.6%로 1.3% 낮아졌으며 미국은 협정발효 전 20.4%에서 협정 발효 후 6.5%로 13.9% 낮아졌다.

두 지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을 비교해 보았을 때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EU로부터의 수입 비중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우리나라 소비자가 선호하는 스포츠브랜드가 EU에 비해 미국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그림 12> 골프클럽 수입비중 변화 추이 /



/ <표 14> 對세계 골프클럽 수입비중 /

(단위: %)

품명 (HS코드)	발효전	기간 평균			발효후			기간 평균	
		3년전	2년전	1년전	1년차	2년차	3년차		
골프클럽(완성품) (9506.31-0000)	EU	0.0	0.0	0.0	0.0	0.1	0.1	0.2	0.1
	미국	-	10.2	7.7	8.9	7.3	8.0	-	7.6
골프클럽(부분품) (9506.39-1000)	EU	0.1	0.1	0.2	0.1	0.1	0.1	0.1	0.1
	미국	-	27.3	36.2	31.8	4.4	6.4	-	5.4
소계평균	EU	0.0	0.0	0.1	0.0	0.1	0.1	0.1	0.0
	미국	-	18.8	21.9	20.4	5.8	7.2	-	6.5

자료: 관세청 및 한국무역협회

### III. EU 및 미국지역 고가명품 수입액 변화

#### 1. 화장품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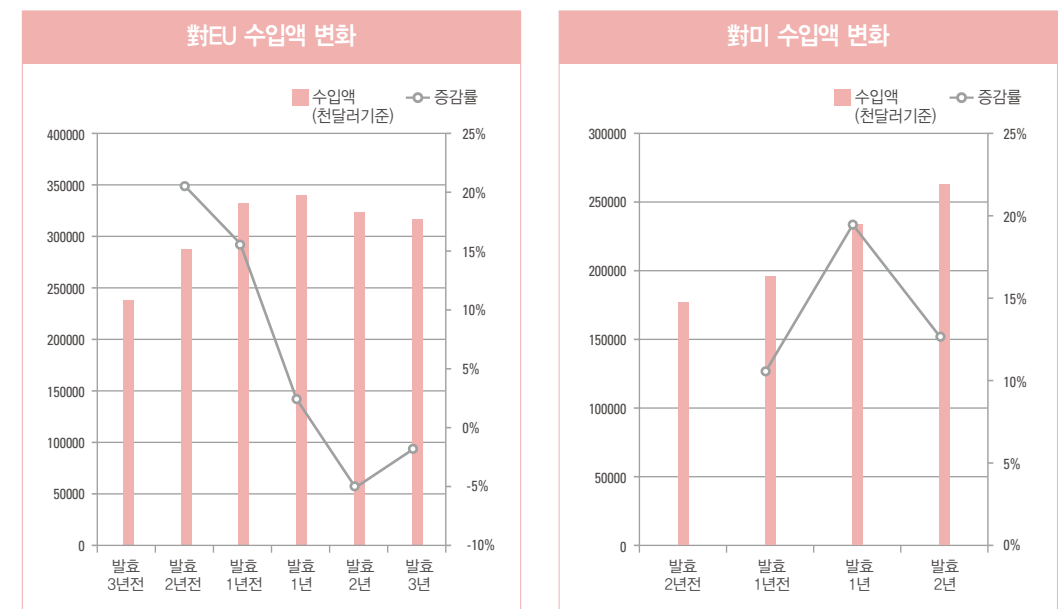
화장품류의 경우 FTA발효에 따른 관세인하혜택은 한-EU FTA의 경우 기초화장품 제품류를 제외하고는 4년간 균등 철폐되게 되어 있어 현재 최혜국대우세율(MFN)에 비해 6% 낮은 2%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한-미 FTA의 경우에도 기초화장품류를 제외하고는 3년간 균등 철폐되게 되어 있어 최혜국대우세율(MFN)에 비해 5.4% 낮은 2.6%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로 인해 두 지역으로부터의 화장품류 수입은 FTA발효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EU지역으로부터의 화장품류 수입금액은 협정 발효 전후

를 비교해볼 때 협정 발효 전 3년간에 비해 협정 발효 후 3년간 평균수입금액이 14.2% 증가하였고, 미국의 경우 협정 발효 전 2년간에 비해 협정 발효 후 2년간 무려 33.2%의 수입증가가 이루어졌다.

이를 품목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EU의 경우 분석 대상인 4개 상품군의 협정 발효 후 3년간의 평균 수입금액이 고루 증가하였으나 립스틱은 협정 발효 직후부터 3년간 수입액의 감소 없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4개 상품군 모두 협정 발효 직후부터 2년간 수입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림 13> 화장품류 수입액 변화 추이 /



/ <표 15> 화장품류 수입액 변화 /

(단위: 천달러, %)

품명 (HS코드)		발효전			기간 평균	발효후			기간 평균
		3년전	2년전	1년전		1년차	2년차	3년차	
향수 (3303.00-1000)	EU	59,974 (-)	73,523 (22.6)	77,100 (4.9)	70,199 (13.7)	86,504 (12.2)	91,203 (5.4)	86,838 (-4.8)	88,182 (4.3)
	미국	-	10,077 (-)	10,585 (5.0)	10,331 (5.0)	14,059 (32.8)	18,807 (33.8)	-	16,433 (33.3)
립스틱 (3304.10-1000)	EU	9,184 (-)	10,886 (18.5)	15,193 (39.6)	11,754 (29.0)	13,689 (-9.9)	15,576 (13.8)	17,317 (11.2)	15,527 (5.0)
	미국	-	3,432 (-)	3,342 (-2.6)	3,387 (-2.6)	3,930 (17.6)	5,309 (35.1)	-	4,620 (26.3)
기초화장용제품 (3304.99-1000)	EU	151,578 (-)	178,510 (17.8)	210,315 (17.8)	180,134 (17.8)	207,168 (-1.5)	187,591 (-9.4)	187,591 (0.0)	194,117 (-3.6)
	미국	-	147,338 (-)	165,354 (12.2)	156,346 (12.2)	201,004 (21.6)	221,887 (10.4)	-	211,446 (16.0)
메이크업용제품 (3304.99-2000)	EU	17,792 (-)	24,378 (37.0)	29,163 (19.6)	23,777 (28.3)	32,463 (11.3)	28,290 (-12.9)	24,944 (-11.8)	28,566 (-4.5)
	미국	-	16,263 (-)	16,559 (1.8)	16,411 (1.8)	14,697 (-11.2)	17,174 (16.9)	-	15,936 (2.8)
소계	EU	238,528 (-)	287,297 (20.4)	331,771 (15.5)	285,865 (18.0)	339,824 (2.4)	322,660 (-5.1)	316,690 (-1.9)	326,391 (-1.5)
	미국	-	177,110 (-)	195,840 (10.6)	186,475 (10.6)	233,690 (19.3)	263,177 (12.6)	-	248,434 (16.0)

자료: 관세청 및 한국무역협회

## 2. 핸드백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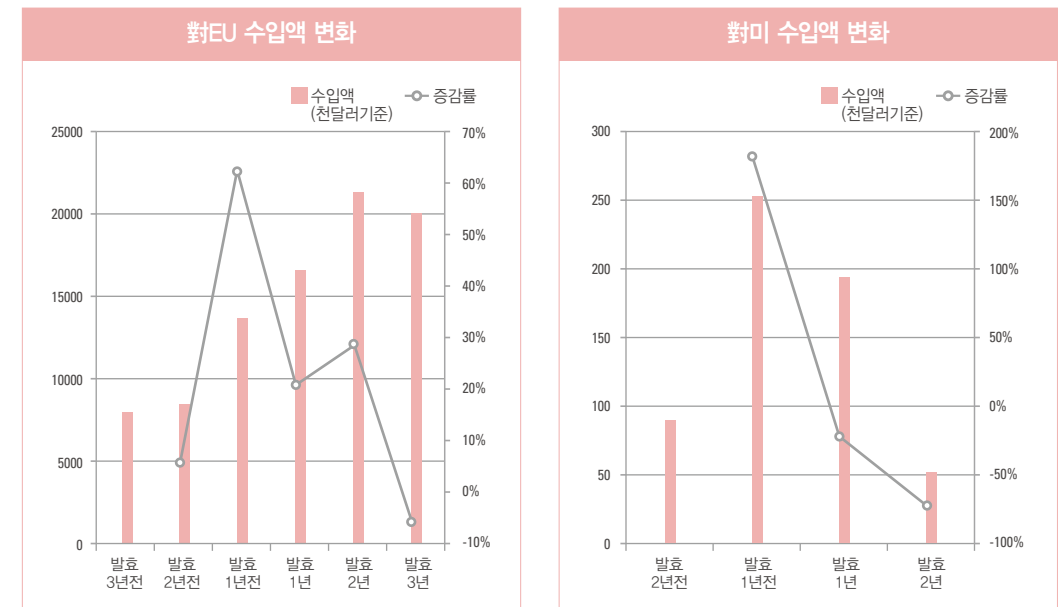
핸드백류의 경우 FTA발효에 따른 관세인하혜택은 한-EU FTA와 한-미 FTA 모두 발효 즉시 철폐가 되는 품목으로 FTA의 발효와 동시에 최혜국대우세율(MFN)에 비해 8% 낮은 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소비자가 선호하는 브랜드들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EU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이 협정 발효 전부터 꾸준히 증가해 오다가 한-EU FTA발효 직후부터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

고 있는데, 협정 발효 전 3년간의 평균수입금액은 1,436천불이었으나 협정 발효 후 3년간의 평균 수입금액은 이보다 92.2% 증가한 2,760천불로 급증한 반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협정 발효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품목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EU로부터 수입되는 핸드백류는 사용되는 주원재료를 기준으로 '악어 가죽'·'뱀가죽'·'도마뱀가죽'으로 만든 제품의 순으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악어가죽으로 만든 핸드백의 경우 협정 발효 이후 전체 수입액의 65.9%에 달할 정도로 집중적인 수입이 이루어졌다.

/ <그림 14> 핸드백류 수입액 변화 추이 /



/ <표 16> 핸드백류 수입액 변화 /

(단위: 천달러, %)

품명 (HS코드)		발효전			기간 평균	발효후			기간 평균
		3년전	2년전	1년전		1년차	2년차	3년차	
백가죽 (4202.12-1010)	EU	1,316 (-)	2,147 (63.1)	2,612 (21.7)	2,025 (28.3)	3,940 (50.8)	4,141 (5.1)	5,784 (39.7)	4,622 (31.9)
	미국	-	43 (-)	77 (79.1)	60.0 (39.6)	107 (39.0)	0 (-100.0)	-	53 (-30.5)
도마뱀가죽 (4202.21-1020)	EU	259 (-)	140 (-45.9)	600 (328.6)	333 (94.2)	1,409 (134.8)	1,901 (34.9)	474 (-75.1)	1,261 (31.5)
	미국	-	1 (-)	0 (-100.0)	0.5 (-50.0)	6 (600.0)	0 (-100.0)	-	3 (250.0)
악어가죽 (4202.21-1030)	EU	6,091 (-)	5,572 (-8.5)	7,366 (32.2)	6,343 (7.9)	9,801 (33.1)	14,172 (44.6)	11,305 (-20.2)	12,739 (19.2)
	미국	-	14 (-)	98 (600.0)	56.0 (300.0)	19 (-80.6)	26 (36.8)	-	22 (-21.9)
컴포지션레더 (4202.21-2000)	EU	261 (-)	521 (99.6)	3,034 (482.3)	1,272 (193.9)	1,227 (-59.6)	809 (-34.1)	2,023 (150.1)	1,353 (18.2)
	미국	-	26 (-)	44 (69.2)	35.0 (34.6)	30 (-31.8)	8 (-73.3)	-	19 (-52.6)
레이턴트레더 (4202.21-3000)	EU	20 (-)	53 (165.0)	93 (75.5)	55 (80.2)	199 (114.0)	269 (35.2)	452 (68.0)	307 (72.4)
	미국	-	6 (-)	34 (466.7)	20.0 (233.4)	32 (-5.9)	18 (-43.8)	-	25 (-24.9)
소계	EU	7,997 (-)	8,455 (5.7)	13,711 (62.2)	10,054 (22.6)	16,596 (21.0)	21,301 (28.4)	20,055 (-5.8)	19,317 (14.5)
	미국	-	90 (-)	253 (181.1)	172 (86.1)	194 (-23.3)	52 (-73.2)	-	123 (-48.3)

주: 조사대상 7개 세번 중 협정발효후 수입실적이 없거나 극히 적은 물품은 제외하였으며 소계에는 수입실적을 포함.  
자료: 관세청 및 한국무역협회

3. 모피류(생모피·모피·모피의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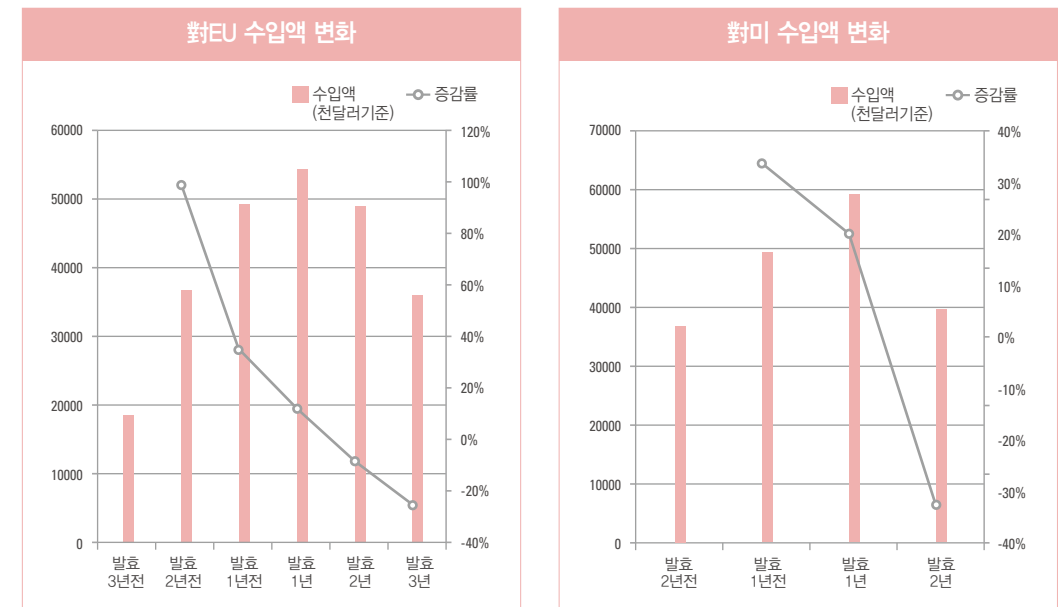
생모피의 FTA발효에 따른 관세인하 혜택은 한-EU FTA와 한-미 FTA 모두 발효 즉시 철폐가 되는 품목으로 FTA의 발효와 동시에 최혜국대우 세율(MFN)에 비해 3% 낮은 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로 인해 두 지역으로부터의 생모피류 수입은 FTA발효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EU지역으로부터의 생모피류 수입금액은 협정 발효 전후를 비교해볼 때 협정 발효 전 3년간에 비해 협정 발효 후 3년간 평균수입금액이 33.6% 증가하였고, 미국의 경우 협정 발효 전 2년간에 비해 협정 발효 후 2년간 14.7%의 수입증가가 이루어졌다.

이를 품목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EU의 경우 '밍크 >여우>라쿤'의 순으로 주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협정 발효 이후 밍크의 수입액이 전체 수입액의 78.8%를 차지하고 있으나 수입금액은 협정 발효 1~2년차에는 증가하였다가 최근 들어 감소하는 양상으로 전환되었고 여우는 협정 발효 전에 비해 수입액이 188.8%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미국으로부터의 생모피 수입은 '밍크>사향뒤쥐>기타'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밍크는 협정 발효 전 2년간에 비해 협정 발효 후 2년간 11.5%의 수입증가가 나타났으며 사향뒤쥐와 기타의 모피는 협정 발효 전 2년간에는 수입되지 않다가 FTA발효에 따른 관세인하효과가 발생하면서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15> 생모피 수입액 변화 추이 /





/ <표 17> 생모피 수입액 변화 /

(단위: 천달러, %)

품명 (HS코드)		발효전			기간 평균	발효후			기간 평균
		3년전	2년전	1년전		1년차	2년차	3년차	
밍크 (4301.10-0000)	EU	18,126 (-)	33,160 (82.9)	43,569 (31.4)	31,618 (57.2)	48,338 (10.9)	39,773 (-17.7)	21,609 (-45.7)	36,573 (-17.5)
	미국	-	36,882 (-)	49,413 (34.0)	43,148 (34.0)	59,034 (19.5)	37,194 (-37.0)	-	48,114 (-8.8)
여우 (4301.60-0000)	EU	0 (-)	3,120 (0.0)	4,154 (33.1)	2,425 (16.6)	5,109 (23.0)	6,279 (22.9)	9,623 (53.3)	7,004 (33.0)
	미국	-	23 (-)	0 (-100.0)	12 (-50.0)	71 (-)	32 (-54.9)	-	52 (-27.5)
라쿤 (4301.80-3000)	EU	295 (-)	258 (-12.5)	1,237 (379.5)	597 (183.5)	846 (-31.6)	2,864 (238.5)	4,564 (59.4)	2,758 (88.8)
	미국	-	1 (-)	0 (-100.0)	0 (-100.0)	87 (-)	81 (-6.9)	-	84 (-3.5)
사향뒤쥐 (4301.80-6000)	EU	0 (-)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미국	-	1 (-)	0 (-100.0)	0 (-100.0)	21 (-)	1,854 (8,728.6)	-	938 (4,364.3)
기타 (4301.80-9000)	EU	52 (-)	87 (67.3)	79 (-9.2)	73 (29.1)	27 (-65.8)	0 (-100.0)	32 (-)	20 (-82.9)
	미국	-	0 (-)	0 (0.0)	0 (0.0)	7 (-)	416 (5,842.9)	-	212 (2,921.5)
소계	EU	18,473 (-)	36,626 (98.3)	49,062 (34.0)	34,720 (66.1)	54,320 (10.7)	48,916 (-9.9)	35,889 (-26.6)	46,375 (-8.6)
	미국	-	36,907 (-)	49,413 (33.9)	43,160 (33.9)	59,294 (20.0)	39,737 (-33.0)	-	49,515 (-6.5)

주: 조사대상 10개 세번 중 협정발효전후 수입실적이 없는 물품은 제외하였으며 소계에는 수입실적을 포함.  
자료: 관세청 및 한국무역협회

모피의 경우 FTA발효에 따른 관세인하혜택은 한-EU FTA와 한-미 FTA 모두 발효 즉시 철폐가 되는 품목으로 FTA의 발효와 동시에 최혜국대우 세율(MFN)에 비해 5% 낮은 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로 인해 두 지역으로부터의 모피류 수입은 FTA 발효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EU지역으로부터의 모피류 수입금액은 협정 발효 전후를 비교해볼 때 협정 발효 전 3년간에 비해 협정 발효 후 3년간 평균수입금액이 51.5% 증가하였고, 미국의 경우 협정 발효 전 2년간에 비해 협정 발효 후 2년간 515.9%의 수입증가가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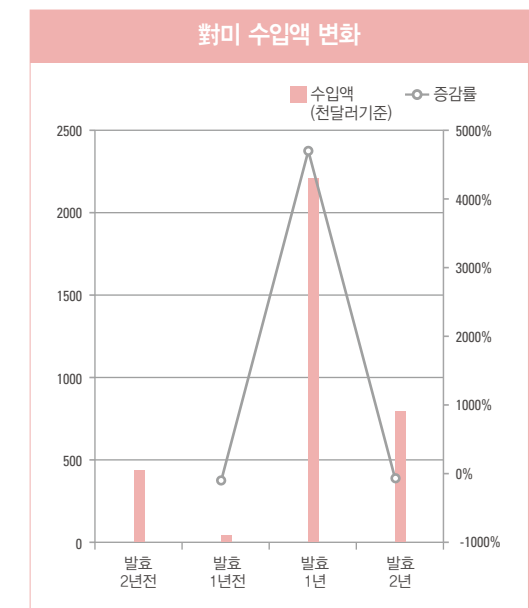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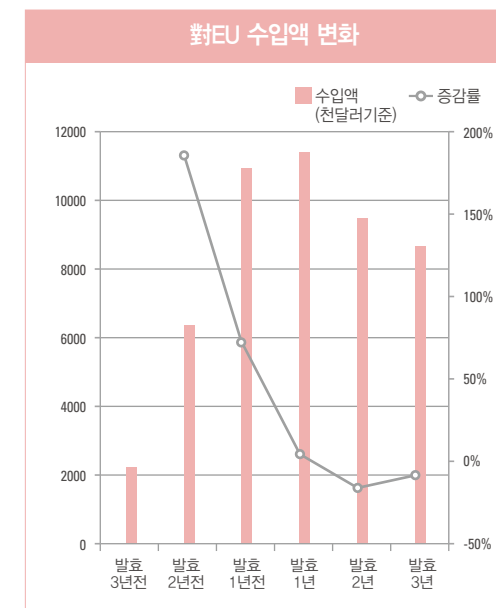
이를 품목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EU의 경우 앞서 살펴본 생모피와 마찬가지로 전신(全身)상태의

모피의 경우 '밍크'여우)라쿤'의 순으로 주로 수입이 이루어졌으며 밍크의 수입액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특징적인 것은 협정 발효 전과 협정 발효 후 모두 EU로부터 수입된 모피는 전신(全身)상태의 것 보다는 조각 및 절단품 형태로 수입되는 양이 협정 발효 전 3년간의 경우 전체 수입액의 71.5%였고 협정 발효 후 3년간의 경우 전체 수입액의 69.9%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생모피의 협정 발효 전후 각 2년간의 평균 수입액이 모두 4천만불을 상회할 정도로 많고 협정 발효 후 2년간의 경우에는 거의 5천만불에 육박할 정도로 활발히 수입되는데 반해 모피는 상대적으로 수입량이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림 16> 모피 수입액 변화 추이 /



품목별로는 EU와 마찬가지로 모피의 수입에 집중되고 있는 형태이나 조각 및 절단품 형태에 대한 수입액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EU와는 달리 미국의 경우 조각 및 절단품 형태에 대한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 <표 18> 모피 수입액 변화 /

(단위: 천달러, %)

품명 (HS코드)	발효전			기간 평균	발효후			기간 평균	
	3년전	2년전	1년전		1년차	2년차	3년차		
밍크(전신) (4302.11-0000)	EU	285 (-)	686 (140.7)	1,526 (122.4)	832 (131.6)	1,871 (22.6)	1,142 (-39.0)	1,203 (5.3)	1,405 (-3.7)
	미국	-	364 (-)	1 (-99.7)	183 (-99.7)	2,145 (214,400.0)	474 (-77.9)	-	1,310 (107,161.0)
여우(전신) (4302.19-3000)	EU	226 (-)	515 (127.9)	497 (-3.5)	413 (62.2)	554 (11.5)	347 (-37.4)	819 (136.0)	573 (36.7)
	미국	-	31 (-)	8 (-74.2)	20 (-74.2)	2 (-75.0)	168 (8,300.0)	-	85 (4,112.5)
라쿤(전신) (4302.19-7000)	EU	16 (-)	15 (-6.3)	4 (-73.3)	12 (-39.8)	189 (4,625.0)	359 (89.9)	351 (-2.2)	300 (1,570.9)
	미국	-	2 (-)	3 (50.0)	3 (50.0)	0 (-100.0)	10 (-)	-	5 (-50.0)
코요테(전신) (4302.19-8000)	EU	0 (-)	0 (0.0)	2 (-)	0 (-)	34 (1,600.0)	136 (300.0)	60 (-55.9)	77 (614.7)
	미국	-	33 (-)	0 (-100.0)	17 (-100.0)	0 (0.0)	66 (-)	-	33 (0.0)
밍크(부분) (4302.20-1000)	EU	249 (-)	253 (1.6)	626 (147.4)	376 (74.5)	254 (-59.4)	202 (-20.5)	162 (-19.8)	206 (-33.2)
	미국	-	0 (-)	0 (0.0)	0 (0.0)	0 (0.0)	4 (-)	-	2 (0.0)

품명 (HS코드)	발효전			기간 평균	발효후			기간 평균	
	3년전	2년전	1년전		1년차	2년차	3년차		
여우(부분) (4302.20-5000)	EU	4 (-)	67 (1,575.0)	23 (-65.7)	31 (754.7)	133 (478.3)	366 (175.2)	159 (-56.6)	219 (199.0)
	미국	-	0 (-)	19 (-)	10 (0.0)	32 (68.4)	5 (-84.4)	-	19 (-8.0)
조각 및 절단품 (4302.30-0000)	EU	1,264 (-)	4,645 (267.5)	8,040 (73.1)	4,650 (170.3)	8,228 (2.3)	6,731 (-18.2)	5,704 (-15.3)	6,888 (-10.4)
	미국	-	9 (-)	7 (-22.2)	8 (-22.2)	19 (171.4)	0 (-100.0)	-	10 (35.7)
소계	EU	2,232 (-)	6,348 (184.4)	10,933 (72.2)	6,504 (128.3)	11,401 (4.3)	9,498 (-16.7)	8,660 (-8.8)	9,853 (-7.1)
	미국	-	441 (-)	46 (-89.6)	244 (-89.6)	2,210 (4,704.6)	795 (-64.0)	-	1,503 (2,320.3)

주: 조사대상 18개 세번 중 협정발효전후 수입실적이 없거나 금액이 적은 물품은 제외하였으며 소계에는 수입실적을 포함.  
자료: 관세청 및 한국무역협회

모피의류는 FTA발효에 따른 관세인하혜택이 모피상품 중 가장 큰 물품으로 한-EU FTA와 한-미 FTA 모두 16%에 달하는 최혜국대우세율(MFN)이 발효 즉시 철폐됨으로써 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물품이다.

FTA발효로 인한 관세혜택의 폭이 큰 만큼 두 지역 으로부터의 모피의류 수입액 또한 FTA발효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EU지역으로부터의 모피 의류 수입액은 협정 발효 전 3년간에 비해 협정 발효 후 3년간 평균수입금액이 82.5% 증가하였으 며,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또한 협정 발효 전 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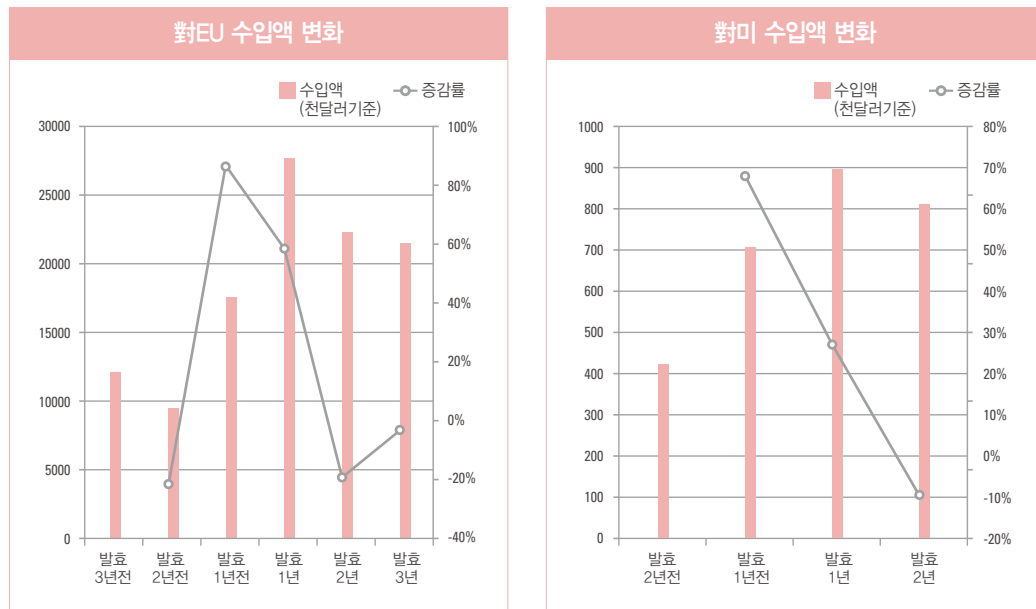
간에 비해 협정 발효 후 2년간 50.9%의 수입증가 가 이루어졌다.

이를 품목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EU의 경우 의류 의 수입에 있어 '밍크'기타'어린 양'여우'의 순으로 수입이 이루어졌으며 부분품은 '여우'밍크'토끼' 의 순으로 수입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밍크의류의 경우 한-EU FTA발효 이후 3년간 평균수입금액이 협정 발효 전 3년간 평균수입금액에 비해 106.6% 증가하여 관세의 인하로 인해 수입이 급증한 대표 품목으로 확인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모피의류의 전 세계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 정도로 낮은 편이나 한-미 FTA발효 이후 관세인하효과 등으로 전체적인 수입량은 EU와 마찬가지로 증가하였는데, 품목별로는 의류의 경우 '밍크(기타)어린 양(여우)'의 순으로 수입이 이루어졌으며 부분품의 경우 '모피(여우)'의 순으로 수입이 발생하였다.

두 협정 모두 FTA의 발효가 수입을 증가시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적인 사례가 확인되는데, 협정 발효 전에는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수입량이 극히 적었던 품목들이 FTA발효와 동시에 관세가 철폐됨으로써 수입이 발생하거나 수입량이 급증하게 된 품목들이 존재하고 있다.

/ <그림 17> 모피의류 수입액 변화 추이 /



/ <표 19> 모피의류(부분품 포함) 수입액 변화 /

(단위: 천달러, %)

품명 (HS코드)		발효전			기간 평균	발효후			기간 평균
		3년전	2년전	1년전		1년차	2년차	3년차	
밍크(의류) (4303.10-1100)	EU	4,456 (-)	3,975 (-10.8)	8,767 (120.6)	5,733 (54.9)	14,730 (68.0)	11,574 (-21.4)	9,221 (-20.3)	11,842 (8.8)
	미국	-	190 (-)	143 (-24.7)	167 (-24.7)	150 (4.9)	275 (83.3)	-	213 (44.1)

품명 (HS코드)		발효전			기간 평균	발효후			기간 평균
		3년전	2년전	1년전		1년차	2년차	3년차	
토끼(의류) (4303.10-1200)	EU	558 (-)	360 (-35.5)	766 (112.8)	561 (38.6)	769 (0.4)	791 (2.9)	911 (15.2)	824 (6.1)
	미국	-	3 (-)	5 (66.7)	4 (66.7)	1 (-80.0)	27 (2,600.0)	-	14 (1,260.0)
어린 양(의류) (4303.10-1300)	EU	624 (-)	560 (-10.3)	1,023 (82.7)	736 (36.2)	2,767 (170.5)	2,292 (-17.2)	2,619 (14.3)	2,559 (55.9)
	미국	-	3 (-)	165 (5,400.0)	84 (5,400.0)	194 (17.6)	180 (-7.2)	-	187 (5.2)
여우(의류) (4303.10-1600)	EU	630 (-)	729 (15.7)	1,625 (122.9)	995 (69.3)	2,496 (53.6)	1,670 (-33.1)	1,583 (-5.2)	1,916 (5.1)
	미국	-	16 (-)	144 (800.0)	80 (800.0)	127 (-11.8)	38 (-70.1)	-	83 (-40.9)
친칠라(의류) (4303.101-800)	EU	160 (-)	22 (-86.3)	142 (545.5)	108 (229.6)	164 (15.5)	181 (10.4)	273 (50.8)	206 (25.6)
	미국	-	0 (-)	3 (-)	2 (0.0)	67 (2,133.3)	8 (-88.1)	-	38 (1,022.6)
기타(의류) (4303.10-1990)	EU	4,880 (-)	3,360 (-31.1)	4,129 (22.9)	4,123 (-4.1)	4,989 (20.8)	3,947 (-20.9)	5,063 (28.3)	4,666 (9.4)
	미국	-	155 (-)	166 (7.1)	161 (7.1)	235 (41.6)	185 (-21.3)	-	210 (10.1)
밍크(부분품) (4303.10-2100)	EU	259 (-)	187 (-27.8)	450 (140.6)	299 (56.4)	639 (42.0)	501 (-21.6)	315 (-37.1)	485 (-5.6)
	미국	-	2 (-)	7 (250.0)	5 (250.0)	37 (428.6)	72 (94.6)	-	55 (261.6)
토끼(부분품) (4303.10-2200)	EU	152 (-)	58 (-61.8)	58 (0.0)	89 (-30.9)	65 (12.1)	247 (280.0)	160 (-35.2)	157 (85.6)
	미국	-	33 (-)	1 (-97.0)	17 (-97.0)	3 (200.0)	0 (-100.0)	-	2 (100.0)
여우(부분품) (4303.10-2600)	EU	120 (-)	93 (-22.5)	410 (340.9)	208 (159.2)	612 (49.3)	571 (-6.7)	462 (-19.1)	548 (7.8)
	미국	-	2 (-)	27 (1,250.0)	15 (1,250.0)	35 (29.6)	18 (-48.6)	-	27 (-9.5)
소계	EU	12,079 (-)	9,451 (-21.8)	17,552 (85.7)	13,027 (32.0)	27,599 (57.2)	22,300 (-19.2)	21,413 (-4.0)	23,771 (11.4)
	미국	-	422 (-)	709 (68.0)	566 (68.0)	897 (26.5)	811 (-9.5)	-	854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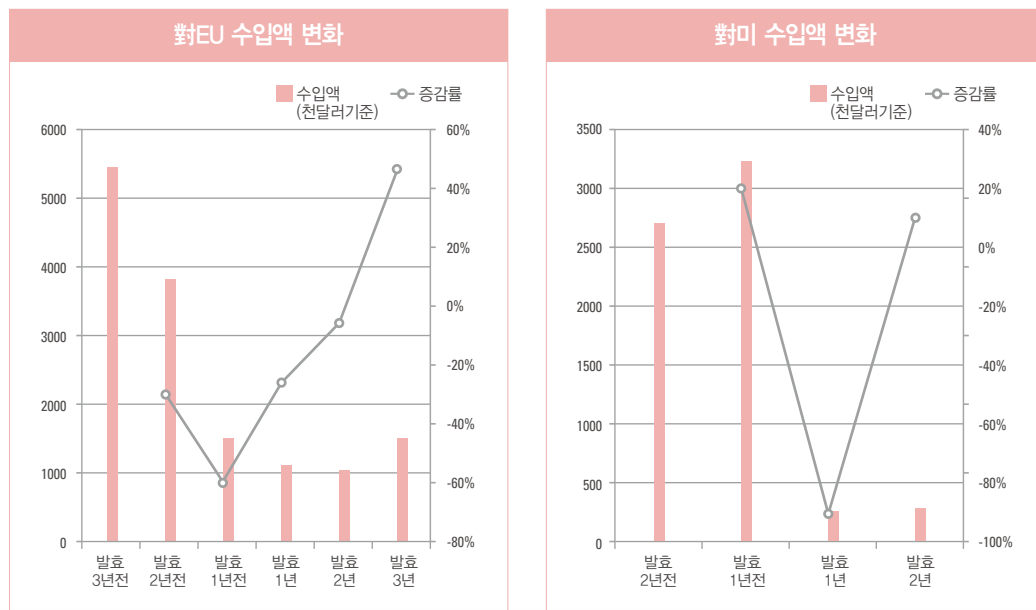
주: 조사대상 18개 세번 중 협정발효전후 수입실적이 없거나 금액이 적은 물품은 제외하였으며 소계에는 수입실적을 포함.  
자료: 관세청 및 한국무역협회

**4. 귀금속 및 장식용품(귀석·신변장식용품 등)**

다이아몬드는 FTA발효에 따라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기는 하였으나 관세의 인하혜택은 원석의 경우 최혜국대우세율(MFN)이 1%에서 0%로 기타의 경우 5%에서 0%로 인하폭에 따라 활용유인이 달리 적용되는 물품이다.

EU 및 미국지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은 원석과 기타형태의 것 모두 그다지 높지 않은 품목인데, 특징적인 것은 협정 발효 이후 관세의 인하혜택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품목과 달리 수입량이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 <그림 18> 다이아몬드 수입액 변화 추이 /



/ <표 20> 다이아몬드 수입액 변화 /

(단위: 천달러, %)

품명 (HS코드)	발효전			기간 평균	발효후			기간 평균	
	3년전	2년전	1년전		1년차	2년차	3년차		
원석 (7102.31-0000)	EU	195 (-)	0 (-100.0)	1 (-)	65 (-50.0)	246 (24,500.0)	29 (-88.0)	16 (-44.8)	97 (8,122.3)
	미국	-	0 (-)	0 (0.0)	0 (0.0)	51 (-)	0 (-100.0)	-	26 (-50.0)
기타 (7102.39-0000)	EU	5,231 (-)	3,802 (-27.3)	1,504 (-60.4)	3,512 (-43.9)	860 (-42.8)	1,008 (17.2)	1,497 (48.5)	1,122 (7.6)
	미국	-	2,696 (-)	3,224 (19.6)	2,960 (19.6)	208 (-93.5)	284 (36.5)	-	246 (-28.5)
소계	EU	5,426 (-)	3,802 (-29.9)	1,505 (-60.4)	3,578 (-45.2)	1,106 (-26.5)	1,037 (-6.2)	1,513 (45.9)	1,219 (4.4)
	미국	-	2,696 (-)	3,224 (19.6)	2,960 (19.6)	259 (-92.0)	284 (9.7)	-	272 (-41.2)

자료: 관세청 및 한국무역협회

진주장식품의 경우 FTA발효에 따른 관세인하혜택은 한-EU FTA와 한-미 FTA 모두 발효 즉시 철폐가 되는 품목으로 FTA의 발효와 동시에 최혜국대우세율(MFN)에 비해 8% 낮은 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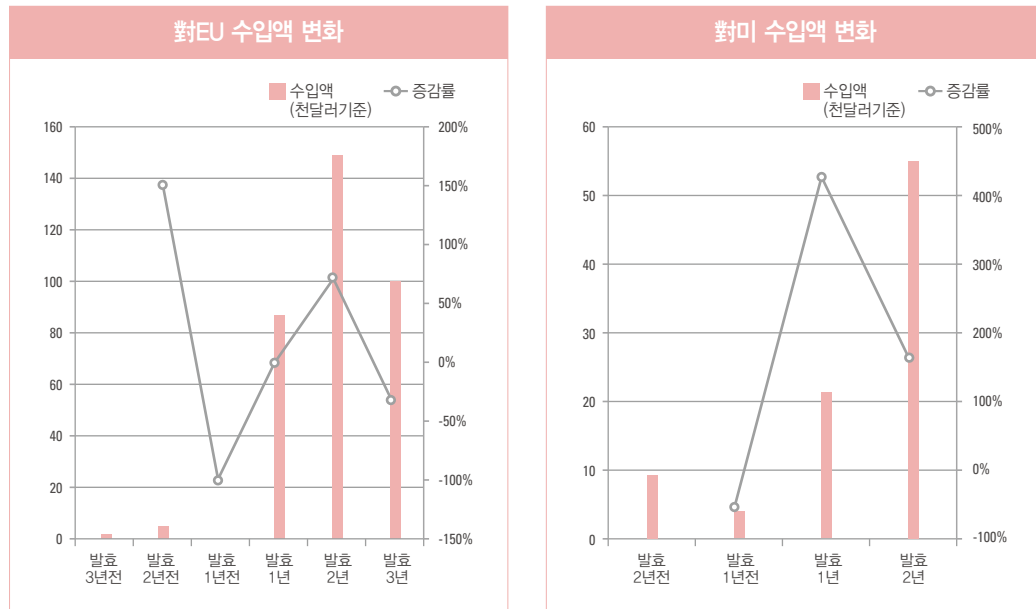
수입액이 급증하였는데 EU의 경우 협정 발효 전 3년간 평균수입금액이 2천불에 불과하던 것이 협정 발효 이후 3년간 평균수입금액은 112천불로 5,600% 신장되었다.

EU 및 미국지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은 낮은 편으로 천연진주의 경우 협정 발효 전후 모두 수입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양식진주 위주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EU와 미국 모두 FTA발효 이후

미국의 경우에도 수입증가율이 EU의 증가율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나 협정 발효 전 2년간 평균 수입금액이 7천불이던 것이 협정 발효 후 2년간 평균수입금액은 542.9% 증가한 38천불로 증가하였다.



/ <그림 19> 진주장식품 수입액 변화 추이 /



귀석과 반귀석의 FTA발효에 따른 관세인하혜택은 한-EU FTA와 한-미 FTA 모두 발효 즉시 철폐가 되는 품목으로 FTA의 발효와 동시에 최혜국대우 세율(MFN)이 1%에 불과한 원석을 제외하고 5%의 최혜국대우세율(MFN0)이 철폐되어 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다이아몬드나 진주상식품과 같이 귀석과 반귀석 또한 EU 및 미국지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은 낮은 편으로, EU의 경우 사파이어와 옥수(玉髓) 위주로 수입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사파이어의 경우 한-EU FTA발효 이전에는 수입되지 않다가 협정 발효 2년차부터 수입이 이루어졌고 협정 발효 3년차에는 전년에 비해 수입량이 214.6%나 증가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EU에 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귀석 및 반귀석이 수입되고 있으나 수입액은 EU와 비슷한 수준이며 한-미 FTA발효 전후를 비교해 보아도 수입량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EU와 달리 원석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특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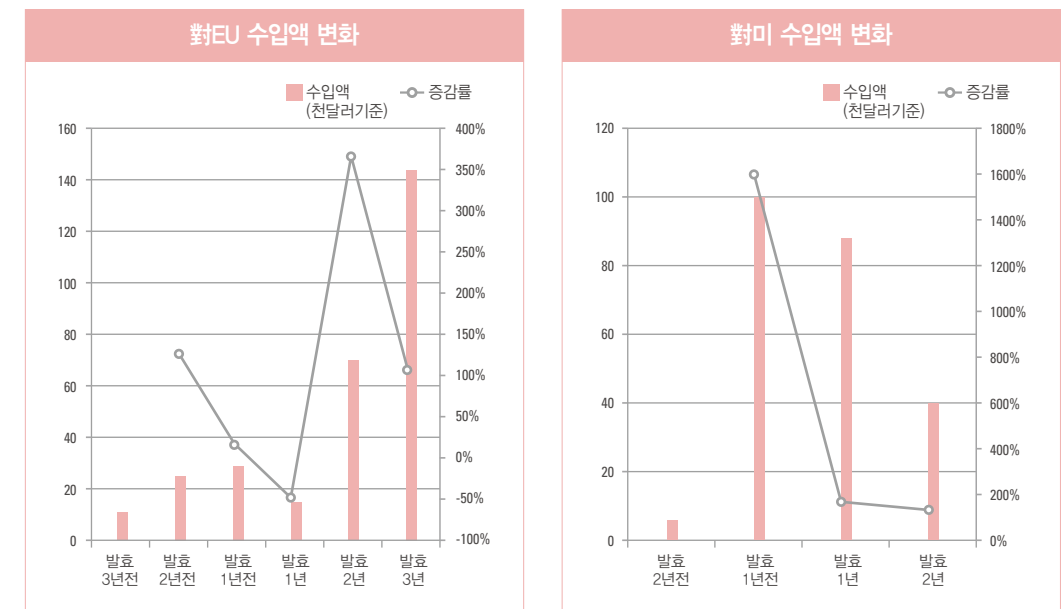
/ <표 21> 진주장식품 수입액 변화 /

(단위: 천달러, %)

품명 (HS코드)	발효전	기간 평균			발효후			기간 평균	
		3년전	2년전	1년전	1년차	2년차	3년차		
천연진주 (7116.10-1000)	EU	0 (-)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미국	-	2 (-)	2 (0.0)	2 (0.0)	0 (-100.0)	0 (0.0)	0.0 (-50.0)	
양식진주 (7116.10-2000)	EU	2 (-)	5 (150.0)	0 (-100.0)	2 (25.0)	9 (-)	149 (1,655.5)	100 (-32.9)	112 (540.9)
	미국	-	7 (-)	2 (-71.4)	5 (-71.4)	21 (950.0)	55 (161.9)	-	38 (556.0)
소계	EU	2 (-)	5 (150.0)	0 (-100.0)	2 (25.0)	9 (-)	149 (1,655.5)	100 (-32.9)	112 (540.9)
	미국	-	9 (-)	4 (-55.6)	7 (-55.6)	21 (425.0)	55 (162.3)	-	38 (293.7)

자료: 관세청 및 한국무역협회

/ <그림 20> 귀석과 반귀석 수입액 변화 추이 /





/ <표 22> 귀석과 반귀석 수입액 변화 /

(단위: 천달러, %)

품명 (HS코드)		발효전			기간 평균	발효후			기간 평균
		3년전	2년전	1년전		1년차	2년차	3년차	
원석 (7103.10-0000)	EU	1 (-)	0 (-100.0)	5 (-)	2 (-50.0)	1 (-80.0)	24 (2,300.0)	3 (-87.5)	9 (710.8)
	미국	-	0 (-)	80 (-)	40 (0.0)	63 (-21.3)	26 (-58.7)	-	45 (-40.0)
루비 (7103.91-9010)	EU	0 (-)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미국	-	0 (-)	0 (0.0)	0 (0.0)	13 (-)	0 (-100.0)	-	7 (-50.0)
사파이어 (7103.91-9010)	EU	0 (-)	0 (0.0)	0 (0.0)	0 (0.0)	0 (0.0)	41 (-)	129 (214.6)	57 (71.5)
	미국	-	2 (-)	4 (100.0)	3 (100.0)	6 (50.0)	13 (116.7)	-	10 (83.3)
에메랄드 (7103.91-9030)	EU	0 (-)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미국	-	0 (-)	1 (-)	1 (0.0)	4 (300.0)	0 (-100.0)	-	2 (100.0)
오팔 (7103.99-9010)	EU	0 (-)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미국	-	3 (-)	15 (400.0)	9 (9400.0)	1 (-94.0)	0 (-100.0)	-	1 (-97.0)
옥수 (7103.99-9030)	EU	8 (-)	25 (212.5)	24 (-4.0)	19 (104.3)	14 (-41.7)	5 (-64.3)	12 (140.0)	10 (11.3)
	미국	-	0 (-)	0 (0.0)	0 (0.0)	0 (0.0)	0 (0.0)	-	0 (0.0)
소계	EU	11 (-)	25 (127.3)	29 (16.0)	22 (71.6)	15 (-48.3)	70 (366.7)	144 (106.0)	76 (141.5)
	미국	-	6 (-)	100 (1,566.7)	53 (1,566.7)	88 (-12.2)	40 (-54.4)	-	64 (-33.3)

주: 조사대상 8개 세번 중 협정발효전후 수입실적이 없거나 금액이 적은 물품은 제외하였으며 소계에는 수입실적을 포함.  
자료: 관세청 및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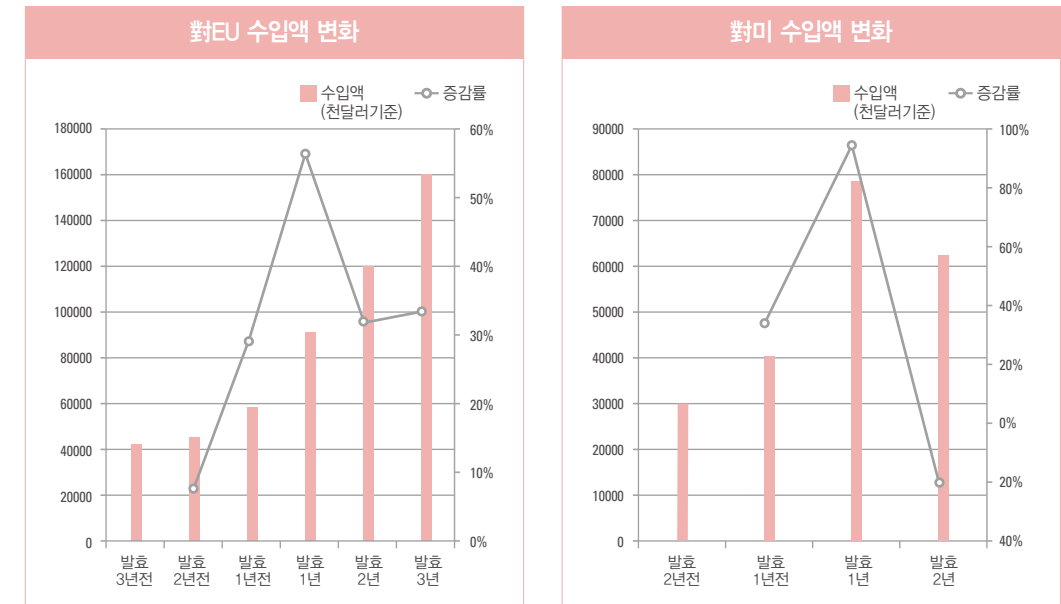
신변장식용품의 경우 FTA발효에 따른 관세인하 스케줄이 최혜국대우세율(MFN) 8%를 기준으로 한-EU FTA에서는 품목별로 4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균등 철폐되고 있고, 한-미 FTA는 전체 품목에 대해 발효 즉시 철폐가 적용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한-미 FTA의 활용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FTA발효 전후 수입 증감율을 보면 한-EU FTA의 경우 발효 전 3년간의 평균 수입금액대비 발효 후 3년간 평균수입금액이 155.6% 증가한 반면, 한-미 FTA는 발효 전 2년간 평균수입금액대비 발효 후 2년 평균수입금액이 99.7% 증가하였다.<sup>6)</sup>

이를 품목별로 보면 EU의 경우 금으로 만든 신변장식용품의 수입이 발효 전후 비교에서 급증함으로써 당해 품목의 전 세계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발효 전 47.9%에서 발효 후 60.1%까지 늘어났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백금으로 만든 신변장식용품의 수입이 발효 전후 비교에서 급증하여 당해 품목의 전 세계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발효 전 57.7%에서 발효 후 72.1%로 확대되었다.

두 협정 모두 공통적인 점은 품목을 불문하고 FTA발효 전후 상당한 수준으로 수입액의 증가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 <그림 21> 신변장식용품 수입액 변화 추이 /



6) 이는 관세의 FTA의 발효에 따른 관세의 인하효과가 수입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는 작용하였으나 관세의 부과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는 브랜드에 대한 선호를 구매결정의 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 <표 23> 신변장식용품(부분품 포함) 수입액 변화 /

(단위: 천달러, %)

품명 (HS코드)		발효전			기간 평균	발효후			기간 평균
		3년전	2년전	1년전		1년차	2년차	3년차	
백금으로 만든 것 (7113.19-1000)	EU	9,750 (-)	10,286 (5.5)	13,447 (30.7)	11,161 (18.1)	19,129 (42.3)	15,333 (-19.8)	40,801 (166.1)	25,088 (62.8)
	미국	-	23,651 (-)	30,271 (28.0)	26,961 (28.0)	66,244 (118.8)	50,839 (-23.3)	-	58,542 (47.8)
금으로 만든 것 (7113.19-2000)	EU	31,932 (-)	34,758 (8.9)	44,746 (28.7)	37,145 (18.8)	71,952 (60.8)	104,200 (44.8)	119,329 (14.5)	98,494 (40.0)
	미국	-	6,548 (-)	10,278 (28.0)	8,413 (28.0)	12,345 (118.8)	11,289 (-23.3)	-	11,817 (47.8)
백금을 입힌 것 (7113.20-1000)	EU	10 (-)	49 (390.0)	78 (59.2)	46 (224.6)	13 (-83.3)	415 (3,092.3)	118 (-71.6)	182 (979.1)
	미국	-	0 (-)	2 (-)	1 (0.0)	6 (200.0)	1 (-83.3)	-	4 (58.3)
금을 입힌 것 (7113.20-2000)	EU	22 (-)	3 (-86.4)	17 (466.7)	14 (190.2)	22 (29.4)	150 (581.8)	66 (-56.0)	79 (185.1)
	미국	-	5 (-)	28 (460.0)	17 (460.0)	193 (589.3)	298 (54.4)	-	246 (321.8)
은을 입힌 것 (7113.20-3000)	EU	229 (-)	45 (-80.3)	18 (-60.0)	97 (-70.2)	8 (-55.6)	58 (625.0)	35 (-39.7)	34 (176.6)
	미국	-	8 (-)	12 (50.0)	10 (50.0)	35 (191.7)	139 (297.1)	-	87 (244.4)
소계	EU	41,943 (-)	45,141 (7.6)	58,306 (29.2)	48,463 (18.4)	91,124 (56.3)	120,156 (31.9)	160,349 (33.5)	123,876 (40.5)
	미국	-	30,212 (-)	40,591 (34.4)	35,402 (34.4)	78,823 (94.2)	62,566 (-20.6)	-	70,695 (36.8)

자료: 관세청 및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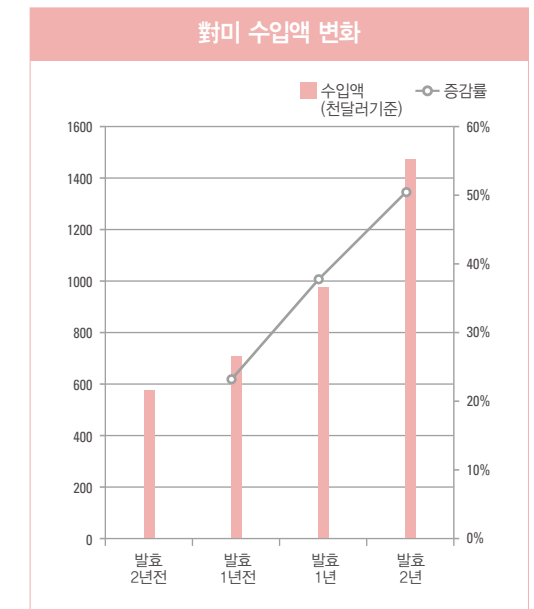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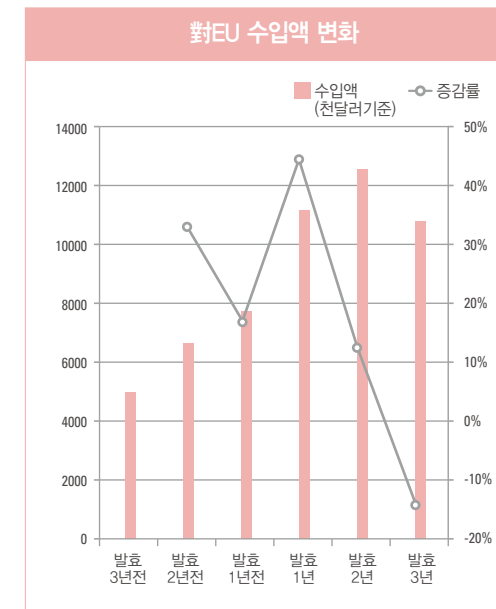
모조신변장식용품은 EU 및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신변장식용품에 비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품목으로 FTA발효에 따른 관세인하 혜택은 한-EU FTA와 한-미 FTA 모두 발효 즉시 철폐가 되어 최혜국대우세율(MFN)에 비해 8% 낮은 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품목이다.

FTA발효 전후 수입 증감율을 보면 한-EU FTA의 경우 발효 전 3년간의 평균 수입금액대비 발효 후

3년간 평균수입금액이 78.1% 증가한 반면, 한-미 FTA는 발효 전 2년간 평균수입금액대비 발효 후 2년 평균수입금액이 90.8% 증가하였다.

이를 품목별로 보면 EU와 미국 모두 팔찌의 수입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두 협정 모두 목걸이와 팔찌 그리고 귀걸이를 중심으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 <그림 22> 모조신변장식용품 수입액 변화 추이 /



/ <표 24> 모조신변장식용품 수입액 변화 /

(단위: 천달러, %)

품명 (HS코드)		발효전			기간 평균	발효후			기간 평균
		3년전	2년전	1년전		1년차	2년차	3년차	
목걸이 (7117.19-1000)	EU	1,371 (-)	2,758 (101.2)	2,804 (1.7)	2,311 (51.4)	3,578 (27.6)	3,720 (4.0)	3,029 (-18.6)	3,442 (4.3)
	미국	-	217 (-)	279 (28.6)	248 (28.6)	302 (8.2)	293 (-3.0)	-	298 (2.6)
팔찌 (7117.19-2000)	EU	891 (-)	950 (6.0)	1,386 (45.9)	1,076 (26.3)	2,466 (77.9)	4,066 (64.9)	3,799 (-6.6)	3,444 (45.4)
	미국	-	93 (-)	131 (40.9)	112 (40.9)	324 (147.3)	684 (111.1)	-	504 (129.2)
귀걸이 (7117.19-3000)	EU	1,849 (-)	2,232 (20.7)	2,401 (7.6)	2,161 (14.1)	3,420 (42.4)	3,442 (0.6)	2,866 (-16.7)	3,243 (8.8)
	미국	-	193 (-)	197 (2.1)	195 (2.1)	209 (6.1)	160 (-23.4)	-	185 (-8.7)
브로치 (7117.19-4000)	EU	301 (-)	387 (28.6)	531 (37.2)	406 (32.9)	808 (52.2)	727 (-10.0)	496 (-31.8)	677 (3.5)
	미국	-	19 (-)	17 (-10.5)	18 (-10.5)	13 (-23.5)	42 (223.1)	-	28 (99.8)
반지 (7117.19-5000)	EU	463 (-)	240 (-48.2)	493 (105.4)	399 (28.6)	794 (61.1)	547 (-31.1)	566 (3.5)	636 (11.1)
	미국	-	40 (-)	76 (90.0)	58 (90.0)	130 (71.1)	290 (123.1)	-	210 (97.1)
장식용 체인 (7117.19-6000)	EU	122 (-)	64 (-47.5)	104 (62.5)	97 (7.5)	84 (-19.2)	44 (-47.6)	11 (-75.0)	46 (-47.3)
	미국	-	14 (-)	10 (-28.6)	12 (-28.6)	1 (-90.0)	5 (400.0)	-	3 (155.0)
소계	EU	4,997 (-)	6,631 (32.7)	7,719 (16.4)	6,449 (24.6)	11,150 (44.4)	12,546 (12.5)	10,767 (-14.2)	11,488 (14.3)
	미국	-	576 (-)	710 (23.3)	643 (23.3)	979 (37.9)	1,474 (50.6)	-	1,227 (44.2)

자료: 관세청 및 한국무역협회

### 5. 레저용품(모터사이클 및 골프클럽)

모터사이클은 최근 소득수준 향상 등에 따른 레저인구 증가로 수요가 확산되고 있는 품목으로 특히 미국 및 EU에 소재하고 있는 유명 모터사이클 브랜드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품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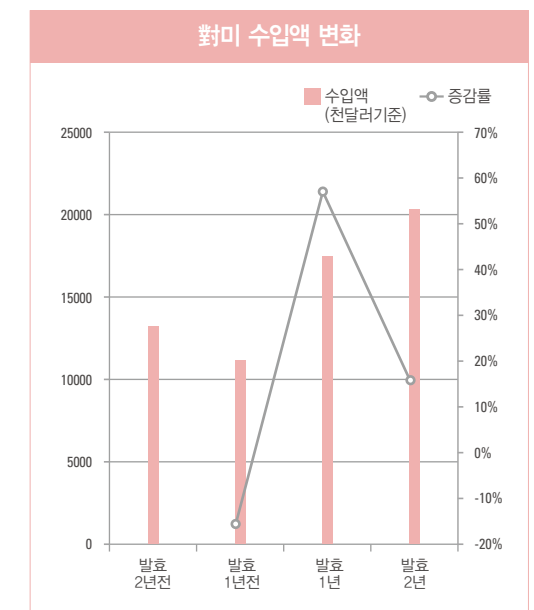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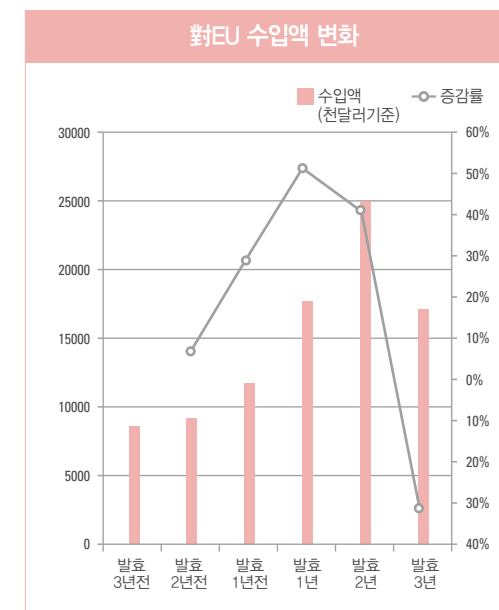
모터사이클의 FTA발효에 따른 관세인하혜택은 한-EU FTA와 한-미 FTA 모두 발효 즉시 철폐가 되어 최혜국대우세율(MFN)에 비해 8% 낮은 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FTA발효 전후 수입 증감율을 보면 한-EU FTA의 경우 발효 전 3년간의 평균 수입금액대비 발효 후

3년간 평균수입금액이 102.8% 증가한 반면, 한-미 FTA는 발효 전 2년간 평균수입금액대비 발효 후 2년 평균수입금액이 55.2% 증가하였는데, EU와 미국 모두 800cc를 초과하는 모터사이클의 수입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수입금액의 증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EU의 경우 협정 발효 전후 모두 250cc~500cc미만의 모터사이클과 500cc~800cc급의 중대형 모터사이클에 대한 수입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800cc 이상의 대형 모터사이클에 대한 수입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 <그림 23> 모터사이클 수입액 변화 추이 /



/ <표 25> 모터사이클 수입액 변화 /

(단위: 천달러, %)

품명 (HS코드)		발효전			기간 평균	발효후			기간 평균
		3년전	2년전	1년전		1년차	2년차	3년차	
모터사이클 (8711.30-1000)	EU	540 (-)	254 (-53.0)	927 (265.0)	574 (106.0)	1,937 (109.0)	2,307 (19.1)	1,689 (-26.8)	1,978 (33.8)
	미국	-	56 (-)	37 (-33.9)	47 (-33.9)	11 (-70.3)	8 (-27.3)	-	10 (-48.8)
모터사이클 (8711.40-1000)	EU	1,894 (-)	1,409 (-25.6)	1,907 (35.3)	1,737 (4.9)	2,710 (42.1)	8,892 (228.1)	2,703 (-69.6)	4,768 (66.9)
	미국	-	60 (-)	28 (-53.3)	44 (-53.3)	27 (-3.6)	59 (118.5)	-	43 (57.5)
모터사이클 (8711.50-1000)	EU	6,118 (-)	7,439 (21.6)	8,879 (19.4)	7,479 (20.5)	12,990 (46.3)	13,656 (5.1)	12,653 (-7.3)	13,100 (14.7)
	미국	-	13,038 (-)	10,952 (-16.0)	11,995 (-16.0)	17,488 (59.7)	20,164 (15.3)	-	18,826 (37.5)
모터사이클 (8711.90-1000)	EU	2 (-)	7 (250.0)	3 (-57.1)	4 (96.4)	37 (1,133.3)	0 (-100.0)	0 (0.0)	12 (344.4)
	미국	-	62 (-)	166 (167.7)	114 (167.7)	10 (-94.0)	110 (1,000.0)	-	60 (453.0)
소계	EU	8,554 (-)	9,109 (6.5)	11,716 (28.6)	9,793 (17.6)	17,674 (50.9)	24,855 (40.6)	17,045 (-31.4)	19,858 (20.0)
	미국	-	13,216 (-)	11,183 (-15.4)	12,200 (-15.4)	17,536 (56.8)	20,341 (16.0)	-	18,939 (36.4)

자료: 관세청 및 한국무역협회

골프클럽은 모터사이클과 마찬가지로 최근 소득 수준 향상 등에 따른 취미인구 증가로 수요가 확산되고 있는 품목이나, 미국 및 EU지역으로 부터의 수입비중은 낮은 편으로 EU의 경우 협정 발효 전후 모두 거의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협정 발효 전에는 전 세계

수입액 대비 20.4%의 수입비중을 나타내었으나 협정 발효 후 6.5% 수준으로 수입비중이 낮아 졌다. 특히, 한-미 FTA발효 전 수입된 품목을 보면 완성품보다는 부분품에 대한 수입비중이 극히 높은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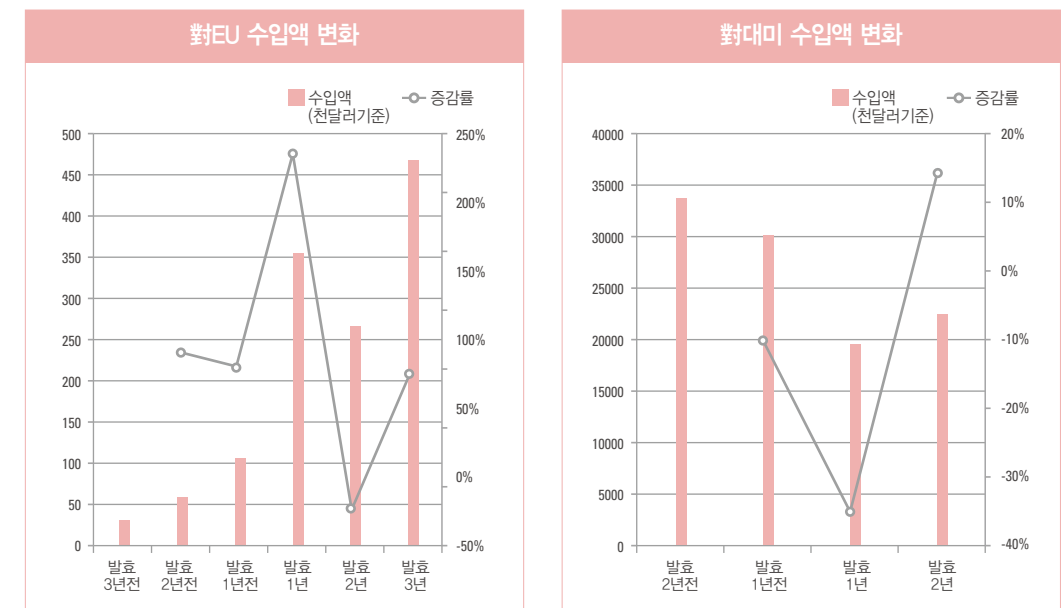
골프클럽의 FTA발효에 따른 관세인하혜택은 한-EU FTA의 경우 완성품과 부분품 모두 발효 즉시 철폐되어 최혜국대우세율(MFN)에 비해 8% 낮은 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완성품에 대해서는 3년 균등 철폐되어 현재 2.6%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반면 부분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따라서 완성품의 경우 미국보다는 EU지역으로 부터의 수입이 혜택을 발휘할 수 있는 품목이나

실제 수입된 내역을 통해 살펴보면 EU로부터의 수입보다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신변장식용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FTA의 발효에 따른 관세의 인하효과가 수입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는 작용하였으나 관세의 부과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는 브랜드에 대한 선호를 구매결정의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다만, 완성품의 경우 FTA발효 전후 수입 증감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한-EU FTA의 경우 발효 전 3년간의 평균 수입금액대비 발효 후 3년간 평균수입금액이 658.1% 증가한 반면, 한-미 FTA는 발효 전 2년간 평균수입금액대비 발효 후 2년 평균수입금액이 -21.0% 감소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 <그림 24> 골프클럽 수입액 변화 추이 /



/ <표 26> 골프클럽 수입액 변화 /

(단위: 천달러, %)

품명 (HS코드)		발효전			기간 평균	발효후			기간 평균
		3년전	2년전	1년전		1년차	2년차	3년차	
골프클럽(완성품) (9506.31-0000)	EU	19 (-)	48 (152.6)	63 (31.3)	43 (91.9)	316 (401.6)	235 (-25.6)	428 (82.1)	326 (152.7)
	미국	-	27,362 (-)	20,343 (-25.7)	23,853 (-25.7)	17,927 (-11.9)	19,777 (10.3)	-	18,852 (-0.8)
골프클럽(부분품) (9506.39-1000)	EU	12 (-)	11 (-8.3)	43 (290.9)	22 (141.3)	38 (-11.6)	31 (-18.4)	39 (25.8)	36 (-1.4)
	미국	-	6,236 (-)	9,849 (57.9)	8,043 (57.9)	1,675 (-83.0)	2,601 (55.3)	-	2,138 (-13.9)
소계	EU	31 (-)	59 (90.3)	106 (79.7)	65 (85.0)	354 (234.0)	266 (-24.9)	467 (75.6)	362 (94.9)
	미국	-	33,598 (-)	30,192 (-10.1)	31,895 (-10.1)	19,602 (-35.1)	22,378 (14.2)	-	20,990 (-10.5)

자료: 관세청 및 한국무역협회

# 05 FTA 체제와 산업정책: 과감한 발상 전환의 필요성에 대하여

글/장근호 교수\_홍익대학교 국제경영학과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동시다발적인 FTA 협상을 통하여 이제 47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전 세계 GDP의 약 56%에 이르는 거대 시장에서 자유롭게 교역하게 되었다. 더욱이 중국과의 FTA를 필두로 TPP나 RCEP 등에 참여하게 된다면 사실상 대부분 물품이 교역장벽 없이 거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무역의 확대는 궁극적으로 정부의 시장개입을 줄이고 시장논리에 의한 자원배분을 지향하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을 지양하고 시장과 기업이 중심이 된 경제성장을 추구해왔다. 이는 신자유주의 거센 바람과 함께 대기업의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발생한 현상이지만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향상되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효율성과 자율성을 추구하는 시장경제체제의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역설적으로 산업정책을 거론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시대적 상황이 담대한 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990년말 이후 발생한 고용 없는 성장과 양극화가 FTA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가속화되면서 성장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물론 정보기술의 발달과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양극화는 불가피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 속도와 규모가 심각하다. 나아가 계획된 무역개방만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FTA 정책의 성패는 여타 경제정책이 FTA 정책을 얼마나 정밀하게 보완 할 수 있는가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고용 없는 성장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의 불균형이다. 한 예로 국내총생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2012년 사이에 44.4%에서 50.4%로 증가하였다. 대체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제조업 비중은 줄어들고 대신 서비스업 비중이 커져야 한다. 예컨대 제조업 강국인 독일과 일본에서도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각각 34%, 32%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제조업 비중도 1990년 당시 49.6%로 정점을 이루고 2000년에는 44.4%까지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다시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나고 있다. 이는 최종수요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7.0%에서 38.3%로 크게 증가하면서 수출의 핵심 축인 제조업 생산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 <표 1> 연도별 생산 및 취업비중 /

(단위: %)

		1995	2000	2005	2010	2012
제조업	생산비중	47.1	44.4	45.2	49.0	50.4
	취업비중	23.1	20.0	18.7	16.6	15.8
서비스업	생산비중	34.6	42.8	42.3	40.3	39.4
	취업비중	53.7	60.9	64.5	68.5	69.8

자료: 한국은행 각년도 산업연관표 작성결과

금융위기에서 보듯이 제조업이 경제의 근간을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집약적 성격의 산업 형태에다가 중간재 수입이 증가하면서 제조업의 고용창출능력이 너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한 예로 2012년 제조업의 취업계수<sup>7)</sup>는 2.1명에 불과하다. 그 결과 제조업 고용비중은 지난 12년 사이에 20%에서 15.8%로 감소하고 대신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은 60.9%에서 69.8%로 증가하였다. 약 85만개에 상당한 일자리가 제조업에서 사라지고 대신 180만개에 상당한 일자리가 서비스업에서 창출된 것이다. 반면 독일과 일본의 경우 제조업 생산비중이 우리나라에 비하여 15% 이상 낮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비중은 각각 22%, 17%로 우리나라(15.8%)보다 제조업에서 오히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결국 제조업의 생산비중은 급격히 증가한데 비하여 고용비중은 오히려 감소하면서 제조업 수출이 견인하는 성장모델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제조업의 자본화와 중간재 수입으로 수출-고용-소비 경제구조의 선순환구조가 약화되면서 기존

의 성장 패러다임으로는 균형적인 성장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사실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지만 최근 고용 형태에서 구조적 변화가 감지되면서 여론의 주시를 받게 되었다. 즉, 1990년대부터 시작된 제조업에서의 고용 감축은 그 동안 서비스업의 확대를 통하여 일부 흡수가 가능하였다. 하지만 최근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상용직 근로자 비중은 34.7%에서 49.1%로 증가한 반면 자영업 및 무급가족 종사자는 41.6%에서 30.3%로 감소하였다.<sup>8)</sup> 이는 지난 10여년 사이에 약 230만명에 이르는 사람이 취업 형태를 바꾼 것에 해당한다.

이처럼 매우 짧은 시기에 상당수 국민이 고용형태를 전환한 사실은 이에 동반한 사회경제적 비용과 장래 우리 경제에 미칠 시사점을 감안할 때 진지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만약 통계적 착오가 아니라면 이는 제조업 고용이 급속히 감소하면서 그 동안 도소매, 음식·숙박, 부동산, 교육 등 영세하거나 지대 추구적 성격이 강한 서비스 업종에서 일자리가 창출되었지만 2000년 이후에 들어서면

서비스업의 포화로 자영업이 몰락하면서 취업형태가 다시 바뀌고 있고 그러한 변화가 통계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어쨌든 그 변화 정도가 너무 심각하므로 보다 세심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제기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FTA 정책에 따른 개방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이전인 2012년까지 벌어진 상황임을 고려하면 교역 자유화가 향후 이러한 추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FTA로 인하여 수입품은 자유롭게 거래되는 반면 내수제품은 보호가 철폐될 뿐만 아니라 중간재에 대한 관세부담으로 역차별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대칭적으로 수출품의 경우 관세 철폐 이외 중간재 관세 환급이라는 이중 혜택을 받으므로 FTA 상대국 시장에서 그 나라 물품보다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 이처럼 FTA 정책은 수입 친화적일뿐만 아니라 수출 편향적 정책이므로 우리 경제가 당면한 최대 문제점인 수출-내수, 대기업-중소기업 그리고 완제품-중간재 사이의 양극화나 경제구조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논의가 FTA를 본질적으로 부정하기 위한 논의라고 해석하면 곤란하다. 모든 형태의 무역 개방이 그러하듯이 FTA에도 위기와 기회가 상존한다. 과거 다자주의 형식의 개방에서도 정도의 문제이지 같은 위험이 존재하였다. 논의의 핵심은 과거와 같은 점진적이고 계획된 개방이 아닌 전면적 개방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그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여부이다. 특히 경제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진 반면 정책적 운신의 폭은 제한된 상황에서 저임금정책이나 환율정책과 같은 타성적 정책 운용으로는 FTA 시대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동하기 쉽지 않다. 구체적으로 정책당국은 기존의 산업 중립적 정책이 과연 FTA 시대에도 유효한지 따져보고 필요하다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FTA 정책은 국내산업 및 교역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시장구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FTA를 추진하는 동기에는 국내시장의 경쟁 제고와 소비자 후생증대가 있다. 다만 FTA 정책만으로 국내시장이 제대로 된 경쟁 체제를 갖출 수 있다고 기대한다면 이는 무지하거나 순진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한 예로 FTA에도 불구하고 수입품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불만이 이따금씩 뉴스를 장식한다. 하지만 이는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경제학의 기본 원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데서 비롯된 오해로서 수입자 유화라는 충격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개별 시장 구조 특히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즉, 농산품과 같이 대체품이 많고 경쟁적인 시장에서는 FTA가 농산물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명품과 같은 독과점적 물품은 무역자유화가 가격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7) 생산액 10억원당 취업인원

8) 2010 기준년 산업연관표 작성 결과 및 2011~12년 산업연관표(연장표)를 이용한 우리나라 경제구조 분석, 한국은행 보도자료



결국 FTA가 독과점적 시장행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물품가격이나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병행수입 확대 등 보완책을 마련하여 FTA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경쟁정책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미시적 보완책으로 가격·유통구조가 제대로 개선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

FTA와 물품가격 사이의 상관관계는 단순히 소비자 후생 차원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시적 차원에서도 물가와 관련하여 중요하다. 즉, 수입자유화를 통한 국내가격의 안정은 물가-임금-비용 사이의 악순환을 차단하여 국민복지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요인이 된다. 예컨대 2010년 당시 국제원자재 가격 불안으로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4%대를 경험하였지만 선진국 물가 상승률은 평균 2%대를 유지하였다. 이처럼 동일한 상황에서 선진국 물가가 안정적 모습을 보인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선진국의 경우 경쟁 시장의 작동으로 업체들이 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기 어려워 물가가 안정될 수 있었다.

선진국 시장이 경쟁적인 성격을 갖는 데는 일찍이 수입을 자유화한 사실도 있지만 중세봉건시대 이래 경쟁적 사회·문화 인식이 깊게 뿌리내린 역사적 배경 아래 독과점행위를 엄단하는 철저한 경쟁정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역사적으로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해왔고 또한 경제개발을 위하여 경쟁정책이 산업정책의

종속적 역할을 하였다라는 측면에서 획기적인 경쟁정책의 보완이 없다면 FTA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후생을 제고하고 물가안정을 이룩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은 임금상승을 차단하고 비용인상을 억제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 요인에 해당하므로 FTA를 계기로 경쟁정책에 대한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돌이켜보면 1990년대 시장체제 확립이라는 원칙 아래 정부개입을 지양하였던 정책이 우리 경제의 과점적 성격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그 결과 중소기업은 불리한 여건 속에서 경쟁하였고 또한 대기업의 영역 확장과 내부거래로 좁은 국내시장에서 성장을 제약받으면서 최근에는 중소기업 고유 업종 지정이라는 사태까지 직면하게 되었다. 대기업으로 성장한 중소기업이 0.07%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궁극적으로 창업정신의 쇠락을 유발하여 우리 경제의 경직화 혹은 노후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FTA는 이제 과점적이고 협소한 국내 시장이 허락하지 않는 새로운 기회를 중소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해외업체와의 연대는 인재나 자본유치 등 중소기업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로 작용할 수 있다. 문제는 새로운 시장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각종 고정비용 등이 중소기업에게 결정적 진입장벽이 되므로 이 부분에서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FTA 시대에 중소기업이 중요한 이유는 중소기업이 부품소재산업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의 근원으로서 우리 경제의 고질적 문제인 고부가가치화나 국산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경제는 범용기술에 기초한 가공조립생산을 개도국에서 수행하고 선진국은 고급 소비재, 부품소재, 첨단정밀 그리고 복·융합 산업에 특화하는 국제분업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생산체계에서 중소기업이 갖는 창의성, 다양성 혹은 역동성은 중요한 자산이 된다. 이는 향후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문화,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의료·복지산업 등의 고속성장 서비스업에도 해당되는 사항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에는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정책을 바탕으로 여타 정책수단을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성장모형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부품소재산업을 위시하여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기술을 융합하거나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통합한 산업 혹은 문화를 접합한 신산업을 개발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가 물론 새로운 주장은 아니다. 다만 그동안 수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편향적이거나 고립된 성격의 산업정책으로 그 동안 기대하는 성과를 성취하기 어려웠다. 정보나 로버력 등의 자원 동원에서 대기업이 우세한 상황에서 중립적 정책이란 아무래도 대기업에 종속된 결과를 유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경제개발계획이 종료된 이후에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어려워 자원을 낭비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FTA 시대에는 비상한 각오로 정책 수립에 임해야 한다. 앞에서 논의한대로 FTA로 인하여 수출을 포함한 교역규모는 증대될 수 있더라도 기존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양극화나 고용불안은 타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FTA에도 불구하고 고물가·고임금구조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 후생이 개선되기는커녕 대외 경쟁력 하락으로 교역과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중소기업을 통한 성장과 고용 창출이라는 새로운 성장모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즉, 산업, 경쟁, 금융, 재정 등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문화, IT, 보건, 교육 등의 사회정책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 성장방안을 실행해야 한다. 요컨대 FTA 시대에는 기존의 사고방식으로는 성장과 고용을 동시에 성취할 수 없고 파격적 발상의 전환에 기초한 다양한 정책의 보완이 이루어져야만 FTA 정책도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06 수출입 기업의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글/오수교 전문위원\_국제원산지정보원

## 1. 시작하면서

올해는 우리나라가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  
한지 10년이 되었다. 그 간 9개 권역 47개 국가와  
FTA가 발효되어 전체 교역량의 36% 정도를 차지  
하고 있으며, 이러한 외형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무역수지도 증대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FTA 무역환경에서 무엇보다도 품목분류  
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수출입물품이  
FTA로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에 충족되  
어야 하는데, 그 충족 여부의 확인을 위해서는  
수출입물품뿐만 아니라 이들의 생산에 사용된  
상품의 품목분류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품목분류'란 수출입물품의 세율을 정할 목적 등  
으로 HS 협약의 부속서인 HS 품목분류표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그 물품이 해당하는 품목번호  
를 결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HS 협약의 목적은 하나의 물품은 하나의 품목  
번호로 결정됨을 조건으로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품의 통일적인 품목분류를 통하여 국제  
무역을 촉진하는데 있다.

그러 생산업체나 무역업체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개념과 HS 품목분류표에서 정한 용어나 개념이  
다른 경우도 있고, 날로 발전하는 다양한 유형의  
수많은 수출입물품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로  
국가 간에 품목분류가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품목분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는 전후과정에서 발생하는 품목분류에 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  
고자 한다.

전기다리미의 품목번호는  
제8516호이고  
기본세율은 8%입니다.

그렇지만 한-EU FTA  
원산지상품이면,  
특혜세율이  
0%가 됩니다.



## 2. FTA 무역환경에서 품목분류 트렌드의 변화

### 가. 수출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sup>10)</sup>의 품목번호 확인도 필요

FTA의 특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첫째가 협정  
에서 특혜를 주도록 정한 품목이어야 하고, 둘째는  
체약당사국의 일방이나 양당사국에서 만든 원산지  
상품이어야 한다. 그런데 체약당사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 만든 상품을 추가가공하거나 다른  
국가에서 만든 상품의 일부를 혼합하거나 결합  
하여 만든 상품인 경우에는 품목번호의 변화정도  
(세번변경기준)나 부가가치의 증가 정도로 원산지  
상품인지를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수출입  
상품뿐만 아니라 그 물품 제조에 사용된 재료의  
품목번호 확인도 필요하다. 즉, 아래 <그림1>과  
같이 한-EU FTA에서 전기다리미(제8516호)가  
원산지상품이 되려면,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  
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나 해당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을  
것" 중에서 어느 하나의 요건에 충족 되어야 한다.

이 때 "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라는 것은 제8516  
호에 속한 상품은 체약당사국(우리나라와 EU)의  
원산지상품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9) 품목분류의 주체는 관세관청인 세관과 관세사나 수출입업자 등이나, 최종결정권자는 관세관청인 세관이다. 반면 품목분류의 객체는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품이 된다.

10) 이 글에서 '재료'란 생산자의 관점에서 최종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것으로 최종 상품의 전부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구성성분(ingredient)·원재료(raw material)·구성요소(component)·부분품(part) 모두를 포함한다. 다음 그림1에서 자동온도조절기나 전력케이블 등은 구성요소나 부분품으로 재료가 된다. 그런데 전력케이블의 생산자는 전력케이블이 최종 상품이 되고, 구리선이나 피복 재료인 플라스틱 등이 재료가 된다.

/ <그림 1> 전기다리미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종류와 품목번호 /

1. 자동온도조절기 (제9032호)비원산지상품		5. 전력케이블 (제8544호)비원산지상품
2. 스팀분사기 (제8424호)비원산지상품		6. 워터탱크 (제8516호)원산지상품
3. 프레임과 손잡이 (제8516호)원산지상품		7. 표시반 (제8531호)비원산지상품
4. 열판 (제8516호)원산지상품		8. 전열용 저항체 (제8516호)원산지상품

※ FTA 협정상 원산지상품이란 우리나라나 체약당사국에서 만든 상품, 비원산지상품이란 그 외 국가(지역)에서 만든 상품을 말한다.

따라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기 다리미의 품목번호뿐만 아니라 전기다리미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품목번호를 확인하여 원산지상품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서 제8516호로 분류되는 상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리하여야 한다.

실제 품목분류를 함에 있어 최종 상품(예: 전기 다리미)을 분류하는 것보다 재료의 품목분류가 어려운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그 이유는 품목분류의 대상이 많을 뿐만 아니라 거래유형도 다양하고 품명이나 기능이 모호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나. 국내거래상품의 품목분류도 필요**

전기다리미가 원산지상품인지를 확인하려면 전기 다리미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일부를 국내에서 공급받거나 체약당사국(이 경우에는 EU)에서 수입한 경우에는 국내공급자나 수출자(국가)가 발행한 원산지확인서나 원산지증명서를 통하여 원산지상품인지를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때에도 해당 상품(예: 전열용 저항체)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 (예: 니크롬선)의 품목분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국내거래만을 주로 하는 중소기업체는 FTA 특혜세율의 이익을 직접 누리는 것이 아니므로 FTA에 대한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다. 설령 중소기업체가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려고 해도 품목 분류 등 원산지관리의 부담인력이나 기존 인프라

를 갖추고 있지 않아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하위 협력사로 내려갈수록 더욱 심각하다.

**다. 수출상품의 품목분류도 중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품목분류의 주된 목적이 수입상품의 세율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수출상품은 수입상품에 비하여 품목분류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음 <표1>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FTA 무역이 본격화되기 이전에는 관세청에 수입상품의 품목분류를 주로 질의하였다면, EU와 미국과 같은 거대 경제권(국가)과 FTA가 본격화된 이후에는 수출상품의 품목분류 질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FTA가 확대되면 될수록 심해지리라 예상된다.

전기다리미가 어떤 경우에 원산지 상품이 될 수 있는지요?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상품공정당 가격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나,



제8516호에 속하는 3,4,6,8 모두 원산지상품 이므로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네요!



- 1. 자동온도조절기
- 2. 스팀분사기
- 5. 전력케이블
- 7. 표시반

그렇지만 역외산인 1,2,5,7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제8516호에 해당하면 원산지 상품이 아닐 수 있습니다



/ <표 1> 관세법 제86조에 품목분류사전심사 연도별 신청건수 /

(단위: 건수,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수입상품	1,330(81)	1,302(49)	2,755(51)	2,885(42)
수출상품	316(19)	1,330(51)	2,652(49)	4,002(58)
합계	1,646(100)	2,632(100)	5,407(100)	6,887(100)
증감비율	28	60	105	27

※ 관세청 통계연감에서 발췌한 것으로 한-EU(2011.7)와 한-미(2012.3) FTA가 발효된 시점을 전후로 신청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2010년을 기준으로 2013년을 비교하면 전체적으로는 약 4.2배 증가했는데, 수입은 약 2.2배가 수출은 12.7배가 증가하였다.

FTA 무역환경에서 수출상품의 신청건수가 급증하는 이유는 정확한 품목분류를 알려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는 품목번호에 따라 특혜세율이나 원산지결정기준이 상이한 경우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할지 여부를 알고자 하는 목적이라 여겨진다. 동일 상품에 대하여 수출국가와 수입국가의 품목번호가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면 이를 조정하기도 쉽지 않다.

기본적으로 FTA의 특혜세율 적용이나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의 판정을 위한 품목분류는 수입 국가의 권한이므로 우리나라와 수입국의 품목분류가 달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수입국의 품목분류를

중중해서 원산지증명서 등을 발급토록 조치하여 이러한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하고 있다. 즉, FTA 특혜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에 우리나라와 수입국간의 품목분류가 달리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 수입국의 품목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제출하면 수입국의 품목번호를 기재해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수출신고서와 원산지증명서에 표시된 품목번호가 서로 다른 것은 찝찝하고,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수입국의 품목분류 오류로 합당한 특혜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 3. 품목분류 다툼이 자주 발생하는 상품

현실적으로 품목분류 다툼의 본질은 품목번호가 달라짐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이나 세율

차이 등 수출입업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있을 때 나타난다. 따라서 다툼이 발생하는 상품을 국한

할 수는 없지만, FTA 특혜세율 적용과 원산지상품 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세 종류의 상품에서 자주 발생한다.

#### 가. 부분품(part, 부품)

사전(辭典)에서 부분품이란 “하나의 기계나 장치, 제품 등의 전체 속에서 이를 이루는 개별적인 구성부분이 되는 물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HS 품목분류표에서는 “부분품”을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용어 정의가 없기 때문에 품목분류의 주체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왜 그러는지 앞의 <그림1>에서 언급한 전기다리미에 사용하는 자동온도조절기와 워터탱크(water tank)를 사례로 들어 설명한다. 품목분류는 최우선적으로 HS 품목분류표에서 해당 품명(상품)을 특별히 규정하는 호가 있으면 그 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자동온도조절기는 제9032호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워터탱크는 특별히 규정하는 호가 없기 때문에 구성 재료에 따라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제3926호)’에 분류할지 아니면 ‘전기 다리미의 부분품(제8516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이다. 이 경우에 필자가 생각하기로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때 전기다리미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는데 이론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비원산지상품인 자동온도조절기(제9032호)와 원산지상품인 워터탱크(제8516호)가 서로 결합(모듈화)되어 하나의 상품을 이룬 경우에는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여부이다. 이 경우에도 자동온도조절기나 워터탱크 중에서 어느 하나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상품으로 보아 그 상품이 해당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이다. 전기다리미의 재료가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다양한 결합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수출입업자는 FTA 특혜세율 적용의 편리성을 위해서는 제8516호로 분류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여 FTA 특혜세율을 적용 받으려면 제8516호로 분류되는 모든 상품은 반드시 원산지상품이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산업계에서는 여러 개의 구성요소를 하나로 집약한 모듈화된 상품이 많이 개발·거래됨에 따라 이러한 다툼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 나. 블랭크(blank, 반가공품)

아래 <그림2>와 같이 ‘블랭크’란 직접 사용할 수는 없으나 완전하거나 완성된 제품의 대체적인 형상이나 윤곽을 갖춘 것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전한 제품이나 완성된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에 적합한 블랭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완전한 제품과 같은 호에 함께 분류한다.



각 FTA 협정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으려면 품목 번호의 변화(세번변경기준)나 부가가치가 일정한 비율 이상 발생한 경우이어야 한다. 그런데 비원산지 재료인 블랭크를 국내에서 가공하여 완전한 상품을 만들었다라도 품목번호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해당 상품이 부가가치 비율을 적용하는 상품이 아니라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블랭크를 분류할 때에도 다툼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다. 융합상품**

‘융합’이란 둘 이상의 사물을 서로 섞거나 조화시켜 하나로 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산업발달이나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다양한 융합상품이 개발·거래되고 있다. HS 품목분류표

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상품은 하나의 번호로 분류(一物一處의 法則)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품목분류규정을 마련하고 있더라도 특히 융합 상품인 경우에는 품목분류의 주체에 따라 분류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실례로는 비데를 미국에서는 물분사기로 제8424호로 분류하나, EU에서는 가열용 전열기기로 제8516호에 분류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같이 비데는 물을 분사하여 신체의 특정부분을 세척하는 것이 주 기능이므로 제8424호로 분류하였다. 반면에 EU에서는 앉는 부분을 덮어주는 기능과 물을 데워주고 더운 바람을 불어주는 기능이 주 기능으로 보았던 것 같다. 이러한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와 미국이 제8424호로 분류하였다하여, EU에서 이를 쉽게 따라갈리도 없으리라 여겨진다.<sup>11)</sup>

/ <그림 2> 완전한 제품과 같은 호에 분류되는 블랭크의 모양 /



11) 꼭 이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세계관세기구(WCO)의 HS 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한 문제가 있으며, HS 위원회에는 수출입업자는 상정할 수 없으며, 정부만 하도록 되어있다.

비데를 미국에서는 제8424호에, EU에서는 제8516호로 달리 분류하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제8424호로 분류합니다.



**4. 문제점 해결방법**

**가. 수출입업체의 사전준비절차와 관리능력 배양**

‘자기의 일은 자기가 제일 잘 안다’라는 격언과 ‘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법언이 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제조명세서(BOM, Bill of materials)를 기초로 자기가 생산·거래하는 상품이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유익한 방법이다.

즉, 자기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나 상품의 기능·용도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HS 품목분류표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품목분류를 하는데, 이 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사후에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도 사후검증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될 것이 예상된다면 관세법 제86조에

의한 품목분류사전회시 또는 FTA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원산지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관세청장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품목번호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이 다르거나 협정세율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사전에 예측된 위험은 위험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간의 품목분류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면 수입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것도 문제해결에 유익한 방법 중 하나라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자사 상품의 FTA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과 함께 이를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우수한 원산지관리사를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 나. 수출기업과 국내공급업체의

### 적극적인 지원으로 FTA 활용률 증대

FTA는 협정마다 그 내용이 다르고 그 절차도 복잡하므로 수출기업이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FTA 맞춤형 컨설팅과 각종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의 FTA-PASS 등 원산지관리시스템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의 보급을 크게 늘리고 있다.

그리고 국내거래를 주로 하는 협력을 위하여 사전에 원산지상품인지를 확인해 주는 제도를 전국 세관에서 운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세청에서는 수입국의 부당하거나 잘못된 품목분류로 인하여 수출기업이 피해를 보는 경우에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HS국제분쟁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국내거래업체가 정확한 원산지확인서를 적기에 수출기업에 제공함으로써 FTA 활용률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능력과 인식의 변화로 국내거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동기를 제공하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좋은 제도가 더 많은 성과를 내려면 충분한 홍보와 함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내실화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 다. 품목분류 전문가의 양성

FTA는 품목분류에서 시작해서 품목분류로 끝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 다양한 모든 상품을 적절하게 분류하는 것도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수출상품이 합당한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국의 품목분류가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므로 실무능력과 이론을 겸비한 국제적인 품목분류 식견을 가진 민관 전문가의 양성이 시급하다.

이런 전문가는 단기간에 양성될 수 없는 것이므로 단편적인 교육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 라. 품목분류 사전심사물품의 위탁처리

수출입업체는 자기의 능력으로 정확한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거나, 품목분류에 따라 세율이나 원산지결정기준이 상이한 사유 등으로 관세청장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86조에 의한 품목분류사전회시를 신청한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종전에는 주로 수입상품에 관한 질의가 주를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수출상품의 질의가 많아지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이 수입국에 기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수출상품이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목적이라면 수입국의 관세당국에

질의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수출자가 직접 질의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또한 우리나라 관세청에서 회신한 내용을 상대국 관세당국에 제출하면 편리하고 신속하게 더 나아가 공정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sup>12)</sup>

따라서 이 품목분류사전회시사는 신청자의 편의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더욱 확대·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제한된 인원으로 폭주하는 업무량(2013년에는 2010년 대비

약 4.2배 증가)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분류상품의 복잡성과 국제사례의 조사 등으로 정확히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FTA가 확대될수록 심화되고, 우리나라 전체교역량의 약 25%를 차지하는 중국과의 FTA가 발효되면 극에 달할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정부조직이나 인력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미리 민간 전문가를 지정하여 상품의 제조공정이나 각국의 품목분류사례에 관한 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일부 위탁 처리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라 생각된다.

## 5. 맺음말

FTA의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각종 무역통계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무역환경에서 FTA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방향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찾아내어 이를 개선하여 성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특히 우리 수출상품이 최대한 FTA 특혜세율을 적용 받음으로서 국제경쟁력을 높여 수출증대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우리 수출상품이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는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FTA가 성숙단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내 중소기업에서 적기에 정확한 원산지확인서를 수출기업에 제공하여 수출상품의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상생 협력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할 사항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 글에서는 품목분류에 관한 제한된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그렇더라도 FTA에서 품목분류가 근간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품목분류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할 것이다.

끝으로 문제해결방법으로 제시한 사항이 활발한 토론을 거쳐 정책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하며, 이러한 정책이 우리나라의 수출기업과 국내공급업체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

<sup>12)</sup> 관세제도운영이 선진화되지 않은 아세안 국가 등의 관세당국으로부터의 부당한 행정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 우리도 우리나라와 수입국간의 품목분류가 달리 운영될 때에 수입국의 품목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제출하면 수입국의 품목번호를 기재해서 FTA 특혜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 07 「거래당사자」와 FTA 활용 사례

글/김덕연연구원\_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개발본부

FTA협정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거래당사자요건을 갖추어야한다.

거래당사자라함은 당사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수입자, 생산자를 의미한다. 이 때의 「수출자」는 통상적인 매매계약의 「수출자(매도인)」와는 다른 개념으로, 상품이 수출되는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다.

다양한 거래들을 예로 들어 해당 거래에서 FTA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 무역거래형태에 따른 FTA활용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기 위한 전제조건인 하나로, 「거래당사자」 요건이 있다. FTA에서 수출자는 상품이 수출되는 당사국 영역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기타 관련 의무를 지닌 자이다. 그러나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수출자(매도인)와 수입자(매수인)가 FTA협정에서 정하는 체결국에 소재하는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FTA의 활용이 가능한 경우는 존재한다.

/ <그림 1> FTA 특혜관세 적용 위한 수출자와 수입자 /



가능한 무역거래형태를 그림으로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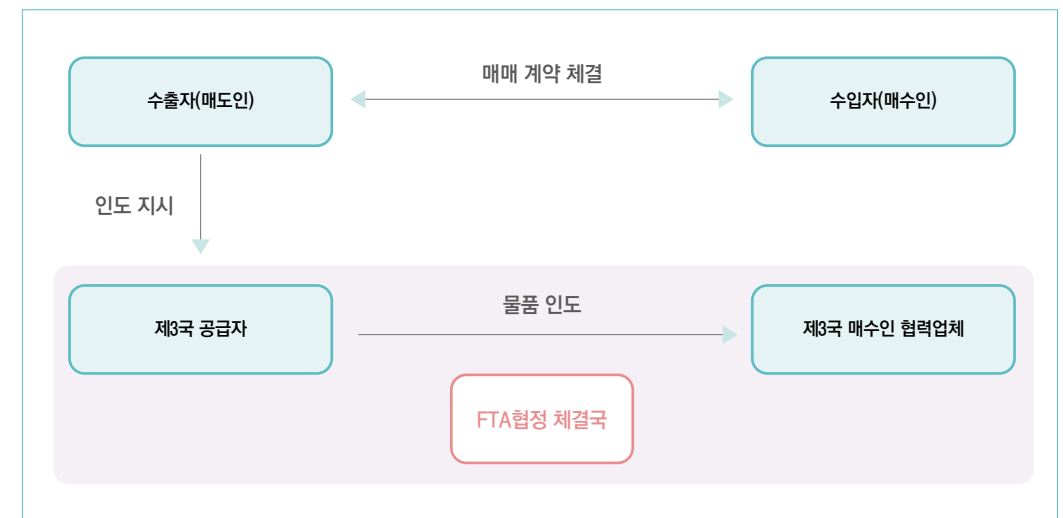
경우 매수인의 협력 업체는 FTA특혜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 1. 외국인도 수·출입

매매계약서상의 수출자(매도인)와 수입자(매수인)가 FTA체결국 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매도인이 지정한 제3국의 물품 공급자와 매수인이 지정한 제3국 기업이 속한 국가가 FTA체결국인

단, 매도인이 지정한 제3국의 물품 공급자는 해당 매수인의 협력 업체가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체결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공급해야한다.

/ <그림 2> 외국인도 수출입 거래 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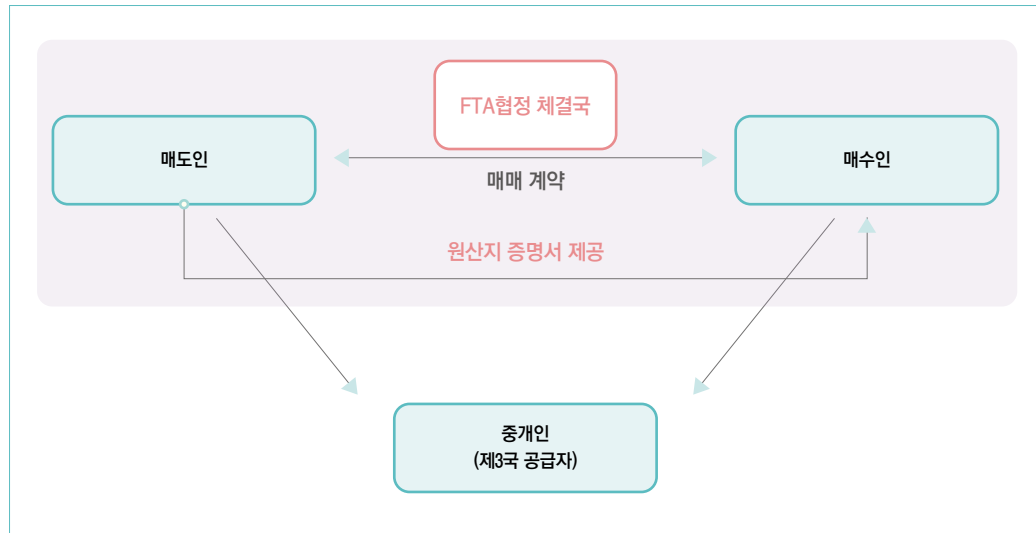


## 2. 중개무역

중개무역은 중개인이 매매계약상의 수출자(매도인)과 수입자(매수인)간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단순히 수수료만을 취하는 형태이다. 이때 거래 당사자의

노출은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수출자와 수입자가 FTA체결 당사국이라면 FTA특혜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 <그림 3> 중개무역 수출입 거래 예시 /



### 거래 예시 1

A사와 B사는 플랜트 설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의 수출자(매도인) A사는 한국에 소재하고 있으며, 수입자(매수인) B사는 중국에 본사를 둔 중국계 기업이다. 최근 B사는 미국 내 공장을 설립하고 있는데, 필요한 설비를 A사로부터 공급 받기로 하였다.

및 기계 등 주요 설비들을 직접 미국으로 운송하고자 하는데, 일부는 A사가 직접 제조, 국내 조달 받아 선적할 계획이며, 일부는 수입자(매수인) B사와 협의하여 양도신용장(Transferable letter of Credit)으로써 해외공급자로부터 선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A사는 매매계약에 따라 기기

A사가 미국으로 수출할 매매계약상의 계약 물품은 다음과 같다.

/ <표 1> A사와 B사의 매매계약 대상품 /

	품명	HS Code	원산지결정기준
1	원자로	8401.10-0000	CTSH
2	원자로의 부분품	8401.40-0000	CTSH
3	수관보일러(45Ton 이상)	8402.11-0000	CTSH and BU35% / BD45%
4	공기조절기	8415.81-0000	CTSH
5	압축공기식 모터	8412.80-0000	CTSH
6	노	8417.80-2000	CTSH

A사는 B사가 발행한 양도신용장을 이용하여 설비 구성품의 조달을 아래 그림과 같이 계획하고, 원산지소명서 및 원산지확인서 제공이 가능한 원재료<sup>13)</sup>에 대해 양도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인보이스 등 관련 서류를 자신의 명의로 발행하여 수입자의 미국 현지공장으로 물품을 공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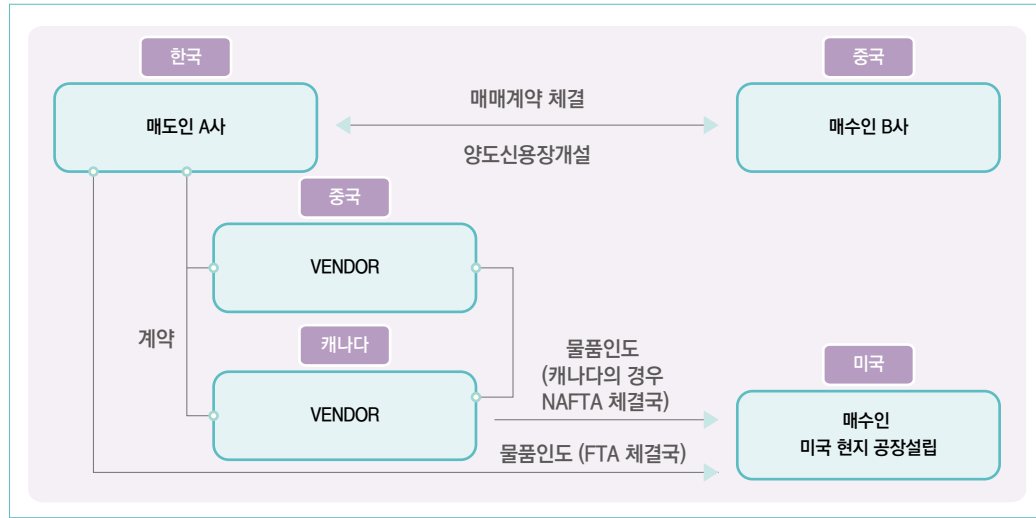
대해서는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지 못하였다. 만약, 주거래(매매)계약 당사자인 A사(매매계약상 수출자)와 B사(매매계약상 수입자)가 FTA의 활용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또한 FTA 특혜 관세 혜택이 가능했을 것이다.

이때, A사는 한국에서 선적한 물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 등 원산지관련 서류를 B사에 제공하였고, B사는 이를 미국 현지 법인에 인도하여 한-미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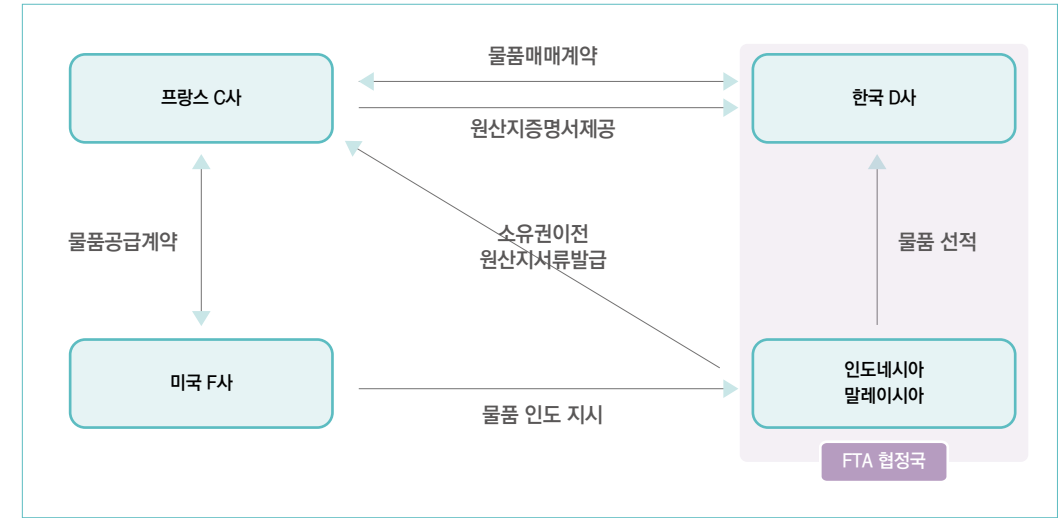
수입자 B사의 미국 법인(NAFTA상 수입자)은 캐나다 소재의 해외공급자(NAFTA상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sup>14)</sup>를 발급 받아 NAFTA FTA 특혜세율을 적용 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A사는 매매계약 시 수입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유리한 계약을 이끌 수도 있었을 것이다.

13) 한-미 FTA 원산지기준을 충족했다 가정함  
14) NAFTA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였다 가정함

/ <그림 4> A사와 B사의 거래도 /



/ <그림 5> C사와 D사의 거래도 /



거래 예시 2

프랑스 소재 C사와 한국 소재 D사는 물품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국적 기업인 C사는 프랑스에서 물품을 생산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해당 물품의 공급이 가능한 미국의 F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서상의 물품을 D사에 선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미국의 공급자 F사는 다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생산지사에게 생산 및 선적을 지시했다. C사

와 D사간의 매매계약에 총 5개국의 당사자가 개입된 셈이다.

프랑스의 C사는 미국의 F사를 한국 D사에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미국의 F사가 노출될 경우, 한국의 D사는 프랑스 C사를 배제하고 미국의 F사와 직접 거래 할 것이다.) 물품의 선적과 함께 선적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고, 원산지증명서류<sup>15)</sup>를 공급 받아 한국 D사에 제공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5) 한-아세안 FTA 원산지기준을 충족했다 가정함



# 08 FTA 지원 사업의 성과와 향후 방향

글/윤호성연구원\_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개발본부

우리나라는 FTA의 조속한 이행을 돕고자 정부주도하에 FTA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FTA 지원사업은 수출입 기업의 FTA 활용역량을 신장시켰다. 관세청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를 통해 지원사업의 성과를 되짚어 보고자 한다.

## 1. 관세청 FTA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개요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FTA 활용증진을 위한 다수의 FTA 지원사업이 진행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주요 FTA 지원사업으로는 교육, FTA 컨설팅, FTA 정보제공(세울 및 원산지결정기준, HS 검색 등), 원산지관리 시스템 지원 등이 있다.

관세청은 이 가운데 4개 부문 모두를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지원사업으로는 원산지결정기준 및 인증수출자 인증실무교육, FTA 컨설팅, YES FTA (FTA 정보제공), FTA PASS(원산지관리시스템) 등

이다. 이들 지원사업은 기업들의 FTA 활용역량 신장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FTA 이행 10년차를 맞고 있는 현시점에서 해당 지원사업은 기존의 양적 확대에서 질적 지원 강화로의 방향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관세청 FTA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를 통해 지원사업의 성과를 측정해보고, 기업들의 FTA 활용니즈를 확인해 보았다. 만족도 조사에 총 698명이 응답하였으며, 측정항목은 공공서비스고객 만족지수(PCSI) 항목<sup>16)</sup>을 사용하였다.

/ <표 1> FTA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설계 /

구분	FTA 컨설팅	FTA 정보제공	FTA PASS	FTA 교육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 컨설팅</li> <li>인증수출자 컨설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 포털 사용기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PASS 사용기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증수출자 인증 실무 교육</li> <li>원산지결정기준 교육</li> <li>FTA PASS 사용자 교육</li> </ul>
응답자수	273 명	144 명	115 명	166 명
총 응답자 수				698 명

## 2. 지원사업 만족 지수

### 가. 공공서비스 고객 만족 지수(PCSI)

기업들은 관세청 FTA 지원사업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며, 특히 '13년 컨설팅 사업에 가장 만족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	

/ <표 2> 관세청 지원사업 공공서비스 고객만족 지수 /

구분	응답자 (명)	PCSI 지수	전반적 만족		요소 만족			사회만족
			절대만족	상대만족	상품만족	전달만족	환경만족	사회적책임
관세청 종합 <sup>17)</sup>	698	76.5	78.4	75.7	76.5	74.9	75.7	76.1
FTA 정보제공	144	76	79.8	76.1	76.1	72.2	73.5	74.4
FTA PASS	115	76.5	77.2	75.6	78.4	76.3	75.7	76.5
FTA 교육	166	78.5	79.8	76.8	77.3	78.9	79.5	78.7
컨설팅 종합 <sup>18)</sup>	273	75.4	77.3	74.9	75.5	73.3	74.7	75.1
'13년 컨설팅	106	81.4	82.2	80.7	81.5	79.6	81.1	80.6
'11~'12년 컨설팅	167	71.9	74.2	71.3	71.7	69.2	70.7	71.6

주: PCSI 지수는 전반적 만족, 요소만족, 사회만족 3요소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출, 측정항목 부록 1 참조.

17) FTA 컨설팅, FTA 정보제공, FTA 교육, FTA PASS 만족도 결과 종합  
18) '11~'13년 컨설팅 종합

16) 부록 1 참조

2013년 관세청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종합만족도는 76.5점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가장 높은 만족은 보인 지원사업은 2013년 FTA 컨설팅으로

응답되었다. 다음으로 FTA 교육, FTA PASS(원산지관리 시스템) FTA PORTAL 등으로 조사되었다.

### 나. 만족차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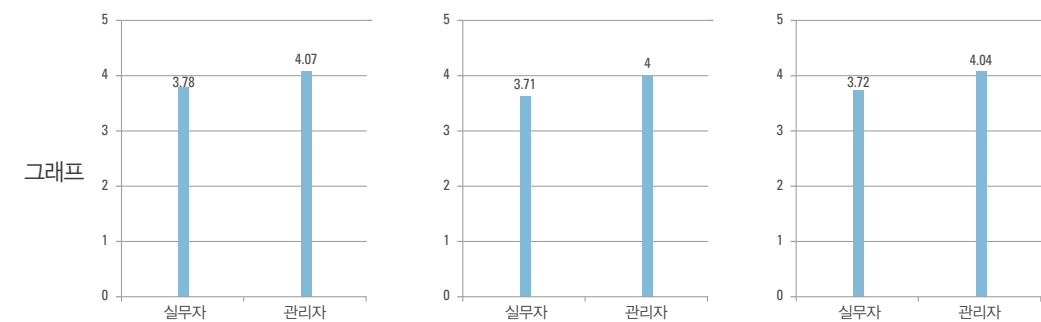
담당자 직급 및 기업규모에 따라 만족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도출

#### (1) 직급별 만족 차이 검증

FTA 실무자들이 관리자에 비해 지원사업에 낮은 만족을 보임. 기업 실무자들의 지원사업 만족도 향상 노력 필요

/ <표 3> 관세청 지원사업 직급별 만족 차이 검증 /

직급	전반적만족		요소만족		사회만족	
	표본수	평균	표본수	평균	표본수	평균
실무자	520	3.78	520	3.71	520	3.72
관리자	170	4.07	170	4.00	170	4.04



주: 통계량은 제시하지 않았으며, 통계량 P<0.05 수준에서 유의함. 평균 :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측정된 값의 평균

지원사업 만족도조사 응답자를 직급별로 FTA 실무자(사원, 대리, 주임, 과장)와 관리자(부장, 경영층, 임원)로 구분하여 두 그룹이 만족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검증결과<sup>19)</sup> 측정요소(부록 1 참조)인 전반적 만족, 요소만족, 사회만족 모두 실무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관리자에 비해

19) t-test 분석

낮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의 FTA 지원사업이 FTA 실무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실시한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

할 때 향후 사업방안은 실무자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원하는 지원 내용을 세부적으로 발굴 및 적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2) 기업규모별 만족 차이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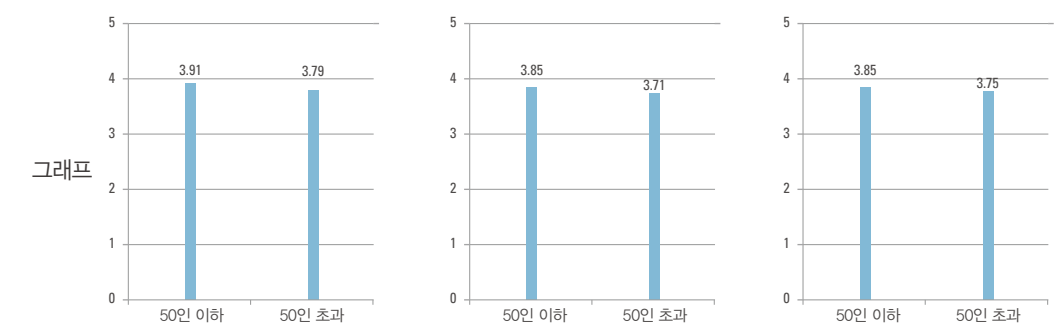
소기업이 중기업 이상의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이 높음. 소기업 FTA 활용을 적절히 지원하고 있음

앞서 검증한 방식과 동일하게 응답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50인 이하 기업과 50인 초과 기업으로 나누어 만족차이를 검증한 결과, 50인 이하 기업들이 50인 초과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지원사업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반적 만족, 요소만족 지수에서 만족의 차이가 있었으며, 사회만족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관세청은 FTA 컨설팅을 통해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들을 적절히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된다.

/ <표 4> 관세청 지원사업 기업규모별 만족 차이 검증 /

직급	전반적만족		요소만족		사회만족	
	표본수	평균	표본수	평균	표본수	평균
50인 이하	360	3.91	360	3.85	360	3.85
50인 초과	330	3.79	330	3.71	330	3.75



주: 통계량은 제시하지 않았으며, 통계량 P<0.05 수준에서 유의함. 평균 : 5점 척도로 측정된 값의 평균

### 3. 관세청 FTA 컨설팅 성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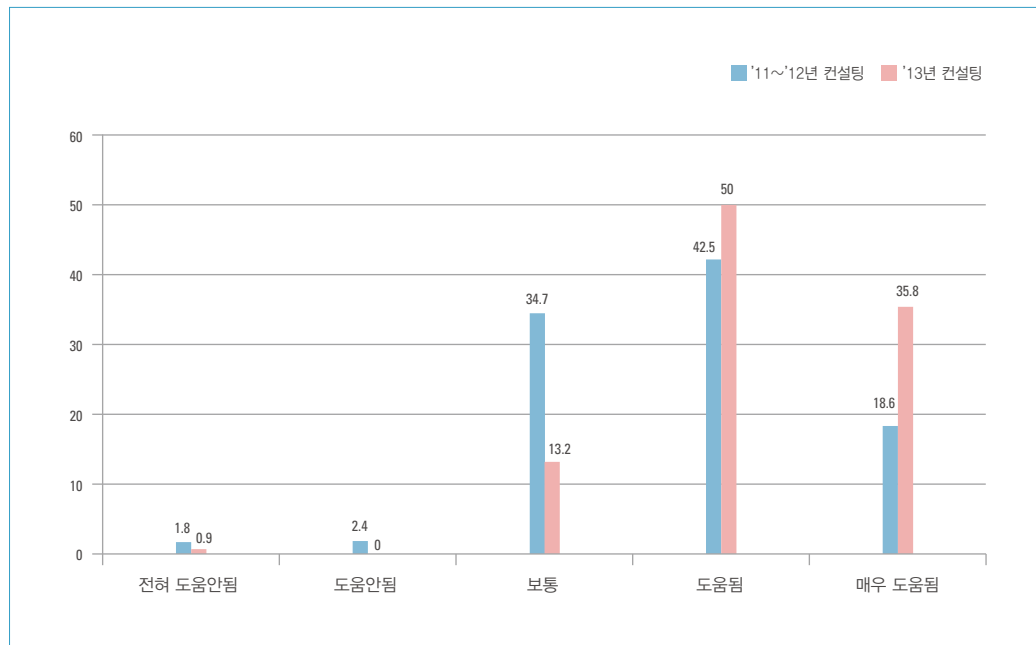
#### 가. FTA 수출증진

##### (1) 원산지관리 도움여부

원산지 관리 도움여부 관련 질문에, 긍정적 응답은 '11~'12년 61.1%에서 '13년 85.8%로 24.7%p 증가함

관세청 FTA 컨설팅이 원산지 관리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11~'12년 컨설팅 수진기업은 “도움 됨”이 42.2%, “매우 도움됨”이 18.6%를 차지하여 긍정적 답변이 총 61.1%로 나타났다. 반면 '13년 컨설팅 지원 부문에서는 “도움 됨”은 35.8%로 '11~'12년 대비 무려 17.3%p 증가하여, 긍정적 답변이 총 85.8%로 나타났다.

/ <그림 1> 문항. 관세청 컨설팅은 FTA 원산지 관리에 도움이 되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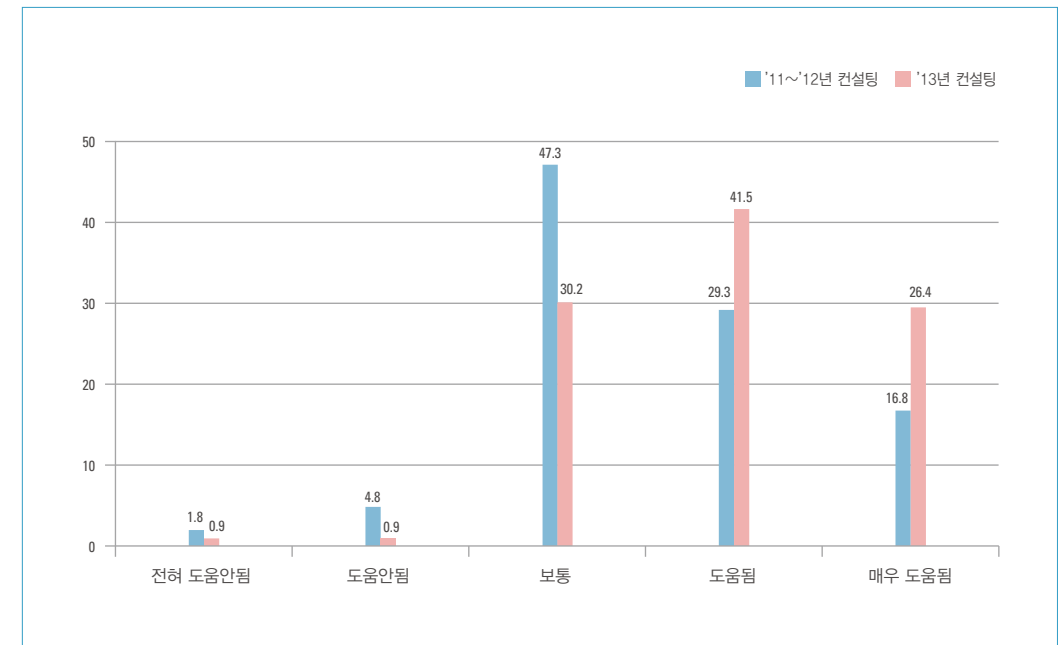


##### (2) 원산지 판정 도움 여부

원산지 판정 도움 여부 관련 질문에, 긍정적 응답은 '11~'12년 46.1%에서 '13년 67.9%로 21.8%p 증가함

관세청 FTA 컨설팅이 원산지 판정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11~'12년 컨설팅 수진기업의 47.3%가 “보통”으로 응답해, 원산지판정 도움 여부 효과성에 중립적 의견이 많았다. 또한 “도움 됨” 29.3%, “매우 도움됨”은 16.8%를 차지하였다. 반면, '13년 컨설팅 지원 부문에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30.2%로 17.1%p 감소하였으며, “도움됨”이 41.5%로 12.2%p 증가하여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였다. 끝으로 “매우 도움됨” 26.4%로 9.6%p 증가하였다.

/ <그림 2> 문항. 컨설팅이 원산지 판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





**(3) 기업 실정에 맞는 FTA 활용 솔루션 제공**

기업 실정에 맞는 솔루션 제공 여부 관련 질문에, 긍정적 응답은 '11~'12년 34.1%에서 '13년 54.7%로 23.6%p 증가함

기업실정에 맞는 솔루션 제시 여부 질문에, '11~'12년 컨설팅 지원 수혜 기업들은 “보통” 응답 비중(55.3%)이 가장 높았다. “도움됨” 응답이 24.6%로 나타났으며, “매우 도움됨” 응답은 불과 9.6%에 그쳐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응답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3년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먼저 '11~'12년 컨설팅에서 가장 높은 응답 비중을 차지한 “보통” 응답 유형의 경우 34.9%로 18.4%p가 감소하였

으며, 긍정적 응답 유형인 “도움됨”은 10.4%p 증가한 34.9%를 차지하였다. “매우 도움됨” 응답 비중은 19.8%로 10.2%p 증가하였다. 긍정적 응답의 총 증가율을 살펴보면, '11~'12년 34.1%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13년 54.7%로, 기업 적합 FTA 솔루션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년 역시 “보통” 응답 비중이 34.9%로 낮지 않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4) FTA 활용인식 변화**

FTA 활용인식변화 여부 관련 질문에, 긍정적 응답은 '11~'12년 58.1%에서 '13년 82.1%로 24%p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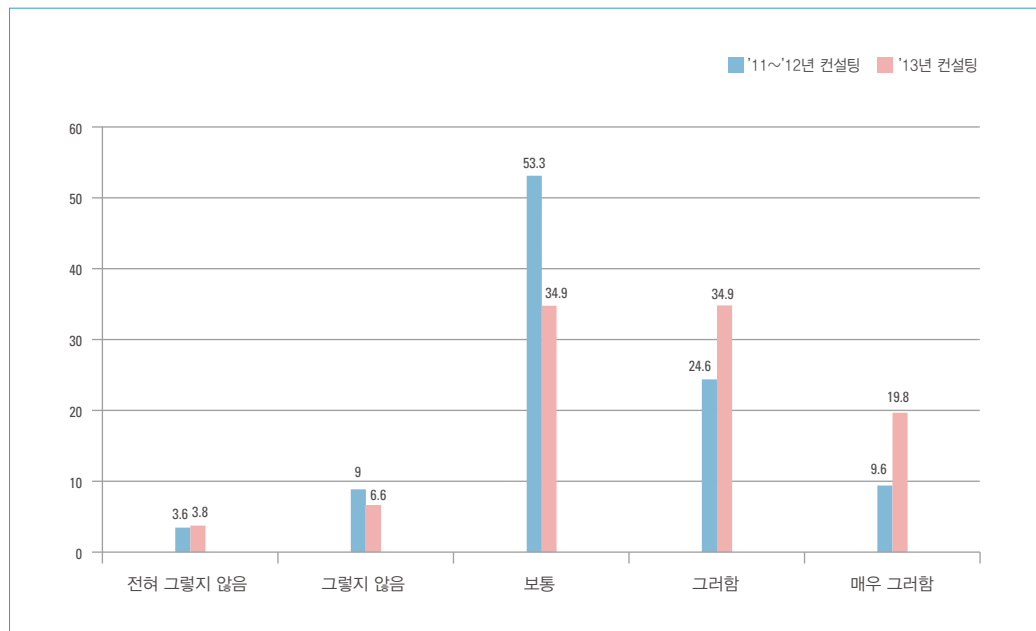
FTA 활용인식변화 여부 질문에, '11~'12년 컨설팅 응답 유형을 보면, 36.5%의 응답자가 “보통”이라 응답하였으며, 40.7%의 응답자는 “기여함”으로 응답하였다. “매우 기여함” 응답 비중은 17.4%를 차지하였다.

감소하였으며, “기여함”의 응답 비중은 47.2%로 6.5% 증가하였다. “매우 기여함” 응답 비중은 34.9%p 무려 17.5%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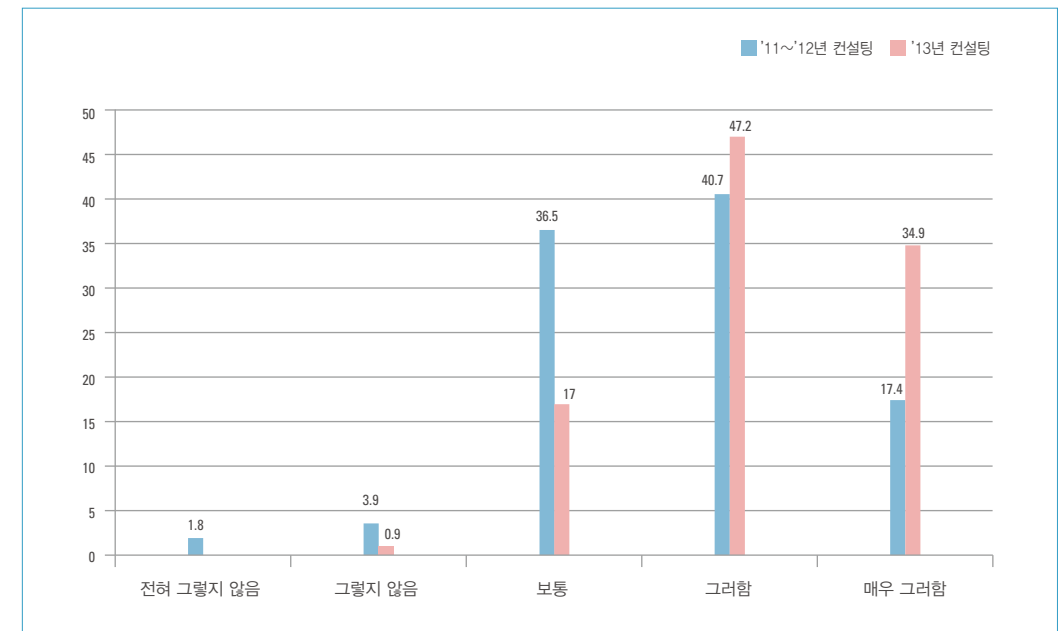
'11~'12년 긍정적 응답 비중은 58.1% 인 반면, '13년 컨설팅의 응답 비중은 82.1%로 나타나 높은 증가율을 보여, 기업들의 FTA 활용인식이 FTA 컨설팅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3년 컨설팅 응답자들의 응답 비중을 살펴보면, 보통이라는 응답이 17%로 직전 사업 대비 19.5%p

/ <그림 3> 문항. 기업 실정에 맞는 FTA 활용 솔루션 제공 하였는가? /



/ <그림 4> 문항. 관세청의 FTA 컨설팅이 기업들의 FTA 활용 인식제고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나. 지원환경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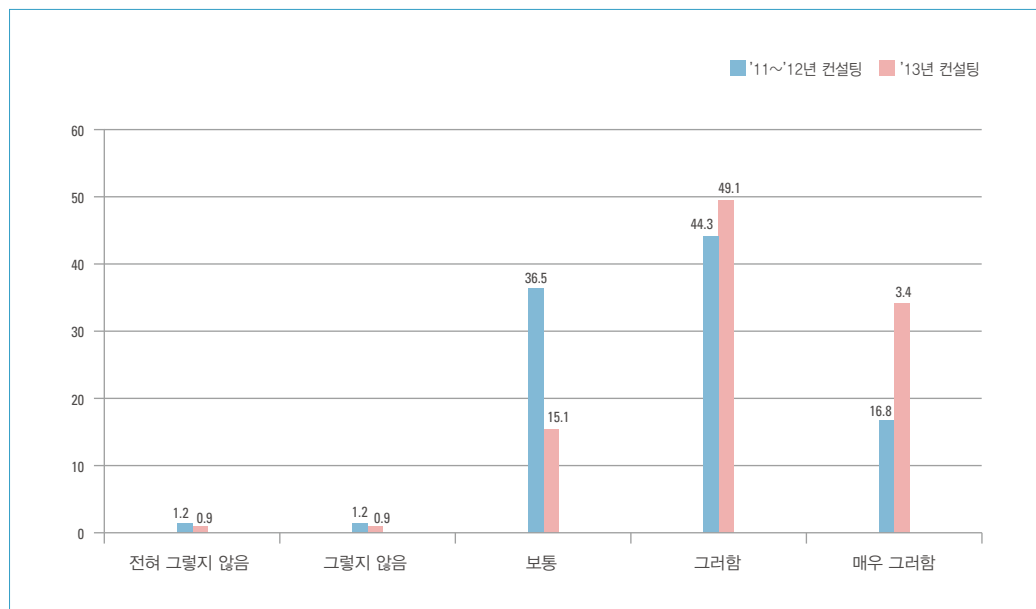
**(1) 지원절차의 신속성**

컨설팅 지원 신청부터 실제 지원까지의 신속성 관련 질문에, 긍정적 응답은 '11~'12년 61.1%에서 '13년 83.0%로 21.9%p 증가함

지원절차 신속성 여부 질문에, '11~'12년 컨설팅 수혜기업 응답자의 경우 “보통” 응답비중이 36.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속함”은 44.3%의 응답 비중을 보이고 있다. “매우 신속함”은 16.8%의 응답 비중이 나타났다. 반면 '13년 컨설팅 수혜기업의 응답 분포를 살펴 보면, “보통”의 응답비중은 30.2%로 직전 사업

응답비중에 비해 중립적 입장의 응답이 무려 21.4%p 감소하였다. “신속함”의 응답비중은 41.5%로 '11~'12년 컨설팅 응답에 비해 4.7%p 증가하였다. 또한 “매우 신속함”의 응답 비중 역시 직전 사업 응답 비중에 비해 무려 17.2%p 증가하였다. 긍정적 응답 비중을 살펴보면 '11~'12년 61.1%에서 '13년 83%로 급격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 <그림 5> 문항. 컨설팅신청 및 실제 컨설팅 지원까지 절차가 신속한가? /



**(2) 기업 애로사항 지원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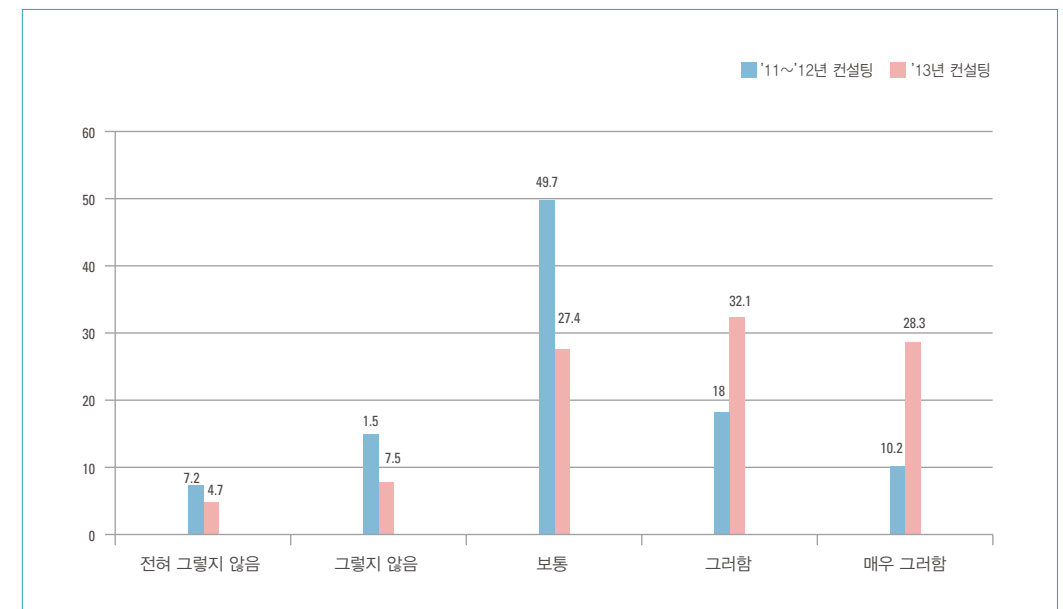
컨설팅이 기업의 FTA 활용 애로사항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측정한 항목에서 '11~'12년 28.1%에서 '13년 60.4%로 32.3%p 증가함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효과적 지원여부 질문에, '11~'12년 컨설팅에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 비중의 49.7%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럭다”의 응답 비중은 18%, “매우 그럭다”은 10.2%로 나타났다.

'13년 컨설팅 수혜 기업들의 응답 분포를 살펴 보면, 먼저 “보통” 응답 비중은 27.4%로 나타나

직전 사업대비 22.3%p 감소하였다. “그럭다” 응답 비중은 37.1%로 14.1%p 증가하였으며, “매우 그럭다” 응답 비중은 28.3%로 '11~'12년 컨설팅 응답 비중에 비해 18.1%p 증가하였다. 긍정적 응답의 전체 분포를 살펴보면 '11~'12년 컨설팅 수혜 응답자들의 경우 28.1%로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나, '13년 비중은 무려 60.4%를 차지하였다.

/ <그림 6> 문항. 컨설팅은 우리 기업이 겪고 있는 FTA 활용 애로를 잘 이해하고 지원하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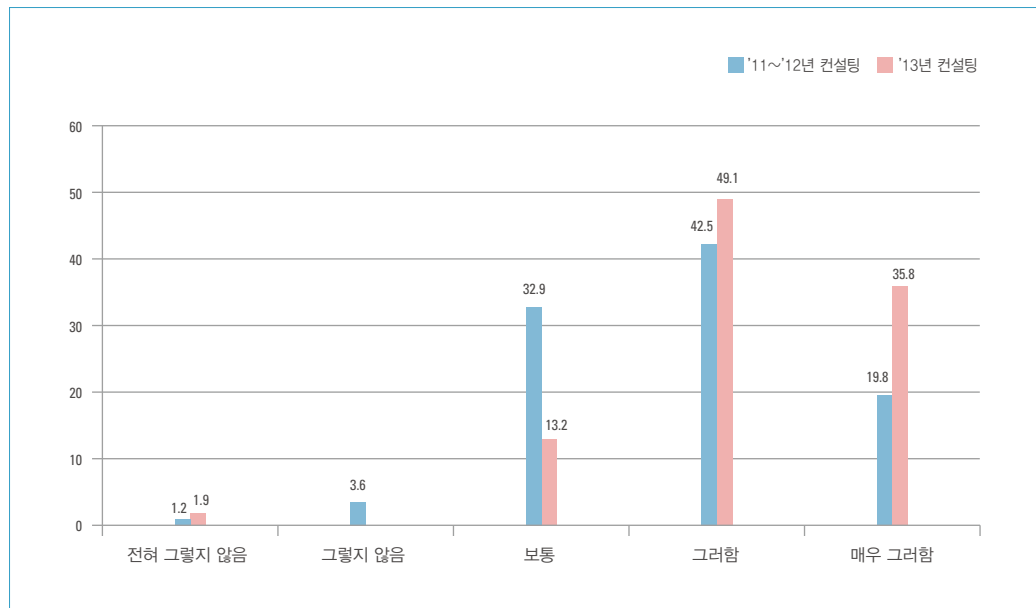
**(3) 향후 관세청 지원사업 수진 의향 여부**

향후 관세청 지원사업 수진 의향 여부 관련 질문에, 긍정적 응답은 '11~'12년 62.3%에서 '13년 84.9%로 22.6%p 증가함

향후 관세청 지원사업 수진 의향여부 질문에 '11~'12년 컨설팅 응답자의 62.3%가 긍정적인 (그렇다 42.5%, 매우 그렇다 19.8%) 응답을 보였다. '13년 컨설팅 수진 응답자의 긍정적 응답 비중은 84.9%(그렇다 49.1%, 매우 그렇다 38%)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매우 그렇다"의 응답 비중이 무려 16.1%p 증가 하였다.

또한 "보통"이라는 중립적 입장은 32.9%에서 14%로 19.7%p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응답 유형의 변화는 FTA의 무역 관심 및 비중의 증가로 인한 지원사업 필요성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며, 더불어 관세청 컨설팅 사업 만족으로 인해 향후 관세청 지원사업 수진 의향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 <그림 7> 문항. 향후 지속적으로 관세청 FTA 지원을 받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4) 지원사업을 받기위해 투입한 비용(시간과 노력)대비 상대적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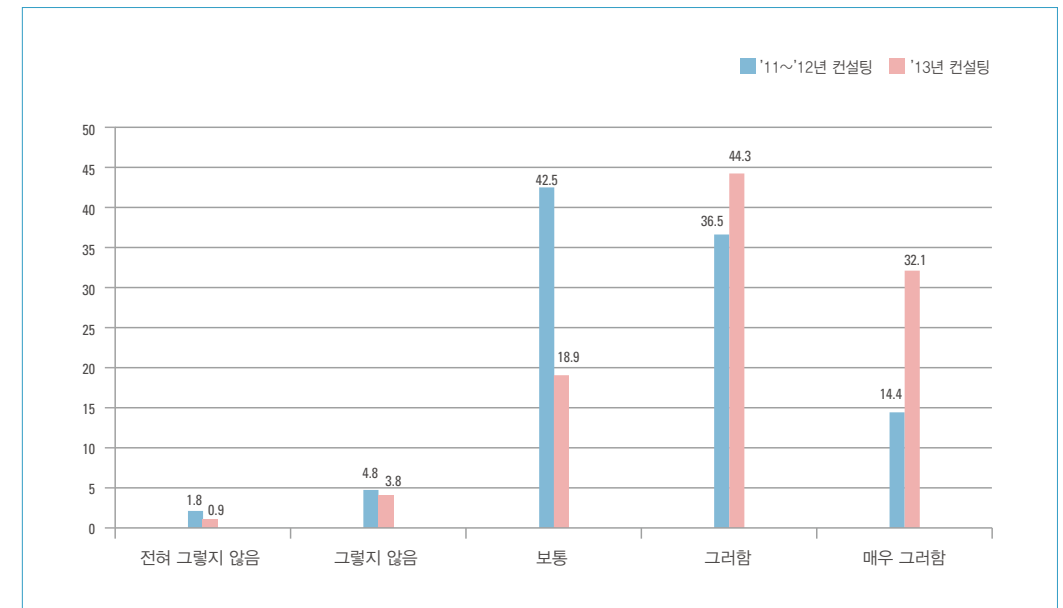
관세청 컨설팅을 받으면서 투입한 비용에 비해 상대적 만족도를 질문한 결과, 긍정적 응답은 '11~'12년 50.9%에서 '13년 76.4%로 23.5%p 증가함

관세청 컨설팅을 받으면서 투입한 비용에 비해 상대적 만족도를 측정하는 질문에서 '11~'12년 응답자의 경우 "보통"이라는 응답 비중이 4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그렇다"는 응답은 36.5%로 나타났다.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14.4%를 차지했다.

이러한 중립적 응답이 18.9%로 직전 사업에 비해 무려 23.6%p 감소했으며, "그렇다"는 응답은 44.3%로 7.8% 증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32.1%로 17.7%p 증가하였다.

긍정적 응답의 전체 비중은 '11~'12년 컨설팅 50.9%에서 '13년 76.4%로 26%p 증가하여 상대적 만족도가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 <그림 8> 문항. 귀하께서 컨설팅을 받으면서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비해 교육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다. 기타 사업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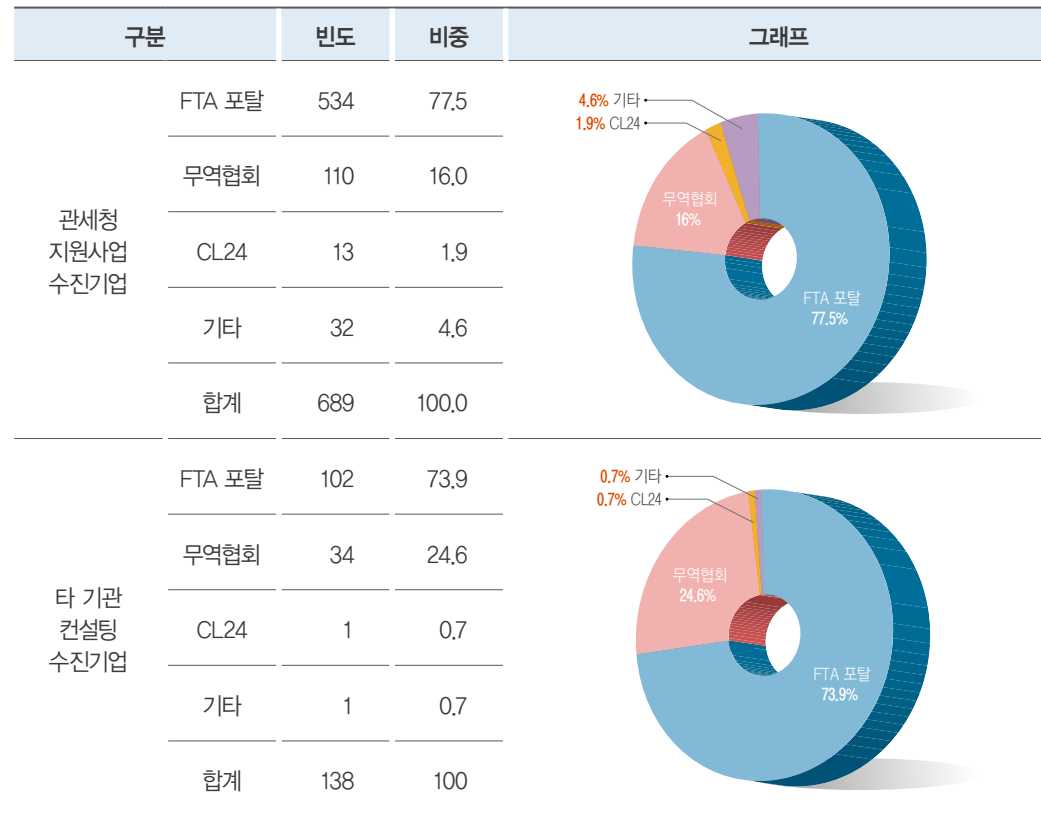
**(1) FTA PORTAL 활용률**

관세청 지원사업 수진기업의 FTA 포탈 활용률은 77.5%, 타 기관 컨설팅 수진 기업 응답 군에서도 가장 높은 활용을 보이고 있음

FTA 정보를 얻기 위하여 어느 창구를 활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FTA 정보 조회시 위하여 어떤 웹페이지를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관세청 지원사업 수진기업의 경우 77.5%가 FTA PORTAL(YES FTA)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 기관 컨설팅 수혜기업 역시 유사한 비중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정보제공 사이트로 나타났다.

/ <표 5> FTA PORTAL 활용 실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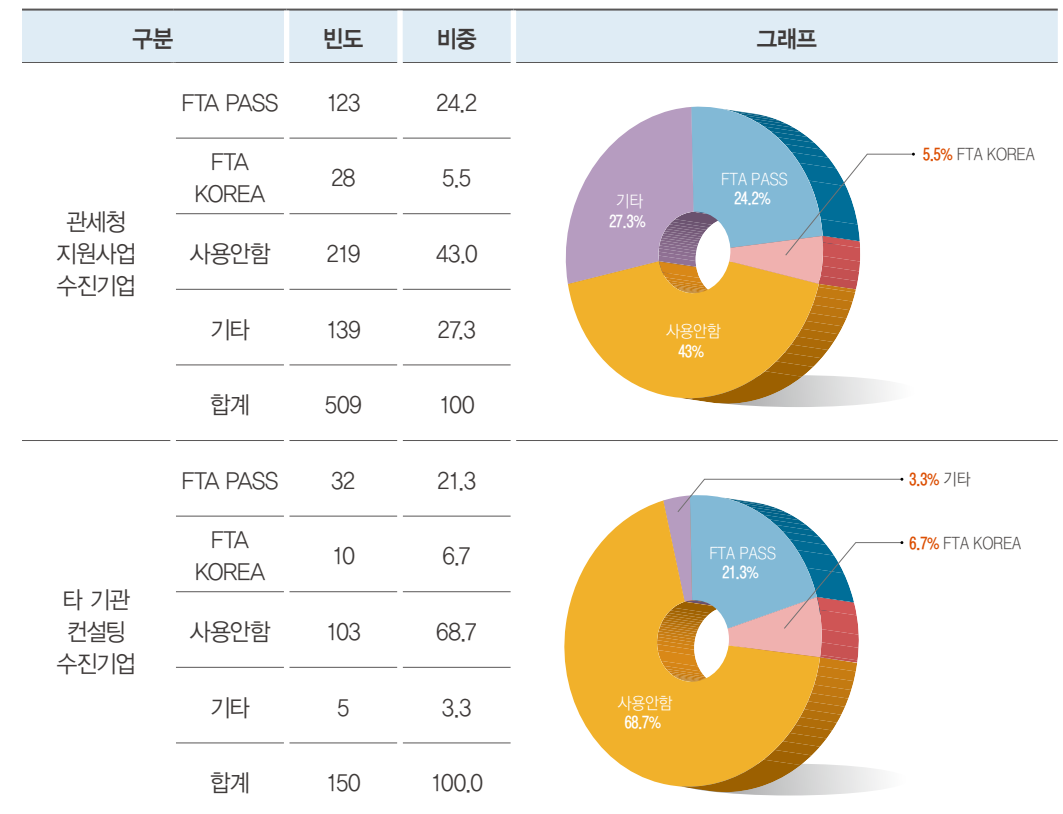
**(2) FTA PASS 안정적 지원**

FTA PASS를 가장 많이 사용,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기업도 많음

원산지관리시스템 사용여부 질문에, 관세청 지원사업 수진기업들은 FTA PASS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24.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타 기관 컨설팅 수진 기업에서도 FTA PASS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21.3%로 가장 높은 응답 비중을 보였다. FTA PASS는 원산지관리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기업들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어떠한 원산지 관리시스템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관세청 지원사업 대상자의 경우 43%, 타 기관 컨설팅 수진기업은 68.7%로 나타나,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기업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6> FTA PASS 활용 실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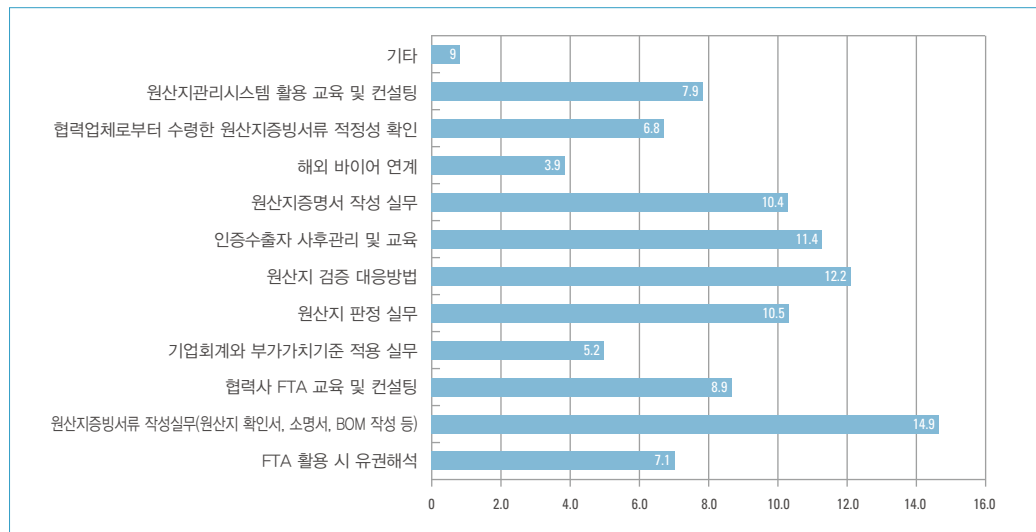
### 4. 향후 FTA 지원니즈 파악

#### 향후 FTA 지원니즈를 확인해본 결과, FTA 활용실무와 관련된 의견이 다수를 차지함

향후 FTA 지원니즈에 대한 질문에, 기업당 5개 까지 중복응답을 허용하여 총 2,667개의 응답 빈도를 보였다. 기업당 평균 3.8개의 응답이 있었다. 응답 비중이 10%대를 넘는 항목들은 FTA 활용실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항목들로써, 동 분야들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지원된 분야이나,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향후 FTA 사업은 교육 및 지원에 이용자 사전 계층화를 통한 맞춤형 이행 등의 질적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들의 향후 FTA 지원사업 개선사항 의견에서도 유사한 모습이 관찰되었다. 일례로, 원산지 증빙서류 작성실무 교육을 받았으나 여전히 복잡하다는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기업도 다수다. 또한 원산지검증 및 인증수출자 사후 관리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도 빈번했다. FTA 교육 지원부문 의견으로는 일차적인 FTA정보를 대동소이하게 반복적으로 교육하는 것 보다 활용 유형 구분 및 단계별 심화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 실무적 교육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9> 향후 FTA 활용 니즈 분석 /



### 부록 1. 지원사업 만족측정 항목

/ <표 7> PCSI 만족 측정항목(컨설팅 부문) /

차원	구성요소	컨설팅 부문 실제 측정 항목
전반적만족	절대적 만족	컨설팅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향후 지속적으로 관세청 FTA 지원을 받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상대적 만족	귀하께서 기대하셨던 컨설팅 내용에 비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귀하께서 컨설팅을 받으면서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비해 교육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요소만족	서비스 상품만족	컨설팅 시 제공된 정보의 유용성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관세청의 FTA 컨설팅이 FTA 업무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서비스 전달만족	귀하는 FTA 컨설팅 관련 신청부터 컨설팅 완료까지의 절차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 하십니까?
	서비스환경만족	FTA 컨설팅의 서비스 환경 품질 대하여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사회적만족	사회적 책임만족	관세청의 FTA활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 수행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관세청의 공정성, 투명성, 청렴성 등의 사회 공공성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부록 2. 응답자 특성

	구분	빈도	비중	그래프
지원사업 유형	컨설팅	273	39.1	
	정보제공	144	20.6	
	원산지 관리 시스템	115	16.5	
	교육	166	23.8	
	합 계	698	100	
활용 FTA	칠레	200	7.4	
	EFTA	256	9.4	
	인도	299	11	
	아세안	404	14.9	
	EU	564	20.7	
	페루	145	5.3	
	미국	437	16.1	
	터키	239	8.8	
	싱가포르	175	6.4	
	합계	2,719	100	
직급	사원	202	28.9	
	대리/과장	316	45.3	
	부장	104	14.9	
	경영진/임원	68	9.7	
	관세사	8	1.1	
	합 계	698	100	

	구분	빈도	비중	그래프
기업 규모	20인 이하	214	30.7	
	21~50인	151	21.6	
	51~100인	97	13.9	
	101~200인	84	12	
	201~300인	34	4.9	
	300인 초과	118	16.9	
	합 계	698	100	
산업군	광산물	13	1.9	
	기계류	108	15.5	
	농림수산물	13	1.9	
	식품	22	3.2	
	잡제품	48	6.9	
	자동차	142	20.3	
	철강금속	44	6.3	
	플라스틱/고무	51	7.3	
	화학공업	64	9.2	
	섬유류/가죽/신발	73	10.5	
	전기/전자	120	17.2	
	합 계	698	100	



# 09 FTA 시대 유망 자격증, 국가공인자격 「원산지관리사」를 알아본다!

글/조정훈 팀장\_국제원산지정보원 기획총괄팀



2010년 6월 첫 시행된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은 2014년 7월 까지 총 11회에 걸쳐 6,469명의 응시자 중 1,701명의 합격자를 배출해냈으며, 그 인원은 매년 증가 추세다. FTA 활용 필수 전문인력, 원산지관리사, 현황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자.

## 기업의 FTA 활용을 위한 필수 전문인력으로 자리잡은 원산지관리사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등 47개국과의 FTA가 발효된 FTA Hub 국가이지만 FTA를 활용하기 위한 핵심적인 준비인 원산지관리 전문인력을 확보한 기업은 아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업의 FTA 전문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원산지관리사 자격 제도가 어느덧 5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원산지관리사 자격은 FTA·원산지관리 분야의 세계 유일의 자격증으로서 시험관리의 신뢰성과 사회적

수요증가에 따른 통용성을 인정받아 2013년부터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배출된 1,701명의 원산지관리사 중 상당수는 주요 수출기업과 협력사, 관세·회계 법인 등에서 근무하며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 원산지관리사 자격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기업의 실무자와 학생을 위해 자격의 개요와 현황, 전망을 소개하고자 한다.

## 원산지관리사의 직무·역할

원산지관리사는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거한 민간 자격이며, 동법 제19조에 의거하여 2012년 12월 27일 관세청으로부터 국가공인을 획득하였다.

한-EFTA, 한-EU FTA가 발효됨에 따라 정부는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를 통해 체계적 원산지관리 및 검증대비를 위한 원산지관리 전담자를 기업 내 두도록하고 있으며, 내부 원산지관리 전담자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원산지관리사)을 갖춘 경우 원산지증명 능력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산지관리전담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원산지교육이수, 관세청 또는 전문기관으로부터의 FTA 컨설팅 실적 등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하나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을 갖춘 경우 이러한 요건 심사를 생략해주고 있다.

원산지관리사는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상의 “원산지관리전담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FTA 체결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인증수출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기업내에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원산지관리사의 핵심적인 역할은 인증수출업체의 원산지관리전담자로서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원산지관리사로서 기업내에서의 직무는 생산(수출) 제품의 원산지판정·관리,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증빙서류 관리, 협력사로부터 납품받는 원재료·부품의 원산지관리,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운영, FTA 원산지검증 대응이다.

### 원산지관리사 진출분야

원산지관리사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은 주요 수출 대기업과 협력사로서 업종을 가리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FTA 특혜를 보기위한 구조적 특성 상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수출 완제품 제조 업체부터 이들 기업에 부품 또는 원재료를 공급하는 협력업체까지 원산지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격취득자의 주요 소속기업 및 산업 현황을 살펴 보았을 때 자동차, 전기전자, 중공업, 철강, 화학, 물류, 관세·회계법인, 공공기관 등 업종과 산업을 가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원산지관리사의 진출분야 및 수요처는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다.

/ <표 1> 원산지관리사 주요 수요처 /

수요 분야	원산지관리사 직무
대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매 및 해외영업전략부서</li> <li>• 생산경영전략부서</li> <li>• 구매 및 해외영업 실무자,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관리</li> <li>• ERP 원산지시스템 개발, 운영, 관리</li> </ul>
무역 및 물류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EO 인증(원산지분야)</li> <li>• 원산지리스크관리,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관리</li> <li>• 가격전략</li> </ul>
협회 및 공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원사 및 중소기업기업 지원</li> <li>• FTA 활용 전략기획</li> </ul>

### 원산지관리사의 혜택

원산지관리사 자격 취득자에 대한 주요한 혜택은 다음과 같다.

- ① 원산지인증수출자 업체의 내부원산지관리전담자로 지정 가능
- ② 원산지관리사 채용기업에 고용창출지원금 지원
- ③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에서 인사상 우대 가능 (자격기본법 제30조)

### 자격시험 안내

#### 응시자격

2014년 4월에 치러진 제11회 시험까지는 시험 시행기관인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만 응시가 가능했다. 하지만 FTA 확대로 기업의 원산지관리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자격취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4월 30일자로 이러한 요건을 폐지했다. 따라서 8월에 시행예정인 제12회 시험부터는 사전교육 이수여부와 관계 없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시험과목

원산지관리사 시험과목은 FTA 협정 및 법령, 품목분류 실무, 원산지결정기준, 수출입통관 실무 등 총 4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FTA 협정 및 법령” 과목은 FTA 원산지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할 FTA 협정문(상품무역, 원산지규정, 원산지절차 및 통관 등 중심)과 국내에서 FTA 이행을 위해 마련된 FTA 관세특례법에 관한 내용을 주로 평가한다.

“품목분류실무” 과목에서는 원산지관리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HS 품목분류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한다. HS 품목분류 제도와 주요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를 다루며 이 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각 상품에 대한 높은 지식이 요구된다.

“원산지결정기준” 과목은 원산지관리사의 핵심과목으로서 우리나라가 맺은 각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한다. FTA를 통해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충족이 필수이며, 충족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능력은 원산지관리사의 필수요소라 할 수 있다.

“수출입통관실무” 과목은 FTA 무역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과목으로서 관세, 수출 및 수입 통관, 보세구역 등에 대한 지식을 평가한다.

/ <표 2> 원산지관리사 시험과목 및 주요 평가내용 /

시험시간	과목명	주요내용
1교시 (60분)	FTA 협정 및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 개요</li> <li>FTA 관세특례법</li> <li>원산지증명제도</li> <li>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li> <li>원산지 조사 및 사전심사</li> <li>비밀유지 의무</li> <li>불복신청 및 위반자에 대한 제재</li> </ul>
	품목분류 실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HS 품목분류 제도</li> <li>동·식물성 및 광물성 생산품</li> <li>석유화학공업제품</li> <li>섬유와 그 제품 및 신발류</li> <li>금속과 기계 및 기기</li> <li>수송기기</li> </ul>
2교시 (60분)	원산지결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산지결정기준 개요</li> <li>FTA 특혜관세 적용 전제조건</li> <li>원산지결정 일반기준</li> <li>원산지결정 품목별기준</li> </ul>
	수출입통관 실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세의 개요</li> <li>관세법 일반</li> <li>통관</li> <li>수입통관절차</li> <li>수출통관절차</li> <li>보세구역관리</li> <li>보세화물관리</li> </ul>

**합격기준**

원산지관리사 시험은 4지선다형으로 각 과목별 만점기준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다. 25문제, 총 100문제이며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

**자격시험 실시 현황**

원산지관리사 시험은 지금까지 총 11회 시험이 진행되어 총 1,701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누적 응시자수는 6,469명이며 평균 합격률은 26.3%를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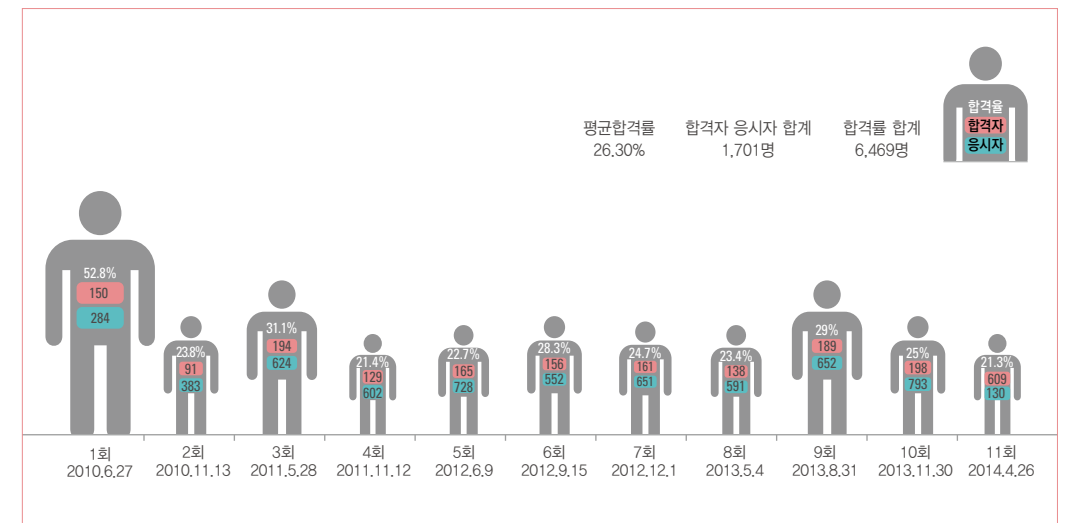
1,701명의 합격자수는 현재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산지관리사의 수요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한-중 FTA가 타결, 발효될 경우 늘어날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다. 원산지관리사 자격이 앞으로 유망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합격률이 가장 높았던 시험은 제 1회 시험으로 전체 응시자수 284명중 150명이 합격해 52.8%의 높은 합격률을 보였다.

이후 응시인원 증가에 비해 합격자수는 줄어들어 평균 합격률 26.3%에 머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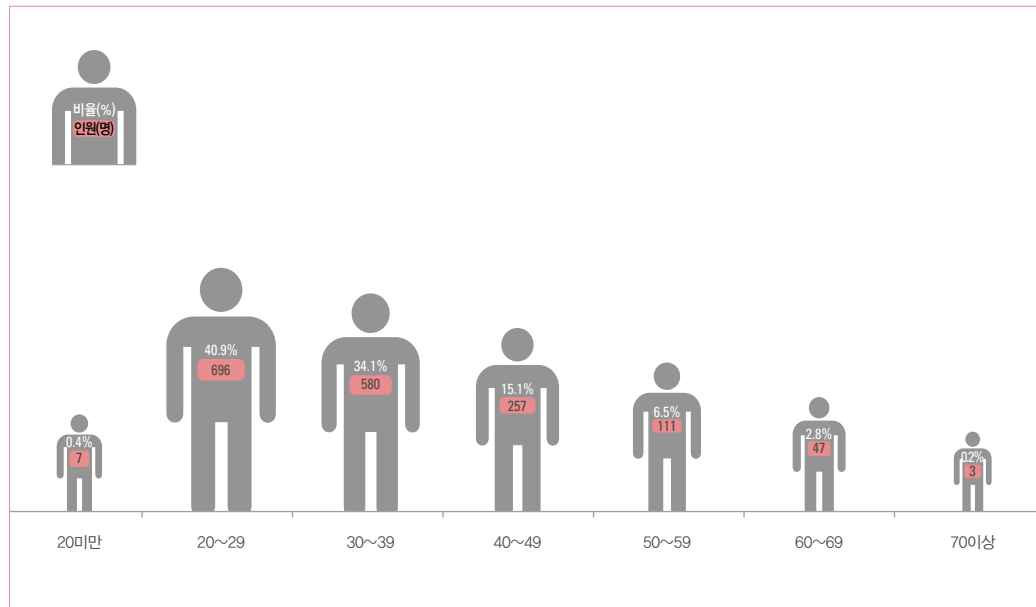
합격자의 연령은 20대가 40.9%(696명), 30대가 34.1%(580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속별로는 일반 기업체 재직자, 학생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 <그림 1> 원산지관리사 시험 합격자 배출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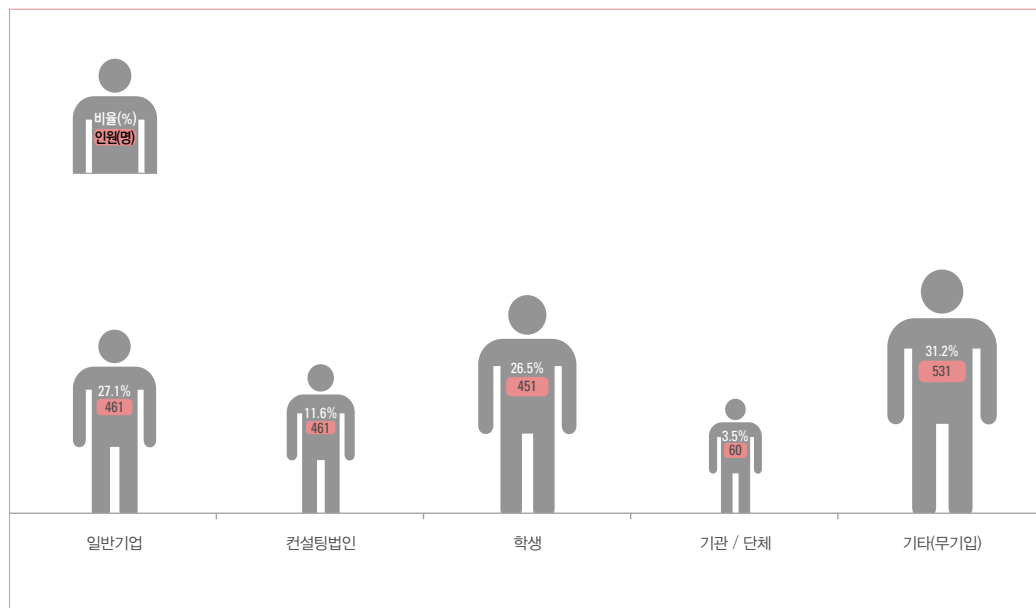
자료: 국제원산지정보원

/ <그림 2> 원산지관리사 합격자 연령분포 /



자료: 국제원산지정보원

/ <그림 3> 원산지관리사 소속별 분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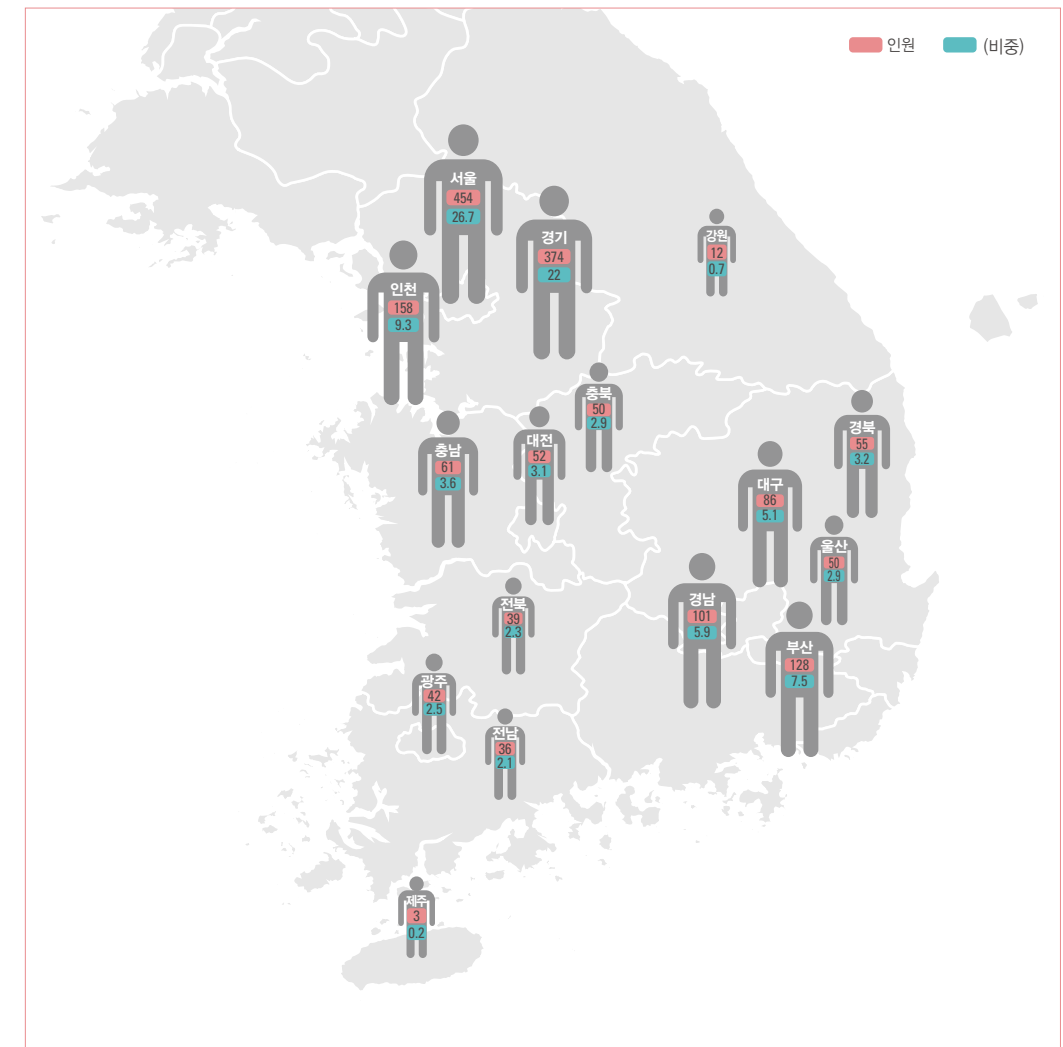


자료: 국제원산지정보원

지역별로는 서울(454명, 26.7%), 경기(374명, 22.0%), 인천(158명, 9.3%) 등 수도권(986명, 58.0%)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출 제조업, 컨설팅법인 등의 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과 일치하며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취약한

지역인 전남, 전북, 강원, 제주는 그 비중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지방 교육기관의 원산지관리사 교육지원, 지방 시험장 확대 등을 통해 지방의 원산지관리사 배출이 더욱 증가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 <그림 4> 원산지관리사 지역별 분포 /



자료: 국제원산지정보원

## 향후 전망

원산지관리사 자격은 다른 자격에 비해 상당히 빠른 시기에 국가공인 전환되고 안정적인 자격 취득자를 배출하는 등 조기에 정착을 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FTA 확대 정책에 따라 기업의 FTA 원산지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원산지관리 전문인력의 수요가 올라갔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의 FTA보다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 FTA, 한-중-일 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FTA 무역시대를 맞아 기업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잣대 중 하나로 “원산지관리 능력”이 손꼽힐 것이다. 그리하여 더욱 부각되는 자격증으로 “원산지관리사”가 떠오를 것이 분명하다.

## 원산지 관리사 채용기업 혜택

###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지원사업 중 전문인력채용지원

-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3개월 이상 고용(사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 새로 고용 또는 사용된 전문인력 1명당 1년의 기간내에서 총 1,080만원 지급
- 국가공인 원산지관리사 자격을 포함하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지원대상으로 함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관서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 10 FTA PASS 활용 메뉴얼

글/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개발본부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 솔루션, **FTA PASS**  
국제원산지정보원

## 개요

FTA 시대, 기업의 원산지관리는 원가절감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기업의 원산지 관리는 해외 바이어의 직접적인 FTA 관세절감을 가능케 하여, 원산지관리를 하는 기업은 인화된 관세만큼의 가격 협상력을 보유하게 된다. 즉 FTA 활용을 통한 관세인하는 해외에서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주는 주요한 요소라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는 EU, 미국, ASEAN 등 47개국과 FTA 협상을 발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교역의 약 36%가 FTA 교역이다.

그러나 여전히 중소기업, 영세기업에게 FTA 원산지관리는 생소하고 어려운 영역이다. 기업이 FTA 활용을 위한 인적 자원,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원산지관리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간편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원산지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산지관리 시스템인 'FTA-PASS'를 개발하여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



<http://ftapass.or.kr> 로 접속!  
FTA-PASS를 통해  
누구나 체계적인 FTA 원산지관리 가능.  
현재 약 1만개 이상 기업이 이용 중.

### FTA-PASS의 주요 기능

FTA-PASS의 주요 기능은 ① 협정별 원산지 판정·관리, ② 문서 유통 및 증빙 자료 보관 등 두 가지로 요약된다. 협정별 원산지 판정·관리 기능은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물품이 FTA 협정을 활용하여 수출가능한 지 여부를 판정해 주는 것이다. 두 번째 기능은 위에서 얻어진 원산지 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원산지증명서,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등 FTA 활용 수출시 필요한 원산지 증빙 서류를 발급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관련 자료를 전자시스템에 보관하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 <그림 1> FTA-PASS 이용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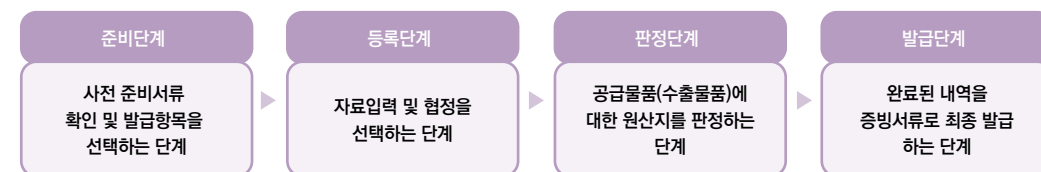
### FTA-PASS의 활용절차: 기업 FTA 활용 빈도 및 난이도에 따른 3단계 선택 가능

FTA-PASS는 기본적으로 모든 기업이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원산지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생산·수출하는 품목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원산지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스펙트럼 또한 기업마다 천차만별이다. 이에 FTA-PASS는 FTA 활용 빈도, 데이터의 양 등 기업의 FTA 원산지관리 업무환경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간편형', '기본형', '자재수불형' 등 3가지의 차별화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간편형'은 말 그대로 기업이 간편하게 FTA 원산지 증빙서류를 발급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주로 거래빈도가 많지 않고, 재료의 구매 가격과 제품의 판매가격의 변동이 거의 없으며, 구매처가 소수인 기업에 적합한 기능이다.

'간편형'은 최소한의 정보와 노력으로 원산지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안내에 따라 준비, 등록, 판정, 발급의 간단한 네 단계를 통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기업을 대상으로 설계된 원산지관리 서비스이다. '기본형'은 기본정보로 입력된 원재료의 구매가격, 제품의 판매가격, 업무자료의 요약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담당자는 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원가관리 등 재고관리기법에 따라 재료를 직접 산출해야 한다.

두 번째로 '기본형'은 비교적 원재료의 구매가격과 제품의 판매가격 변동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

/ <그림 2> FTA-PASS 간편형 /



/ <그림 3> FTA-PASS 기본형 메뉴구성 /

기준정보	거래정보	판정관리	서류관리	시스템관리
거래처	원산지근거서류	일괄판정	증명서(기관)	사용자/서명권자
물품·재료	[원가관리]	판정이력	증명서(자율)	권한관리
자재명세서	[완제품가격관리]		원산지확인서	환경설정
HS CODE 관리			국내제조확인서	기업정보
생산공정			원산지요청서	
고객사물품번호				

※ "[ ]" 표시의 메뉴는 해당 절차에만 존재하는 기능

마지막으로 '자재수불형'은 가장 전문적인 원산지 관리기능을 제공한다. 주로 거래빈도가 많고 원재료의 구매가격과 제품의 판매가격이 빈번하게 변경되는 기업에게 적합한 기능이다. '자재수불형'은 '기본형'에는 없는 'FTA 관리' 메뉴가 있어 가격 변동에 따라 신속하고 유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복잡한 원재료의 가격을 담당자가 직접 산출하는 '기본형'과 달리 시스템을 통해 산출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 <그림 4> FTA-PASS 수불형 메뉴구성 /

기준정보	거래정보	[FTA관리]	판정관리	서류관리	시스템관리
거래처	원산지근거서류	[FTA구매원장]	일괄판정	증명서(기관)	사용자/서명권자
물품·재료	[구매원장]	[FTA수불부]	판정이력	증명서(자율)	권한관리
자재명세서	[수불부]	[FTA자재명세서]		원산지확인서	환경설정
HS CODE 관리	[재료비관리]			국내제조확인서	기업정보
생산공정	[매출원장]			원산지요청서	
고객사물품번호					

**FTA-PASS 활용 지원: 동영상교육자료, 사용자메뉴얼 제공, 사후관리팀 운영 등**

FTA-PASS의 보다 자세한 활용 방법은 홈페이지 (<http://ftapass.or.kr>)의 동영상 교육자료, 사용자 메뉴얼 등을 참조하면 된다. 동영상 강좌는 간편 발급, 기준정보, 거래정보, 서류관리, 판정관리 등 각각의 메뉴에 대해 활용하는 방법을 담고 있다. 아울러 사용자 메뉴얼도 홈페이지상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카툰 형식의 e-book 책자도 관세청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한편 FTA-PASS를 전담수행하고 있는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는 FTA-PASS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사후관리팀을 운영하고 있다. 사후관리팀에서는 FTA-PASS 활용 관련 상담대응, 현장지원, 정기교육, 설문조사, 기업 간담회, 소식지 발급 등의 6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상담대응은 기업이 FTA-PASS 활용시 발생하는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는 해결사 역할을 한다. 기업의 원산지관련 실무 담당자가 FTA-PASS를 활용하다 잘 모르거나,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상담전문요원에게 전화로 직접 질의가 가능하다.

그리고 전화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은 '현장지원'을 활용할 수 있다. 현장지원은 FTA-PASS 사후관리팀 전문요원이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해 준다는 점에서 기업으로부터 매우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받는 부분이기도 하다.

FTA-PASS 관련 상담 및 현장지원 신청은 국제원산지정보원 FTA-PASS 사후관리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대표전화는 031-600-07000이다.

정기교육은 기업이 원산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원산지결정기준 등의 이론교육과 원산지관리 시스템 운영을 위한 FTA-PASS 활용 실무교육을 제공한다. 현재 경기, 대구, 광주, 부산 등 4개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일정 및 장소는 다음과 같다.

/ <표 1> 교육 일정 /

지역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24일		20일		12일		25일		26일		14일	
광주		27일					30일					
부산		19일			21일			20일			29일	
대구		20일			22일			21일			20일	

1) 교육일정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2) 컴퓨터·인터넷 사용 가능여부에 따라 실습교육 지원

/ <표 2> 교육장 안내 /

구분	서울 교육장	부산 교육장	광주 교육장	대구 교육장
장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1-3 한국빌딩	부산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30번길 30 (범천1동 전문건설회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강의실	9층 B강의실	7층 강의실	3층 전산교육장	1층 전산교육장

아울러 주요 고객인 기업의 FTA-PASS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연간 2회의 설문조사도 시행하고 있다. FTA-PASS를 활용하면서 평소에 불편했던 사항이나, 기능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견 청취가 주요 목적이다. 간담회는 설문조사에서 도출된 사항 등에 대해 기업의 실무자를 대면하여 보다 자세히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소식지를 통해서도 지속적인 FTA와 FTA-PASS 관련 이슈를 접할 수 있다. 소식지는 FTA-PASS 가입자를 대상으로 매월말 이메일 형태로 발송되고 있으며, 이외 FTA포탈 (<http://fta.customs.go.kr>)의 FTA자료실 > E-Book-

Zone 메뉴의 FTAPASS 탭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주요 내용은 국가의 FTA 활용지원 사업, 원산지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FTA-PASS의 기능개선 사항, FTA-PASS 활용사례 등으로 기업 실무자에게 유용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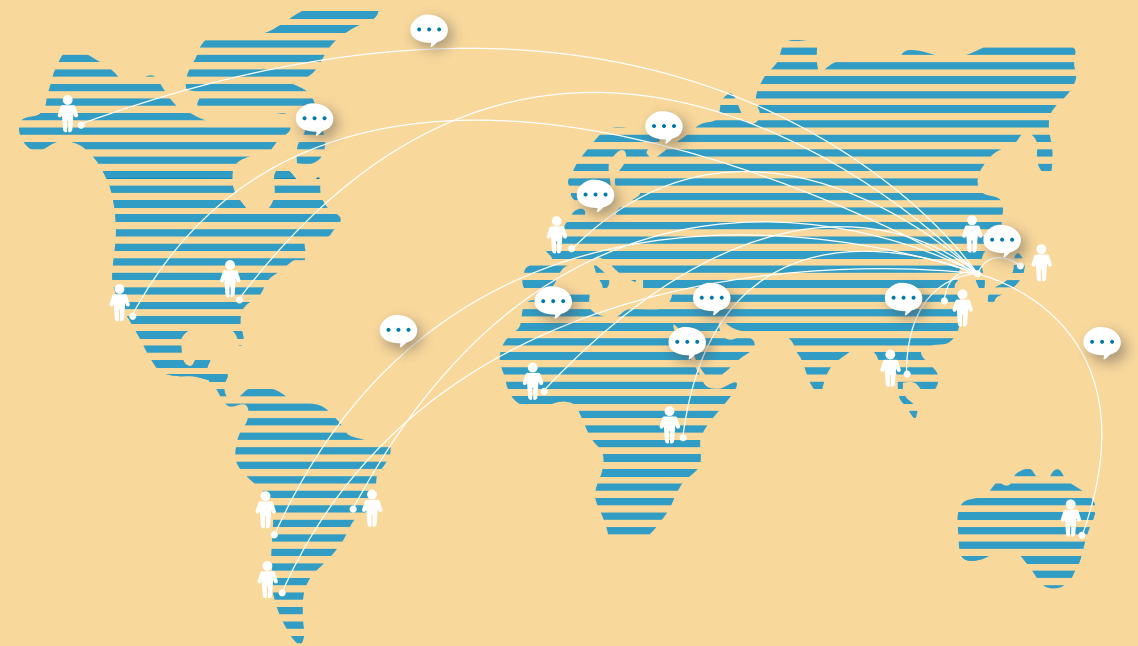
### 맺음말

FTA-PASS는 2010년부터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현재 1만여 중소기업에서 활용 중에 있다. 특히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인 만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FTA 환경을 가장 신속하게 반영하고 있다. 무엇보다 기업의 활용 편의를 돕기 위한 기능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최근에는 선입선출법, 이동 평균법과 같은 회계기법을 반영한 재고관리 기능과, 원가자료 등의 엑셀 연계 기능이 부가적으로 개발, 시스템 내 장착되었다. 이처럼 FTA-PASS는 기업이 원산지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진화·발전하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FTA-PASS를 활용하여 FTA 특혜 수출 및 원산지 검증 등에 적극 대응하는 등 FTA 무역의 중심으로서 부상하기를 기원한다.

#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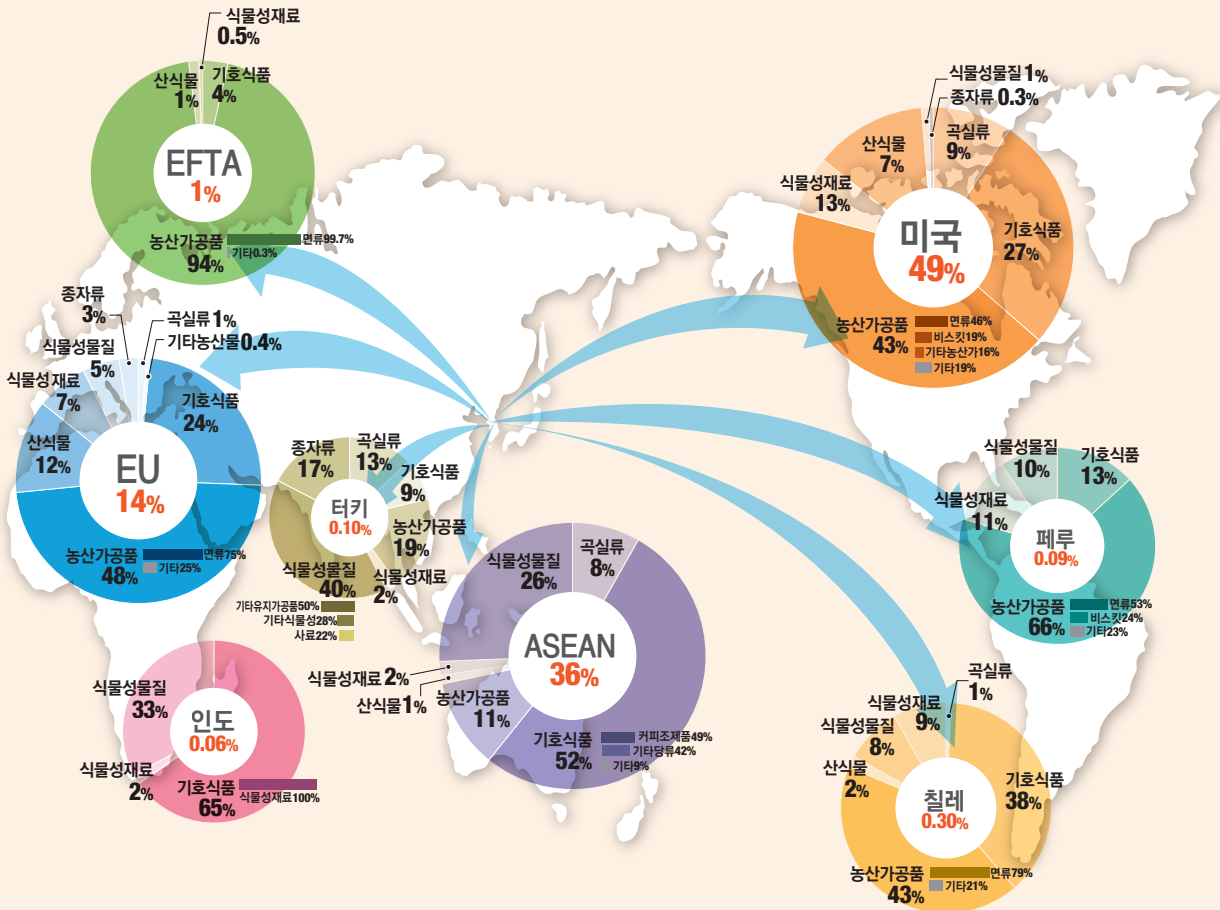
## FTA 교역지도



### 수출 : 농산물(2013)

FTA 특혜수출	일반수출	총계
363,721,964(35.1%)	671,850,004(64.9%)	1,035,571,968(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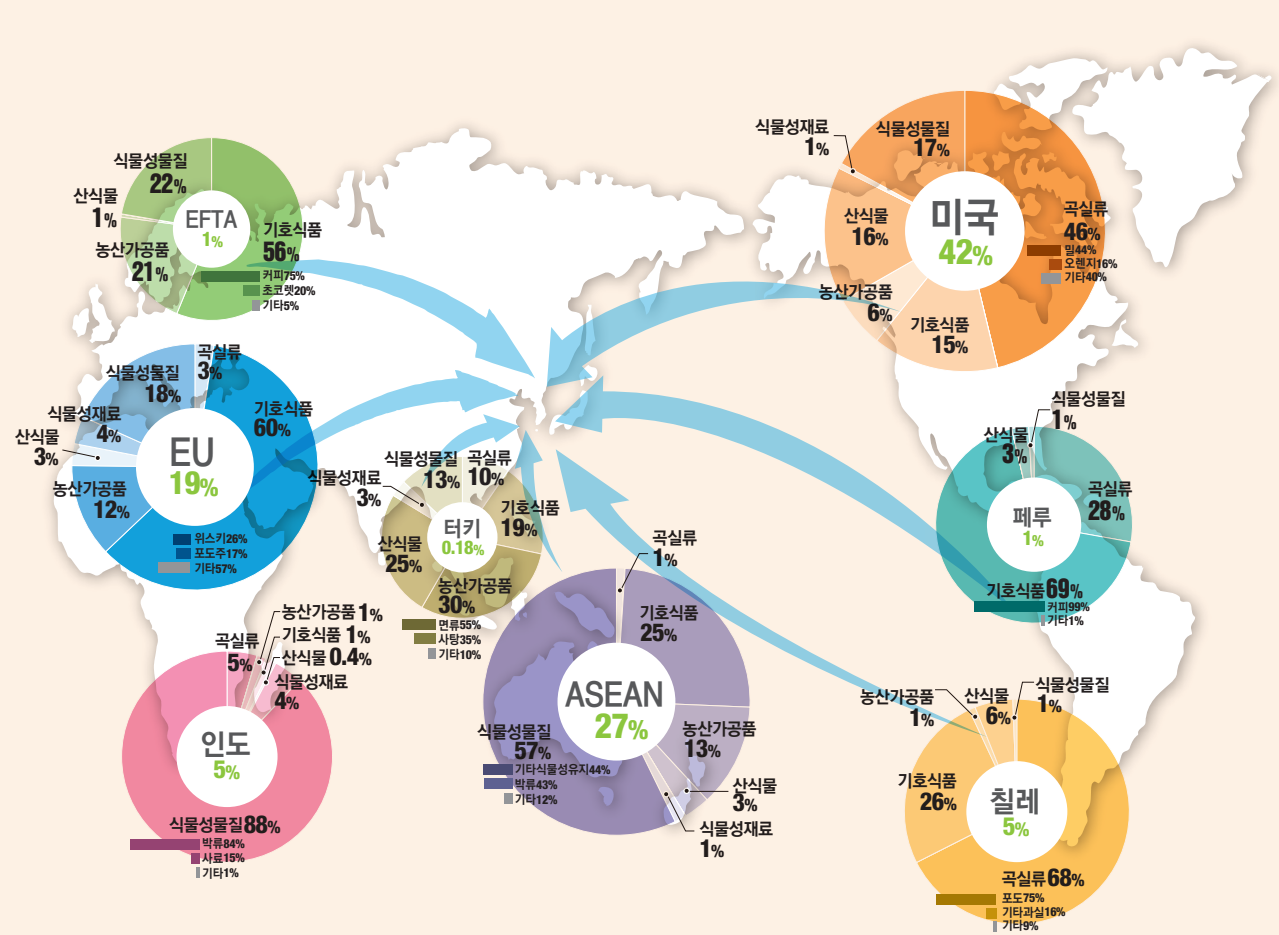
천달러 %: FTA 특혜실적 대비 개별 국가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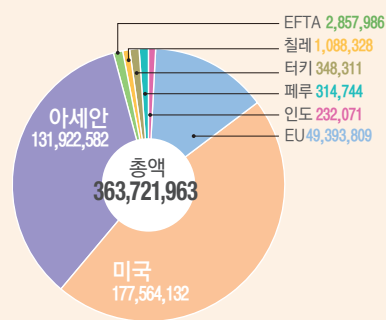
### 수입 : 농산물(2013)

FTA 특혜수입	일반수입	총계
5,007,135,635(54.8%)	4,124,371,391(45.2%)	9,131,507,026(100.0%)

천달러 %: FTA 특혜실적 대비 개별 국가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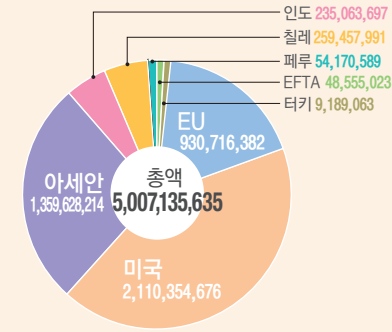
협정별 농산물 특혜수출금액



농산물 특혜 수출품목순위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기호식품	130,450,073	35.87
2	농산가공품	117,142,935	32.21
3	식물성물질	38,516,033	10.59
4	식물성 재료	28,680,328	7.89
5	곡실류	27,696,260	7.61
6	산식물	19,277,338	5.30
7	종자류	1,769,845	0.49
8	기타농산물	189,152	0.05
9	수목종자류	0	0.00
총계		363,721,964	100.00

협정별 농산물 특혜수입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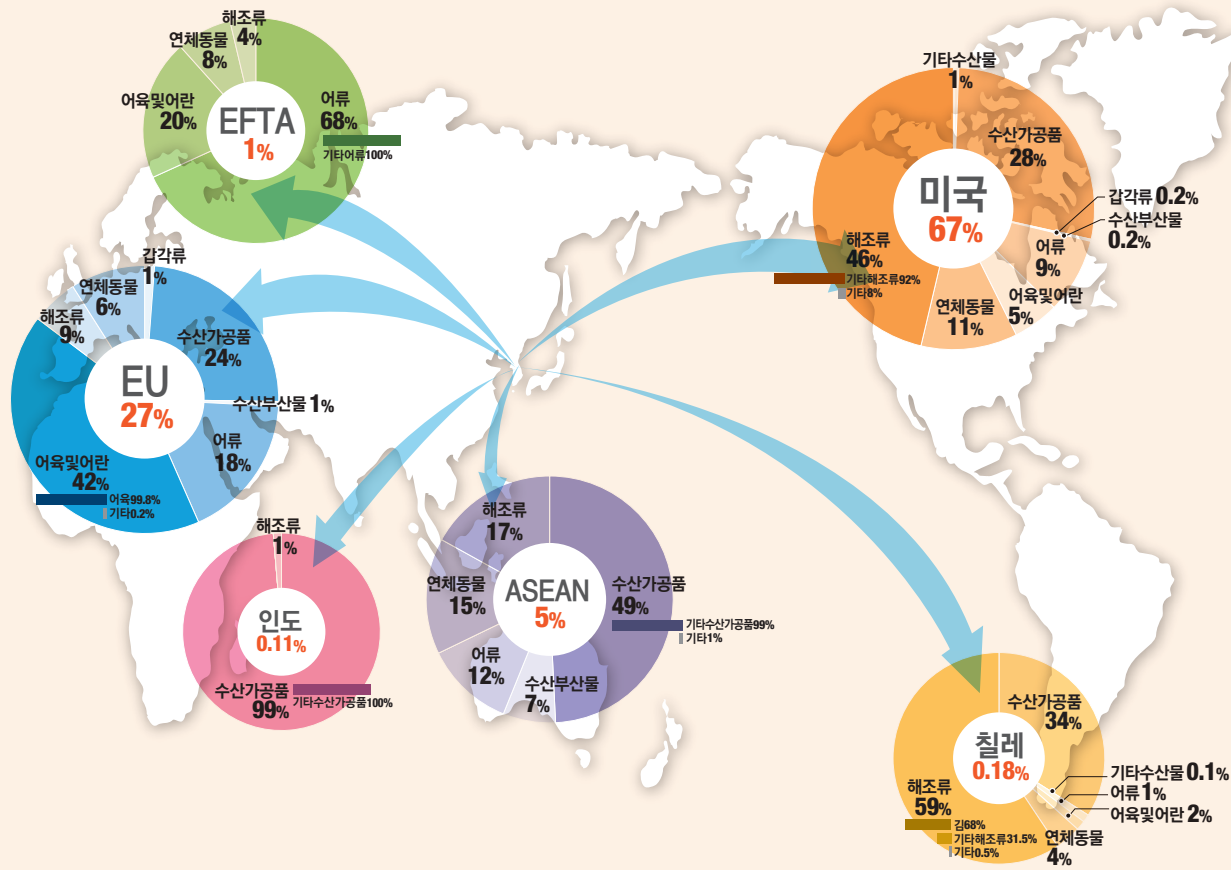
농산물 특혜 수입품목순위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식물성물질	1,528,459,387	30.53
2	기호식품	1,339,480,954	26.75
3	곡실류	1,214,080,678	24.25
4	농산가공품	427,955,710	8.55
5	산식물	419,268,536	8.37
6	식물성 재료	76,720,934	1.53
7	기타농산물	1,150,540	0.02
8	종자류	10,760	0.00
9	수목종자류	8,136	0.00
총계		5,007,135,635	100.00

### 수출 : 수산물(2013)

FTA 특혜수출	일반수출	총계
164,336,007(28.9%)	404,133,666(71.1%)	568,469,673(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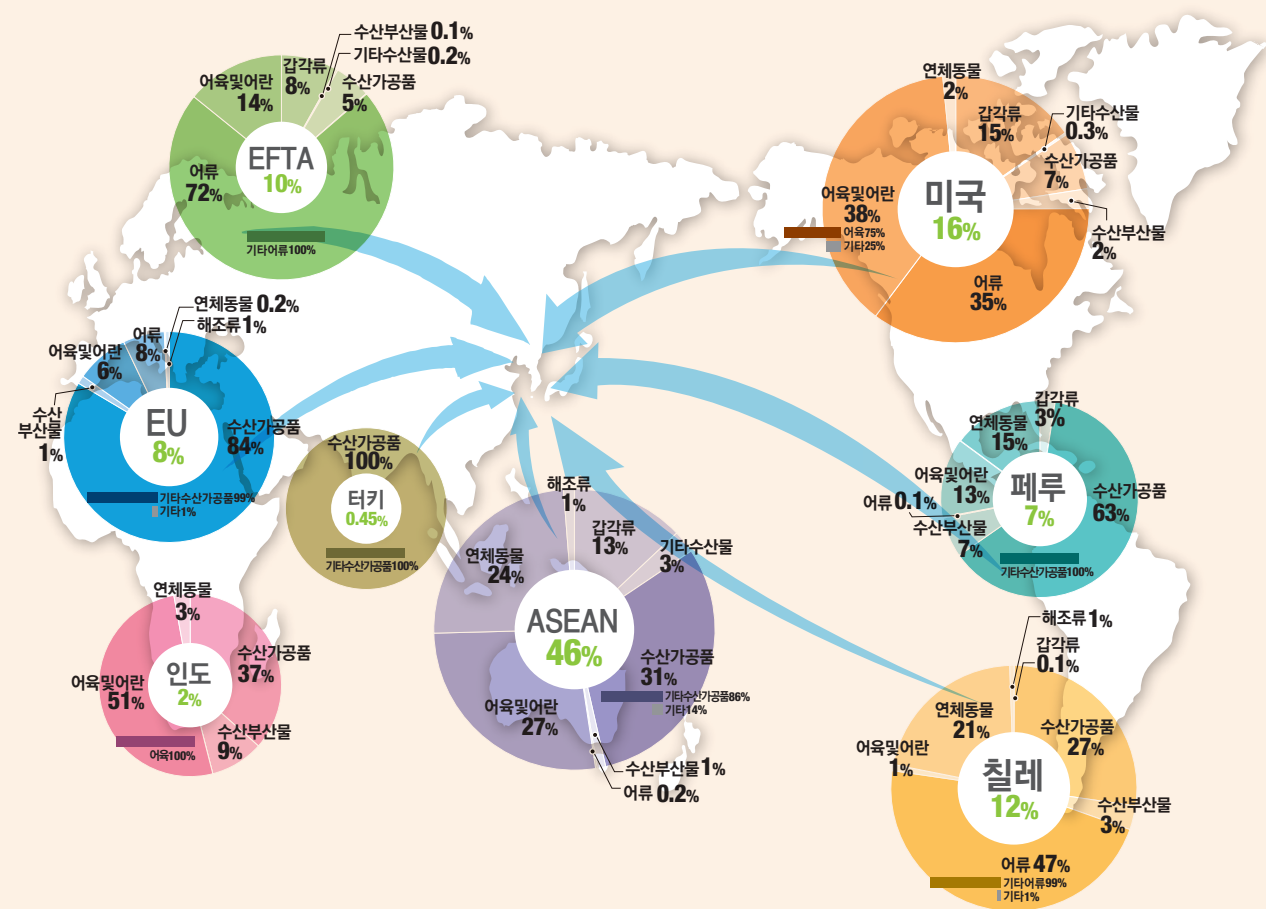
천달러 %: FTA 특혜실적 대비 개별 국가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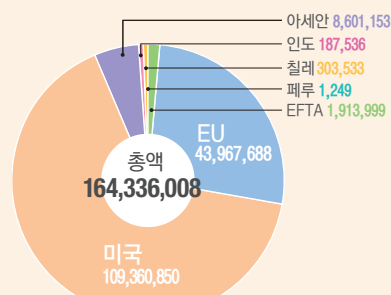
### 수입 : 수산물(2013)

FTA 특혜수입	일반수입	총계
986,758,738(68.0%)	465,164,894(32.0%)	1,451,923,632(100.0%)

천달러 %: FTA 특혜실적 대비 개별 국가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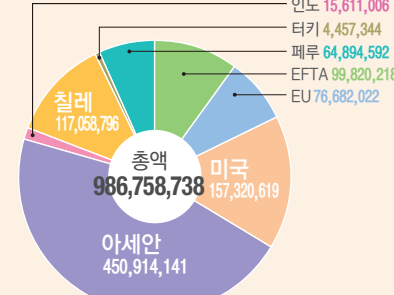
협정별 수산물 특혜수출금액



수산물 특혜 수출품목순위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해조류	56,312,307	34.27
2	수산가공품	45,575,899	27.73
3	어육및어란	24,578,563	14.96
4	어류	19,505,566	11.87
5	연체동물	16,062,512	9.77
6	수산부산물	1,104,536	0.67
7	기타수산물	501,475	0.31
8	갑각류	0	0.00
총계		164,336,007	100.00

협정별 수산물 특혜수입금액



수산물 특혜 수입품목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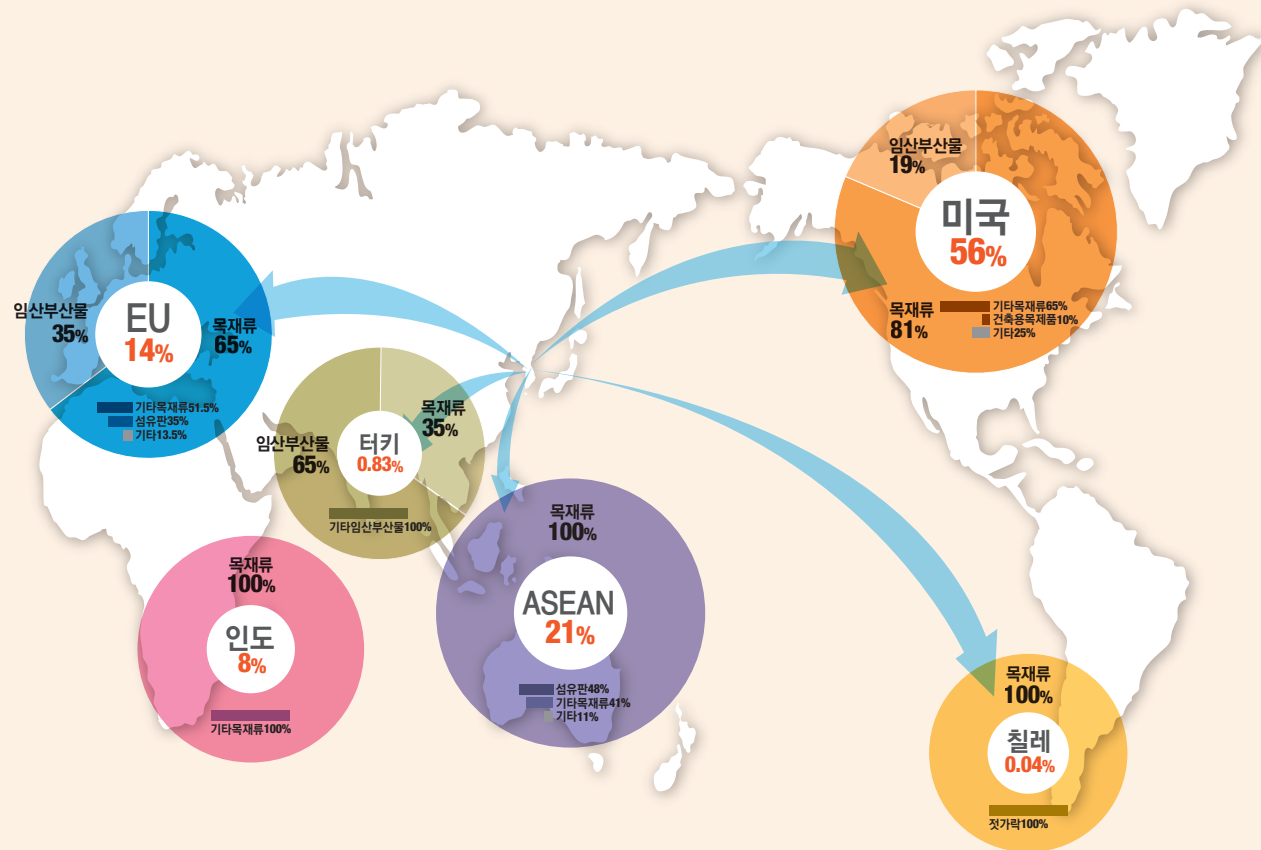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수산가공품	302,102,905	30.62
2	어육및어란	218,290,292	22.12
3	어류	189,587,411	19.21
4	연체동물	146,654,506	14.86
5	갑각류	92,380,826	9.36
6	수산부산물	18,656,676	1.89
7	기타수산물	12,438,102	1.26
8	해조류	6,648,020	0.67
총계		986,758,738	100.00



### 수출 : 임산물(2013)

FTA 특혜수출	일반수출	총계
6,850,927(22.8%)	23,223,342(77.2%)	30,074,269(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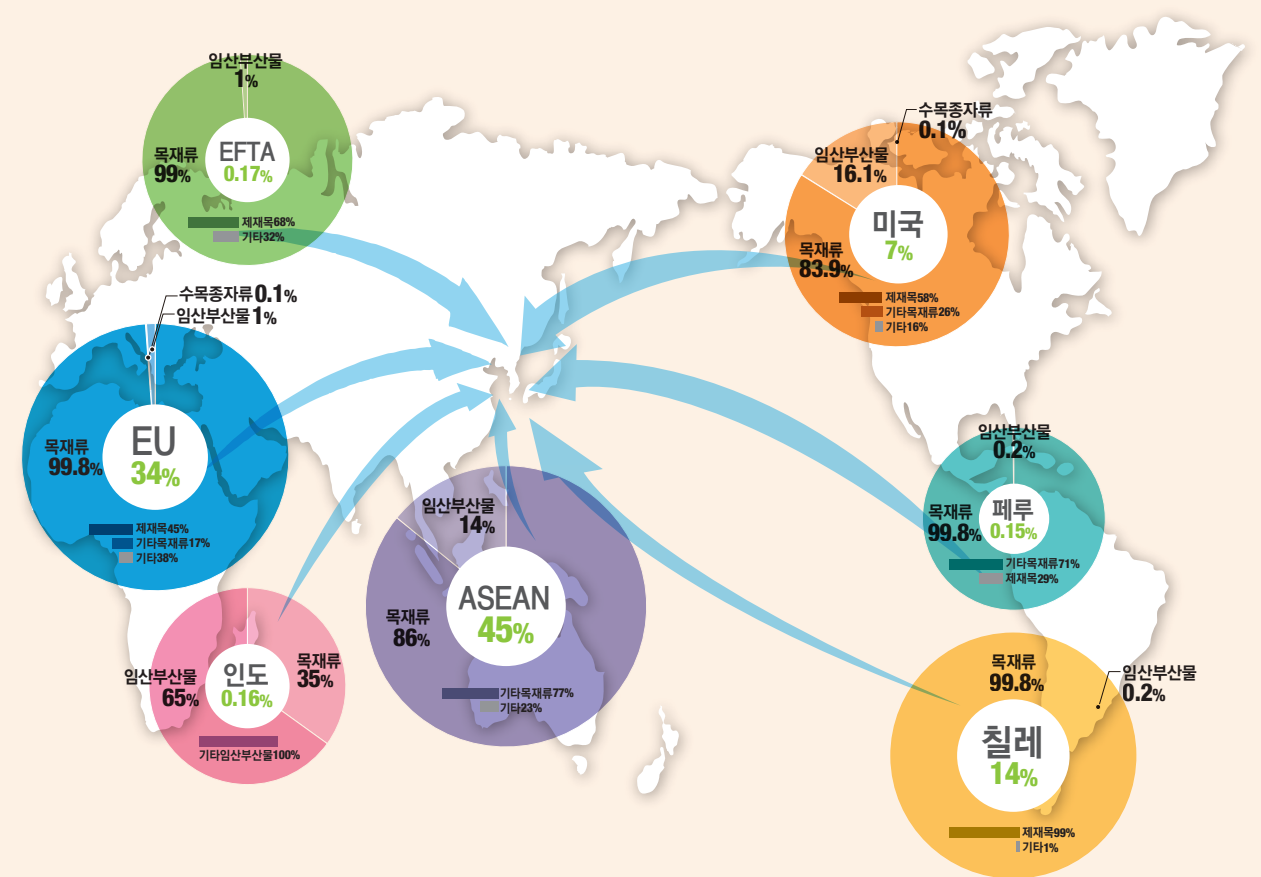
%: FTA 특혜실적 대비 개별 국가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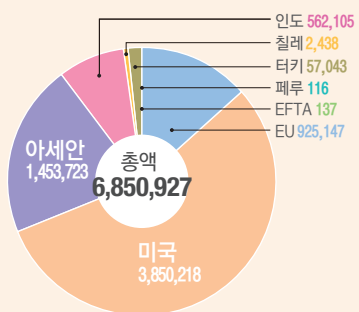
### 수입 : 임산물(2013)

FTA 특혜수입	일반수입	총계
627,957,175(25.6%)	1,829,799,968(74.4%)	2,457,757,143(100.0%)

%: FTA 특혜실적 대비 개별 국가의 비중



협정별 임산물 특혜수출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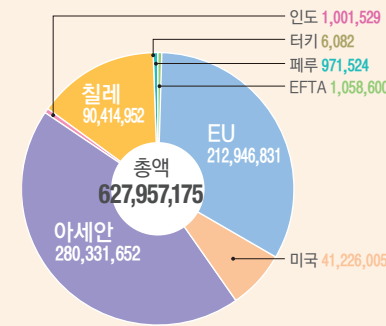


임산물 특혜 수출품목순위

[단위: 천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목재류	5,769,243	84.21
2	임산물	1,081,674	15.79
3	수목종자류	10	0.00
총계		6,850,927	100.00

협정별 임산물 특혜수입금액



임산물 특혜 수입품목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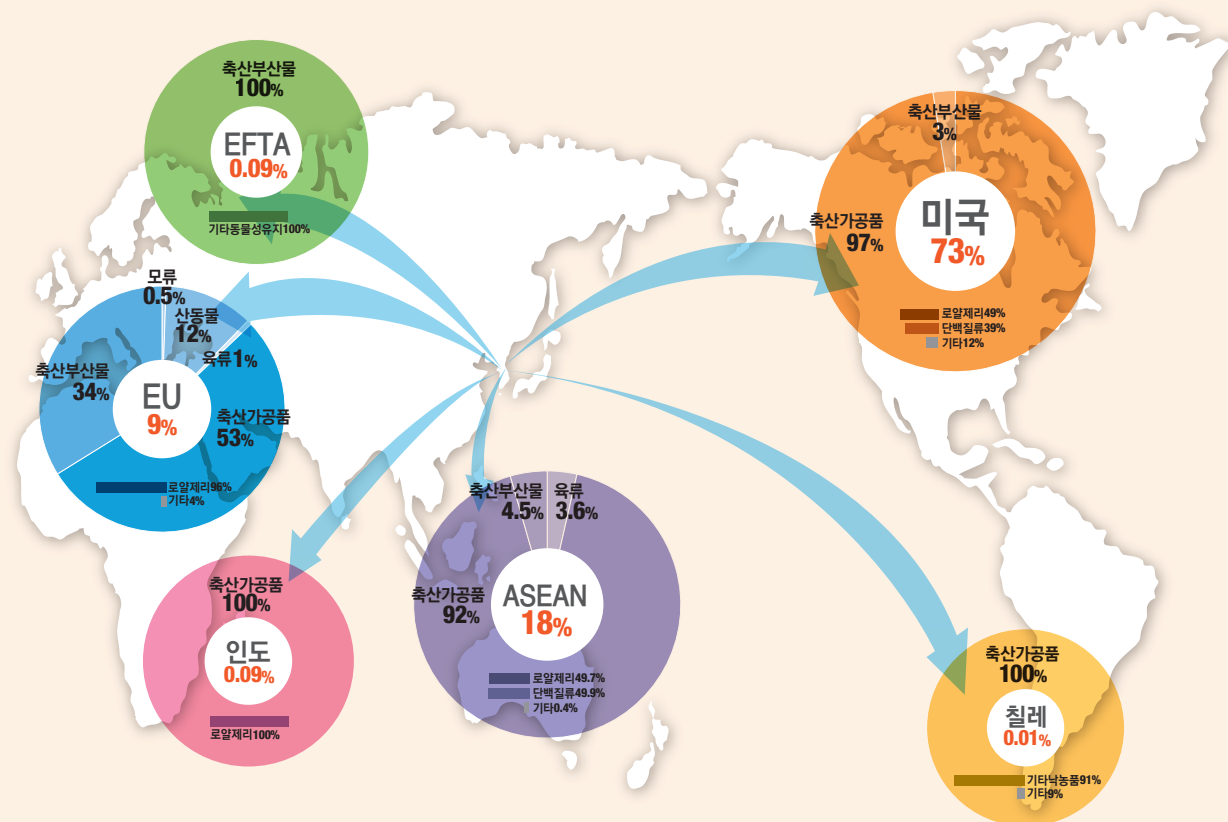
[단위: 천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목재류	578,320,696	92.10
2	임산물	49,328,560	7.86
3	수목종자류	307,919	0.05
총계		627,957,175	100.00

### 수출 : 축산물(2013)

FTA 특혜수출	일반수출	총계
41,153,800(15.0%)	232,280,021(85.0%)	273,433,821(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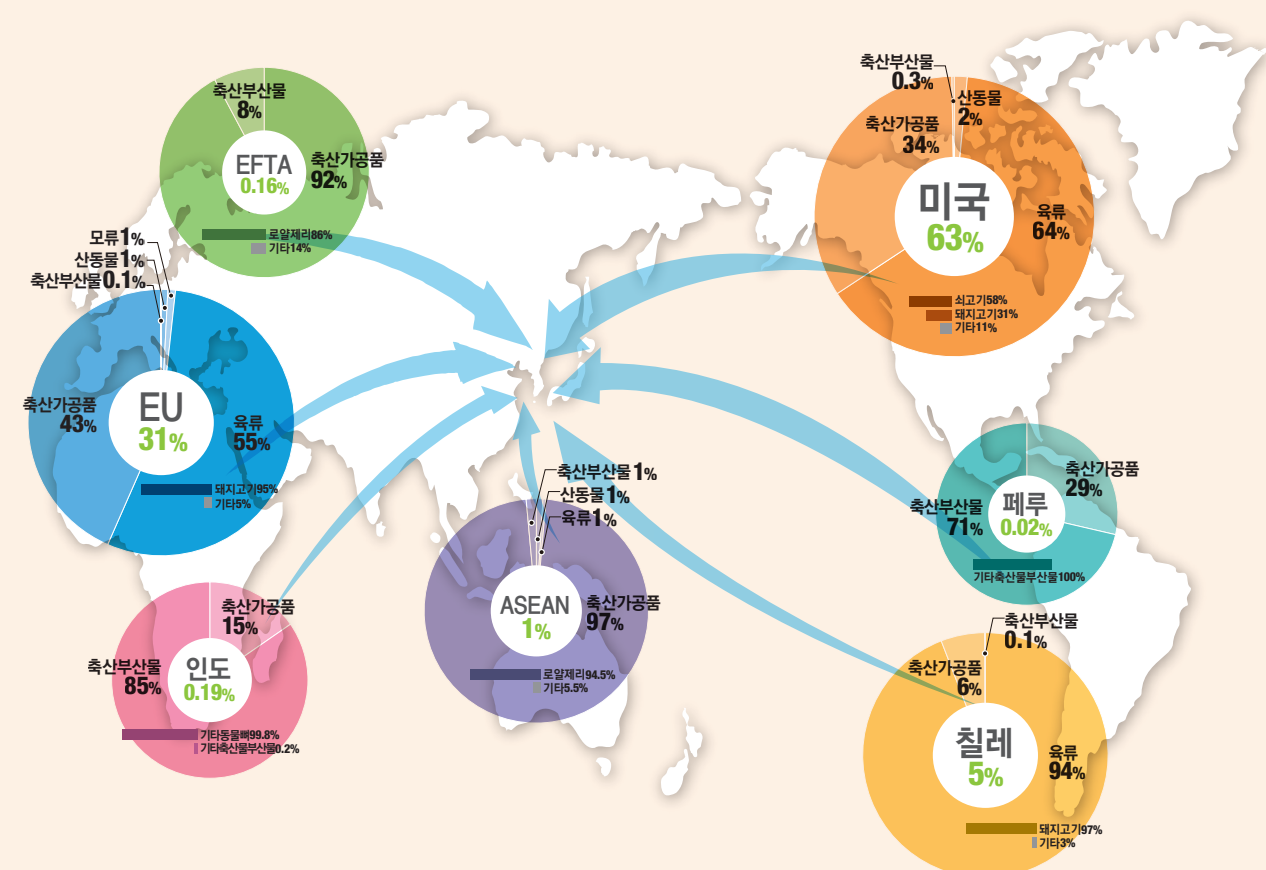
%: FTA 특혜실적 대비 개별 국가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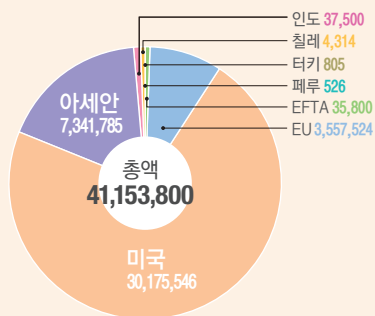
### 수입 : 축산물(2013)

FTA 특혜수입	일반수입	총계
2,447,076,030(85.6%)	411,999,845(14.4%)	2,859,075,875(100.0%)

%: FTA 특혜실적 대비 개별 국가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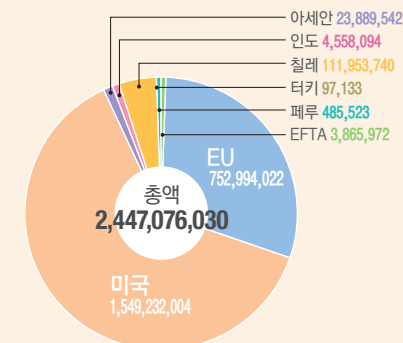
협정별 축산물 특혜수출금액



축산물 특혜 수출품목순위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
1	축산가공품	38,089,744	92.55
2	축산부산물	2,335,911	5.68
3	산동물	424,547	1.03
4	육류	284,675	0.69
5	모류	18,923	0.05
총계		41,153,800	100.00

협정별 축산물 특혜수입금액



축산물 특혜 수입품목순위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
1	육류	1,513,855,591	61.86
2	축산가공품	886,996,652	36.25
3	축산부산물	9,963,320	0.41
4	산동물	30,246,814	1.24
5	모류	6,013,653	0.25
총계		2,447,076,030	100.00



통계 1

/ 협정별 FTA 수출입 활용률(잠정치) /

(단위: %)

국가(발효)	구분	'11	'12	'13	'14.6
칠레('04.4)	수출	-	75.2	78.9	84.2
	수입	95.8	97.9	98.5	96.3
EFTA('06.9)	수출	-	84.9	80.3	81.8
	수입	55.7	61.9	41.8	40.7
아세안('07.6)	수출	33.1	34.8	36.4	40.5
	수입	73.8	73.8	75.6	68.1
인도('10.1)	수출	35.8	36.5	43.2	53.7
	수입	53.6	53.9	61.4	68.2
EU('11.7)	수출	65.7	84.0	85.6	82.3
	수입	47.1	67.6	68.6	67.5
페루('11.8)	수출	61.3	77.8	91.9	89.0
	수입	52.6	92.0	97.9	87.7
미국('12.3)	수출		69.4	77.0	73.9
	수입		63.7	68.3	67.7
터키('13.5)	수출			69.4	73.5
	수입			69.4	60.8

/ FTA 국가의 수출입실적 /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12	2013	전년동기 대비증감율	2013년 1월~6월	2014년 1월~6월	전년동기 대비증감율	
EU	수출	49,371	48,857	-1.0	24,700	27,492	11.3
	수입	50,374	56,230	11.6	27,292	31,024	13.7
	교역액	99,745	105,087	5.4	51,992	58,516	12.5
페루	수출	1,473	1,440	-2.2	715	693	-3.1
	수입	1,639	1,983	21.0	1,028	713	-30.6
	교역액	3,112	3,423	10.0	1,743	1,406	-19.3
미국	수출	58,525	62,052	6.0	31,327	33,863	8.1
	수입	43,341	41,512	-4.2	20,844	22,993	10.3
	교역액	101,866	103,564	1.7	52,171	56,856	9.0
칠레	수출	2,469	2,458	-0.4	1,302	1,150	-11.7
	수입	4,676	4,658	-0.4	2,357	2,290	-2.8
	교역액	7,145	7,116	-0.4	3,659	3,440	-6.0
ASEAN	수출	79,145	81,997	3.6	41,884	44,373	5.9
	수입	51,977	53,339	2.6	26,289	26,728	1.7
	교역액	131,122	135,336	3.2	68,173	71,101	4.3
인도	수출	11,922	11,376	-4.6	5,761	6,278	9.0
	수입	6,921	6,180	-10.7	3,201	2,660	-16.9
	교역액	18,843	17,556	-6.8	8,962	8,938	-0.3
EFTA	수출	1,495	2,441	63.3	665	1,020	53.4
	수입	7,713	6,409	-16.9	3,380	2,775	-17.9
	교역액	9,208	8,850	-3.9	4,045	3,795	-6.2
터키	수출	4,552	5,658	24.3	2,597	3,319	27.8
	수입	672	692	3.0	332	304	-8.4
	교역액	5,224	6,350	21.6	2,929	3,623	23.7
FTA체결국	수출	208,952	216,279	3.5	108,951	118,188	8.5
	수입	167,313	171,003	2.2	84,723	89,487	5.6
	교역액	376,265	387,282	2.9	193,674	207,675	7.2
비 FTA국	수출	338,918	343,353	1.3	167,523	165,136	-1.4
	수입	352,271	344,583	-2.2	171,767	173,626	1.1
	교역액	691,189	687,936	-0.5	339,290	338,762	-0.2
총계	수출	547,870	559,632	2.1	276,474	283,324	2.5
	수입	519,584	515,586	-0.8	256,490	263,113	2.6
	교역액	1,067,454	1,075,218	0.7	532,964	546,437	2.5

## 통계 2

## / 원산지관리사 시험 합격자 배출현황 /

(단위: 명, %)

구분	시행일	응시자	합격자	합격율
1회	2010.6.27	284	150	52.8
2회	2010.11.13	383	91	23.8
3회	2011.5.28	624	194	31.1
4회	2011.11.12	602	129	21.4
5회	2012.6.9	728	165	22.7
6회	2012.9.15	552	156	28.3
7회	2012.12.1	651	161	24.7
8회	2013.5.4	591	138	23.4
9회	2013.8.31	652	189	29.0
10회	2013.11.30	793	198	25.0
11회	2014.4.26	609	130	21.3
합계		6,469	1,701	26.3

## / 원산지관리사 합격자 연령분포 /

(단위: 명, %)

구분	20미만	20~29	30~39	40~49	50~59	60~69	70이상	합계
인원(명)	7	696	580	257	111	47	3	1,701
비율(%)	0.4	40.9	34.1	15.1	6.5	2.8	0.2	100.0

## / 원산지관리사 소속별 분포 /

(단위: 명, %)

구분	일반기업	건설탕법인	학생	기관·단체	기타(무기입)	합계
인원(명)	461	198	451	60	531	1,701
비율(%)	27.1	11.6	26.5	3.5	31.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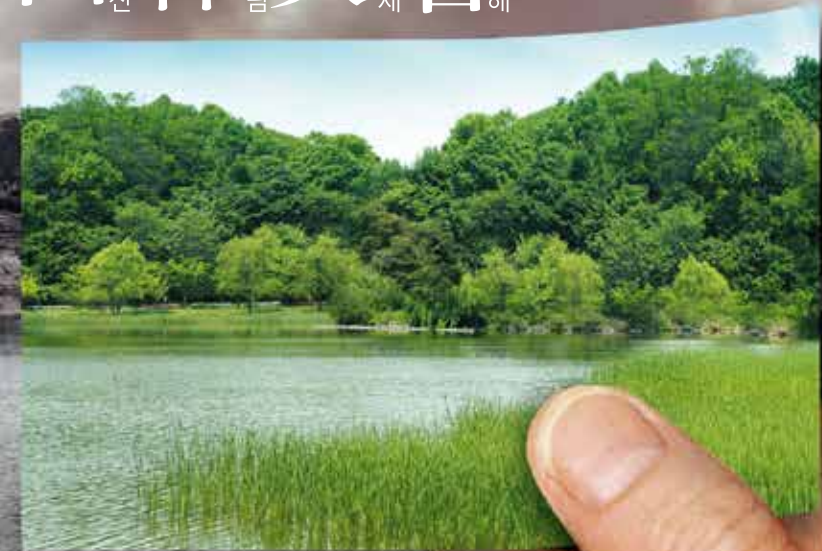
## / 원산지관리사 지역별 분포 /

(단위: 명, %)

지역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경남	대구	충남	경북
인원	454	374	158	128	101	86	61	55
비중(%)	26.7	22.0	9.3	7.5	5.9	5.1	3.6	3.2
지역	대전	울산	충북	광주	전북	전남	강원	제주
인원	52	50	50	42	39	36	12	3
비중(%)	3.1	2.9	2.9	2.5	2.3	2.1	0.7	0.2

# 山林災害

산림재해



## 피할 수는 없어도 줄일 수는 있습니다

산불, 병해충, 수해로 인한 산림재해 한 순간의 방심으로 소중한 숲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을 수 있기에 산림청은 체계적인 예방시스템을 통해 소중한 숲을 지키고 관리해나가고 있습니다.

숲은 키우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FTA 무역 리포트 || 2014. 7 No.2

〈비매품〉

발행일 : 2014년 7월

발행처 : 관세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2-1304호  
TEL. 042) 481-3282 / FAX. 042) 481-7753  
<http://fta.customs.go.kr>

국제원산지정보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  
TEL. 031) 6000-701-3 / FAX. 031) 6000-704  
<http://www.origin.or.kr>

편집 : 관세청 FTA 집행기획관실  
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개발본부

인쇄 : 키크스코리아

발간등록번호 : 11-1220000-000342-08





SEOUL ICM 2014  
INTERNATIONAL  
CONGRESS OF  
MATHEMATICIANS

“세상을 바꾸는 힘, 미래를 여는 수학”

International Congress of Mathematicians

#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

2014. 8. 13.(수) - 21.(목) | 서울 코엑스



4년마다 열리는 수학 올림픽  
수학 노벨상 ‘필즈상’ 시상식  
기초과학분야 최대의 국제학술대회  
전 세계 5,000여 명이 참가하는 수학축제

## 프로그램

- 주요행사 | 개막식 (필즈상 시상식 포함), 환영연, 공식만찬, 폐막식
- 시상내역 | 필즈상, 네반리나상, 가우스상, 천상, 밀라바티상
- 초청세션 | 기초강연, 초청강연, 패널토론, 수상강연, 특별강연 등 250여 회
- 일반세션 | 19개 분과별 일반강연 1,100여 회
- 대중강연 | 13일 - 제임스 사이먼스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명예회장)  
20일 - 밀라바티상 수상자 (수학대중화 기여 부문 수상자)
- 전 시 회 | IMAGINARY 체험전, 학술 전시, 대중전시
- 문화행사 | 바둑 행사, 수학영화 상영 등

※ 후원 및 기부 문의: 서울세계수학자대회 사무국 (Tel. 02-563-2014)

주 최 | 국제수학연맹    주 관 |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 조직위원회    협력단체 | kms

후 원 | 미래창조과학부    서울특별시    국가수리과학연구원    KIAS    KOFST

문의처 | 서울세계수학자대회 사무국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710호  
전화: 02-563-2014 이메일: icm@icm2014.org 홈페이지: www.icm2014.org/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SEOULICM2014



# 할머니, 할아버지 기초연금 받으세요



# 7월, 기초연금이 시작됩니다

기초연금은 상생연금입니다. 더 필요한 어르신들을 배려하고 자녀세대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 제도 안내

**시행시기** 2014년 7월 1일 (첫 지급일 : 7월 25일)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종료 됨

“7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뀝니다.”

**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 이하

**지급액** 월 최대 20만 원  
단독가구 2~20만원, 부부가구 4~32만원 수급 가능

**문의처** 보건복지 콜센터 (☎129), 국민연금콜센터 (☎1355), 읍·면·동 주민센터

## 시행 안내

주소지 읍, 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무관)에 신청해주세요.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도 가능 ※ 온라인 신청은 7월 7일부터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에서도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별도 기초연금 신청 불필요**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소득재산 조사 후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신청 처리가 지연되더라도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함께 지급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으시는 분은 7.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  
이미 만 65세가 되신 분들은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면 별도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필요 없음

**기초연금 신청(접수)비용이 있나요?**  
기초연금 신청에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 기초연금 신청 및 접수비 명목으로 어르신들의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주겠다고 해서 접근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고, 즉시 경찰서에 신고해 주십시오.)

보건의료의 자리는 생명을 지키는 곳입니다.  
위험할 땐 119, 힘들 땐 129  
심박, 혈당 등으로 생체가 어려워지면 365일 24시간 보건복지 콜센터



# 문 닫고 냉방하시는 우리 삼촌, 고맙습니다!

가게를 운영하시는 우리 삼촌의 여름 습관은 문단속.  
여름철만 되면 냉기 빠져나간다고 그렇게  
문을 꼭꼭 닫으신대요.  
어때요? 칭찬 받을만 하죠?

여름철 전력 피크시간  
14:00 - 17:00



## 여름날, 고맙습니다!

칭찬릴레이 이벤트  
무더운 여름, 가족, 친구 직장동료에게  
힘이 되는 칭찬 한마디를 전달하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칭찬릴레이를 시작합니다.  
[www.powersave.or.kr](http://www.powersave.or.kr)

### 가정



- 안보는 TV 끄기
- 청소기 사용 자제
- 에어컨 사용 자제

### 사무실



- 콜랩시 입기
- 점심시간 컴퓨터 끄기
- 선풍기 사용하기

### 상점



- 문열고 냉방 자제
- 적정온도 냉방
- 전등 끄기

# 관세청 종합 솔루션 Yes FTA

## 눈높이맞는 맞춤형지원

관세청은 다양한 중소기업의 특성과 역량에 맞춘  
FTA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으로 FTA 활용 준비부터  
해결까지 완벽히 지원해 드립니다.



### 세계 품목분류·세율 정보 제공

수출 상대국의 품목분류(HS), 관세율 등을 미리 확인하세요.

### FTA 활용지원 맞춤형 컨설팅

전문컨설턴트가 기업을 직접 방문 컨설팅하는 맞춤형 FTA 활용지원 컨설팅을 활용하세요.

###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

수출물품 제조용 원재료 · 부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의 정확성을 세관장이 직접 확인하여 드립니다.

### FTA 전문인력 양성과 구인 · 구직 연계

FTA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구인기업과의 고용 연계(Job-matching)를 통해 취업을 지원합니다.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www.customs.go.kr](http://www.customs.go.kr)

### YES FTA 센터

중소기업의 FTA 활용준비 단계부터 활용단계, 문제해결 단계까지 활용 및 검증대응, 통관으로 해결 등을 전국 6개 주요세관의 YES FTA센터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 |                     |                         |                      |                      |
|---------------------|-------------------------|----------------------|----------------------|
| • 서울세관 02-510-1703  | fta-seoul@customs.go.kr | • 대구세관 053-230-5252  | fta120@customs.go.kr |
| • 인천세관 032-452-3160 | fta020@customs.go.kr    | • 광주세관 062-975-8052  | fta071@customs.go.kr |
| • 부산세관 051-620-6881 | fta030@customs.go.kr    | • 평택세관 031-8054-7047 | fta016@customs.go.kr |